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 연구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 연구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4. 4. 10.

연구수행기관	(사)한국도시연구소
연구 책임자	신 명 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연구 원	홍 인 옥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장 세 훈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
	남 원 석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전 홍 규 (일본 동경대 박사과정)
	유 병 덕 (강원대 인류학과 석사)
	한 영 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배 지 영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가. 연구의 범위	3
나. 연구의 방법	4
 II. 빈곤 문제의 이론적 검토	7
1. 기존의 빈곤 연구: 경제적 차원의 빈곤 연구	7
2. 신빈곤 연구	9
가. ‘새로운’ 빈곤 연구의 등장배경	9
1) 사회계층구조의 고착화와 빈곤의 위상 변화	9
2) 탈빈곤 대책의 무기력	11
나. 신빈곤 연구의 주요 관심	13
1) 빈곤 원인의 다차원성	13
2) 빈곤 형성 및 재생산 과정에 대한 관심	14
다. 신빈곤의 속성	15
1) ‘노동빈곤’으로서 신빈곤	15
2) ‘상대적 빈곤’으로서 신빈곤	16
3) ‘복합적 빈곤’으로서 신빈곤	17
4) ‘심리적 고립’으로서 신빈곤	18
3. 사회적 배제와 빈곤 연구	18
가. 사회적 배제의 개념	19

나. 사회적 배제의 특성	21
다. 사회적 배제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	22
1) (신)자유주의적 시각: 영·미 계통의 (사회적) 분화 패러다임	22
2) 공화주의적 시각: 프랑스 계통의 사회적 연대 패러다임	23
3) 사회민주주의적 시각: 신베버주의자들의 독점 패러다임	24
4) 맑스주의자들의 급진적 시각	25
라.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에 대한 시각	25
1) ‘빈곤=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로서 빈곤	25
2) 빈곤 형성 및 재생산 메커니즘으로서 사회적 배제	26
마. 사회적 배제를 통한 빈곤 연구의 의의	26
III. 연구의 분석틀: 사회권, 사회적 배제, 빈곤화 과정	27
1. 인권(사회권) 차원의 접근	27
가. 인권·사회권 개념	27
나. 빈곤에 대한 인권 차원의 접근의 필요성	29
2. ‘과정’으로서 빈곤: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 과정	30
3.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상호작용	32
가. 사회·경제·문화·공간적 요인들의 다중적 복합의 결과로서 빈곤	32
나. 빈곤화 과정 분석: 사회적 배제 영역과 빈곤화 과정	34
1) 사회적 배제의 구성요소	34
2) 빈곤과 관련된 사회적 배제 요인의 도출	35
4. 연구의 열개: 사회권, 사회적 배제, 빈곤화 과정	37
IV. 한국사회 빈곤 양상의 변화	39
1. 도시빈민의 원초적 형성	39
2. 도시빈민의 구조적 형성	41

3. 도시빈민의 구조적 재생산	43
4. 외환위기와 도시빈곤의 심화·확산	46

V. 사회적 배제를 통한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 48

1. 주거와 사회적 배제	48
가. 주거와 사회적 배제의 관계	48
나. 사회적 배제의 원인으로서는 주거	52
1) 주택의 취약한 물리적 조건에 따른 불건강성	57
2) 과밀주거로 인한 불건강과 가족 등 사회관계의 갈등 유발	77
다. 적절한 주거로부터의 배제	82
1) 공공임대주택의 부족	82
2) 가구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84
3) 가구소득과 무관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계	87
4)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의 부족	90
라.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서 주거빈곤	93
1) 소득원 상실에 따른 주거빈곤화	93
2) 신용불량으로 인한 주거빈곤의 지속	96
3) 재개발로 인한 주거빈곤화	99
4) 불건강과 가족해체로 인한 주거빈곤화	105
5)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한 주거빈곤화	107
6) 가정폭력으로 인한 주거빈곤화	109
7) 복합적 요인에 의한 주거빈곤화	112
마. 소결	116
2. 노동과 사회적 배제	120
가. 노동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	120
나. 노동빈곤 발생의 사회구조적 요인	122

1) 노동유연화 전략에 기인한 노동빈곤	123
2) 경기침체와 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노동빈곤	126
3) 노동시장의 분절구조에 따른 노동빈곤	130
다. 사회적 배제의 원인으로서는 노동빈곤	134
1) 노동빈곤으로 인한 물질적 결핍	135
2) 노동빈곤으로 인한 물질적 결핍과 주거빈곤	137
3) 노동빈곤으로 인한 복합적 결핍	139
라.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서 노동빈곤	144
1) 장애 및 건강의 상실과 노동빈곤	144
2) 취약한 사회관계와 노동빈곤	148
3) 학업중단과 노동빈곤	150
마. 소결	154
3. 교육과 사회적 배제	157
가. 교육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	157
나. 학업중단	158
1) 가정해체와 빈곤으로 학업이 중단된 경우	162
2) 학업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 자발적 배제	163
다. 성적에 의한 인격적 차별	165
라. 학력에 의한 차별	166
마. 사회적 배제의 발생 요인들의 관계	168
1) 학업중단과 관련된 요인들의 관계	168
2) 교육을 중심으로 본 사회적 배제의 요인들	171
4. 건강과 사회적 배제	173
가. 건강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	173
1) 만성질환	176
2) 희귀·난치성 질환	177

3) 장애	178
나. 건강의 상실로 인한 빈곤화 과정	178
1) 적절한 교육 기회로부터의 단절	179
2) 안정적인 고용 기회로부터의 단절 및 차별	182
3) 소득 중단 및 의료비 부담 가중으로 인한 빈곤화	186
다. 빈곤으로 인한 건강의 상실 및 악화	189
1) 생계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 제한	190
2)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점검, 건강에 대한 정보에서 배제	193
3) 빈곤한 사람들이 처한 기타 환경요인의 영향	194
라. 소결	195
5.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배제	197
가.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	197
1) 빈곤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위상	197
2) 빈곤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	198
3)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과 빈곤화 과정	199
나.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로 인한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	200
1) 기초적 관계망의 해체로 인한 빈곤화	200
2) 지리적 이동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빈곤화 과정	203
3) 사회적 관계의 부재로 인한 빈곤	204
4) 사회적 관계망의 부작용	207
다. 사회적 배제 요인들과의 결합을 통한 빈곤의 가속화	208
1) 공간적 고립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	209
2) 건강의 상실과 사회적 관계의 제약	211
3) 저학력과 사회적 관계의 제약	213
라. 빈곤과 사회적 관계 단절의 악순환	214
마. 소결	215

6. 물질적 결핍과 사회적 배제	216
가. 물질적 결핍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	216
나. 물질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	219
1) 불안정한 근로소득	219
2) 최소한의 소비를 중심으로 한 지출	220
다. 물질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가 발생한 이유	227
1) 여성가구주의 빈곤화: 무능한 남성가장을 대신한 여성가장	228
2) 장애와 질병: 동원 가능한 노동력의 상실	230
3) 불안정한 고용상태, 강제할 수 없는 노동조건	231
라. 물질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의 결과	232
1) 심리적 배제: 상대적 박탈감	232
2) 관계망에 있어서의 사회적 배제: 사회적 관계망의 위축	235
마. 소결	236
 VI. 결론: 정책적 함의	237
1. 연구결과의 종합	237
2. 정책제안	240
가. 아동과 취약 빈곤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	240
나.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복지 서비스와 종합지원체계 수립	241
다.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정책적 고려	242
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관리 및 질병 예방 서비스 강화	242
마. 건강보험 포괄 범위 확대	243
바. 의료급여 확대	243
사. 주거복지 정책의 정비	244
아. 주거빈곤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	244

자.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와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244
차. 가정해체의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	245
■ 참고문헌	247
■ 부 록	256

■ 표 목차 ■

<표 I-1> 심층면접 대상자의 기본사항	6
<표 IV-1> 서울시 빈곤층 가구주의 농촌 출신 비율	44
<표 IV-2> 도시빈곤율의 추이	45
<표 V-1> 주요국의 주택관련 주요지표 비교	54
<표 V-2> 현 주택의 상태	56
<표 V-3> 주택에 대한 만족도	57
<표 V-4> 주택에 대한 불만이유	57
<표 V-5> 시설형태별 가구비율	62
<표 V-6> 쪽방 거주자의 추이	72
<표 V-7>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주거빈곤가구 비율	83
<표 V-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83
<표 V-9>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84
<표 V-10>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전용면적	86
<표 V-11>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임대료 현황	88
<표 V-12> 신림2단지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 증가 추이	89
<표 V-13> 주택전세가격의 전국 변동률 추이	91
<표 V-14> 신규 주택건설허가 중 소형평형 주택수 및 비율	92
<표 V-15>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	92
<표 V-16> 연도별 월세시장 동향	92
<표 V-17> 비닐하우스촌으로 이주한 배경	94
<표 V-18> 이주 전후 신림7동 거주가구의 소득변화	100
<표 V-19> 이주 전후 신림7동 거주가구의 총부채 비교	100
<표 V-20> 이주 전후 신림7동 거주가구의 월지출 비교	100

<표 V-21> 이주 전후 신림7동 거주가구의 주거비 변화	101
<표 V-22> 이주 전후 신림7동 거주가구의 주택 방 수 비교	101
<표 V-23> 신림7동 재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 주거대책비 지급 기준	102

■ 그림 목차 ■

[그림 III-1] 기존 빈곤 연구의 설명틀	32
[그림 III-2] 빈곤 연구의 새로운 설명틀	33
[그림 III-3] 사회적 배제 영역간의 관계	37
[그림 V-1] 노○선씨의 민간임대주택 거주력	64
[그림 V-2] 미인가숙박소(쪽방) 건물 입면도	81
[그림 V-3] 미인가숙박소(쪽방) 건물 단면도	81
[그림 V-4] 미인가숙박소(쪽방) 내부 평면도①	81
[그림 V-5] 미인가숙박소(쪽방) 내부 평면도②	81
[그림 V-6] 소득원 상실에 따른 주거빈곤화(사례 1·20)	96
[그림 V-7] 신용불량으로 인한 주거빈곤의 지속(사례 3·15)	99
[그림 V-8] 재개발로 인한 주거빈곤화(사례 10·15)	105
[그림 V-9] 불건강과 가족해체로 인한 주거빈곤화(사례 2)	107
[그림 V-10]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한 주거빈곤화(사례 23)	109
[그림 V-11] 가정폭력으로 인한 주거빈곤화(사례 6·25)	112
[그림 V-12] 복합적 요인에 의한 주거빈곤화(사례 8)	115
[그림 V-13] 복합적 요인에 의한 주거빈곤화(사례 19)	116
[그림 V-14] 주거와 사회적 배제의 관계	118
[그림 V-15] 노동빈곤 발생의 사회구조적 요인과 과정	134

[그림 V-16] 노동빈곤으로 인한 물질적 결핍의 심화	136
[그림 V-17] 노동빈곤으로 인한 물질적 결핍과 주거빈곤의 심화	139
[그림 V-18] 노동빈곤으로 인한 복합적 결핍의 심화 (사례 21)	142
[그림 V-19] 노동빈곤으로 인한 복합적 결핍의 심화(사례 19)	144
[그림 V-20] 건강의 상실에서 기인한 노동빈곤의 심화 (사례 10)	146
[그림 V-21] 신체적 장애로 인한 노동빈곤의 심화(사례 23)	147
[그림 V-22] 학업중단으로 인한 노동빈곤의 심화(사례 1·8)	154
[그림 V-23] 노동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	156
[그림 V-24] 교육 관련 사회적 배제 발생요인들의 관계	171
[그림 V-25] 교육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	173
[그림 V-26] 장애로 인한 교육 및 고용기회의 단절과 빈곤화 (사례 9)	183
[그림 V-27] 장애로 인한 교육 및 고용기회의 단절과 빈곤화 (사례 23)	186
[그림 V-28] 주소득원의 건강상실로 인한 빈곤화	189
[그림 V-29] 빈곤으로 인한 건강 악화 경로	193
[그림 V-30] 건강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	196

■ 요약문 ■

I. 서론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빈곤층의 빈곤 실태와 빈곤화 과정을 파악하고,
 -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빈곤층의 빈곤화 과정을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 빈곤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상의 연구목적에 따라 사회적 배제의 영역을 주거, 교육, 노동, 건강, 사회적 관계, 물질적 결핍으로 나누어 빈곤층 29가구에 대한 심층면접결과를 분석하였음.
 - 실제 빈곤층의 생애에 있어서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각 영역에서 살펴보았음.
 - 각 영역에서는 사회적 배제가 빈곤을 유발하는 원인이자 빈곤에 의한 결과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영역들간의 상호관계 역시 검토되었음.

II. 빈곤 문제의 이론적 검토

1. 기존의 빈곤 연구: 경제적 차원의 빈곤 연구

- 경제적 차원에서 총량자료(aggregate data)를 통해 거시적 차원에서 빈곤층의 전반적인 규모와 추이를 살펴보는 기존의 빈곤 연구는 빈곤 현상에 대한 구조적 접근으로서 상당한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러한 장점이 오히려

- 려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 과정을 파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기존 연구들은 빈곤 문제를 경제적 차원의 문제로 국한시킴으로써, 빈곤 현상의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 점도 안고 있음.
 - 빈곤 문제에는 심리적 고립감, 사회·문화적 소외, 정치적 배제, 공간적 격리 등과 같은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중첩되어 존재함.
 - 이에 빈곤 문제를 이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잇따르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신빈곤 연구와 사회적 배제 차원에서의 빈곤 연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음.

2. 신빈곤 연구

- 신빈곤(New Poverty) 연구는 과거의 빈곤, 즉 ‘구빈곤(Old Poverty)’과 구별되는 빈곤의 새로운 양상을 밝히려는 일련의 시도를 가리킴.
- 신빈곤 연구의 주요 관심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① 빈곤 원인의 다차원성: 빈곤을 낳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다양하고, 또 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빈곤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빈곤의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모습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②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 과정: 특정 개인이 어떻게 빈곤 상황에 처하게 되고 빈곤층이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며, 그러한 노력이 성공하거나 좌절하는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 과정을 주목함 → 빈곤에의 추락과 탈출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이른바 ‘차상위 빈곤층’, 또는 빈곤 탈출을 위한 자구 노력에 매진하는 ‘노동빈곤층(the Working Poor)’에 관심 집중
- 기존 연구를 검토해볼 때, 구빈곤과 구별되는 신빈곤의 특징으로는 노동빈곤, 상대적 빈곤, 복합적 빈곤 상황, 그리고 심리적 고립 상태의 네 가지를 들 수 있음.
 - 이들 속성에 비추어 보건대, 구빈곤은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지만 곧 빈

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보는 '희망의 빈곤' 상황에 유사한 것으로, 그리고 신빈곤은 상대적 빈곤에 놓여 있지만 빈곤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보는 '절망의 빈곤'에 근접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3. 사회적 배제와 빈곤 연구

-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빈곤 연구도 신빈곤 연구와 마찬가지로 빈곤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음.
 - 특히 기존의 빈곤 연구가 경제적 자원의 결핍이나 부족을 문제삼았다면, 사회적 배제론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차원에서 빈곤 문제에 접근함.
- 논자의 입장에 따라 사회적 배제가 다소 달리 정의되기는 하지만, 사회적 배제는 '사회 구조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박탈과 결핍, 불이익을 당해 사회·경제·정치 활동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할 수 있음.
- 사회적 배제론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사회적 배제는 불평등과 차별이 사회 구조적으로 재생산되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킴: 배제의 대상에게 차별과 배제를 강제하는 사회구조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가정함.
 - 사회적 배제는 힘 있는 다수가 힘 없는 소수에 대해 이들이 가진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거나 과중한 의무나 부담을 부과하는 사회 현상을 가리킴.
 - 사회적 배제로 인한 빈곤 상황은 단일 차원의 문제, 예컨대 경제적 자원의 부족이나 결핍의 문제만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의 박탈과 결핍, 불이익을 뜻함.
- 이와 같이 사회적 배제 개념을 토대로 한 빈곤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음.
 - 빈곤을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산물로 파악하는 다차원적 접근을 추구함으로써 빈곤화 과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음.

- 빈곤의 원인을 당사자 내부에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찾기 때문에, 빈곤의 발생 및 그 해소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부각시킬 수 있음.

III. 연구의 분석틀: 사회권, 사회적 배제, 빈곤화 과정

1. 인권(사회권) 차원의 접근

- 인권은 공민권(Civil Right)을 그 필요조건으로 삼고 사회권(Social Right)을 그 충분조건으로 삼아 구성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음.
 - 사회권을 공민권과 함께 인권을 구성하는 두 축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면, 인권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사회적 메커니즘은 반드시 필요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빈곤 문제에 대한 인권 차원의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경제성장 지상주의'의 현실 논리에 떠밀려 경제적 약자로서의 빈민에 대한 법제적 차원의 관심은 대단히 미미했음.
 - 빈곤 문제는 가난한 사람 개개인의 문제, 더 나아가 게으른 사람, 또는 사회적 낙오자의 문제로 여겨졌고, 그 결과 빈곤 문제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왔음.
- 최근 들어 빈곤이 국지화되고 만성화되고, 더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 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빈곤의 위상과 속성이 크게 바뀌고 있음.
 - 그 결과 공공부문이 인권(사회권) 보호 차원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2. '과정'으로서 빈곤: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 과정

- 빈곤의 동태적 과정, 즉 빈곤화(Pauperization)의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연구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에서, 개인을 빈곤 상황에 몰아넣거나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단단히 묶죄는 일련의 과정을 서술하는 개인의 생애사(life history)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단순히 생애사 연구를 통해 개인의 빈곤화 과정을 '서술'하는 데 그 치기보다 빈곤화 과정에 개입되는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설명'하는 데 주력해야 함.
 - 사회적 배제 이론의 도움을 얻어 빈곤화 과정을 규정짓는 설명요인들을 추출해서 이들간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분석틀을 구성하고자 함.

3.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상호작용

- 기존의 빈곤 연구는 사회적, 문화적, 공간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빈곤의 규정 요인들이 경제적 요인으로 수렴되어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음.
 - 비경제적 요인들이 경제적 요인을 통해 빈곤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배경변수라고 파악하고, 경제적 요인이 이들 요인의 영향력을 가늠하는 매개변수라고 보았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제각기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 과정에 개입하고 있음.
 - 따라서 빈곤 형성 및 재생산에 관련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빈곤화를 촉발하거나 가속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같은 분석틀에 기초할 때 한국의 빈곤 실태를 고려할 경우 빈곤을 낳는 사회적 배제 영역과 그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 볼 수 있음.

- ① 주거 차원의 사회적 배제: 생존에 필요한 생활공간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거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주거에 거주하거나, 또는 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사회·경제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② 고용·취업 차원의 사회적 배제: 저학력·미숙련, 여성, 심신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거나 제약받는 경우.
 - ③ 교육 차원의 사회적 배제: 정보, 지식, 기술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교육기회를 박탈당했거나 저학력으로 사회적인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 ④ 건강 차원의 사회적 배제: 심신장애나 만성질환 등으로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데다가 이러한 불편을 완화하거나 보완해 줄 보건·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 ⑤ 사회적 관계 차원의 사회적 배제: ‘가난한 사람’으로 낙인찍혀 친인척, 이웃, 사회와의 관계로부터 고립되거나 단절된 경우.
 - ⑥ 물질적 영역의 사회적 배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안정적으로 갖춰지지 못하거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배제 영역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물질적 차원의 결핍 또는 부족 상황을 낳거나 악화시키고, 이러한 빈곤 상황이 다시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키는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과 사회적 배제의 악순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함.

IV. 한국사회 빈곤 양상의 변화

1. 도시빈민의 원초적 형성

-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해방을 맞게 되면서, 해외로 이주했던 한인들의 귀국 및 북한 주민들의 월남 등으로 그동안 잠재되었던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도시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음.

- 1955년 1인당 국민소득이 65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생존의 한계선상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1950년대는 '보편적 빈곤'의 시대였음.
- 한편으로는 전통사회의 신분·계층구조가 무너지고 사회 구조가 새롭게 재편되는 이행 국면이기 때문에, 빈민들에게도 빈곤 상황에서 탈출할 기회가 폭넓게 열려 있던 '일과성 빈곤'의 시대였음.
- 이러한 점에서, 당시의 도시빈민들은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됨으로써 빈곤의 늪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워진 그 이후의 도시빈민들과 구분된다고 할 수 있음.

2. 도시빈민의 구조적 형성

- 1960년대에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도시빈곤의 양상은 크게 바뀌었음.
 - 국가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부문에 투자를 집중시키는 한편, 이농을 부추겨 도시 내에 광범위한 유희노동력을 양산시키고자 했음.
 - 그 결과 영세소농 등의 형태로 농촌에 잠재되어 있던 빈민들이 도시로 대거 이주하면서, 빈곤의 문제는 더 이상 농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문제로 자리잡아갔고, 이농민의 도시 진입으로 도시빈민의 대대적인 충원이 이루어졌다.
- 그러나 저학력·미숙련 상태의 중장년층 이농민 가구주들은 이처럼 경제성장의 주축이 되는 근대적 산업부문의 노동력 수요에 적합하지 못했음.
 - 이들의 미혼 가구원 가운데 일부만이 근대적인 산업부문에 노동자로 취업할 수 있었을 뿐, 도시에 유입된 이농민 가구주들은 일차적으로 구멍가게와 같은 소규모 영세상업이나 행상·노점, 일용노동 등과 같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면서, 도시빈곤층의 일원으로 편입되었음.
 - 특히 산업화와 함께 도시 공간의 합리적 활용이 요구되면서, 1960년대부

터 시내에 위치한 무허가판자촌에 대한 철거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신규 이농민들의 주거의 불안정이 취업의 불안정과 함께 심각한 생존의 문제로 제기됐음.

- 그러나 국가주도형 산업화가 농민·노동자 및 도시빈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추진되기는 했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고용기회를 늘리고 소득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자, 도시의 절대빈곤 문제가 서서히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다소나마 주어졌음.

3. 도시빈민의 구조적 재생산

- 절대빈곤의 점진적인 완화 추세는 이후에도 꾸준히 지속되지만, 도시빈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못했음.
- 특히 30~40대 도시빈민 가구주의 경우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젊은 이농민 세대들과 도시 내 빈곤가구의 빈민 2세대가 그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도시빈민이 더 이상 ‘도시 속의 농민’(Peasants in Cities)이 아니며, 도시 내에서 빈곤이 세대간 계승의 형태를 띠고 구조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이와 같은 빈곤의 재생산 추세 속에서도 쉼없는 고도성장으로 전국민의 생활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1980년대 초를 제외하고는 2~3%대의 낮은 실업률이 유지되었음. 그 결과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는 극빈층 인구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음.
- 그러나 상대적 빈곤층이 1970년대 이후 꾸준히 늘어온 사실에서 쉽사리 확인할 수 있으며, 하루하루의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절대빈곤층이 사회 곳곳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강력한 철거·재개발 정책으로 저렴한 주택을 구하지 못해 비닐하우스 등 적절치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취업의 불안정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일용노동자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 즉 도시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도시문제의 관건으로 남겨져 있음.

4. 외환위기와 도시빈곤의 심화·확산

-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시작된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잃어 소득원을 아예 상실하거나 근로시간이 줄어 소득을 삭감당하는 실업자나 불완전취업자가 늘어나면서, 중간층에서 빈곤층으로의 하강이동이 증가해서 빈곤층의 외연이 크게 확장되고 있음.
- 또한 일자리 상실, 일감 축소 및 소득 삭감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기존의 빈곤층은 그 사회·경제적 처지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
- 이처럼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빈곤층의 의식이나 행동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가족 내 갈등이 폭증해서 가족해체 현상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으며, 자살이나 범죄에 대한 충동도 빈곤층의 상당수가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남. 더 불어 그동안 1천명 미만으로 추산되던 전국 도시의 노숙자가 1998년 한 해 동안 수천명으로 폭증한 사실에서 잘 드러남.
- 외환위기가 이와 같이 절대적 빈곤을 확산시키고 상대적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한국 경제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더라도 빈곤의 구조적 재생산 메커니즘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빈곤층의 적체와 '빈곤문화'의 사회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공공복지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의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V. 사회적 배제를 통한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

1. 주거와 사회적 배제

- 주거와 사회적 배제의 관계는 ① 사회적 배제의 원인으로서의 주거, ② 적

절한 주거로부터의 배제, ③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서의 주거로 구분할 수 있음.

- 사회적 배제의 원인으로서의 주거빈곤은 주택의 질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주거의 빈곤'과 생활거점으로서의 사회적 관계 구축을 위해 안정적인 '장(場)'이 형성되는 것을 저해하는 '거주의 빈곤', 양자를 함의하고 있음.
 - '주거의 빈곤'은 주택의 취약한 물리적 조건에 따른 불건강성을 야기함. 연료 및 부적절한 난방 문제, 화장실, 욕실 등의 기본적인 주거설비 미비, 일조·통풍의 불량, 열악한 주변환경, 취약한 내구성 등으로 말미암은 거주문제와 주거비 가중, 불건강, 사고위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한편 '거주의 빈곤'은 과밀주거문제가 원인이 되어 가족갈등 및 사회관계의 단절 등을 낳고 있음.
- 적절한 주거로부터의 배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 투입을 통해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부터의 배제와 주거빈곤층이 부담가능한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의 부족 문제에 대하여 살펴 보았음.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주거빈곤층의 소요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와 가구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주택 설비 및 평면·규모 등의 문제점을 짚을 수 있었으며, 또한 관리 차원에서는 가구소득과 무관한 임대료 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와 더불어 주거빈곤층이 주거비를 저렴하게 부담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 양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이를 통해 주거빈곤가구의 주거수준의 하향이동이 촉진되어 주거빈곤을 악화시키고 있음.
-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서 주거빈곤의 경우, 고용, 건강,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로 인해 주거빈곤화가 야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소득원 상실, 신용불량, 불건강과 가족해체, 가정폭력 등의 가구 내적인 요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재개발 등으로 인한 가구 외적인 요인이 상호연계되면서 빈곤층의 주거빈곤화를 발생시키고 있음.
- 그리고 이처럼 세 가지 범주를 통해 설명되는 사회적 배제와 주거의 관계는 서로에 대해 원인과 결과로 작용하면서 순환고리를 형성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빈곤을 심화시키고 있음.

2. 노동과 사회적 배제

- 노동의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배제의 형태는 크게 실업과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노동권의 측면에서 볼 때, 실업은 가장 기본적인 ‘일자리를 가질 권리’가 박탈되었다는 점에서,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은 ‘노동조건 및 환경개선을 요구할 권리’의 차원에서 고용안정성과 적정임금을 보장받을 권리 등이 침해받았다는 점에서 각각 사회적 배제의 상태로 간주할 수 있음.
 - 이 글에서는 실업과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을 ‘노동빈곤’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배제의 주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함.
- 우선 노동빈곤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음.
 - 노동유연화 전략에 기인한 노동빈곤
 - 경기침체와 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노동빈곤: 자영업의 실패, 공장의 해외 이전
 - 노동시장의 분절구조에 따른 노동빈곤
- 다음으로 노동빈곤이 사회적 배제의 주된 원인이 되어 다른 차원의 사회적 배제를 낳는 과정을 살펴보면, 물질적 결핍, 주거빈곤, 사회적 관계의 단절, 가족해체, 심리적 좌절, 불건강 등의 형태로 여러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가 야기되고 있음.

-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서 노동빈곤을 야기하는 요인들 역시 여러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장애 및 건강의 상실, 취약한 사회관계, 학업중단 등은 적절한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함으로써 노동빈곤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상에서 노동의 문제는 경제적 차원의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사회적 배제들과 깊은 인과적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노동의 문제가 복합적인 결핍의 상태로서의 빈곤을 낳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음.

3. 교육과 사회적 배제

- 교육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배제를 ① 학업중단, ② 교과성적에 의한 인격적 차별, ③ 학력(學歷)에 의한 차별과 불이익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함.
- 학교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학업중단의 경우, 이는 또래 사회구성원들이 누리고 있는 지적·정서적 성장의 기회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장차 성인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안임.
 - 빈곤은 직접적으로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족원간 지지관계의 약화(혹은 상실)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해체 역시 ‘학업중단’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한편 학업중단은 저학력을 낳음으로써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의 불완전·불안정 취업으로 연결되므로 이것은 다시 빈곤을 낳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또한 학업중단은 저학력에 따른 학력 차별의 폐해로 이어짐.
- 교과성적에 의한 인격적 차별의 경우, 학업 능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제도권 학교의 주류문화 속에서, 자연히 학업 성적이 우수하지 못한 학생은 그들의 다른 능력, 인격, 장점 등을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며 때로는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것을 가리킴.

- 특히 성적에 의한 인격차별은 차별받는 학생에게 심리적·정서적 소외감을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 학교생활과 학업에 대한 흥미나 의욕을 저하시킴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학업중단을 가져오는 부분적 원인이 될 수 있음.
- 사회활동을 하는 가운데 학력때문에 겪는 차별과 불이익(소득, 근로조건, 승진기회, 대인관계 등) 역시 교육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로 설명할 수 있음.
- ‘학력에 의한 차별’은 소득, 근로환경, 계급적 지위, 정치참여의 기회 등이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억제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은 고용상의 지위에 불이익을 가져옴.
-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가 저학력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승진에서의 차별, 부당한 인격적 대우, 열등감 등에 시달린다면 그는 학력자본의 결핍으로 인해 적절한 삶으로부터 배제되었다고 할 수 있음.

4. 건강과 사회적 배제

- 건강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는, 건강의 상실로 인해 개인의 기초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부정되고 실현되지 않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주거, 취업, 보건·의료 서비스 등에서의 기회에 대해 개인의 참여가 차단되어 불건강 및 다차원적 불이익이 나타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음.
- 따라서 건강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음.
- 불건강 자체가 개인이 경제활동이나, 교육 혹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 교육, 고용, 소득, 주거 등의 영역에서 일어난 사회적 배제가 불건강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 불건강으로 인한 빈곤화 과정의 경우,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다시 두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음.
 - 우선 어린 시절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신체나 정신적인 장애를 입게 된 경우, 적절한 교육기회로부터 단절되고 이로 인해 이후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차별과 어려움을 겪게 됨. 장애인에게 교육권이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이들이 빈곤을 벗어나 살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시기에 사고나 발병으로 인해 건강을 상실하게 된 경우, 건강상실로 인해 경제활동 및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것이 가장 큰 빈곤의 원인이며, 당사자가 가구주인 경우 가구의 경제적 상황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음. 또한 소득의 중단과 더불어 막중한 치료비 부담이 가중되므로 가용자원을 모두 탕진한 후 빈곤층에 진입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불건강이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음.
 - 빈곤으로 인해 생계비에 대한 부담이 클 경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됨으로써 불건강이 나타날 수 있으며, 건강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음.
 -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점검, 건강에 대한 정보에서 배제됨으로써 이것이 불건강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빈곤층일수록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 점검할 금전적, 정신적 여유가 없으며, 생계유지에 급급한 생활을 하다보면 건강에 대한 정보에 소홀해 지기 쉽고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문제에 대해 올바른 정보로 대처하기 어려움.
- 이처럼 빈곤 및 사회적 배제 상태는 불건강과 서로 악순환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고용, 사회적 관계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또 다른 배제를 야기하고 강화함.

5.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배제

- 사회적 관계망은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빈곤층이 빈곤 상황에 적응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희망의 빈곤(Poverty of Hope)'의 징표이기도 함.
 - 따라서 사회적 관계의 위축, 단절, 해체 및 부재는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빈곤화를 촉발시키고, 이미 빈곤 상황에 처한 빈민들의 빈곤 재생산을 더욱 가속시킬 뿐 아니라 이들의 빈곤 탈출 가능성을 봉쇄하는 효과를 발휘함.
- 이처럼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 과정과 연관지워 볼 때, 사회적 관계망과 빈곤 상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사회적 관계망의 해체, 단절, 부재 등으로 인해 빈곤 상황이 촉발되거나 촉진되는 유형
 - 사회적 관계의 해체·단절·부재 상황이 사회적 배제의 다른 요인들과 결합해서 빈곤을 가속시키는 유형
 - 빈곤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위축되거나 단절되고, 그로 인해 빈곤이 더욱 심화되는 빈곤과 사회적 관계망간의 악순환 유형
- 사회적 관계망의 해체, 단절, 부재 등이 빈곤을 유발하는 유형은 다시 네 가지 하위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음.
 - 기존 관계망의 해체로 인해 빈곤화가 진행되는 경우(가족해체 등)
 -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빈곤 상황에 처하는 경우(지리적 이동 등)
 - 사회적 관계의 부재로 인해 빈곤화가 진행되는 경우(장애로 인한 자발적 배제 등)
 - 사회적 관계망의 부작용 때문에 빈곤의 확대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구원의 연쇄적인 신용불량 등)
- 사회적 관계의 해체·단절·부재 상황이 사회적 배제의 다른 요인들과 결합해서 빈곤을 가속시키는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주거공간의 고립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단절(지하셋방, 영구임대주택 등)

- 건강의 상실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제약(장애 및 만성질환 등)
- 저학력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제약
- 빈곤과 사회적 관계망간의 악순환 유형의 경우, 사회적 관계의 두절이 빈곤의 진전을 더욱 부추기기도 하지만, 역으로 빈곤 상황이 빈곤층의 사회적 관계가 공고해지는 것을 가로막고, 기존의 관계망마저 끊어놓음으로써 궁극적으로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는 '자기 파멸적인' 악순환으로 나타남.
- 이상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해체는 빈곤 촉발 요인이 아니라 빈곤 가속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빈곤화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관계망의 복원은 빈곤층, 빈곤 취약 계층의 빈곤 적응 기제로서, 또 빈곤 탈출의 디딤돌 및 첫 단추로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음.

6. 물질적 결핍과 사회적 배제

- 사회적 배제의 개념에서 물질적 결핍 상황인 빈곤은 배제의 한 요소로 파악할 수 있음. 사회적 배제의 개념으로 물질적 결핍이란 빈곤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빈곤은 여러가지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 생성될 뿐만 아니라 다시 다른 자원과 활동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배제의 요인으로 기능하기 때문임.
- 물질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는 ① 생활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불안정하고 낮은 수준의 근로소득, ② 필수재에 대한 최소한의 소비지출로 특징지워짐.
- 이처럼 물질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가 발생한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음.
 - 첫째, 여성가구주의 빈곤화를 들 수 있음. 무능한 남성가장을 대신해 여성이 가정경제를 책임지게 되지만, 도시의 비공식부분의 저임금, 임시직의 자리만이 여성가구주들에게 할당될 뿐임. 결과적으로 하향 평준화된 여성의 고용기회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수입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으며,

여성가구주의 빈곤화 경향은 자연스러운 문제가 됨.

- 둘째, 노동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장애나 질병에 걸림으로써 동원가능한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것이 물질적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음. 더구나 빈곤가구에서 질병과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은 단지 노동능력의 상실만을 의미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지출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빈곤화를 가속화시킴.
- 한편, 물질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함.
 - 개인의 생애사 전반에 나타나는 빈곤과 좌절의 경험은 개인에게 심리적인 좌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함. 이로 인해 개인의 심리적인 재활의지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력을 미침.
 - 그동안의 삶을 통해 빈곤층 개인이 인식하는 전반적인 좌절감과 패배감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전이되며, 이는 세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나 생활반경을 위축시킴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 혹은 해체로 이어짐.

VI. 결론: 정책적 함의

1. 연구결과의 종합

-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의 다차원성과 중첩성을 확인했음.
 - 특히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들의 상호관련성을 밝히고자 노력했고, 그런 점에서 빈곤의 발생 메커니즘에 관하여 물질적 결핍이라는 요인뿐 아니라, 그 이외 영역의 요인들의 성격과 상호작용을 자세히 분석하였음.
- 사회적 배제라는 분석틀을 가지고 현재 한국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현상을 살펴본 바로는,
 - 제도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구성원들이 여

전히 생계, 고용, 의료, 주거, 교육의 영역 등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자신들의 힘만으로 그러한 상태를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음.

- 더구나 현재 그들 삶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전적으로 본인의 잘못이나 태함에서 비롯된 것이기보다는, 개인을 넘어서 사회 또는 국가 차원의 문제와 연관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결의 실마리 역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찾아야 하는 것이었음.
- 따라서 ‘사회적 배제는 시민으로서의 권리,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상기하면서, 인권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됨.
- ‘사회권’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 영역에서 중첩적인 결핍과 박탈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은 이러한 사회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탄생한 배경에는 이처럼 ‘문제가 복잡하고 심각한 만큼 사회적 연대를 회복하고 사회가 통합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회권 보장의 차원에서, 계층간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 교육, 노동 부문의 정책을 확충함으로써 시장경쟁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개입이 절실하다고 사료됨.

2. 정책 제안

-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빈곤층의 사회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① 아동과 취약 빈곤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
- ②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복지 서비스와 종합지원체계 수립
- ③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정책적 고려
- ④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관리 및 질병 예방 서비스 강화

- ⑤ 건강보험 포괄 범위 확대
- ⑥ 의료급여 확대
- ⑦ 주거복지 정책의 정비
- ⑧ 주거빈곤 밀집지역(쪽방, 비닐하우스촌, 지하주거 등)에 대한 관리
- ⑨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와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 ⑩ 가정해체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빈곤으로 인한 가족동반 자살사건이 던지는 충격은, 그 사건을 한 심약한 개인의 비정상적인 선택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절대빈곤을 벗어나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믿어왔던 우리 사회에서 가난을 비관한 자살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은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1970~80년대의 경제성장 신화에, 그리고 구제금융 사태를 조기에 극복했다는 사실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왔고, 따라서 장기실업과 날로 벌어지는 빈부격차의 문제를, 경기회복과 함께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이제 빈곤의 문제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그리고 다른 과정과 힘에 의해서 부인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 소득 2만불을 논하는 시대에 빈곤을 정책적 이슈로 인정해야 하는 당혹감은, 우리 사회가 90년대 중반부터 겪어온 급격하고도 구조적인 경제·사회적 변화를 간과하고 대비를 소홀히 해온 것과도 관련이 있다.

역사적 과정과 사회의 성격이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물질적 풍요를 일찍이 경험했던 서구의 선진산업사회가 지난 20년간 겪고 있는 신빈곤과 매우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만성실업과 고용의 불안정, 탈산업화와 서비스 분야의 확대, 빈부 격차 및 상대적 빈곤의 심화, 한부모 가구의 증대, 특히 여성 가장의 증가, 전통적 사회관계의 변화와 가정해체, 빈곤계층 구성의 다양화 등이 그것이다. 이는 일견, 사회 전반에 걸쳐 자유가 확대되고 물질적 궁핍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어 구성원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하고 경쟁할 수 있는 사회가 된 듯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단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기회로부터 배제되는 새로운 형태의 소외가 뿌리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찍이 서구에서 관찰됐던 빈곤은 일정한 수준의 삶을 영위해오던, 노동 능력을 가진 노동자층의 일부가 하층계급(underclass)으로 하강 이동함으로써 불안정하고 전망이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바, 그러한 상태는 경제적 결핍뿐만 아니라 적절한 주거 공동체, 정보에의 접근, 정치참여의 기회로부터 멀어지는 다차원적 박탈 현상을 낳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고도 개념화된다. 이 ‘사회적 배제’는 빈곤 현상의 동태적 성격과 구조적 원인 등을 살펴볼 수 있어 빈곤 현상을 분석·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오늘날의 새로운 빈곤 양상은 복잡하고 다기할 뿐 아니라, 그 원인적 치료에 있어서도 생계비 형태의 공적부조와 같은 경제적 접근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우리의 주된 관심은 빈곤 현상에 대한 정태적 설명에 있다가보다, 빈곤화의 과정과 요인, 그리고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갖는 구체적 한계와 문제점에 있으므로, 세계의 경제질서와 경향에 좌우되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구조적 힘이 어떻게 개인의 삶에 투영되고 그것을 제약하는지, 개인은 어떤 이유와 과정을 거쳐서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지를 상세히 밝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사회권 보장현황 즉 빈곤 실태와 빈곤화과정 등을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빈곤층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층의 빈곤 실태와 빈곤화 과정을 파악하고,

둘째,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빈곤층의 빈곤화 과정을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셋째, 빈곤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가.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빈곤 문제를 설명하는 기존의 논의방식을 검토하는 가운데 사회적 배제를 통한 빈곤 연구가 갖는 의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즉, 빈곤을 단순히 경제적 원인에 의한 물질적 자원의 부족 또는 결핍으로 파악하는 일차원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산물로서 이해하는 데 사회적 배제 개념이 유용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빈곤 문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빈곤을 물질적 결핍의 결과라는 개념으로 한정하고, 사회적 배제 개념에 더하여 이러한 빈곤을 형성·재생산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빈곤 문제 및 빈곤층의 사회권 문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셋째,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국사회의 빈곤 양상의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빈곤을 둘러싼 거시적인 맥락을 이해해 보고자 했다. 한국사회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빈곤의 문제도 도시로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주로 도시빈곤을 중심으로 빈곤화 추이를 네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넷째, 이론연구를 통해 구성한 분석틀에 따라 실제 빈곤층의 생애에 있어서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거, 교육, 노동, 건강, 사회적 관계, 물질적 결핍의 영역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각 영역에서는 사회적 배제가 빈곤을 유발하는 원인이자 빈곤에 의한 결과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영역들간의 상호관계 역시 검토되었다.

다섯째, 각 영역에서 드러난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을 토대로 빈곤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빈곤화 과정을 포괄적

으로 이해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배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 연구의 방법

‘사회적 배제’ 개념을 통해 빈곤층의 실태와 빈곤화 과정을 파악하는 본 연구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수행되었다.

1) 국내외 문헌 연구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 생소하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고 각 영역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배제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의 다양한 논의와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사례분석과 정책방향 제안을 위해 우리나라 사회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들도 검토하였다.

2) 심층면접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연구방법은 심층면접이다. 심층면접은 설문조사에 비해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빈곤층의 생활실태와 빈곤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약 4개월 동안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층 29가구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연구진 내에서 각 영역별 조사·집필자를 선정한 후, 영역별 담당자가 조사대상자의 유형과 성격을 사전에 설계하여 전체회의에서 검토하였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사전설계가 이루어진 후, 주로 지역시민단체,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에서 빈곤층의 복지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에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연구의도에 부합하는 조사대상자를 소개받았다.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인신상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후, 조사에 응하겠다는 이들에게만 직접 자택을 찾아가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1회에 약 1~2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조사대상자와 나눈 이야기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하였다. 녹음된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연구진들 사이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하였다.

2주마다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녹취록을 토대로 해당 사례의 분석에 대한 접근방식, 보완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필요에 따라 재차 방문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하거나 전화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더불어 조사대상자를 다시 방문할 때에는 해당 사례의 성격에 따라 다른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자가 참여하여 하나의 사례에 대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정이 허락할 경우 다른 가구원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는 주로 조사대상자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출생 이후 지금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서대로 묻고 답한 후, 생애사를 다시 더듬어보면서 조사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영역별 사회적 배제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들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심층면접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영역별 사회적 배제가 조사대상자의 빈곤화 과정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대상자의 진술을 통해 끌어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 대상자의 기본사항을 정리하면 <표 I-1>과 같다.

3) 연구자문회의

본 연구의 중간보고 자료와 연구보고서 초안에 대해 관련 학계, 정책연구자 등으로부터 자문을 얻었다.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의 유용성에 대한 토론에서부터 영역별 사회적 배제에 대한 분석결과 검토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연구보고서에 반영하고자 했다.

<표 1-1> 심층면접 대상자의 기본사항

번호	이름	성별	나이	직업	가구구성	비고	수급자
1	이○숙 이○설	여 남	44 46	붕어빵장사 중국집배달	부부, 자녀2	불량주거지	×
2	강○희, 강○미 강○수	여 여 남	20 19 16	여행사 경리직원 무직 중학교 중퇴	남매끼리 거주	부모이혼	×
3	우○순	여	33	주부	부부, 자녀3, 친동생3	영구임대주택	×
4	정○희	여	32	주부	부부, 자녀2	영구임대주택	×
5	임○실	여	32	자활근로	본인, 자녀1	남편 가출	○
6	임○희	여	31	통신판매원	본인(이혼), 자녀1	가정폭력	○
7	하○식	남	22	무직	부모, 본인, 이복형1	-	×
8	노○선	남	48	무직	본인(이혼)	노숙	×
9	황○진	남	42	구두닦이	본인(단독가구)	장애2급	○
10	권○진	남	52	무직	노모, 본인	중풍, 알콜중독	○
11	정○교	남	53	건설일용노동	부부, 자녀3	-	×
12	이○환	남	51	호텔고객지원실장	부부, 자녀1	저학력 차별	×
13	김○서	남	69	무직	본인(단독가구)	쪽방	○
14	권○기	남	34	백혈병단체 상근	본인(이혼), 자녀1	백혈병환자	○
15	이○선	여	65	무직	본인, 아들, 손자·녀1	비닐하우스촌	×
16	박○석	남	21	대안학교 인턴십	친구와 자취	-	
17	이○자	여	69	빌딩청소	본인, 손자1	지하셋방	×
18	채○승	여	55	무직	본인(이혼), 자녀1	-	×
19	이○성	남	48	무직	본인(이혼)	노숙	×
20	김○숙	여	51	동사무소 청소	부부, 자녀2	비닐하우스촌	○
21	심○부	남	51	공공근로	본인(별거 중)	-	×
22	권○이	남	61	무직	본인(단독가구)	쪽방	○
23	이○교 김○정	남 여	38 39	무직(장애인단체) 무직	부부	중증장애부부	○
24	강○수	남	51	무직	부부, 자녀2	정리해고	×
25	송○연	여	40	식당일	본인(이혼), 자녀2	가정폭력, 쪽방	×
26	신○희	여	17	대안학교 인턴십	본인, 모(이혼), 언니1	-	×
27	이○리	여	17	대안학교 인턴십	조부모, 부, 본인, 오빠1	어머니 가출	×
28	김○연	남	63	무직	부인, 자녀4(출가)	폐암환자	○
29	함○민	남	21	대안학교 인턴십	친구와 자취	부모 가출	×

II. 빈곤 문제의 이론적 검토

1. 기존의 빈곤 연구: 경제적 차원의 빈곤 연구

빈곤 현상은 경제적 불평등의 척도이자 사회발전의 척도이다. 또한 빈곤 문제는 범죄, 사회 갈등 등과 같은 각종 사회문제를 낳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빈곤은 사회과학의 여러 학문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연구주제로 자리매김 되어 왔고, 따라서 각 분과 학문별로 각기 다른 관점에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해 왔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빈곤 연구는 경제적 차원에서 빈곤 현상을 정의하고 접근한다는 시각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빈곤 현상은 '소득의 부족', 또는 '경제적 자원의 결핍', 즉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빈곤 연구의 주요 대상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얻지 못하는 최하위 계층', 즉 절대빈곤층으로 국한되게 된다. 그리고 그 연구 관심도 빈곤의 원인과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먼저 사회 구성원 가운데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지, 그 비중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그리고 빈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무엇인지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극빈 상태에 놓여 있는 빈곤층의 생활실태를 살피는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다음으로 빈곤의 원인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데, 빈곤을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 원인도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취업 기회의 부족 문제와 개인적 차원에서 취업 능력의 부족·결핍 등과 같은 인적 자원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빈곤 대책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더 이상 취업이 불가능한 빈곤층에 대한 소득 보전 방안을 아울러 모색하고 있다(신명호, 2002).

빈곤에 대한 경제적 차원의 접근은 빈곤층의 총량적 규모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그 사회적 분포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의 정도와 사회·경제적 발전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용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빈곤 개념에 대한 학제간 합의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분과학문간에 상이한 접근방식을 취하더라도 빈곤 현상에 대한 학제간 연구가 보다 용이한 장점도 지니고 있다.

경제적 차원에서의 빈곤 연구가 이처럼 빈곤 현상에 대한 구조적 접근으로서 상당한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러한 장점이 오히려 빈곤의 동학을 파악하는 데에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즉 사회·경제적 약자층이 빈곤 상황에 떨어지게 되는 과정이나 이들이 빈곤의 늪에서 쉽사리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도 빈곤을 탈출하려고 애쓰는 과정, 즉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경제적 접근이 총량자료(aggregate data)를 통해 거시적 차원에서 빈곤층의 전반적인 규모와 추이를 살펴보는 데 주력한 나머지 미시적 차원에서 빈민들이 빈곤 상황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구체적인 행태를 밝히는 데 관심의 눈길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빈곤 문제를 경제적 차원의 문제로 국한시킴으로써, 빈곤 현상의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경제적 자원의 결핍 및 부족이 빈민들이 겪는 빈곤 문제의 관건이기는 하지만, 빈곤 문제에는 심리적 고립감, 사회·문화적 소외, 정치적 배제, 공간적 격리 등과 같은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중첩되어 존재한다. 기존의 빈곤 연구가 경제적 차원의 접근 방식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이러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은 ‘경제결정론적 시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기존의 빈곤 연구가 이처럼 빈곤 현상을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지만, 빈곤 문제를 지나치게 좁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까닭에, 빈곤 문제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빈곤 문제를 이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신빈곤(New

Poverty)’ 연구와 사회적 배제 차원에서의 빈곤 연구가 대표적이다.

2. 신빈곤 연구

가. ‘새로운’ 빈곤 연구의 등장배경

신빈곤(New Poverty) 연구는 과거의 빈곤, 즉 ‘구빈곤(Old Poverty)’과 구별되는 빈곤의 새로운 양상을 밝히려는 일련의 시도를 가리킨다. 이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거나 보지 못했던 빈곤의 양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빈곤 연구는 어떠한 맥락에서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는 우리 사회의 최근 변화와 연관지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1) 사회계층구조의 고착화와 빈곤의 위상 변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식민지 해방, 한국전쟁,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등과 같은 급격한 사회변동이 잇따르면서, 계층간의 사회이동(social mobility)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즉 식민지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농지개혁은 지배층의 보루였던 지주계급을 몰락시킴으로써 지배층과 피지배층간의 계층적 장벽을 무너뜨렸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통해 이농민들이 대거 도시로 몰리고, 새로운 도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계층적 지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지속된 장기간의 고도경제성장은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도시로 몰려든 이농민과 도시 하층민들이 경제활동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전쟁과 이농 등과 같은 사회적 격변 과정에서 잠자리와 일자리를 잃는 등 대다수 국민들이 가난을 경험했지만, 풍부한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누구라도 열심히 노

력만 하면 빈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사회의 빈곤은 일종의 ‘희망의 빈곤’이었다(장세훈, 2000).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 단계에서 안정성장 단계로 이행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러한 흐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즉 고도성장이 보장해 주던 풍부한 취업 기회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안정된 일자리와 넉넉한 보수를 보장받는 중상층과 일자리 상실과 저임금 상황에 직면해 있는 빈곤층간에 사회계층간 장벽이 더 두터워진 것이다. 이른바 ‘20 대 80’의 사회가 등장한 것이다(조명래, 2003; 장세훈, 2003). 그 결과 빈곤의 양상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

먼저 쉽사리 빈곤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일과성 빈곤’이 빈곤의 늪에 한 번 빠지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거기서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려운 ‘만성적 빈곤’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의 비정규직 확산 현상에서 잘 나타나듯이, 저학력, 저숙련, 무자산 상태에 있는 빈곤층의 경우에는 급격한 경기변동 과정에 적응하기 어려워 일자리를 잃기 쉽고 일자리를 잃게 되면 신규 취업기회를 구하기 어려운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특히 계층간 사회이동의 통로가 닫히면서 빈곤층의 자녀가 빈곤 상황을 탈출하지 못한 채 빈곤층에 머무는 ‘가난의 대물림’ 현상마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다음으로 소수의 중·상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가난을 겪어야만 했던 ‘빈곤의 만연’, 또는 ‘보편적 빈곤’의 상황이 사라지고, 사회의 무게중심이 중산층으로 옮겨가면서 빈곤의 문제는 소외되고 고립된 소수의 사회집단만이 경험하는 것으로 여기는 ‘빈곤의 국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모두가 가난했지만 쉽사리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상황에서는 빈곤의 지속을 개인의 무능력이나 나태함 탓으로 여겼지만, 개인적 성실함이나 일정 수준의 교육이나 기술만으로 빈곤 상황을 탈피하기 어렵게 되어 빈곤의 만성화·국지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빈곤의 책임 소재가 개인에서 사회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빈곤을 낳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관심이 제기되었고, 이는 기존의 빈곤 연구와는 다른 시각에서 빈곤 문

제에 접근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2) 탈빈곤 대책의 무기력

모두들 가난했지만 누구나 노력만 하면 가난의 굴레를 어렵지 않게 벗을 수 있었던 고도성장 시기에는 성장이 곧 복지대책이자 빈곤 탈출전략이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 의한 탈빈곤 대책이나 빈곤층에 대한 별도의 후생·복지 방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나 관심도가 대단히 낮았다. 이처럼 자조적(自助的)인 빈곤 탈출이 이루어지는 한시적·일과성 빈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빈곤 대책은 곧 '빈곤에 대한 무대책'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다만 홍수, 화재 등의 갑작스런 재난으로 극빈 상황, 절대적 빈곤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일한 빈곤 대책이었다. 생존을 위협받는 적빈(赤貧)의 상황을 모면하도록 돕는 일시적 방책이기 때문에, 이 때에는 생계비 보조 등과 같은 경제적 차원에서의 공적부조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안정 성장 단계로 접어들어 계층상승의 통로가 좁아지고 빈곤층이 빈곤 탈출의 희망을 상실하게 되면서, 이들에게 기약 없이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양상이 빚어지자, 경제적 차원의 생계비 보조 대책의 정책 효과에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빈곤의 국지화 과정에서 빈곤층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배제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공적 부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어렵게 되었다. 즉 이제 빈곤을 강제하는 사회구조적 압력은 더욱 강해졌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위상과 역량이 줄어들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데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빈곤 대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저항도 함께 커지면서, 일방적 수혜방식의 빈곤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제기된 '일하는 복

지', '근로복지(Workfare)' 방안이다. 이는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발상에서 빈곤층에 대한 무차별적인 복지 수혜가 이들의 자립 의지를 꺾어 빈곤 상황을 극복하기보다는 이에 빠져들도록 만드는 '복지병'을 낳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재원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소모성 대중요법'으로 기능한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노동과 복지를 연계시켜 빈곤층의 취업활동을 탈빈곤 대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Thompson, 1997).

이처럼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빈곤 탈피가 어렵게 된 최근 상황에서, 빈곤층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무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기존의 복지대책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나 인적자원 개발 등을 통해 빈곤을 탈출하도록 해서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조달하도록 하는 근로복지 대책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안정성장 단계에서 실업 빈곤층을 위한 취업기회를 끊임없이 확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취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이들의 근로의욕 및 근로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령, 재해, 심신장애 등으로 이미 폐질화된 노동력을 지닌 상당수의 빈곤층에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 미지수이다. 또한 빈곤이 만성화되고 빈곤층과 다른 사회계층들간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서, 취업을 통한 소득증진만으로 빈곤 상황이 해소되기 어렵게 되면서, 보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지고 있는데, 근로복지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즉 빈곤층은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원과 같은 경제적 자원뿐만 아니라 지식, 기술, 건강, 가족 및 이웃과의 긴밀한 사회적 관계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자원이 함께 구비되어야만 적절한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으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속해서 빈곤으로부터의 완벽한 탈출에 성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참여에 앞서 빈곤층의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복지수혜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재원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복지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근로복지를 채택한 상황에서 근로복지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적 '낭비'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복지 체제 하에서 신규 취업기회를

언지만 곧바로 일자리를 잃고 또다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¹⁾ 이는 근로복지 방안 역시 빈곤 대책으로서 현실적합성이 낮을 뿐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방적 수혜·지원 방식이나 신자유주의적인 근로연계 복지방식 모두 변모한 빈곤 현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빈곤 대책으로서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내자, 빈곤 실태를 새로운 각도에서 재해석하려는 시도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특히 실업과 저소득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빈곤 형성의 결정적인 요인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빈곤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도, 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이에 빈곤의 복합성과 다중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뒤따르게 되었던 것이고, 그 대표적인 연구가 신빈곤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나. 신빈곤 연구의 주요 관심

그렇다면 신빈곤 연구가 기존의 빈곤 연구와 어떠한 점에서 차별적인가? 크게 보아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빈곤 원인의 다차원성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적 요인이 빈곤 형성(Pauperization)에 결정적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빈곤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결손가족, 가정폭력 등과 같은 가족간 균열 및 해체의 문제, 지역사회 및 근린간의 사회적 관계망의 국지성 문제, 복지대책 미비와 같은 사회적 안정망의 취약성 문제, 질병·장애 등과

1) 뉴욕시의 근로복지 실험이 이러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Kreuger & Seley, 1996).

같은 노동력 폐질화의 문제, 기술·지식 등과 같은 인적 자원의 제약 문제, 열악한 주거환경, 주거의 불안정성, 공간적 격리 등과 같은 생활공간의 문제 등이 경제적 요인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빈곤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신빈곤 연구는 이처럼 빈곤을 낳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다양하고, 또 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빈곤을 가속시킨다는 사실의 발견을 통해 빈곤을 경제적 요인이라는 빈곤 현상의 일면만을 관찰하고 부각시키는 기존의 태도를 버리고, 빈곤의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모습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2) 빈곤 형성 및 재생산 과정에 대한 관심

다음으로 새로운 빈곤 연구는 특정 개인이 어떻게 빈곤 상황에 처하게 되고 빈곤층이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며, 그러한 노력이 성공하거나 좌절하는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빈곤 연구가 빈곤의 실태와 규모를 파악하는 정태적, 평면적 접근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빈곤 연구는 빈곤에 대한 동태적, 역사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화 양상의 역동적인 모습은 극빈 상황에 처해 있는 절대적 빈곤층보다는 빈곤의 늪에 정체되지 않은 채 이로부터 탈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상대적 빈곤층에서 보다 쉽사리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층에 대한 관심에 더해 '빈곤화 계층', 즉 빈곤의 경계선상에서 빈곤에의 추락과 탈출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이른바 '차상위 빈곤층', 또는 빈곤 탈출을 위한 자구 노력에 매진하는 '노동빈곤층(the Working Poor)'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과거의 일과적이고 보편적인 빈곤 상황에서는 가난으로 인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절대적 빈곤층이나 빈곤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극소수의 '정체

된 빈곤층'만이 빈곤 연구의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이들 이외의 다른 빈곤층은 모두 빈곤 상황을 탈출해서 중산층에 편입되어, 빈곤 상황에 적체된 이들만이 빈곤층을 대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빈곤층의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만성적인 빈곤이 확산된 현 단계의 빈곤 상황에서 빈곤 연구는 이미 빈곤의 굴레에 결박당한 절대적 빈곤층뿐만 아니라 빈곤 상황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거나 막 빈곤 상황을 벗어난 차상위 빈곤층 또는 노동빈곤층에 주목하게 된다. 이들은 빈곤의 경계선상에서 끊임없이 빈곤 탈출 및 중산층으로의 상향이동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빈곤화의 양상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탈빈곤 대책의 목표집단으로서 가지는 정책적 의미도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빈곤 연구의 주된 관심 대상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 차상위 빈곤층, 또는 노동빈곤층은 최근 들어 새롭게 출현한 집단이라기보다는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빈곤의 위상과 성격이 바뀌면서 빈곤 연구에서 새롭게 부각된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빈곤층의 출현 또는 등장이 아니라 연구 관심의 전환으로 새롭게 발견 또는 발굴된 신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의 빈곤 연구는 '새로운 빈곤(New Poverty)' 현상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빈곤에 대한 '새로운 연구(New Study)'라고 볼 필요가 있다.

다. 신빈곤의 속성

그렇다면 이처럼 최근에 새롭게 발견된 빈곤의 새로운 양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을 뿐, 신빈곤의 특성이나 개념에 대한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신빈곤이 구빈곤과 대비해서 그 존립 근거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다음과 같은 신빈곤의 몇 가지 특성을 판별해 볼 수 있다(장세훈, 2003: 32-35).

1) '노동빈곤'으로서 신빈곤

먼저 구빈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데 따른 물질적 박탈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신빈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도 빈곤 상황을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빈곤이 확산되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유연적인 고용체제 하에서 취업과 실업의 경계선에 놓인 불완전 고용층, 이른바 ‘비정규직 노동자층’이 늘어나면서, 단순취업을 통해 빈곤 상황을 탈피하는 것이 어렵게 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노대명, 2002: 83-84; 박순일, 2001). 특히 빈곤 탈출의 의지를 지니고 있고 사회적 지위 상승의 기회도 다소나마 열려 있는 차상위 빈곤층이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노동빈곤층으로 적체되면서, 빈곤층의 외연이 확장되는 현실은 과거와는 다른 빈곤의 새로운 양상이라고 할 만하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빈곤이 신빈곤의 주요한 특징으로 거론되고 있다.

2) ‘상대적 빈곤’으로서 신빈곤

둘째로 구빈곤이 총체적 결핍 상태에 처한 절대적 빈곤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면, 신빈곤은 빈부격차의 심화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상대적 빈곤에 가깝다. 물론 상대적 빈곤의 문제는 완전한 평등사회의 건설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는 사회문제가기 때문에, 이를 빈곤 문제의 새로운 지평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빈곤 문제의 무게중심이 절대적 빈곤에 놓여졌던 시절에는 상대적 빈곤은 빈곤문제의 본령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 반세기동안의 고도성장을 통해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당장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절대적 빈곤층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해 왔다. 그 과정에서 소득격차가 점차 완화되기도 했지만, 자산소유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은 채 오히려 더욱 크게 벌어졌고, 특히 외환 위기 이후에는 임금소득에서도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조권중, 2003; 신광영, 2004). 이는 전반적인 사회적 불평등의 골이 깊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

의 문제 못지않게 ‘경제적 격차의 증폭(Economic Distanciation)’ 문제가 빈곤 문제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3) ‘복합적 빈곤’으로서 신빈곤

셋째로, 빈곤 문제가 절대적 빈곤의 문제에서 상대적 빈곤의 문제로 전환되면서,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의 물질적 결핍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절대적 빈곤 상황에서는 물질적 결핍이 빈민의 생활 전반을 전방위적으로 규정짓기 때문에, 취업이나 사회적 부조 등을 통해 경제적 결핍 상황을 모면하면, 곧바로 빈곤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 상황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배제, 문화·심리적 차원의 소외, 공간적 차원의 격리 등이 경제적 차원의 결핍에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노대명, 2002: 82-83; 신명호, 2002: 207-209). 사회적 배제나 문화·심리적 소외가 완화되지 않고는 경제적 결핍 상황에서도 벗어나기 어려운 최근의 빈곤 상황이 이를 잘 말해준다. 예컨대 빈곤층의 내부구성을 보면, 빈곤층은 독거노인, 여성 가구주 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심신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약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작업장이나 지역사회에서 이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배제나 이들 스스로 느끼는 소외감 및 상대적 박탈감이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더라도 사회적 배제나 문화·심리적 소외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빈곤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하기 어렵다. 예컨대 공공임대주택 입주로 주거빈곤을 해소해서 빈곤층의 경제적 사정이 다소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이들이 짊어져야 하는 ‘사회적 낙오자’라는 오명은 이들을 빈곤의식에서 헤어ना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현실은 빈곤이 경제적 결핍이라는 단일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배제와 문화·심리적 소외, 공간적 격리까지 결합된 다차원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 즉 빈곤 문제가 과거와 달리 보다 복합적인 속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차원의 결핍만을 뜻하던 기존의 빈곤 개념으로는 현 단계 빈곤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빈곤의 복합성과 다차원성을 포괄하는 새로운 빈곤 개념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신빈곤은 구빈곤과 달리 물질적 빈곤에 심리적·문화적 소외, 공간적 격리 등이 결합된 상황을 가리킨다.

4) '심리적 고립'으로서 신빈곤

넷째로, 빈곤이 소수의 못 가진 자들의 문제로 국한되고 이들이 빈곤의 덫에 갇히게 되면서, 빈곤층에 대한 사회의 관대한 태도는 점차 사라지고 이들을 사회적 낙오자로 경멸하고 무시하는 등 빈곤층과 비빈곤층간에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빈곤층에 대한 공간적 격리와 사회적 거리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빈곤층이 그것을 어렵지 않게 체감할 정도로 구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공간적 격리와 사회적 거리감으로 인한 빈곤층의 심리적 고립이 신빈곤의 또 다른 특징이 되고 있다.

구빈곤과 구별되는 신빈곤의 특징으로는 이처럼 노동빈곤, 상대적 빈곤, 복합적 빈곤 상황, 그리고 심리적 고립 상태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들 속성에 비추어 보건대, 구빈곤은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지만 곧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보는 '희망의 빈곤' 상황에 유사한 것으로, 그리고 신빈곤은 상대적 빈곤에 놓여 있지만 빈곤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보는 '절망의 빈곤'에 근접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3. 사회적 배제와 빈곤 연구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빈곤 연구도 신빈곤 연구와 마찬가지로 빈곤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기존

의 빈곤 연구가 경제적 자원의 결핍이나 부족을 문제삼았다면, 사회적 배제론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차원에서 빈곤을 문제삼는다.

가. 사회적 배제의 개념

사회적 배제론 차원에서의 빈곤 연구 역시 이제 출발선상에 서있는 까닭에, 사회적 배제 개념에 대한 학문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에 관한 그간의 논의들을 모아보면, 대략적인 개념적 윤곽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유럽재단(European Foundation)의 경우에는 “빈곤의 근본적 책임이 개인에게 있지 않으며, 주거와 취업, 그리고 적절한 생활여건 등과 같은 기회와 주요 결정과정에 대해 관련 당사자인 개인과 집단의 참여가 차단되는 다차원적인 불이익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1995: 4).

다음으로 피어슨(Pierson, 2001: 7)은 ‘사회적 배제는 개인, 가족, 집단 또는 이웃들로부터 이들이 사회·경제·정치적 활동 전반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빼앗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면서, 이는 기본적으로 빈곤과 저소득의 결과이지만 차별, 저학력, 열악한 생활환경 등과 같은 다른 요인들이 그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본다.

또 터너(Turner: 1986, 121)는 ‘사회 내의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사회, 경제, 정치 활동 및 그 참여 과정에서 사회의 희소자원에 접근할 수 없거나 그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사회적 배제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앨비(Alvey, 2000: 5-6)는 사회적 배제가 ‘개인의 사회권(social right), 예를 들어 기초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부정되거나 실현되지 않는 상황’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이처럼 논자의 입장에 따라 다소 달리 정의하기는 하지만, 이들의 개념 규

정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배제의 원인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서 찾는다는 점이다. 둘째로, 사회적 배제는 배제당하는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박탈되거나 부정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세째로, 사회적 배제로 인한 빈곤 상황은 단일 차원의 문제, 예컨대 경제적 자원의 부족이나 결핍의 문제만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의 박탈과 결핍, 불이익을 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배제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배제의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감안할 때, 사회적 배제는 '사회 구조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박탈과 결핍, 불이익을 당해 사회·경제·정치 활동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 배제는 다음과 같이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정의해 볼 수 있다. 먼저 좁은 의미의 사회적 배제 개념은 사회적 배제를 개인과 개인간, 집단과 집단간, 그리고 개인과 집단간의 '관계'의 문제(relational issues)로 파악하려는 시각이다. 사회적 배제의 주체와 대상의 설정 및 그 전개과정이 궁극적으로는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규정되지만, 실제로는 행위자들간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배제하는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주체와 소유 대상간의 관계에 주목해서 자원의 결핍·부족 문제를 다루는 기존의 빈곤 개념과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Room, 1990).

이와 달리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배제 개념은 사회적 배제를 개인(행위자)과 사회(구조, 제도)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의 해체라는 각도에서 접근하는 시각이다. 즉 개인의 사회 참여와 사회에 의한 개인의 편입(사회화)이라는 쌍방향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일방향적 관계로 왜곡되거나 편향되는 현상을 사회적 배제로 규정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빈곤과 관련해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단절 또는 왜곡됨으로써 (단순한 저소득 이상을 뜻하는) 다중적 결핍(multiple deprivation)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 주

목한다. 즉 빈곤을 사회적 연대가 와해되어 다양한 사회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산재해 있고 이러한 문제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데 따른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의 본연의 의미에 주목한다면, 광의의 개념이 보다 적합하겠지만, 사회 현실에서는 구체적인 행위 주체간의 관계에서 참여제한과 권리제약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협의의 개념을 전혀 도외시킬 수는 없다.

나. 사회적 배제의 특성

사회적 배제 개념이 이처럼 대단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개념들, 예컨대 소외, 불평등, 차별 등의 용어와 차별성이 분명하지 않아, 개념상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언급한 사회적 배제 개념에 담겨 있는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배제의 특성과 차별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회적 배제는 불평등과 차별이 사회 구조적으로 재생산되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킨다. 따라서 개인 또는 집단들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또는 일과적 현상으로 발생하는 따돌림, 소외, 또는 관계의 단절 현상과 구분된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가 장기간 지속되어 제도로 고착될 수도 있다. 이처럼 사회적 배제가 제도화된 것이, 전근대 사회의 신분이나 근대 이후의 계급·계층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적 배제는 일시적인 차별이나 제도화된 불평등과 구분되는, 그 중간적 형태의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 구조적으로 재생산되기는 하지만, 사회 제도로 공고히 자리 잡지는 않은 다양한 형태의 차별 현상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배제는 힘 있는 다수가 힘 없는 소수에 대해 이들이 가진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거나 과중한 의무나 부담을 부과하는 사회 현상을 가리킨다. 이처럼 사회적 배제의 대상은 힘없는 소수, 즉 사회·경제적 약자층이라는 점에서,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 대중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사회적 불평등과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배제는 배제의 대상에게 차별과 배제를 강제하는 사회구조적 메카니즘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즉 차별을 받는 대상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외부 여건에 의해 차별과 배제가 이루어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배제의 하나로서 빈곤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빈곤 문제를 빈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빈곤을 낳는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빈곤 상황을 재생산하는 빈민들의 공통된 심리 상태에 주목하는 '빈곤문화(Culture of Poverty)론'과 뚜렷이 구분된다. 빈곤문화론은 빈곤의 원인을 무기력, 나태함, 알콜중독, 근로의욕 상실 등과 같은 빈곤층 내부의 문제에서 찾고 있는데, 사회적 배제는 이러한 빈민 행태를 낳는 차별과 배제가 선행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 사회적 배제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

그러나 사회적 배제 개념을 공유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사회적 배제 개념이 전혀 달리 규정되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 시각은 크게 보아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Pierson, 2001: 5-6; 심창학, 2001: 183-189).

1) (신)자유주의적 시각: 영·미 계통의 (사회적) 분화 패러다임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사회의 통상적인 도덕·규범에서 벗어난 일탈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른바 '하류계급(Underclass)'에 대해 사회의 주류에 속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는 사회적 태도라고 파악한다. 이 같은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산물로 파악한다. 즉 사회적 분화가 거듭 되면서 동질적이었던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하고 이질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 이처럼 당사자 스스로가 다수가 만든 주류의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결과가 사회적 배제라고 본다.

그렇다면 사회적 배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가?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는 극복하고 해체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대책 또한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적 배제는 자율적인 개인들이 함께 만든 사회적 합의와 규범을 스스로 배척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가 다수로부터 자신을 배제시킨 행위를 반성하고 되돌리지 않는 한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배제를 해소할 적절한 방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배제가 급격한 사회 변동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일탈 현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 영역이나 집단들간에 자유로운 진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자유경쟁의 규칙이 준수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배제가 그 당사자나 전체 사회에 가져올 폐해만 자연스럽게 해소시키면 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영국, 미국 등지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사회의 내부 분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이행 국면에서 나타나는 일과성 일탈 현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공화주의적 시각: 프랑스 계통의 사회적 연대 패러다임

두번째는 사회적 배제를 개인과 사회간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해체된 상태를 가리킨다. 앞서의 자유주의적 시각이 다수와 소수간의 관계에서 소수가 다수로부터 스스로를 고립한 결과를 사회적 배제라고 본 것에 비해, 공화주의적 시각은 사회 구성원들이 전체 사회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일종의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사회 전체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사회 구성원들을 차별하고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배제가 배제당한 당사자들 개인의 탓이라고 보는 자유주의적 시각과 달리, 사회 구조적 모순이 이들을 배제시키고 있고, 그 당사자

는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그 희생자일 뿐이라고 파악한다.

특히 사회적 배제의 대상은 이렇게 배제를 당하더라도 저항하거나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이기도 하다. 이들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더욱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동성애자, 노인, 미혼모, 심신장애인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통합과 연대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사회 구조를 혁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3) 사회민주주의적 시각: 신베버주의자들의 독점 패러다임

세번째 입장은 사회적 배제를 다양한 사회세력들간의 갈등 과정에서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의 진입을 통제하는 사회적 봉쇄(social closure)를 제도적으로 재생산해서 못가진 자들의 참여가 전반적으로 제약받는 일련의 과정으로 규정한다. 이 때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희소자원의 소유 및 이용을 독점하기 위한 가진 자들의 사회적 봉쇄 메카니즘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배제의 대상은 지배의 대상이 되는 주변인들(outsiders)이 된다.

이는 사회 내 집단간 차별과 배제라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시각과 유사하지만, 그것을 이행 단계의 일과성 현상으로 가볍게 여기는 자유주의적 시각과 달리 지배집단이 자신들의 권익을 지속시키기 위해 차별과 배제를 제도화해서 재생산한다고 보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또한 배제를 개인 탓이 아니라 구조 탓으로 보는 관점은 공화주의적 접근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그것을 막연한 사회-개인간 관계가 아니라 사회집단간 관계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역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권익의 독점이 사회적 배제를 낳기 때문에, 그 대책은 당연히 이러한 독점 체제를 전면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에서 찾게 된다.

4) 맑스주의자들의 급진적 시각

마지막으로 맑스주의자들은 사회적 배제 논의가 빈곤, 계급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보다 명쾌한 분석들과 개념을 대체함으로써, 은연 중에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희석시키거나 은폐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공화주의적 시각은 사회집단간(계급간) 지배·착취 관계를 개인과 사회(구조)간의 관계로 전치(轉置)시켜, 착취의 주체와 대립·갈등 관계를 모호하게 만듦으로써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급진적 시각은 사회적 배제를 통한 접근이 갖는 문제의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빈곤, 불평등 등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과학적 개념으로 회귀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라.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에 대한 시각

이상에서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그 특성, 그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접근 시각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 논의를 빈곤 문제와 어떻게 관련지워 볼 수 있는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입장들이 병존하고 있다.

1) '빈곤=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로서 빈곤

그 하나는 경제적 결핍이라는 협소한 빈곤 개념을 사회적 배제 개념을 활용해서 심리적·문화적 소외,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배척, 공간적 격리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빈곤 개념으로 확장하는 입장이다. 이 때 빈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심리적으로 배제된 상태, 즉 중층적, 복합적 결핍(multiple deprivation)의 상태를 가리키며, 사회적 배제는 빈곤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활용된다(Percy-Smith, 2000; Middleton, Barnes & Millar, 2003).

이는 기존의 빈곤 개념을 확장해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사회의 전반적인 빈

곤 정도를 포괄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빈곤의 사회적 생산 및 재생산 과정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즉 이들 복합적 결핍의 요인들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밝히기 어렵고, 자칫 다양하고 복잡한 빈곤의 내용을 백화점식으로 열거하는 데 그칠 수 있다.

2) 빈곤 형성 및 재생산 메커니즘으로서 사회적 배제

다른 하나는 사회적 배제를 사회·경제적 약자층의 빈곤 형성 및 재생산을 부추기거나 빈곤층의 빈곤 탈출을 가로막는 외부 환경 요인들이 중층적으로 빈곤 상황을 규정짓는 과정, 즉 빈곤 형성 및 재생산의 ‘중층적 결정(over-determination) 과정’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이 때 빈곤은 경제적 차원의 결핍이나 부족 상태를 가리키며, 사회적 배제는 심리적·문화적 소외,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배척, 공간적 격리, 심신의 장애 및 쇠약 등과 같은 요인들이 이러한 경제적 결핍이나 부족 상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역으로 경제적 결핍이 이들 요인을 다시 규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킨다(Jordan, 1996).

이는 빈곤을 강제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빈곤 상황을 낳는 사회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이를 통해 빈곤이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과정을 설명하기가 용이하다.

마. 사회적 배제를 통한 빈곤 연구의 의의

사회적 배제의 접근 방식은 우선 사회·경제적 약자, 또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빈곤의 원인을 당사자 내부에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찾는다. 따라서 빈곤의 발생 및 그 해소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부각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빈곤을 경제적 원인에 의한 물질적 자원의 결핍 또는 부족이라고 파악하는 일차원적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산물로 파악하는 다차원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

Ⅲ. 연구의 분석틀: 사회권, 사회적 배제, 빈곤화 과정

신빈곤론이나 사회적 배제 이론은 모두 빈곤 현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빈곤 현상을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한편, 빈곤의 동학을 살피기 위해 사회·경제·문화·공간적 요인이 복합되어 빈곤이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빈민의 생활사에 주목하고자 한다.

1. 인권(사회권) 차원의 접근

가. 인권·사회권 개념

: 인권의 필요조건으로서 공민권, 그 충분조건으로서 사회권

인권 개념 역시 다양한 각도에서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인권으로서 공민권과 넓은 의미의 인권으로서 사회권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좁은 의미의 인권은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로, 자유경쟁의 시장 상황에서 개인이 갖는 자율성의 근간을 이룬다. 이는 개인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전제로 서로 다른 개인적 가치와 심리적 동기를 존중하고, 이에 근거해서 사회 구성원의 분화와 전문화가 필연적이라고 보는 영·미의 자유주의적 전통에 기반한 인권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샬(Marshall)의 ‘공민권(Civil Right)’ 개념으로서, 자유권적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사회 구성원을 해당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인권이 개별 구성원의 자유와 관련된 기본권이라고 한다면, 넓은 의미의 인권은 개인의 사회적 생활 영위에 필요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관해 국가나 사회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 국가·사회의 공공성 유지가 관건을 이룬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마셜에 따르면, 사회권은 '최소한의 경제적 복리나 보호의 권리로부터 사회적 자산을 동등하게 향유하고 사회의 통상적 기준에 따라 문화적 생활을 하는데 요청되는 권리 영역'으로,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쟁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 예컨대 복지정책, 교육 평등,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계급 간 불평등 완화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Marshall, 1964; 강철희·홍현미, 2003).

근대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권력이나 재산을 장악한 가진 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로서 인권 개념이 등장했기 때문에, 초기의 인권 개념에는 좁은 의미의 인권, 즉 자유권만이 인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다. 당초에 사회권은 기본 인권이라기보다는 납세, 보험 기여, 노동 의무 등과 같은 의무에 수반되는 권리로 인식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점차 개인의 권리(요구)와 국가의 (수용)의무를 강조하는 '권리 지배적 시민권(rights-dominated citizenship)'으로 발전하면서, 사회권은 기본 인권의 또 다른 한 축을 구성하게 되었다(Roche, 1992). 그런데 최근 들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책임 없이 권리 없다(No Right Without Responsibilities)'는 발상에 따라 개인의 권리보다는 의무, 책임, 규범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이는 생산적 복지, 근로 복지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이제 사회적 약자는 더 이상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사회 재통합 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으며, 권리 지배적 시민권으로서 사회권의 위상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세력간의 힘관계에 따라 사회·경제적 약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그에 따라 사회권의 형태와 내용도 크게 변모해 왔음을 보여준다. 그렇

지만 사회권이 기본 인권으로서의 위상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 인권으로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볼 때, 인권은 바로 이러한 공민권을 그 필요조건으로 삼고 사회권을 그 충분조건으로 삼아 구성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권을 공민권과 함께 인권을 구성하는 두 축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면, 인권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사회적 메카니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나. 빈곤에 대한 인권 차원의 접근의 필요성

빈곤의 원인을 개인과 사회 구조 그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빈곤 현상을 적어도 일과성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빈곤 문제를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처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최근의 빈곤 연구들도 자유주의적 접근과 같은 일부 논의를 제외하고는 빈곤을 규정짓는 사회 구조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논의에서도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근거가 그리 선명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다. 이를 뒷받침할 논리적 근거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인권 차원에서 빈곤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질적 결핍과 박탈로서의 빈곤 상황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마저 갖춰지지 못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리킨다. 이처럼 인간으로서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빈곤은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빈곤 상황에 처하게 되면, 국민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행사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빈곤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적으로는 이미 1966년에 노동의 권리, 공정하고도 유리한 노동조건을 향유할 권리, 노동기본권, 사회보장권, 여성·아동의 보호,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식량에 대한 권리, 주거권), 건강권(환경권 포함), 교육

권,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이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되어 1976년부터 발효된 바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 규약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빈곤 문제에 대한 인권 차원의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헌법」 제34조에서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제성장 지상주의’의 현실 논리에 떠밀려 경제적 약자로서의 빈민에 대한 법제적 차원의 관심은 대단히 미미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빈곤층의 계층 상승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파이를 키우면 모두가 다 먹을 수 있다’는 식의 ‘先성장 後분배’의 논리가 고도성장에 의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보아, ‘빈곤 문제는 가난한 사람 개개인의 문제, 더 나아가 게으른 사람, 또는 사회적 낙오자의 문제’로 여겨졌다. 그 결과 빈곤 문제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빈곤이 국지화되고 만성화되고, 더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 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빈곤의 위상과 속성이 크게 바뀌고 있다. 그 결과 공공부문이 인권 보호 차원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데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공공(public & communal) 부문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사회권을 긍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인권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빈곤 대처가 촉구되고 있다.

2. ‘과정’으로서 빈곤: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 과정

앞서 살펴 보았듯이, 기존의 빈곤 연구는 빈곤의 전반적인 규모와 비중, 그 사회경제적 분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 왔다. 즉 빈곤을 정태적 현상으로 가

정하고 접근해서 빈곤의 구조적 양상을 보여주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렇다고 해서 빈곤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빈곤 상황을 규정짓는 빈곤 요인들이 무엇이고, 이들 가운데 무엇이 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가를 밝히고, 이를 통해 빈곤 대책을 강구하는 연구들도 병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 빈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변수의 변화를 살피는 데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따라서 빈곤의 시계열적 동학, 특정 개인이 어떻게 빈곤 상황에 빠져들고 또 빈곤에 빠져든 이후에는 거기서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련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도 없었고, 또 이를 밝힐 만한 이론적 자원을 갖고 있지도 못했다.

빈곤의 동태적 과정, 즉 빈곤화(Pauperization)의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연구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을 빈곤 상황에 몰아넣거나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단단히 움죄는 일련의 과정을 서술하는 개인의 생애사(life history)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대단히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위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다가 사회적 안전망 역시 대단히 빈약하기 때문에, 빈곤을 낳는 하나의 변인만 작동하더라도 빈곤의 늪에 빠지기 십상이고, 또 여기에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기도 어렵다. 이에 더해 실제로는 다양한 변인들이 중층적으로, 또 연쇄적으로 작용해서 이들을 빈곤 상황에 움짱달짝 못하게 움아매기 때문에, 빈곤의 세대내, 세대간 재생산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생애사 연구는 인류학 분야를 중심으로 빈민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이 같은 빈곤화 과정을 총체적으로 복원해 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빈곤화 과정을 ‘서술’하는 데 그칠 뿐, 빈곤화 과정에 개입되는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설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에 관련된 주요 요인들을 판별해 내고, 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빈곤을 낳거나 심화시키는 빈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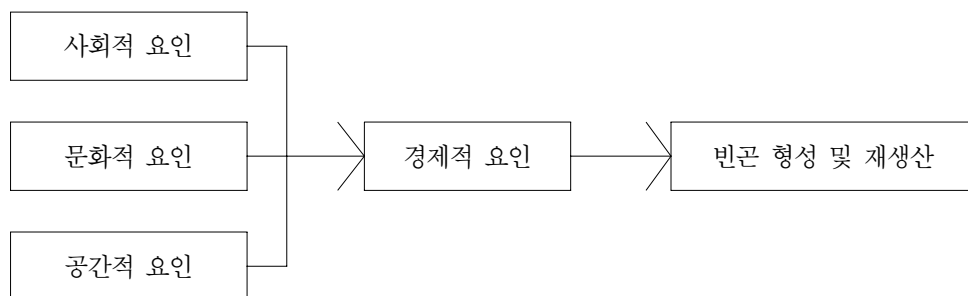
과정을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사회적 배제 이론의 도움을 얻어 빈곤화 과정을 규정짓는 설명요인들을 추출해서 이들간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분석틀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3.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상호작용

가. 사회·경제·문화·공간적 요인들의 다중적 복합의 결과로서 빈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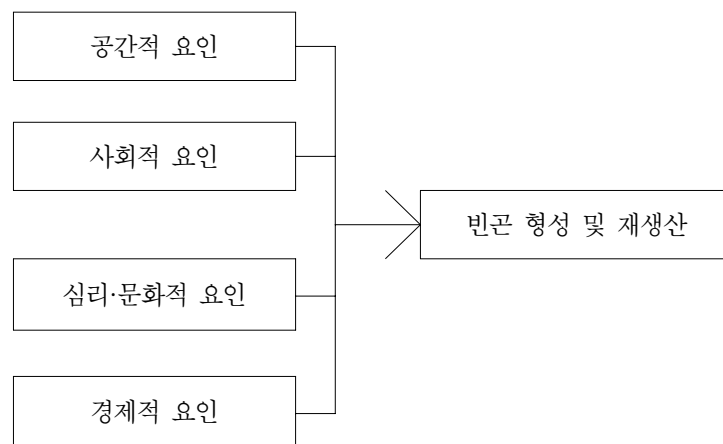
빈곤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자원을 사회적 배제에 관한 논의로부터 도출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빈곤 형성 및 재생산 과정에 주목한 기존의 일부 빈곤 연구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빈곤 연구는 사회적, 문화적, 공간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빈곤의 규정 요인들이 경제적 요인으로 수렴되어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그림 III-1] 참조). 즉 비경제적 요인들이 경제적 요인을 통해 빈곤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배경변수라고 파악하고, 경제적 요인이 이들 요인의 영향력을 가늠하는 매개변수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이 최종적으로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는 경제결정론적 시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I-1] 기존 빈곤 연구의 설명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제각기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 물론 경제적 요인이 다른 규정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거나 변질시킬 정도로 강력하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따라서 [그림 III-2]에서와 같이 빈곤 형성 및 재생산에 관련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빈곤화를 촉발하거나 가속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²⁾



[그림 III-2] 빈곤 연구의 새로운 설명틀

기존의 빈곤 연구는 빈곤이 물질적 자원의 결핍 또는 부족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낮은 소득이나 극도로 위축된 소비 행태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을 과도하게 중시하는 경제결정론적 관점에 빠지기 십상이다. 그런데 사회적 배제 이론은 빈곤 형성 및 재생산에 영향을 끼치는 이들 요인 모두를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의 구성요소로 삼고, 이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이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배제가 심화되고 있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2) 이러한 점에서, 빈곤을 복합적 빈곤으로 파악하는 신빈곤 논의나, 사회적 배제 요인들로 빈곤을 설명하려는 사회적 배제 이론이 유용하다.

사회적 배제 이론은 빈곤화 논의에서 흔히 빠지기 쉬운 경제결정론적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 빈곤화 과정 분석: 사회적 배제 영역과 빈곤화 과정

다음으로 사회적 배제 이론은 사회적 배제를 일차원적 현상이라고 보지 않고, 서로 상이한 차원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또는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다차원적인 사회 현상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의 여러 차원을 효과적으로 준별해서 적절히 활용한다면, 이로부터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사회·경제적 설명변인을 도출해 내는 것이 용이하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배제 이론은 빈곤화 과정을 분석하는 이론적 자원으로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배제 이론에서는 사회 내에는 그 구성원들을 통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작동하는데, 이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사회적 배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적 통합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적 배제의 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고, 이것을 재구성해서 빈곤 형성 및 재생산의 설명요인으로 원용하는 이론적 전략을 구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사회적 배제의 구성요소

그렇다면 사회 통합의 요인으로 흔히 어떠한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 버그만(Berghman)의 경우에는 다음 네 가지 시스템 가운데 하나 이상이 실현되지 않을 때 사회적 배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①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민주주의적인 법적 시스템, ②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는 노동시장, ③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복지국가, ④ 개인간의 통합을 촉진하는 가족 및 지역공동체 시스템이 그것이다.

이를 재구성해 보면, ①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발언 및 참여를 보장하는 정치적 차원의 민주주의, ② 생산 활동에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는 경제적

차원의 시장경제체제, ③ 사회적 안전망의 원활한 작동을 뜻하는 사회적 차원의 상호부조 시스템, 그리고 ④ 가족, 이웃, 지역사회를 통한 심정적, 정서적 유대가 형성된 문화·심리적 차원의 공동체 질서를 사회통합의 기본 구성요소로 상정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배제는 이러한 사회통합 메카니즘의 기능 장애 상태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사회통합 요인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배제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먼저 ① 경제적 차원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다음으로 ② 사회적 차원에서 가족이나 이웃과 같은 공동체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인간관계가 해체되거나 단절된 경우, 또 ③ 문화적 차원에서 보편적 문화로부터 소외되어 하위문화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④ 정치적 차원에서 정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⑤ 공간적 차원에서 일터나 쉼터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2) 빈곤과 관련된 사회적 배제 요인의 도출

이처럼 상정된 사회적 배제의 영역을 곧바로 빈곤을 낳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배제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는 사회적 배제의 일반 영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빈곤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참조해서, 빈곤 연구에 적합한 사회적 배제 요인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피어슨(Pierson, 2001: 8)의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는 빈곤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배제의 구성요소로서, ① 빈곤과 저소득, ② 노동시장 접근의 어려움, ③ 사회적 지원 및 관계망의 부족/결핍, ④ 지역사회/근린사회의 효과, ⑤ (공공)서비스로부터의 배제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어슨의 논의에는 빈곤 형성 요인과 빈곤 상황, 즉 빈곤의 원인과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³⁾ 또한 빈곤 형성 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교육, 건강 등의 요인이

빠져 있다. 이는 빈곤 형성 및 재생산 과정에 개입하는 사회 구조적 요인에 치중한 나머지 빈민의 개인적 속성과 관련된 요인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 탓에, 피어슨의 논의 또한 액면 그대로 빈곤화의 요인으로 활용하기 곤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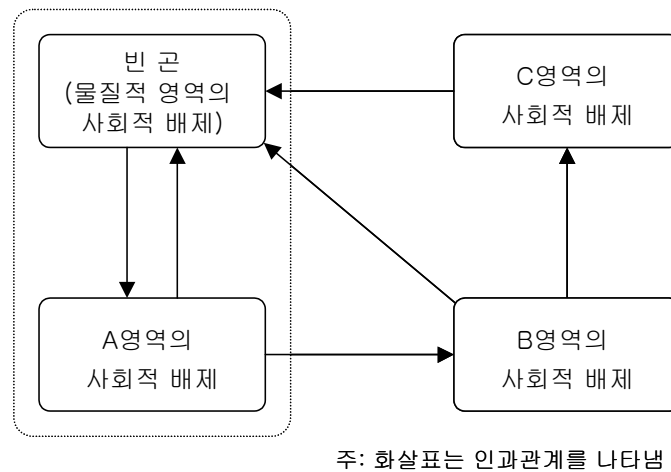
결국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빈곤 실태를 고려해서 빈곤을 낳는 사회적 배제 영역과 그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 볼 수 있다.

- ① 건강 차원의 사회적 배제: 심신장애나 만성질환 등으로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데다가 이러한 불편을 완화하거나 보완해 줄 보건·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 ② 고용·취업 차원의 사회적 배제: 저학력·미숙련, 여성, 심신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거나 제약받는 경우.
- ③ 사회적 관계 차원의 사회적 배제: ‘가난한 사람’으로 낙인찍혀 친인척, 이웃, 사회와의 관계로부터 고립되거나 단절된 경우.
- ④ 교육 차원의 사회적 배제: 정보, 지식, 기술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교육 기회를 박탈당했거나 저학력으로 사회적인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 ⑤ 주거 차원의 사회적 배제: 생존에 필요한 생활공간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거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주거에 거주하거나, 또는 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사회·경제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⑥ 물질적 영역의 사회적 배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안정적으로 갖추지지 못하거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배제 영역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물질적 자원의 결핍 또는 부족 상황을 낳거나 악화시키고, 이러한 빈곤 상황이 다시 사회

3) 이는 피어슨이 사회적 배제를 빈곤과 등치시켜 보았기 때문이다.

적 배제를 심화시키는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과 사회적 배제의 악순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III-3] 참조). 물론 이와 동시에 이러한 악순환 과정을 선순환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회 통합의 요인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빈곤의 확대재생산 뿐만 아니라 빈곤 탈출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과 관련된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의 작동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림 III-3] 사회적 배제 영역간의 관계

4. 연구의 열개: 사회권, 사회적 배제, 빈곤화 과정

사회권,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 그리고 사회적 배제 등에 관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 결과, 본 연구의 분석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앞서 앨비(Alvey)가 지적했듯이, 사회적 배제는 ‘개인의 사회권(social right)이 부정되거나 실현되지 않는 상황’을 가리킨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이 사회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러한 권리가 제한되거나

나 상실, 또는 박탈된 상태가 곧 사회적 배제 상황인 것이다.

물질적 자원의 결핍 또는 부족 상태인 빈곤 역시 빈곤층의 기본적인 所要(needs)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이들의 행위를 크게 제약하기 때문에, 빈곤층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빈곤 역시 사회적 배제의 한 축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빈곤을 사회적 배제에 포함시키기보다는 사회적 배제 영역들이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를 다섯 개 영역으로 구획하고, 이들이 빈곤 상황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빈곤화 과정을 가속시키면서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키는 악순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빈곤 상황과 사회적 배제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의 전환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이는 빈곤층을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통합의 대상으로 전환시켜야만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빈곤층의 빈곤 탈출을 공공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출발점은 사회권을 복원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권의 사회적 공인 및 복원이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사회 통합을 위해 포섭해 들이는 일련의 과정이어서, 이를 통해 사회적 배제 메카니즘의 작동이 중단된다면, 자연스럽게 빈곤화 과정의 속도가 늦춰지거나 중단되고 빈곤 탈출의 가능성이 크게 확장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IV. 한국사회 빈곤 양상의 변화

위에서 구성한 분석들에 따라 본격적인 분석결과를 논의하기에 앞서 한국사회의 빈곤 양상의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빈곤을 둘러싼 거시적인 맥락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빈곤의 문제도 도시로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도시빈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빈곤화 추이를 네 단계로 나눠 시계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도시빈민의 원초적 형성

도시화 수준이 낮은 전통사회에서도 도시빈민은 존재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급속히 전개되면서, 도시빈곤은 사회문제의 관건이 되었다. 특히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전답을 빼앗긴 채 고율의 소작료에 시달릴 뿐 아니라 고리대자본의 착취가 더해지고 농촌 가내수공업마저 와해되어 농가경제를 지탱하기 어렵게 되자, 수많은 영세빈농들은 만주, 일본 등 해외로 이주했고, 그 중 일부가 서울 등 대도시로 흘러들었다. 이들 이농민과 도시 내 하층민들은 시내와 교외 지역의 유흥지를 무단점유해서 ‘土幕’이라 불리는 움집, 또는 거적 등을 이용한 임시가옥 등을 지어 거처로 삼는 한편, 지게꾼, 행상, 하인 등과 같은 도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꾸려갔다.

그러나 해방 이전까지 도시빈곤의 문제는 그리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탈농한 영세빈농들이 주로 해외로 이주해서, 이농민의 도시 집중 추세가 유예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해방을 맞게 되면서, 해외로 이주했던 한인들이 대거 귀국했다. 또한 미·소의 충돌로 한반도가 남북한으로 분단되면서 공산주의 체제를 피해 많은 북한 주민이 월남했다. 약 250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이들 가운데 해외 귀환 동포의 상당 수는 그들의 고

향으로 되돌아갔지만, 농촌 지역에 연고가 없는 일부 해외동포와 월남민 대다수는 도시로 몰려들었다. 그 결과 그동안 잠재되었던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도시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정건화, 1987: 263-267).

도시 지역에서 새로운 거처와 일자리를 찾는 인구는 이처럼 폭증했지만, 일본과의 교역이 단절되고 남북이 분단되어 지역간, 산업간 분업체제가 와해되자, 특히 도시 지역의 경제활동이 사실상 마비되었다. 정국의 혼란으로 통화증발, 물자수급의 불균형 등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실업난과 식량난은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도시로 몰린 대다수 해외동포와 월남민들은 안정된 일자리와 정상적인 거처를 구하지 못한 채 도시빈곤층으로 전락해 갔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이러한 혼란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도시경제가 안정을 되찾아갔지만 1950년 한국전쟁으로 도시빈곤의 문제는 또다시 악화되었다. 우선 북한으로부터 약 64만여명이 추가로 월남했을 뿐 아니라, 전쟁으로 농지가 황폐해지자 농촌의 영세소농들은 절박한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도시로 밀려들었다. 그렇지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는 이들을 수용할 여력이 없었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총주택의 30% 가량이 파손되는 등, 대부분의 도시기반시설이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 또한 공장을 포함한 각종 생산시설도 제대로 가동될 수 없었다. 따라서 일반 도시 주민들조차도 절대빈곤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 결과 도시빈민들은 시가지 안팎의 유흥지에 미군들이 쓰고 남은 각종 건자재를 이용해서 판자집을 짓고 낱품팔이 노동으로 하루하루의 생계를 이어나가야만 했다. 따라서 1960년 서울의 주택 75,804동 가운데 16.4%가 움집, 토담집, 판자집 등일 정도로, 주거문제는 여전했다(통계청, 1960). 또 농업부문에 잔류하던 위장실업자, 또는 잠재적 실업자들이 대거 도시로 이주하면서 실업율이 1955년 0.9%에서 1960년 6.8%로 늘어나는 등, 도시의 취업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다(박순일, 1994: 83).

그러나 1955년 1인당 국민소득이 65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생

존의 한계선상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1950년대는 ‘보편적 빈곤의 시대’였다. 또한 이 당시의 도시빈민은 극심한 사회변동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궁핍한 처지로 전락한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빈한할지라도 정신적으로는 일반 도시 주민들과 다를 바 없었다. 또한 전통사회의 신분·계층구조가 무너지고 사회 구조가 새롭게 재편되는 이행 국면이기 때문에, 빈민들에게도 빈곤 상황에서 탈출할 기회가 폭넓게 열려 있었다. 이처럼 당시의 도시빈곤은 급격한 사회변동에서 비롯된 ‘보편적 빈곤’인 동시에 ‘일과성 빈곤’이었기 때문에, 새로이 도시빈민으로 유입된 해외동포나 월남민들, 그리고 이농민들은 그리 큰 어려움 없이 도시 중간층에 편입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당시의 도시빈민들은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됨으로써 빈곤의 늪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워진 그 이후의 도시빈민들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2. 도시빈민의 구조적 형성

1960년대에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도시빈곤의 양상은 크게 바뀌었다. 당시의 산업화는 국가 주도형 수출대체 산업화 전략에 입각해서 추진되었는데, 그 성패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에 유치해서 양질의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값싸게 동원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따라서 국가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부문에 투자를 집중시키는 한편, 이농을 부추겨 도시 내에 광범위한 유희노동력을 양산시키고자 했다. 그 결과 영세소농 등의 형태로 농촌에 잠재되어 있던 빈민들이 도시로 대거 이주하면서, 빈곤의 문제는 더 이상 농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문제로 자리잡아갔고, 이농민의 도시 진입으로 도시빈민의 대대적인 충원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농촌에서 유출되는 농가인구의 규모가 급증했을 뿐 아니라, 이농민의 구성 또한 크게 변모했다. 즉 1960년대 전반기까지

는 탈농인구의 상당 수가 농촌지역을 떠나지 않은 채 상업서비스 부문 등에 종사한 까닭에, 이농민은 주로 비농가 농촌인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농민도 연평균 20만여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이농민의 수는 연평균 50-70만명 규모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농민의 구성도 농가인구가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다(윤여덕 외, 1983: 10-11; 장상환, 1985: 325).

이들 이농민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 대다수가 1정보 미만의 농지를 보유한 영세소농층으로 가구 단위로 이농하는 속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농·공간, 도·농간의 격차가 갈수록 커져 영세소농의 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장년층 가구주들이 당장의 가족 생계를 위해 가족을 이끌고 서울 등 대도시로 대거 몰려 들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러나 저학력·미숙련 상태의 중장년층 이농민 가구주들은 이처럼 경제성장의 주축이 되는 근대적 산업부문의 노동력 수요에 적합하지 못했다. 또한 1960년대의 도시 제조업 부문도 이농을 통해 대규모로 공급되는 신규 노동력을 모두 흡수할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이들의 미혼 가구원 가운데 일부만이 근대적인 산업부문에 노동자로 취업할 수 있었을 뿐, 도시에 유입된 이농민 가구주들은 일차적으로 구멍가게와 같은 소규모 영세상업이나 행상·노점, 일용노동 등과 같은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면서, 도시빈곤층의 일원으로 편입되었다(윤종주, 1991: 46).

신규 이농민들의 취업이 이와 같이 대단히 불안정하고 저소득 직종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정상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시내의 산비탈이나 하천변, 또는 시 외곽의 유흥지에 조성된 무허가판자촌에 들어가 4-7명의 전가족이 대개 3-5평에 불과한 단칸방에 함께 거주해야만 했다. 그나마 전기나 상하수도 시설 등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수천 가구가 몇 개의 우물에 의지해서 생활하는가 하면, 몇 가구가 하나의 재래식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이를 데 없었다(권이구·최협, 1969-1970: 80). 특히 산업화와 함께 도시 공간의 합리적 활용이 요구되면서, 1960년대부터 시내에 위치한 무허가판자촌에 대한 철거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주거의 불안정이 취업의 불안정과 함께 심각한 생존의 문제로 제기됐다.

국가주도형 산업화가 농민·노동자 및 도시빈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추진되기는 했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고용기회를 늘리고 소득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자, 도시빈민에게도 빈곤의 늪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다소나마 주어졌다. 즉 1960년대에 연평균 경제성장률 9.5%의 고도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대다수 경제활동인구가 취업기회를 얻게 되면서, 1970년대 초반 실업률은 4%대의 안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이 1962-70년간 약 6.4배 증가했고, 실질소득도 2.2배 증가했다. 그 결과 1964-85년간 쌀 80kg 한가마니의 도매가격이 18.7배 상승했는데, 전체 도시 가구의 평균 가계지출은 40배, 서울시 빈곤층 가구의 평균 소득은 44배 상승해서, 월가구소득이 쌀 한가마니 값도 안되던 가구 비율이 1962년 약 70% 수준에서 1980년대에는 10% 수준으로 감소했다(박순일, 1994: 89-91, 102-103). 또한 전기, 상하수도 보급률이 늘어나고, 무허가판자촌의 현지개량 및 양성화가 부분적으로 시행되면서 토담집, 판자집이 슬레이트 지붕을 인 블록집으로 변모하는 등, 이들의 주거환경도 개선의 조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지속적인 고도성장으로 도시의 절대빈곤 문제가 서서히 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도시빈민의 구조적 재생산

절대빈곤의 점진적인 완화 추세는 이후에도 꾸준히 지속되지만, 도시빈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1980년대 중반을 전후해서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빈곤 문제의 무게중심이 절대적 빈곤의 문제에서 상대적 빈곤의 문제로 옮겨가고, 도시빈민의 층원 메카니즘이 이동을 통한 도시 외부로부터의 유입 방식에서 도시 내부에서의 빈민의 구조적 재생산 방식으로 바뀌는 등 새로운 양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이동의 규모와 양상이 197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바뀌면서, 도시빈민

의 충원 방식이 변모했다. 먼저 도시의 노동력 공급 양식이 바뀌어, 가구 단위의 이농이 줄고 단신이농의 비율이 늘어나면서(이형덕·김종덕, 1982: 57), 상대적으로 이농민의 연령대는 낮아지고 교육수준은 높아져 이농민이 직접 근대적 산업부문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도시빈민 가운데 이농민의 비중이 60%에 육박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지만, 대규모 이농으로 농가의 절대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노동력 공급의 유수지로서 농촌의 역할이 점차 위축되었다(Bae, Moo-Ki, 1985). 따라서 농촌으로부터 도시빈민의 신규 충원은 여전히 이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도시 내부에서의 충원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는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주 가운데 농촌 출신의 비율이 1970년대 초반 약 80%에 달했다가 1980년대 이후 약 60% 수준으로 정체된 사실 등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표 IV-1> 참조).

<표 IV-1> 서울시 빈곤층 가구주의 농촌 출신 비율 (단위: %)

조사 연도	1972년	1979년	1981년	1985년	1990년
농촌 출생 가구주의 비율	80.2	69.3	60.0	61.3	60.7

자료: 임희섭(1979); 안해균 외(1979); 서상목 외(1981: 108쪽); 한상진 외(1985: 71); 남희용 외(1990: 17).

이러한 양상은 도시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더욱 가속되었다. 우선 1970년대 중반 중화학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공업에서와 달리 일정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반숙련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의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이는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노동과정의 자동화·합리화 추세로 인해 더욱 가속되었다. 따라서 사양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근대적 산업부문에 적응하기 어려운 미숙련노동자들이나 저학력의 장년층 노동자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잃고 도시의 주변적인 노동시장에서 편입되어 갔다. 이에 더해 열악한 노동환경 하에서 산업재해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노동자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이들이 새로운 빈곤층을 형성해 갔다. 특히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책이나 사후 보상 대책이 빈약한 한국의 노동 현실에서 이들 중 상당수는 영세자영업을 거치거나 아니면 곧장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표 IV-2> 도시빈곤율의 추이 (단위 : %)

연도	가구원		가구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1967	83.0	18.2	85.3	21.4
1970	76.7	12.9	85.2	17.4
1975	83.5	16.6	85.9	20.1
1980	59.8	14.6	64.3	17.5
1985	52.8	19.3	57.4	22.8
1990	16.6	21.6	25.7	25.6
1995	5.2	19.0	7.5	19.0
1998	7.9	19.0	10.7	19.9

주: 절대적 빈곤은 1991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소비지출이 10만원 이하인 가구원 및 가구의 비율을 가리키며, 상대적 빈곤은 도시가구 평균 가계지출의 50% 이하인 가구원 및 가구의 비율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각년도, 『도시가계연보』; 박순일(1994: 75)을 참조.

그 결과 최근에 올수록 특히 30~40대 도시빈민 가구주의 경우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젊은 이농민 세대들과 도시 내 빈곤가구의 빈민 2세대가 그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이기우 외, 1995).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도시빈민이 더 이상 '도시 속의 농민'(Peasants in Cities)이 아니며, 도시 내에서 빈곤이 세대간 계승의 형태를 띠고 구조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빈곤의 재생산 추세 속에서도 씹없는 고도성장으로 전국민의 생활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1980년대 초를 제외하고는 2-3%대의 낮은 실업률이 유지되었다. 그 결과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는 극빈층 인구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표 IV-2> 참조).

그러나 재벌 중심의 불균등 성장 전략에 입각한 경제개발과 ‘가진 자’의 횡포에 대한 규제 소홀 등으로 인해 계층간 빈부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가 하면, 경제성장의 열매가 사회복지정책 등을 통해 도시빈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내집 마련 지원 정책, 내수 진작 정책 등의 형태를 띠며 중산층에게까지만 전달된 까닭에, 성장 몫의 분배에서 소외된 도시빈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표 IV-2>에서 보듯이, 상대적 빈곤층이 1970년대 이후 꾸준히 늘어난 사실에서 쉽사리 확인할 수 있다.

또 그 비중이 줄어들어 쉽사리 눈에 띄지 않을 뿐, 하루하루의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절대빈곤층이 사회 곳곳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즉 강력한 철거·재개발 정책으로 저렴한 주택을 구하지 못해 비닐하우스 등 적절치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취업의 불안정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일용노동자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즉 도시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도시문제의 관건으로 남겨져 있다.

4. 외환위기와 도시빈곤의 심화·확산

그런데 최근의 경제위기는 이러한 빈곤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확산시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먼저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시작된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일 자리를 잃어 소득원을 아예 상실하거나 근로시간이 줄어 소득을 삭감당하는 실업자나 불완전취업자가 늘어나면서, 중간층에서 빈곤층으로의 하강이동이 증가해서 빈곤층의 외연이 크게 확장되고 있다(채창균·김범구, 1999). 또한 이러한 일자리 상실, 일감 축소 및 소득 삭감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기존의 빈곤층은 그 사회·경제적 처지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실업 추이를 보면 저임금에 시달리는 일용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실업 추세의 가장 큰 피해계층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1997-1998).

그런데 이에 더해 정부가 고도성장에 기초한 절대빈곤의 양적 감소 추세를 과신한 채 빈곤층 대상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등한시해 왔기 때문에, 자조적 복지에 의존해야만 하는 빈민들로서는 더 이상 생계를 꾸리기 힘겨운 생존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생활필수품에 대한 지출 극소화로 더 이상 빈곤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내핍 생활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 1/3 이상이 빚을 얻거나 저축을 해약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지경에 처해 있다(김경혜 외, 1998: 106-107; 하성규 외, 1998: 119-149).

이처럼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빈곤층의 의식이나 행동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생각이나 적극적인 생활태도는 크게 변함이 없지만, 가족 내 갈등이 폭증해서 가족 해체 현상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으며, 자살이나 범죄에 대한 충동도 빈곤층의 상당 수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김경혜 외, 1998: 108-109; 류정순, 2003). 이는 그동안 1천 명 미만으로 추산되던 전국 도시의 노숙자가 1998년 한 해 동안 수천명으로 폭증한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특히 경제위기를 맞아 빈부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상대적 박탈감 또한 급속도로 증폭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빈곤층의 생활상이나 의식의 변화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가 이와 같이 절대적 빈곤을 확산시키고 상대적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한국 경제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더라도 빈곤의 구조적 재생산 메카니즘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위기 탈출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사회·경제 체제가 개편되면서,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상대적 빈곤의 감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좁아지고 있다. 또 그간의 고도성장 추세가 앞으로 지속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만약 고도성장이 이루어지더라도 노동의 자동화·합리화로 고용의 불안정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어서, 과거와 같은 상대적 고소득 및 저실업 상황이 낄는 절대적 빈곤의 감소 추세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빈곤층의 적체와 '빈곤문화'의 사회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공공복지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의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V. 사회적 배제를 통한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

1. 주거와 사회적 배제

가. 주거와 사회적 배제의 관계

주거는 사회적 포섭(social inclusion)을 증진시키기도 하고, 혹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뮌리(Murie)는 사회적 배제가 주거와 사회에 관한 수많은 논쟁에 대해 재고(再考)할 기회를 주고 있으며, 이들은 탈상품화, 시민권, 통합과 사회적 분화, 그리고 이들 과정에 있어서 주거의 역할에 대한 논쟁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Murie, 1996). 또한 스피커(Spicker)는 주거는 배제의 주요한 영역으로서, 저소득 상태에 있거나 가용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은 적절한 주거를 획득하기 어렵고, 이들 요인으로 인해 주거는 사회적 배제의 결과인 한편, 다른 한편 열악한 주거는 적절한 고용·건강⁴⁾·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과 연결되어 있어 사회적 배제를 창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picker, 1998). 즉 주거빈곤은 사회적 배제의 원인이자 또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4) 영국의 왕립의과대학에서 실시한 홈리스 상태와 건강악화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다음 네 가지 요인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신체적인 질환은 홈리스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건강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자원, 그리고 숙소와 관련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둘째, 신체적인 질환은 홈리스 상태에 의해 창출된다. 건강문제는 단지 주거(shelter)의 결핍만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안전성, 적절한 위생설비와 나아가서는 적절한 주거의 결핍과 관련된 결식(缺食)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셋째, 신체적 질환은 홈리스 상태에 의해 지속·악화된다. 주거문제는 안정적으로 의료보호를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이는 빈번한 주소지 이전(移轉)과 이로 인한 안정적인 진료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어려워진다. 넷째, 신체적인 질환은 홈리스 상태와 관련한 행위에 의해서 초래되기도 하고 악화될 수가 있다. 즉, 노숙자들(rough sleepers) 사이의 마약과 알코올 문제와 관련이 있다(Spicker, 1998에서 재인용).

또한 이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는 영역의 하나는 ‘주거를 통한 배제’의 과정인데, 이에 따르자면 특정 지역의 주민들은 고용기회와 시민권으로서의 사회적 급부를 수급하기 위한 안정적인 접근권을 방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썬머빌(Somerville)은 주거를 통한 사회적 배제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제어하고 보다 확장된 시민권적 권리에 접근하는 것을 제약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omerville, 1998). 이와 관련하여 낙인(labeling) 효과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지리적 분리와 관련한 영향도 이들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와 주거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지금까지의 주거시스템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 아서슨과 제이콥스는 이들 연구들의 초점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Arthurson & Jacobs, 2003).

- ① 사회적 배제의 원인으로서의 주거
- ② 적절한 주거로부터의 배제
- ③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서의 주거

①에서는 주거 그 자체가 사회적 불평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서 인지도 있다. 즉 이와 같은 관점으로부터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발생시키는 주거의 역할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부적절한 주거는 건강, 교육, 그리고 고용에 대한 접근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주거는 그 입지, 물리적 환경, 점유의 안정성, 과밀, 지속가능성, 그리고 다른 서비스에 대한 이용가능성이라는 의미에서도 배제를 발생시킨다⁵⁾. 이러한 점에 더하여 사회적 배제의 요인으로 ‘주거시스

5) 이를 달리 표현하면 ‘주거빈곤(住居貧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거빈곤’이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주택의 질과 열악한 환경이라는 의미에서의 ‘주거(住居)의 빈곤’이다. 즉 주택의 크기와 설비, 노후도, 일조(日照)와 통풍, 주변 환

템'과 '주택할당정책'과 관련된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즉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주택부족 문제와 사회적 분열의 해소에 기여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매각과 용도 전환,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한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이 축소되었다(Lee & Murie, 1997)⁶⁾.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다양한 소득계층을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부문 내에서의 빈곤의 집중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이 계속적으로 마지막 잠자리(last resort)로 남아있는 한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낳는 문제는 시정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앞서 기술한 썬머빌(Somerville, 1998)의 주거를 통한 사회적 배제로서 생활의 제어와 광범위한 시민권에 대한 접근성의 곤란 문제 등이 해당한다.

②와 관련하여 카메론과 필드는 영국의 두 개의 주거 단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주거를 통한 배제'와 '주거로부터의 배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Cameron & Field, 2000). 즉 후자는 적절한 주거와 물리적인 시설에 있어서 곤궁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결여된 결과, 불이익을 입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적절한 주

경과 과밀도 등이 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불량주택 기준(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령으로 규정. 우리나라는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최저주거기준 등이 주거의 빈곤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존재한다. 둘째는 거주불안정(居住不安定)이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안정적으로 거주할 집이 없다는 것과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주거확보의 곤란성, 안정적인 거주상태의 유지 곤란성 등을 포함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전자는 '관습적인 거주'가 상시적으로 결여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를 생활의 거점으로 하여 사회관계를 구축해가는 의미에서의 '장(場)'이 부재하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자면, 미인가숙박소(=쪽방)와 합바, 공장과 상점의 구석방, 병원, 불가피하게 타인의 집에 단기간의 동거 등과 더불어 거리나 공공시설에서 노숙하는 경우 등이 이러한 '거주 불안정(居住不安定)'에 포함되는 것이다(岩田正美, 1996). 또한 후자의 경우는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의 감소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거주자의 지불능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되며, 이들은 거주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 6) 물론 이전에도 대처수상의 보수당 정권에 의한 '구매권(Right to Buy)' 등 공공임대주택 불하정책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감소와 이를 통한 교외의 양호한 단지를 제외한 도심 내 단지의 경우 잔여화가 더욱 심화된 경험을 겪은 바 있기도 하다.

거로부터의 배제의 사회적 결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앤더슨과 씸(Anderson & Sim)은 영국에서의 주거와 사회적 배제에 대한 논의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의 잔여화(residualisation)에 대한 지나친 강조⁷⁾는 이와 같은 잔여화된 점유형태에 대해서조차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특히 단신 홈리스)의 경험을 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주거로부터의 배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있어서 질 좋은 주거환경과 적절한 임대료 부담 등과 같은 적절한 주거서비스로의 사회적 포섭과 아울러 이러한 주거에서조차 배제되어 있는 이들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나아가 이와 같이 일정한 수준을 갖고, 안전하며, 거주하기 적합한, 질 좋은 저렴한 주거는 보다 효과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보다 확고한 사회통합의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적절한 주거는 다른 복지 서비스의 효과를 제고시키거나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축에 대한 관계성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다(Anderson & Sim, 2000: 20-21).

③은 '열악한 주거는 사회적 배제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소득과 같은 물질적인 자원의 결핍 등이 불평등의 원인이지 주거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실업은 주거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쳐 불이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부적절한 민간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다. 나아가 어떤 세대가 주택시장의 특정 부문에 집중되는 결과로 귀착하는 것은 다른 서비스로부터의 배제 과정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리와 뮌리(Lee & Murie, 1997)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국에

7) 공공임대주택의 잔여화 문제를 포함하여 열악한 생활공간에 의한 '공간적인 배제'에 대해서도 널리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열악한 공간'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특정 계층화'하여 오히려 더욱더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서 일부 자가소유자와 민간주택 임차인들은 공공임대주택단지보다 훨씬 고도의 박탈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⁸⁾. 특히 민간임대부문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훨씬 더 크고 복합적인 배제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또한 주거이동의 배제 문제도 이 범주에 해당한다. 즉 가난한 사람들은 주거이동에 있어서 선택이 제한적이다.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만 이동하고, 이주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만이 남겨진다(Wilson, 1987). 이에 따라 ‘거주에 적절한(desirable)’ 주거(지)와 ‘거주에 부적절한(undesirable)’ 주거(지)가 양립하게 되는 것이다(Spicker, 1998).

이 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논의에 기초하여 주거와 사회적 배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양상과 이들의 상호 영향관계를 통한 배제의 심화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주거가 사회적 배제와 관련하여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들은 주거빈곤층의 삶의 각 단계와 부문에 있어서 어떠한 양태와 결과로서 현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 사회적 배제의 원인으로서는 주거

8) 공공임대주택은 일부 선별적인 그룹을 배제하지만 자가는 보다 광범위한 빈곤 세대의 접근을 부정하기 때문에 훨씬 더 배제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자가세대 내부에 있어서 점유형태의 사회적 분화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자가세대 내에서는 적절한 거주를 위해 필요한 수리를 수행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세대와 소요에 부응하는 주거의 구입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과밀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가로부터는 배제되어 있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들 세대의 일부는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자가거주로의 포섭이 사회적 포섭과 동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의미로 자가로부터의 배제는 사회적 배제와 같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더라도 적절한 임대료로 양질의 안정적인 주거에 접근할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배제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포섭이 사회적 포섭을 의미하고 있다고 등치시킬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일부 임차자는 그들의 낮은 소득으로 인한 임대료 부담과 그들의 주거 소요에 부응하지 않는 거주환경으로 인해, 혹은 그들 스스로를 임파워(empower)할 수 있는 수단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자들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자가 소유자들간의 사회적 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Somerville, 1998).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는 집, 집안 곳곳이 적절하게 통풍이 되지 않는 집, 습기가 많아 벽 구석구석에 시꺼먼 곰팡이가 앓아 지우다 못해 화보집을 열기 설기 붙여놓은 집, 좁고, 어두워 대낮에도 형광등을 밝혀놓고 있어야 하는 집, 옥외 공동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므로 심야에 급할 때를 대비하여 요강을 하나씩 비치하고 있는 집, 샤워실이 없어 방문 옆 간이 부엌에서 샤워를 해야하는 집, 문턱이 높아 어린이나 노약자 및 장애인의 보행에 장애가 되는 집, 노후화 되어 적절한 거주 생활이 보장되지 못하는 집 등 이들은 먼 과거를 떠올릴 필요도 없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우리 이웃들의 주거의 현주소이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준공된 주택수와 멸실주택수 등을 제출받아 주택보급률을 추계한 결과, 지난해 전국 평균은 101.2%로 전년말(100.6%)대비 0.6%포인트 상승했으며 서울지역의 경우 86.3%로 전년동기 82.4%에 비해 3.9%포인트 늘었다고 한다(건설교통부, 2004). 그러나 이러한 주택보급률이 저소득층의 주거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주택보급률이 96.2%에 달했던 지난 2000년도에도 이미 최저주거기준 이하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빈곤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23.1%인 3,306천 가구(2000년 현재)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윤주현 편, 2002).

<표 V-1> 주요국의 주택관련 주요지표 비교

(단위: %)

국가	한국 (2003)	일본 (1998)	미국 (1999)	영국 (1996)	독일 (1998)	프랑스 (1996)	스웨덴 (1990)	싱가포르 (1985)
주택 보급률	101.2	113.3	111.2('97)	105.6	100.2('87)	121.2	104.9('80)	89.5
자가주택 비율	54.2('00)	60.3	66.8	67.9	40.5	54.3	38.5	55.0('80)

주: 주택보급률 = 주택수÷가구수 (주택공사 자체산정)

자료: U.N, Annual Bulletin of Housing and Building Statistics for Europe and North America(1993, 1998, 2000)

일본 주택산업정보서비스, 주택산업 핸드북(1993, 1999, 2001)

일본 주택협회, 주택건축핸드북(1997, 2001)

일본 주택금융공고, 포켓주택통계(1998, 1999)

미국 상무부,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2000)

대한주택공사, 「주택통계편람」(2003)과 건설교통부, 「2004년도 주택종합계획(안)」(2004. 3)을 재구성.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면서 전체 주택 대비 아파트 비중이 급상승하여 1998년 현재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독주택(42.4%)을 추월하였다. 이를 통해 주택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무분별한 아파트 위주 공급으로 난개발을 초래했고 획일적 주거생활이 확산된 부정적 효과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주택규모의 제한, 획일적 설계 등으로 인해 거주자의 다양한 주거 소요(housing needs)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아파트 주거양식의 대량화를 통해 발생한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정책 초점이 보급률 제고에만 맞추어져 저소득층 주거안정은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의 다세대주택(1986년) 및 다가구주택(1990년)으로의 전환 유도로 주차문제, 사생활 침해, 일조권 악화, 어린이 놀이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지하를 전용한 지하주거의 경우는 거주자가 심각한 주거환경의 악화와 그 폐해를 경험하고 있다(한국도시연구소, 2003).

뿐만 아니라 자가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인해 주택에 대한 지나친 소유의식과

정부의 임대주택시장 육성 미흡으로 무주택자의 주거이전이 빈번하고 주기적인 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0). 그리고 그 이면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지하주거와 옥탑방 등 열악한 민간임대주택 부문에서의 생활환경의 악화 문제, 비주거용 비닐하우스의 거주 전용(轉用)과 이들 '신발생 무허가주택'(한국도시연구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거주자의 양적인 확대를 통한 주거불안정의 심화, 충분한 생활환경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미인가 숙박소(쪽방)' 거주문제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부적절한 주거가 원인이 되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회적 배제를 낳는 주거의 빈곤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첫째로 주택의 질과 열악한 환경이라는 의미에서의 주거빈곤과 둘째로 거주자의 불안정성이다. 전자는 주택의 크기와 설비, 노후도, 일조와 통풍, 주변 환경과 과밀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과 고용, 교육, 건강, 위생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후자는 생활의 거점으로서 사회관계를 구축해가는 안정적인 '장(場)'이 부재함으로 인해 배제를 낳는 경우이다.

현재 전국의 가구주가 판단하는 수리가 필요한 주거는 약 60%에 달한다. 또한 이들 수리가 필요한 주거의 약 70%는 당장 혹은 단기간 내에 수리가 필요한 주거라고 한다. 그리고 주택유형 중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경우 수리의 필요도가 훨씬 높다.

<표 V-2> 현 주택의 상태

(단위: %)

구 분		가구	수리 필요				필요 없음
			당장수리필요	1~2년안에 수리필요	안전에 위험한 정도 아님	합계	
전국		100.0	25.0	44.8	30.2	59.8	40.2
주 택 유 형	단독주택	100.0	29.3	42.0	28.8	67.9	32.1
	아파트	100.0	17.9	47.9	34.3	49.6	50.4
	연립주택	100.0	25.5	47.6	26.9	63.9	36.1
	다세대주택	100.0	22.9	49.8	27.3	58.6	41.4
	기타	100.0	29.7	43.8	26.5	58.7	41.3

주: 가구주 대상임.

자료: 통계청, 「2001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3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재인용.

전국적으로 34.4%가 현 주택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2001년 현재)하고 있다(<표 V-3> 참고). 점유형태별로 불만이유를 다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 V-4>와 같다. 이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택에 대한 불만족도를 증대시키는 요인에는 주택 노후화와 협소한 주택규모의 문제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 또한 그 뒤를 이어 난방시설 문제, 일조·통풍 문제, 화장실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들 주택불만족 요소는 물리적 시설 측면에서의 불만족만이 아니라 거주자의 건강과 생활 등 직접적인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특히 주택점유형태가 불안정해질수록 불만족 비율이 상승함을 보이고 있는데(<표 V-3>), 이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주택점유형태가 불안정하므로 실제로 주거빈곤이 저소득층의 거주생활의 불만족도와 불건강도를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표 V-3> 주택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	매우불만	계
전국	9.2	18.5	37.8	26.3	8.1	100.0
자가	13.3	22.4	34.4	23.8	6.2	100.0
전세	4.2	15.8	42.3	29.3	8.4	100.0
보증부월세	2.8	10.1	42.0	31.5	13.6	100.0
월세(사글세)	5.2	11.3	40.6	29.6	13.3	100.0
무상	9.4	18.0	39.9	22.8	9.8	100.0

주: 가구주 대상임.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3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재인용.

<표 V-4> 주택에 대한 불만이유 (단위: %)

구분	일조· 통풍 안되서	주택이 낡아서	주택 규모가 작음	화장실 불편	난방 시설 미흡	상하수도 시설미흡	주택 임차료 비싸서	경제적 가치 없음	기타	불만 가구 계
전국	7.9	30.1	29.4	7.8	8.3	3.7	3.2	6.9	2.6	100.0
자가	3.6	34.5	32.3	3.8	7.1	2.3	0.2	13.6	2.6	100.0
전세	13.3	26.2	29.5	7.5	10.8	5.5	3.0	1.0	3.2	100.0
보증부 월세	12.0	18.6	27.0	15.9	6.6	4.7	12.6	0.9	1.7	100.0
월세 (사글세)	6.7	33.8	19.1	21.0	8.4	3.5	5.4	0.4	1.7	100.0
무상	7.2	45.1	19.0	8.8	11.8	3.5	-	1.5	3.1	100.0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3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재인용.

1) 주택의 취약한 물리적 조건에 따른 불건강성

불량주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안전한 물·전기·건축재료, 적절한 난방, 위생, 가구원수에 따른 충분한 주거면적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여러 물리적 요소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른바 최저주거기준이라 하여, 인간

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나라마다 정하고 있는데, 불량주거(지)는 이와 같은 최저주거기준⁹⁾에 미달하는 주택들의 밀집지역이라 할 수 있다.

빈곤과 관련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의 부적절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부적절한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상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실한 건축자재로 인해 주민들은 화재, 수재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불량주거(지)의 채래식 공동화장실, 다량의 먼지와 같은 요인들은 주민들의 건강과 위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요소가 현실로 드러날 경우, 주민들의 빈곤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

가) 연료 및 난방 문제로 말미암은 거주문제와 주거비 부담 가중

연탄은 1950년대 이후 가정·학교·식당·점포 등에서 취사 및 난방용으로 널리 사용되어 1980년대에는 도시지역에서 연탄아궁이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

9) 건교부의 최저주거기준(건설교통부 고시 2000-260호)은 아래와 같다. 먼저 면적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가구원수(인)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m2)
1	1K	12(3.6평)
2	1DK	20(6.1평)
3	2DK	29(8.8평)
4	3DK	37(11.2평)
5	3DK	41(12.4평)
6	4DK	49(14.8평)
7인 이상	4DK	52(15.8평)

주: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 숫자는 침실수를 나타냄.

두번째로, 시설기준은 먼저, 침실은 부부침실 확보, 만 5세 초과 자녀는 부부와 침실 분리, 만 8세 이상 이성자녀는 침실 분리, 노부모 침실 분리, 그리고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부엌 및 전용 화장실 확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세 번째로, 구조·성능·환경 기준인데, 이는 영구건물로서 구조 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 내화, 방열,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함을 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연탄의 결점은 일산화탄소 등 치명적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연탄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점차 두드러지게 되어 2000년 전후로 모든 지역에서 석유나 가스를 사용하는 취사기구·난방기구가 일반화되었다. 또한 연탄에 비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기름보일러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한 중앙공급식 난방의 보급에 따라 가정의 연탄 소비량과 연탄 생산량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 연탄 소비도 1989년부터는 계속 감소해 왔다. 그러나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연탄이 주요 난방·취사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주거빈곤 가구의 거주지에서 연탄은 여전히 주요한 난방 수단인 것이다. 이들 연탄 난방은 설치 후 제법 시간이 경과한 관계로 노후화로 인해 기능상의 문제가 따르는 경우도 있으나, 개발을 목전에 둔 지역의 경우 설비 투자 및 개선에 어려움을 겪거나 기름보일러 등 난방조건을 개선하는 데 따른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적절한 난방과 온수 이용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이다.

【사례 1】 이○숙씨(46세, 여)의 가족이 살고 있는 노원마을의 경우, 예전의 달동네에서 볼 수 있었던 전형적인 불량주택이 모여 있다. 이씨의 경우, 상수도는 공급되지만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도 오랫동안 사용하자 다 삭아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기름보일러를 놓고 싶지만 비용이 엄두가 나지 않고, 곧 개발이 될 거라는 이야기에 집주인이 설치해주지 않고 있다. 온수가 나오는 않는 관계로 목욕은 멀리 떨어진 공중목욕탕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보일러가 연탄보일러예요. 작년에는 연탄보일러를 뺐는데 올해는 보일러를 바꿔야 해요. 다 삭아서... 기름보일러를 놓고는 싶은데 혈린다고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못 놓고 있어요. 지금까지 연탄보일러 때는 집은 이 동네밖에 없을걸요... (중략) ... 뭐라고 그럴까 (한숨) 사는 게 왜 이런가 싶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언제 따뜻한 물 나오는 데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온수가 안 나오니까...” - 이○숙(46세, 여 / 사례 1)

그러나 이와 같은 연탄 난방이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는 일산화탄소 중독이

다. 연탄가스 중독 경험은 대개 주거빈곤가구가 경험해 온 불건강의 한 양상이었다. 이러한 난방원으로서의 연탄도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기름이나 가스보일러 등으로 대체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은 주거지의 특수성으로 인해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기름이나 LPG가스를 별도로 구입하여 난방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사진 1] 참조). 이로 인한 난방비 부담 문제가 주거빈곤층의 호주머니 사정을 더욱 더 궁핍하게 하여 설비는 갖추었지만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대개의 경우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곤 한다. 하지만 전기장판의 경우 아랫바닥만 따뜻하게 할 뿐 전체 방의 공기순환을 돕지는 못한다. 이로 인해 겨울이면 감기 등 잦은 병치레의 원인이 될 수 있다([사진 2] 참조).

【사례 19】 노숙인 이○성씨(48세, 남)는 20세 때 결혼과 더불어 답십리의 전세방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그곳은 단독주택에 각 방마다 각기 다른 세대가 거주하는 전형적인 달동네 거주형태이었다. 이 곳은 난방을 연탄으로 하였는데 종종 연탄 가스가 새어나와 가스를 마시고 쓰러지기도 하였다고 한다.

【사례 10】 권○진씨(52세, 남) 모자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14만원짜리 집에 살다가 철거로 인해 현재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18만원짜리 지하주거로 이사를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친도 연로하고(73세), 본인도 50대 중반을 넘어 젊지 않은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권씨는 뇌경색에 당뇨로 쓰러져 누워지내고 모친도 당뇨와 혈압으로 거동이 어렵다. 현재 권씨는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월 약 45만원 가량을 받는다. 그러나 이 중 20만원 가량은 주거비로 빠지고 나머지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지만 이 중 난방으로 인해 다시 8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예전에 살던 집은 난방용으로 연탄을 썼었는데 이 때에는 한 달에 28,000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지하주거에서는 LPG가스를 구입해서 써야 하는데 1통당 21,000원이고, 한 달에 4통 정도를 사용하게 되어 월 난방비가 8만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므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례 15】 비닐하우스촌 잔디마을에 사는 이○선씨(65세, 여)는 전기장판으로 올 겨울을 났다. 아들이 카드빚을 진 것이 약 1,000만원 가량 되는데 택시운전을 하여 벌어들이는 수입은 벌써 1년 반동안 카드빚의 변제로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아들이 가져다 주는 1~2만원 정도가 전부이다. 이것도 정기적인 것이 아니라서 한 달에 약 30만원 정도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변변치 않은 생활비에서 난방비를 지출하기에는 가계부담이 크고, 기름값도 비싸기 때문에 1년 전에 보일러를 돌려본 이후 엄두가 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름보일러를 설치하기 이전에는 연탄을 연료로 쓰고 있었다. 10년 전부터 연탄 가스 중독 사고가 생기고 해서 기름보일러로 바꾸었기는 했지만 지금은 석유값이 비싸 감당할 수 없어 전기장판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다. 화훼마을의 김○숙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서 받는 생계급여인 20여만원과 평일 오전에만 나가는 청소 취로사업으로 약 40만원~45만원, 총 60여만원이 한 달 수입의 전부이다. 따라서 한달에 10만원에서 15만원 가량 소요되는 비싼 기름값이 부담이 되어 이를 최소화시키고자 저녁에만 보일러를 켜다.



[사진 1] 지하셋방 입구와 문옆에 놓여있는 LPG가스통(사례 10)



[사진 2] 비닐하우스 내부의 난방용 전기장판(사례 15)

나) 기본적인 주거설비의 미비로 인한 불건강

아래 표는 기본적인 주거설비 확보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전국적으로 부엌

이 없는 주택이 0.4%, 목욕시설이 없는 경우는 10.9%(목욕시설이 있으나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1.7%), 공동화장실 혹은 그것조차 미비한 경우가 0.2%에 이르고 있으며, 재래식 화장실도 12.8%에 달한다. 특히 이와 같은 미확보율은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더욱 상승한다. 여기서 주택이외의 거처란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로서 통계상으로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들의 미확보율을 보면 부엌시설이 없는 경우는 17.4%, 목욕시설이 없거나 비온수의 경우는 37.6%에 이르며 공동화장실이거나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5.6%나 되어 주거설비가 가장 취약한 상태임을 보이고 있다. 즉, 적절한 주택을 소비할 수 없는 주거빈곤층의 경우 주거설비 등에 있어서도 취약한 조건에 처해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들 기본적인 주거설비의 미비는 최소한의 거주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건강이나 위생상의 문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표 V-6> 시설형태별 가구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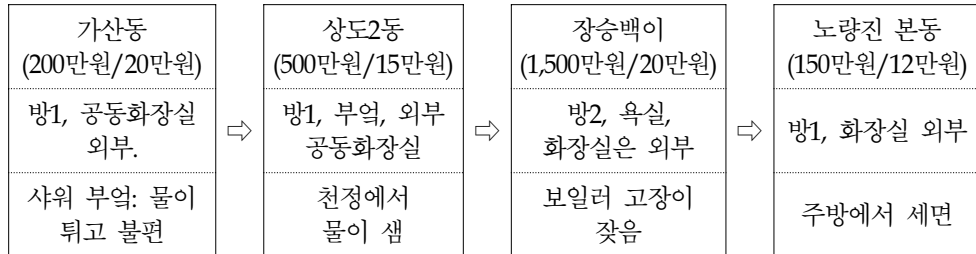
구분	부엌시설			목욕시설			화장실		
	재래식	입식	없음	온수	비온수	없음	재래식	수세식	공동(없음)
전국	5.7	93.9	0.4	87.4	1.7	10.9	12.8	87.0	0.2
단독주택	10.6	88.9	0.5	77.2	3.2	19.6	24.7	75.1	0.3
아파트	0.0	100.0	0.0	99.9	0.0	0.0	0.0	100.0	0.0
연립	0.5	99.4	0.0	98.0	0.2	1.8	0.6	99.3	0.1
다세대	0.2	99.8	0.0	99.1	0.1	0.7	0.2	99.7	0.1
영업용 건물내주택	7.2	91.2	1.5	78.2	2.0	19.8	9.4	89.9	0.7
주택이외의 거처	13.3	69.2	17.4	62.3	4.0	33.6	28.1	66.2	5.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3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재인용

실제 조사에서 확인한 바로도 이들 실태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생활 불편 및 위생상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등이 지적될 수 있겠다. 특히 주택점유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혹은 임대차 지위가 하위로 내려갈 수록 이들로 인한 불편과 배제의 경험이 더욱더 심각하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

【사례 1】 노원마을의 이○숙씨(46세, 여)집은 온수가 나오지 않아 샤워나 목욕을 집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화장실 역시 주택 내부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마을 내에 있는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동식 재래화장실이라 지저분하고 위생적으로도 과히 좋지 않다.

【사례 8】 거리에서 홈리스 상태에 있는 노○선씨(48세, 남)는 홈리스 상태에서 민간쉼터 생활을 거쳐 민간임대주택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당시 보증부 월세로 지내던 방들은 대체적으로 주거설비가 노후하거나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말미암아 불편을 겪었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외부의 공동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며, 독립된 세면 및 샤워 공간이 부재함으로 인해 부엌에 간이로 설치되어 있는 수도를 이용하여 샤워 및 세면을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주변에 물이 튀는 등의 생활상의 불편을 감수해야 했으며 적절한 세면 및 위생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은행으로부터 전세금 1천만원을 대출받아 지하방을 얻었는데 이 곳도 보일러 고장이 잦았다. 역시 화장실은 외부에 있었다. 잦은 보일러 고장에 대해 주인에게 호소하더라도 월세는 이런 점이 귀찮다며 도리어 핀잔을 받을 뿐이었다. 이들이 주로 세면을 하는 곳은 주방이다.



[그림 V-1] 노○선씨의 민간임대주택 거주력

【사례 10】 권○진씨(52세, 남) 모자는 철거로 인해 현재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18만원짜리 지하주거에서 생활한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하주거는 단칸방으로, 문을 들어서면 바로 간이 부엌이 있고, 그 옆으로 방이 붙어 있다. 73세의 노모가 50대의 아들을 개호(介護)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나 노모 역시 5년 전에 마비증세가 와서 현재에도 몸이 불편한 상태이다. 권씨도 95년 쓰러져 병원에 1년 정도 입원을 한 이래 뇌경색과 당뇨로 인해 누워지내는 상황이다. 화장실은 외부에 있는 공동화장실로 문밖으로 나가서 건물을 끼고 돌아가야 한다([사진 3] 참조). 따라서 권씨는 공동화장실까지 이동할 수 없어 방안에서 배변을 해결하고 있다. 방 문 옆에 요강이 하나 놓여 있는데 이를 주로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세면 및 샤워는 생각할 수조차 없어 거의 못하고 지낸다. 다만 모친의 경우 방문을 열면 바로 나있는 주방 옆의 작은 수도에 샤워 노즐을 끼워서 이용하고 있다([사진 4], [사진 5] 참조).



[사진 3] 지하셋방의 옥외 공동화장실(사례 10)



[사진 4] 지하셋방의 주방 겸 세면장 모습(사례 10)



[사진 5] 지하셋방의 주방 옆 샤워 노즐(사례 10)

【사례 20】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는 김○숙씨(51세, 여)는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므로 불편하다. 터가 있으니깐 얼마든지 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므로 못 만들고 있지만 실제로 허락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불가능하다. 다른 지역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이○선씨의 경우도 목욕을 하려면 근처에 목욕탕이 없는 관계로 마을버스를 타고 양재동까지 나가야 한다.

【사례 19】 미인가숙박소(쪽방)¹⁰⁾의 경우도 한 달에 15만원 하는 곳은 불을 안 때 주니

까 전기장판을 본인이 갖고 있어야 하고, 전기세도 한 달에 만원 정도 내야 한다. 새벽에 보일러 틀을 때만 온수가 나오고 그 후는 나오지 않아서 겨울에도 찬 물로 씻어야 한다. 돈이 아까워서 안 들어가지만 이따금 몸이 안 좋은 날은 제기동이나 남대문 쪽방에 간다고 노숙인 이○성씨(48세, 남)는 말한다.

“나는 제기동하고 여기 앞(남대문)에는 몸 안 좋은 날 가끔씩 가고... (쪽방은) 크다고 하면 8000원이고, 작다고 하면 7000원이고... 어쨌든 8000원짜리는 둘이 자면 만원을 내야 되잖아. 쪽방은 혼자 자면 7000원이고, 둘이면 8000원이야. 그런데 거기서 잘 수 있어? 돈이 아까워서 돈을 못쓰는 거야. 아침에 나가려고 그러면 찬물 나오고. 겨울에 막 찬물로 씻고 그래.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지. 그렇다고 할 일도 없는데 새벽같이 머리감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닌거 아냐. 새벽에는 뜨신 물이 나오지. 방에 보일러가 들어오니까”
- 이○성(48세, 남 / 사례 19)

다) 열악한 주변환경으로 인한 사고 위험의 상존과 건강·위생상의 문제

이 밖에도 열악한 주변환경으로 인한 생활피해 문제도 거주자의 불편과 건강 및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 10) 여기서 ‘쪽방’ 대신 ‘미인가숙박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쪽방이라는 용어는 은어적·속어적 표현이므로 행정적·제도적 용어로는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용어는 정책적인 지향을 표현하는 중요한 의미를 함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쪽방이라는 용어나 개념이 함의하고 있는 주변적이고 모호한 속성은 정책적 방향을 강구해 가는 데에 있어서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따라서 적절한 주택정책,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포섭(inclusion)해 가는 데에 있어서 유의미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 쪽방의 경영형태나 목적, 대상 계층, 그리고 제도적 특수성으로부터 ‘미인가숙박소’라는 형태로 정의를 해보고자 한다. 이는 미인가로 인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보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고(실제로 정기적이고 적절한 거주실태 파악 및 현황이 조사되고 있지 않으며, 엄밀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규제와 유도가 수행되고 있지 않아 행정적으로는 ‘방암’, ‘묵인’되고 있다), 숙박소라는 의미에서 거쳐가는 중간적인 의미로서의 準주거적 역할을 수행해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정책목표와 역할기능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의미하리라 사료되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형태와 용도로서 일본에서는 ‘도야(ドヤ)’라는 것이 있으나 이 역시 은어표현이므로 공식적인 사용은 삼가고 있다. 공식적인 표현은 ‘간이숙박소’라고 하며, 정기적인 실태 및 현황 파악이 수행되고 있다.

【사례1】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는 노원마을에는 유독 먼지가 많이 날린다. 주변에 큰 벽돌공장이 있어 바람이 불면 숨을 못 쉴 정도로 먼지가 많이 날린다. 차를 세워두면 먼지가 뽕얇게 앉는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사진 6] 참조).

“먼지가 많이 나요. 주변에 벽돌공장 큰 게 있어요. 먼지가 많이 나서 바람불면 숨을 못 쉴 정도예요. 차 한번 세워놓으면 먼지가 뽕얇게 앉아요” - 이○숙(46세, 여 / 사례 1)



[사진 6] 인근의 벽돌공장으로부터 바람 부는 날이면 먼지가 심하게 날라온다(사례 1).

【사례1】 이○숙씨(46세, 여)가 살고 있는 노원마을의 주택들은 노후화된 주택들이 대부분이어서 새는 지붕을 가리기 위해 비닐 장판이나 시트 등으로 임시방편을 삼고 있다([사진 7] 참조). 또한 전기배선이 복잡하게 얹혀 있고 골목골목에 연료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LPG 가스통이 무방비상태로 내놓아져 있어 화재에도 취약하다. 가끔씩 화재가 발생하곤 하는데 골목이 좁기 때문에 다른 집으로 쉽게 번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내에는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조차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사진 8] 참조).

“이 마을이 30년 되었어요. 그 때는 장화 신고 다녔다고 하더라구요. 화재도 가끔 났어요.

지난번에도 났었는데... 골목에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지 않고... 불나면 집이 다 붙어 있어서 큰일나죠. 구청에서 소화장비를 설치해 주지는 않았어요” - 이○숙(46세, 여 / 사례 1)



[사진 7] 지붕을 덮고 있는 비닐장판(사례 1)



[사진 8] 화재 위험 요소가 많은 비좁은 골목길(사례 1)

비닐하우스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비닐하우스 주거의 경우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개조하거나 일반 나대지 등에 판자로 건축하여 급조된 형태가 다수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은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인 주거설비 등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 또한 내구성·내화성 재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화재에 약하고, 조금이라도 비나 눈 등이 많이 오면 천정이 내려앉기도 한다. 현재 비닐하우스 주거는 서울시에만 29개 지역, 약 4,130여 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은 주로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에 입지해 있다¹¹⁾(한국도시연구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이들 비닐하우스촌의 대다수는 개발된 도심 한가운데나 야산 등의 녹지, 주택가 등의 공원 녹지 등에 입지해 있다. 이러한 관계로 주택이 갖추어야 할

11) 이 이유는 1970년대 말에 시행된 강남지역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즉 당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통해 많은 이들이 철거되었고, 또 이들이 인근의 체비지와 미개발 녹지, 그리고 체비지 인근의 미개발 사유지로 정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비닐하우스 주거의 토지유형별 입지는 체비지와 녹지, 사유지가 주가 된다(한국도시연구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기본적인 설비나 편의시설, 기반시설 등이 불비한 경우가 다수이다.

【사례 20】 주거환경 자체도 주변환경으로부터의 악영향에 자유롭지 못하다.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화훼마을의 경우 잠시라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먼지가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쉴 새 없이 오가는 교통량과 이로 인한 소음문제, 교통사고 위험의 상존 등도 주변환경으로부터 빚어지는 생활상의 위협의 문제가 되고 있다([사진 9] 참조).

“여기가 바로 찻길 옆에 있어서 참 안 좋아. (교통 사고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여기 많죠. 교통사고가... 하루에도 한두 번은 우당탕 소리가 나서 자다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횡단보도 다닐 때 항상 조심하라고 하죠. 세곡동 가는 쪽이 참 위험해요. 여기에서 강아지들 지나가다가 많이 죽었어요. 바로 그냥 무시통과로 달리니까. 파란 불이어도 그러니까... 성남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차들은 제대로 신호대기 받고 서요. 근데 세곡동 들어가고 나가는 이쪽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위험해요. 지나가기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안 하지” - 김○숙(51세, 여 / 사례 20)

이들은 비좁은 비포장 골목길과 소방도로가 부재한 관계로 화재 위험에 취약하기도 하다. 비닐하우스의 주된 재질이 목재 합판을 주로 사용하며, 지붕은 슬레이트를 얹고 있는 경우가 많은 탓에 화재 위험은 상존하는데 반해서 이들을 방호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설치해 놓은 소화기에 불과한 정도이다. 또 비만 오면 땅이 질퍽해져 보행에도 불편을 겪는다. 장마 때 물이 불어 집 에까지 들어온 적도 있으며, 인접한 하천으로부터는 악취와 모기 등 해충의 피해도 있다고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김○숙씨는 이야기한다([사진 10] 참조).

“비 올 때도, 땅이 굉장히 질쫄아요. 아스팔트가 아니기 때문에 눈, 비 올 때 그렇지. 그리고 항상 불안한 감이 있어요. 눈이 많이 오면 쓰러지지 않을까. 또 비가 오면은 하수도가 제대로 되어 되는데 멈출 때가 많아요. 하천이 아직 넘치지는 않았는데 물이 많이 불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장마 때 집까지 물에 차서 들어온 집도 몇 채 있었어요 작년에

도 물이 역류를 했죠. 하수도에서 올라와가지고. 게다가 하천이 옆에 있어서 모기 같은 것도 많을뿐더러 냄새도 많이 나잖아요. 저기 하천에서 악취가 굉장해요. 어디서 흘러내리는지 모르는데. 저기 뭐 성남쪽에서 내려오는 건지 뭐 악취가 굉장히 나요” - 김○숙 (51세, 여 / 사례 20)



[사진 9] 차도에 인접한 펜스 건너편의 비닐하우스촌(사례 20)



[사진 10] 모기 등 해충과 악취의 원천인 하천. 하수가 바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다(사례 20).

비닐하우스는 불법적으로 단기간에 축조되기 때문에 내구성·내화성 자재를 사용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관계로 화재 등 사고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사진 11], [사진 12] 참조). 비닐하우스촌 거주지인 잔디마을의 경우도 93년 전기 누전으로 마을 전체가 전소된 경험에 있다.



[사진 11] 화훼마을의 비닐하우스



[사진 12] 잔디마을의 비닐하우스

미인가숙박소(쪽방)는 2003년 4월 현재 전국적으로 10,479개에 약 10,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들은 2001년말 이후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쉼터나 자유의집에 거주하던 노숙인들이 경기회복에 힘입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확보하여 쉼터로부터 미인가숙박소(쪽방)에 거주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쉼터 및 거리노숙자의 미인가숙박소(쪽방)로의 이동만으로는 전부 설명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근로빈곤계층의 증가와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상실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주거비 폭등으로 인한 단칸 셋방 거주가구의 증가,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비닐하우스촌 양산, 노동경쟁력 상실·가족해체로 인한 주거하향 이동 등의 양상이 이를 설명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자, 쪽방 거주자의 급속한 증가와 맞물리는 변수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68-69).

<표 V-6> 쪽방 거주자의 추이

시기	쪽방 거주자
2000년 12월	2,712명
2001년 12월	5,716명
2002년 3월	6,141명
2002년 12월	9,535명
2003년 4월	전국 10,479개 쪽방. 약 10,000여명 거주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03: 212-213), 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 내부자료.

이와 같은 미인가숙박소(쪽방)의 경우도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채 1평도 못되는 공간에 창문조차 하나없이 외부로 열려 있는 것은 오직 문 한 짝뿐인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나 이처럼 통풍도 원활하지 않은 비좁은 주거 내에서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 관계로 화재 등의 위험과 더불어 위생상의 문제에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사례 13·22】 쪽방 거주자 김○서씨(69세, 남), 권○이씨(62세, 남)는 각각 1평이 채 못되는 작은 쪽방 안에서 가스버너로 커피, 라면 등을 끓여 먹는다. 협소한 방 안에서 가스버너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 밖에 가재도구란 처음에 입주할 때 받은 흙이불 정도이다. 새 이불도 아니고 지저분하지만 갈아주지 않는다. 방안에 TV가 한 대 있지만 전파가 잘 안 들어와서 TV는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창문도 하나 없다.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사람 대접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는 뜻이야”(권○이, 62세 / 사례 22)라고 한다. 빨래는 방 안에서 널어 건조시킨다.

라) 일조(日照) · 통풍 불량과 쥐 · 해충 등에 의한 불건강

일조 · 통풍의 불량, 습기 등은 거주자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습도

가 높은 거주환경은 곰팡이를 발생시키기 쉽고 기관지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 일조 불량에 의한 저습하고 눅눅한 거주환경은 관절 류마티스와 신경통 등의 근골계(筋骨系) 질환에도 좋지 않다. 저온은 혈관의 수축을 초래하며 고혈압증도 발생하기 쉽다. 일조가 없는 음울한 주거환경은 기분을 저해하고 우울병, 위염 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한편 한여름에 통풍이 안 좋은 경우는 식욕부진 등에 의해 체력 약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밖에도 통풍이 불량하면 다양한 실내환경 악화를 초래한다. 습기가 빠져나가지 않으며 곰팡이도 발생한다. 천식을 극복하는 것도 곤란해진다(早川和夫・岡本祥浩, 1993: 77-82).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거주환경에서는 쥐나 해충 등이 서식하기 쉬운 환경조건이 되기 때문에 건강상으로도 더욱 악영향을 미치기 쉽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대표적으로 잠재해 있는 곳으로는 지하주거를 들 수 있다. 지하주거는 주택의 절대적 부족 하에서 이를 매우기 위한 일방편으로 도입되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¹²⁾을 통해 지하주거의 제도화와 적극적 활용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서민층 주거문제의 해결에 일정정도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하층 건축기준에도 미달하는 열악한 환경의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지하층도 주거공간으로 전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이 현존하는 지하주거 공간으로는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의 지하주거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의 지하주거로 양분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고서는 외관상으로 파악이 불가능하다. 특히 통칭 ‘완전지하’라고 불리는 곳은 창문이 아예 없거나 지표면에 나와 있는 부분이 지극히 적은 경우여서 햇빛이 들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통풍이나 환기조차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거설비 또한 독립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채 공동으

12) 1985년과 1989년에 도입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실제 그 성격은 유사하나,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었다. 즉 다세대주택은 제도화를 통해 실내에 모든 부대공간이 확보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소규모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은 임차가구에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확보해 주는 단독주택이라고 하겠다(한국도시연구소, 2003).

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별도로 만든 곳도 있다. 특히 화장실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옥외 화장실 하나를 3~4세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도시연구소(2003)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지하주거의 규모는 최소 25만 세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국도시연구소, 2003).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 및 제반 실태조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들에 대한 적절한 주거서비스의 소요를 예측할 수조차 없으며, 적절한 주거개선 및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사례 6】 가정폭력으로 인해 홀리스 가족 쉼터에서 생활하는 임○희씨(30세, 여)는 모 교회 노숙인 쉼터로부터 퇴소 후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지하 월세방을 얻었는데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 방이었다. 외부에 공동화장실이 있고 방 하나, 부엌 하나의 반지층 구조로 햇빛이 안 들어오고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하는 곳이었다. 습기가 많았고, 냄새가 많이 났으며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벽이 젖기도 하였다.

【사례 17】 해가 들지 않고 통풍이 잘 안 되어 곰팡이가 자주 피는 방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이 될 법하다. 더군다나 고령으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욱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지하 주거에 생활하는 이○자씨(69세, 여)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현재 69세로 손자와 함께 두 식구가 생활하고 있는 이○자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곰팡이가 피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몸이 자주 아픈가봐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공기도 나쁘고... 머리도 무겁고... (손자도) 목에 편도선이 있어서 고생했는데 감기 들까봐 그냥 미리 옷을 많이 입혀요” - 이○자(69세, 여 / 사례 17)

또 이○자씨의 지하주거는 방이 두 개인데 방 하나는 곰팡이가 많이 나서 거주하지 못할 정도여서 방치상태에 있다. 습기가 많이 차고, 해가 전혀 안 들고 통풍도 안 되다 보니까 곰팡이가 많이 핀다. 또한 해가 안 비쳐 방안이 너무 칙칙하다.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로 네 집이 함께 쓰는데 재래식 화장실이

다. 샤워실은 없고 세면은 주방 옆 간이 수도에서 한다.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온수는 나오지만 가스요금이 많이 나올까봐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소들이 일조 및 통풍의 장애와 맞물려 곰팡이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어 다시금 거주자들의 건강에도 해악적인 요소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저 뭐야 물 주전자에 데워서 쓰는 거예요. 그래도 가스불 쓰는 거 보단 (돈이)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아... 주전자에 (물) 데워서 머리 감기고 그러지요” - 이○자(69세, 여 / 사례 17)

게다가 바퀴벌레나 해충들이 있어서 여름이면 약을 갖다가 뿌리기도 한다. 간혹 무언가에 물려서 크게 부은 적도 있다고 한다.

“바퀴벌레나 벌거지가 있어요. 여기 여름되면은... 그럼 회사(청소용역회사)에서 바퀴벌레 없애는 약 갖다가 치고... 뭐 이런데서는 벌거지가 있어요. 저... 뭐... 습기차고 그러니까는... 혹가다 뭐가 이렇게 물면은 막 이렇게 부르트죠. 뭐가 따끔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막 이래요. 그냥 막... 이래요. 그러면 인제 약 사다가 약 있는거 문지르면요. 또 이렇게 인제.. 근데 습기가 차고 그러니까는..” - 이○자(69세, 여 / 사례 17)

【사례 15】 잔디마을 이○선씨(65세, 여)의 주거도 곰팡이가 많이 피어있다([사진 13] 참조). 특히 주방의 경우 비가 새고는 했는데 눈이 많이 오고 난 후 천정이 아예 주저앉아 버렸다. 주저앉은 부분 주위로 곰팡이가 많이 피어있다. 또한 자주 쥐가 돌아다닌다. 아예 쥐하고 같이 산다고 할 정도로 잦은데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장롱 뒤에서 굵은 소리를 내기도 한다.

“쥐하고 같이 살아요. 뭐 그냥 소리가 나고 자다가도 툭툭 치고 이 집 들어갔다 저 집 들어갔다 돌아다녀요. 방에 사람이 있으면 못 들어오고 그래서 장롱 뒤에서 굵어보고 그러죠” - 이○선씨(65세, 여 / 사례 15)



[사진 13] 주저앉은 천정 주위로 곰팡이가 피어있다(사례 15).

마) 취약한 내구성으로 인한 거주생활 악화

열악한 구조의 주택은 인접한 호실 내지는 외부의 소음으로부터도 무방비 상태에 있어 거주성을 심하게 손상시킨다. 특히 이러한 소음이 신경쓰여 안절 부절하거나 스트레스가 높아져 상해사건을 야기하기도 하고 분열증 등의 증상을 낳게 하며, 또한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 특히 질병을 앓고 있는 이에게는 요양을 방해하기도 한다(早川和夫・岡本祥浩, 1993). 이는 조악한 건축자재로 만들어진 비닐하우스의 경우 더 심한데, 소음에 무방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구조 자체도 취약하여 작은 충격에도 쉽게 영향을 받기도 한다.

【사례 15】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이○선씨(65세, 여)의 주거는 2~3년 전에 눈이 많이 내린 후 지붕이 주저앉아 버렸다. 다행히 방은 버팀목이 있어서 크게 내려앉지는 않았지만 부엌쪽은 푹 주저앉아 함께 사는 아들이 올라가서 손을 보았다. 하지만 이도 완벽하지는 않아 드문드문 비가 새는 곳이 있다. 수리를 하고 싶지만 경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손을 못대고 있다.

【사례 20】 비닐하우스촌 화훼마을에 거주하는 김○숙씨(51세, 여)는 소음과 먼지 등으로 한시도 창문을 열어놓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세탁을 하고 나서도 빨래는 늘 집안에 낸다. 매일 청소해주고 매일 닦아줘야 한다. 화훼마을 주위를 둘러싸고 차가 뽕뽕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소음이 자장가처럼 들릴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소음으로 인한 악영향도 있어 불안감이 생기고, 지병인 고혈압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 섞인 투로 이야기를 한다. 또한 아이도 불안해하거나 한 곳에 오래 집중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2) 과밀 주거로 인한 불건강과 가족 등 사회관계의 갈등 유발

불량주거지의 협소한 주거면적은 친지 등 외부인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아래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주거면적이 좁기 때문에 친지나 외부인과의 접촉빈도가 많지 않다.

한편,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공급해온 공공임대주택 역시 적절한 주택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인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의 평형이 거의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에 가구별 특성 혹은 가구별 주거요소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¹³⁾. 이로 인해 과밀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가구원들간의 잦은 싸움으로 번지는 등 생활의 불편이 초래되며 어떤 경우에는 가구원의 분리가 시도되기도 한다. 하지만 민간주택 시장에서 적절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밀문제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지 않으며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고혈압, 고열 등)을 미친다.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현 거주주택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1순위로 들고 있는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면적’ 개선으로 전체의 52.5%가 응답하고 있다. 참고로 2순위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은 방의 수로 전체의 35.1%가 응답하고 있다. 즉, 1, 2순위 모두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의 과밀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강서구, 2002: 134).

이와 동시에 가족구성원에 대한 무관심, 가족구성원간의 갈등과 무질서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과밀문제를 경험하는 저소득가구 역시 이와 같은 부작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에 따라 빈곤극복의 의지가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사례 1】 노원마을 이○숙씨(46세, 여)는 명절 때 집에서 제사를 지낸다. 시누이 내외 등 친지들이 몇 분 오시기도 하지만, 집이 좁아서 밖에 있다가 그냥 가버린다. 손님들이 오는 경우는 아예 없다.

“명절때는 이쪽(집)으로 친지들이 오세요. 제사를 여기서 지내요. 손님 오시는 것도 그렇고... 온다 치더라도 바깥에 있다가 그냥 가요. 시누이나 시누이 남편 오시는데요. 바깥에 있다가 그냥 가세요. 한 걸음에...” - 이○숙씨(46세, 여 / 사례 1)

【사례 3】 우○순씨(33세, 여)는 어린 자녀 셋과 남편, 친동생 3명과 함께 18평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말이 18평이지 실평수는 11평 남짓이기 때문에 8명이 함께 사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남편과의 부부생활도 여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여동생과 자신이 옷을 갈아입거나 치장을 좀 하려면 바닥이 축축한 화장실이나 베란다, 신발장 앞에서 해야 한다. 화장품 등 동생들의 물건들은 어린 자녀들이 다 어지럽히기 일쑤이다. 출근시간이 몰리는 오전에는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한다. 급하다보니 사소한 문제로도 언쟁이 일어난다. 실수로 남의 칫솔을 쓰다가 싸움이 나면 그게 발전이 되어서 예전의 묵은 이야기들이 주제로 등장한다. 온 식구가 다 모여 식사를 하다보면 일요일에 제대로 쉬어봤으면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저마다 일주일을 회사에서 시달리다 왔는데 자신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동생들이 독립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둘째 동생이 얼마 전에 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해 카드 빚을 진 이후로 다른 동생들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느라 독립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도 되지 않는다. 더구나 세상이 하도 험해서 막내 여동생을 혼자 내보내는 것도 걱정된다. 셋째 동생은 회사에서 월세보증금을 마련해줘서 한옥 단칸방에서 살아본 적도 있지만 매월 들어가는 월세, 공과금, 가전제품 구입 등이 엄두가 나지 않아 다시 들어왔다.

“(불평불만하거나 이런건 없어요?) 불평하죠. 아무래도 공부하려고 하는데 식구들 들어와서 TV 보면 시끄럽잖아요. 집중이 안되니까... 식구들 없는 시간에 공부 될 수 있으면 시키려고 식구들 오는 시간 피해서 이제 일찍 들어오는 시간 피해서 공부시키려고 해도... 개는 개 나름대로 방과 후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거의 집 식구들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하니까 정신없고... 동생 떠들어 대고, 애기 울고, 뭐 TV 틀어서 TV 보고 막 그러면 집중은 거의... 뭐 산만하죠... 일주일을 회사에서 시달리다 왔는데 나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방이 하나 더 있어서 비디오를 본다던가 TV를 볼 생활이 안되잖아요. 그런게 싫다라고 얘기를 해요.” - 우○순(33세, 여 / 사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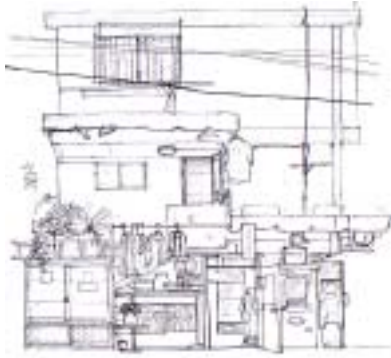
【사례 15】 비닐하우스촌 잔디마을에서 손자, 손녀, 택시운전을 하는 아들과 함께 사는 이○선씨(65세, 여)의 경우도 방 한 칸에 네 식구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 각 세대구성원들의 생활시간이 서로 다르고 특히 아이들도 커가는데 마땅한 공부방 하나 마련해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방이 하나니까. 애들(손녀: 중2, 손자: 초5) 공부하는데도 그렇고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애 아빠가 돌아오면 낮에 자야 하는데, 또 낮에 일하고 들어오면은 밤에 자야하는데 애들은 공부해야 되고 그게 참 불편해요. 아주. 방이 하나여서... 요 바깥이 부엌이거든요. 부엌을 밀고 책상이라도 하나 놓고 싶은데 그게 안되네요.” - 이○선씨(65세, 여 / 사례 15)

【사례 25】 종로 돈의동의 미인가숙박소(쭈방)에 거주하는 송○연씨(40세, 여)는 약 8년 전 남편이 둘째 아이에 대해 폭행을 휘둘러 상해치사로 구속된 후 줄곧 시댁에 살아왔는데 지난 해 결국 이혼을 하고 상경하였다. 남편의 폭력은 둘째 아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송○연씨는 물론이거니와 첫째 아이(14세, 여), 셋째 아이(11세, 남)에게도 폭행을 휘둘렀다. 때로는 아이들을 맥주병으로 때려 큰 아이는 아직도 머리에 흉터가 있기도 하다. 이로 인해 송○연씨는 이따금씩 남편의 폭행을 피해 서울로 올라온 경험을 갖고 있다. 남편이 1~2년 형기를 남겨놓고 있으나 지난 해 이혼 후 서울로 아이들과 함께 올라왔다. 그 후 아는 이의 소개로 현재의 미인가숙박소(쭈방)에 거주하고 있으나 매일 일세

1만원이 버거운 형편이다. 지금은 한 달에 65~70만원을 받고 식당에서 일하고 있으나 월급의 절반 가량이 주거비로 소요되어 아이들 둘과 함께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어려움은 방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비좁은 데다가 자녀들과 함께 그 좁은 방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이미 학교를 못나간지 1~2년이 된다. 송○연씨는 좁은 방에서 생활하는 형편에 어떻게 학교를 보내나며 탄식을 한다. 이들은 1평도 채 안 되는 공간에서 두 아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가스버너로 취사를 해가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냉장고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라 반찬은 비축해 둘 수 없다. 따라서 송○연씨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을 하러 나가면 아이들은 아침식사로 거르게 되고 만다. 이 밖에도 이러한 좁고 협소한 공간에서 과밀거주 상태에 있는 것은 장래에 대한 계획 등을 세우는 데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맨날 이렇게 조그만 방에서 있어가면서 뭘 돈이 있어 갖고 학교를 보내주나요. 아휴, 저도 걱정돼요. 학교 문제도 그렇고... (중략) ... 방이 좁으니까, 뭘 해 먹으려고 해도 복잡해서, 좁아가지고... 좁은 방에서 해 먹는 거예요. 일회용 가스렌지로... (중략) ... 그렇지 않아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먼저 전입을 시켜서 애들 학교 먼저... 근데, 방이 문제란 말여. 방이 있어야 애들 학교를 보낼 저기가 되고 그렇지. 학교는 문제가 아녀. 방이 문제지. 그 좁은 방에서 어떻게 애들 학교를 보내고 와서 놀만한...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거지. 달래 그러는건 아녀. 나는 뭐 애들 학교 안 보내고 싶어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방 문제.. 그게 문제죠.” - 송○연씨(40세, 여 / 사례 25)



[그림 V-2] 미인가숙박소(쪽방) 건물 입면도

비좁은 방안에 살림살이를 다 들여놓지 못해 물건들이 건물 외부로 나와 있다(자료: 아시아주거권연합 일본위원회 · 한국도시연구소 2000년 공동조사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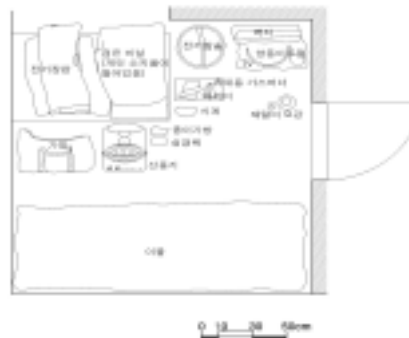
[그림 V-3] 미인가숙박소(쪽방) 건물 단면도

1층에 세면실이 한 곳 있다. 옥상에는 옥탑방이 있어 이곳에도 거주자가 있다(자료: 아시아주거권연합 일본위원회 · 한국도시연구소 2000년 공동조사팀 제공).



[그림 V-4] 미인가숙박소(쪽방) 내부 평면도①

비좁은 방에는 바깥으로 열린 창문조차 없다(자료: 아시아주거권연합 일본위원회 · 한국도시연구소 2000년 공동조사팀 제공).



[그림 V-5] 미인가숙박소(쪽방) 내부 평면도②

창 없는 방안에 물건들이 산재하다. 이불, 옷가지들은 비닐봉지에 넣어져 작은 서랍장 위로 첩첩이 얹혀있다. 방 뒤편이 개방된 채 옆방과 연결되어 있고, 이를 가리기 위해 서랍장을 두었다(자료: 아시아주거권연합 일본위원회 · 한국도시연구소 2000년 공동조사팀 제공).

다. 적절한 주거로부터의 배제

주거를 통한(through housing) 사회적 배제가 주거빈곤에 의해 야기되는 다른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를 의미한다면, 주거로부터의(from housing) 사회적 배제는 적절한 주택(adequate housing)에 대한 접근의 배제를 의미한다(Cameron & Field, 2000). 즉, 안전하고 저렴하며 질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주택에 대한 주거빈곤가구의 접근성이 어떻게 제약되는지가 '주거로부터의' 사회적 배제와 관련한 논의의 초점이라 할 수 있다.

주거로부터의 사회적 배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여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부터의 배제와 저소득층이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는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의 부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상보적인 관계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의 부족을 보완하고 이들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이 공공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으며, 역으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가지 유형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둘 사이의 불균형이 존재할 경우 적절한 주거에 접근하지 못하는 주거빈곤가구는 양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주거빈곤가구의 배제 과정과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의 감소경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주거로부터의 사회적 배제' 논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하에서는 사례분석과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주거로부터의 사회적 배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1) 공공임대주택의 부족

일반적으로 주거빈곤가구는 대개 월소득에서 주거비(임대료)가 차지하는 비

율이 25~30%를 넘어서거나, 정부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우선 월소득대비 임대료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가구를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주거빈곤가구라고 간주할 때, 서울과 수도권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가구 중 이에 해당하는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200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의 경우 18.3%, 수도권 중소도시의 경우 12.4%에 해당하는 가구들이 월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7>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주거빈곤가구 비율 (단위: %)

구분	1993년 2월	1998년 6월	1999년 6월	2000년 11월	2001년 8월
서울	16.1	53.0	18.8	24.9	18.3
수도권 중소도시	6.5	47.6	15.3	11.0	12.4

자료: 대한주택공사(2002: 165)에서 발췌

또한 정부가 고시한 최저주거기준을 중심으로 주거빈곤가구를 파악해보면, 그 수치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표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침실수 미달여부와 전용부엌 및 화장실 기준 미달여부를 중심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규모를 파악한 결과인데, 전체 가구의 23.1%인 330만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빈곤가구로 드러났다.

<표 V-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총가구수 (천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천가구)			
	총계	침실수 미달가구	전용부엌 및 화장실 기준 미달가구	중복미달가구
14,312 (100.0%)	3,306 (23.1%)	2,090(14.6%)	744(5.2%)	472(3.3%)

자료: 박신영(2002: 172).

이상의 수치들이 보여주듯이 우리 사회에서 주거빈곤가구는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이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서 적절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그 중 하나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분양되지 않고 장기적인 재고로 활용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아래 표에 나타나듯이 30만호도 채 되지 않는다. 330만에 달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소요가구가 165만여 가구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에서(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2), 현재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매우 적은 양이다.

<표 V-9>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2002년 말 기준)

계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재고비율
288,733호	190,077호	87,828호	10,828호	2.34%

주: 2002년 현재 총 주택수 12,358천호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빈곤가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민간임대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미인가숙박소(쪽방) 등 불량주거지에서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곧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부족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거빈곤가구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2) 가구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한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거빈곤가구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요인은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부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개별가구의 특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빈곤가구들에게 크게 선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례 23】 부부가 모두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교씨(38세, 남) 부부는 결혼 후 어렵게 전세집을 구해 2년을 살다가 이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습기가 많고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씨 부부는 아파트를 구해보기로 하고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보았다. 수급자라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몇 번 있었으나, 미리 가보니 식탁 놓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이들이 생활하기에는 너무 좁았다. 자신들이 살 집은 아니라는 생각에 결국 이씨 부부는 영세민주택용자를 받아 15평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다.

위의 사례는 장애인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어떻게 배제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장애인 가구에 대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만 주어졌을 뿐,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미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장애인가구 역시 이러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¹⁴⁾.

“휠체어가 다니기에 거실이 너무 좁다. 그리고 화장실에는 아예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는다. 처음 이사 와서 좁은 것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 휠체어에 앉아서 찌개를 들고 가다가 휠체어가 방향을 틀지 못해서 찌개를 그만 다리에 쏟았다. 그래서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 - 독거장애인

“목욕욕조가 없어서 장애아들을 씻기기 어렵다. 공중목욕탕에 혼자 갈 줄도 모르고 같이 데려갈 사람도 없다. 나이가 많으니 내가 데려갈 수도 없고...” - 장애아들을 둔 실직모자 가정

“내 신체구조에 맞게 씽크대를 개조할 수가 없다. 직접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임대아파트라서 마음대로 개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씽크대를 사용하려면 하루에도 수백번 의자 위

14) 아래의 인용문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의 연구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에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한다. 의자를 짚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어깨가 너무 아프다. 밥하고 설거지하는 등의 일상생활 자체가 너무 힘이 든다.” - 장애인부부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이 없는 일반가구에게도 입주를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다음의 표에서도 알 수 있지만 대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1~15평형 주택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실평수는 거의 10평 내외인지라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표 V-10>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전용면적

구분	영구임대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주거환경임대
전용면적	7~12평	7~15평	8~10평	7평

주1: 위 수치는 서울특별시개발공사가 직영관리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임.

주2: 공공임대는 재개발임대주택과 주거환경임대주택을 제외한 50년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을 지칭함.

자료: 서울특별시개발공사, 「2003년 업무현황」;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3: 19)에서 재인용

실례로 재개발지역에 살던 세입자 중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면적이나 시설의 문제 때문에 주거대책비를 받고 전월세집을 구해 이주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⁵⁾.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고 가봤어요. 그런데 평수가 너무 적어서 포기했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았고 쿿구멍만한 방 2개가 있는데 갈 수가 있어야지. 화장실도 좁아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겠고 부엌을 보니까 손바닥만한 곳에 가스렌지를 올려놓고 사니...” - 신림7동 재개발지역 세입자

“공공임대주택에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9평 남짓한 방에 좁은 거실이 맘에 안 들어요.

15) 아래의 인용문은 한국도시연구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3)의 연구보고서에서 인용했다.

아이들이 점점 크고 있는데 공부할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 장남이라 제사도 지내고 손님도 올텐데 이렇게 집이 좁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 하월곡3동 재개발지역 세입자

이렇듯 정부가 주거빈곤가구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실상은 입주가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거의千篇일률적인 평형과 시설로 공급되다보니 주거소요가 큰 저소득가구임에도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주거빈곤가구가 배제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3) 가구소득과 무관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계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 역시 주거빈곤가구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택유형별로 상이하게 산정되고 있는데, 급지별로 임대료가 책정되는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이 건설원가와 건물유지와 관련된 비용을 토대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공공임대주택의 입지가 좋지 않더라도 건설관련 비용이 많이 소요되면 임대료가 비싸게 책정되고, 토지가격이나 자재비가 상승하는 시기에 건립된 경우에도 임대료가 높게 책정된다. 이처럼 입주자들이 느끼는 편익이나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임대료가 산정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입주자들간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남원석, 2003).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가구소득이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임대료 산정방식 하에서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가 매월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이 입주하는 50년공공임대주택이나 정부가 새로이 공급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1,000만원이 넘으며 임대료 역시 12~13만원 내외이다. 여기에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월 25~30만원을 임대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해야 하므로 소득구조가 불안정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비부담은 상당한 수준에까지 이른다.

<표 V-11>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임대료 현황

구분		규모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원)
영구임대주택	중계9(강북)	12평	1,870	33,430
		13평	2,221	45,640
	등촌4(강서)	12평	1,781	35,540
		13평	2,115	42,210
	수서(강남)	12평	1,781	35,540
		13평	2,115	42,210
50년 공공임대주택	등촌6(강서)	17평	10,476	117,890
	신림1(관악)	17평	10,603	132,270
		18평	10,873	135,140
국민임대주택	수원 정자	22평	14,276	145,240
	안산	20평	14,000	100,000
	용인 마평	15평	14,180	128,800
		19평	17,750	170,900

자료: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2001: 108)을 보완

게다가 매년 5%의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법 제7조,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매년 5%씩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림2단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00년 1,300만원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16만원의 임대료가 2002년에는 임대보증금이 1,400만원 이상 인상되었고, 임대료도 17만원이 넘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의 주거비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¹⁶⁾.

<표 V-12> 신림2단지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 증가 추이

구분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원)
2000년	13,319,000	161,200
2001년	13,984,000	169,260
2002년	14,674,000	177,020

자료: 한국도시연구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3: 98)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주거빈곤가구의 주거비지불능력(affordability)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소득이 매우 낮아 안정적인 주거가 절실히 필요한 가구보다는 소득이 그보다 약간 높은 가구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계층역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 16) 아래는 신림7동 재개발지역에서 50년공공임대주택(재개발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주민들에 대한 면접조사(2003년 6월) 내용 중 일부이다(한국도시연구소 · 시정개발연구원, 2003).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알 수 있다.
-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산 너머 시흥2동 벽산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 거기는 2년이 지나도 보증금과 임대료가 안 오르는데 여기는 매년 5%씩 오르는 거예요. 임대료가 이 정도로 비싼 줄 정말 몰랐어요. 900만원을 빚내서 들어왔는데...” - 권○희씨(45세, 여)
- “이사할 때, 어떤 주민들은 임대료가 비싼 공공임대주택에 왜 들어가냐고 말하기도 했어요. 우리들을 보고 바보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 때는 이 선택이 맞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막상 입주하고 나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 가장 걱정이더라구요.” - 이○림씨(32세, 여)
- “처음 입주 당시 임대보증금이 1300만원이었고 임대료는 9% 이율을 적용하여 부과했다가 지금은 8%를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만을 갖고 항의하는 이유는 은행금리가 4~5%정도인데 임대료를 8% 이율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공공임대주택에서 살면서 저축도 좀 해야 하는데, 매년 인상하는 임대료를 계속 메우다 보니 우리 같은 사람들의 경제적 여건이 향상될 수 있겠어요?” - 임○태씨(50세, 남)
- “이웃에 사는 72세된 어떤 노인은 처음에 ‘나는 매일 죽어도 여한이 없어. 세상 살다보니 이런 데가 다 있네. 여기로 돌리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화장실 물이 쭉쭉 내려가고 보일러만 키면 발이 후끈후끈하고... 난 내일 죽어도 이런 데에서 살아봤으니 여한이 없어’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석 달 후에 만났더니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임대료 때문에.” - 김○식(70세, 남)

령기 때문에 주거소요가 크지만 주거비지불능력이 매우 낮은 가구는 원천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사례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셋방이나 불량주거지에 살고 있는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주거빈곤 상태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례 17】 손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이○자씨(69세, 여)는 30년 동안 상암동 재개발지역에서 살다가 철거가 이루어지면서 4년 전에 지하셋방으로 이주했다. 몇 달 전에는 서울시개발공사로부터 상암동 재개발지역에 살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추가 입주 의사를 묻는 전화가 왔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재개발사업시 받았던 주거대책비를 반환하고 별도로 임대보증금을 마련해야 했기에 2,000만원이 필요했다. 더구나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더라도 매월 20만원이 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빌딩청소일을 하면서 버는 월 52만원으로 근근히 손자와 생활하는 신씨로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입주를 포기했다.

【사례 1】 불량주거지인 노원마을에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거주하는 이○숙씨(46세, 여)는 트럭을 몰며 겨울에는 국화빵 장사를, 여름에는 칼국수 장사를 한다. 하루 순수입은 평균 5~6만원 정도지만 매일 장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이씨의 남편 역시 겨울에는 이씨의 일을 돕다가 여름철에만 잠깐 중국요리점에서 배달일을 한다. 요새는 배달일에 체력의 한계를 많이 느껴서 아파트 보일러실에 취직한 적도 있었지만 24시간 교대근무에 보수가 80만원이라 6개월만에 그만두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구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했지만 낙방했다. 부부 모두 청소일과 같이 고정적으로 급여가 나오는 안정된 일자리를 선호하지만 원하는 임금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부채는 1,600만원 정도 있으니, 지금의 상황에서 노원마을을 벗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4)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의 부족

공공임대주택의 배제논리가 이와 같다고 했을 때, 민간임대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되어서 공공임대주택이 포괄하지 못하는 저소득가구의 주거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주거빈곤가구가 소득수준에 적절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역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의 부족을 잘 드러내주는 예는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서 찾을 수 있다. 전세가격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1999년 이후에는 전국평균 10% 이상의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는데, 서울 등 주거여건이 좋은 일부 지역의 경우 IMF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한 곳도 나타났다(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2002; 건설교통부·대한주택공사, 2003).

<표 V-13> 주택전세가격의 전국 변동률 추이 (단위: %)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평균	16.8	1.9	7.5	2.4	4.6	3.6	6.5	0.8	-18.4	16.8	11.1	16.4	10.1

자료: 국민은행, 「도시주택가격동향」; 건설교통부·대한주택공사(2003: 45)에서 재인용

한편 주택공급 가운데 저소득층의 주거소요에 부합하는 18평 미만의 소형주택의 비율은 2001년 이후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1998년 소형주택의 무건설제도의 폐지 이후 대체로 감소추세에 있다. 또한 18평 미만의 소형주택의 경우 중대형주택보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소형주택에 대한 임차수요가 중대형주택보다 많기 때문이며, 공급측면에서는 소형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저조한 데다 저금리로 인한 전세의 월세전환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세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건설교통부·대한주택공사, 2003).

<표 V-14> 신규 주택건설허가 중 소형평형 주택수 및 비율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8평 이하 주택수(천호) (%)	259 (43.5%)	140 (45.7%)	140 (34.5%)	132 (30.4%)	221 (41.7%)	236 (35.4%)

자료: 건설교통부(2001; 2003)를 정리

<표 V-15>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

구분	2000년 11월		2001년 8월		2002년 8월	
	18평 미만	18평 초과	18평 미만	18평 초과	18평 미만	18평 초과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65.4	55.4	68.1	61.2	60.7	58.1

자료: 국토연구원(2002: 49)에서 발췌

월세의 경우도 보증부 월세 및 (순수)월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02년에는 신규임대차계약 중 47.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세 거주 세입자의 경우 금융기관 금리와 비교하여 월세지불에 따른 현금부담이 많아 실질적인 주거비부담이 증가하고 가처분소득의 감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표 V-16> 연도별 월세시장 동향 (단위: %)

구분	2001. 12	2002. 1	2002. 2	2002. 3	2002. 4
전세	58.0	55.8	53.5	54.5	52.7
보증부월세	39.1	40.4	42.4	41.2	42.6
(순수)월세	3.0	3.7	4.0	4.2	4.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건설교통부 · 국토연구원(2002: 11)에서 발췌

이처럼 소형주택 혹은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은 다르게 말하면 저소득층이 주거비를 저렴하게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이 양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주거소요가 큰 주거빈곤가구들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논리로 작동함으로써 주거수준의 하향이동과 같은 주거빈곤을 더욱 악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라.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서 주거빈곤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서 주거빈곤에 관한 논의는 고용, 건강,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로 인해 야기되는 주거빈곤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현재의 열악한 주거(poor housing) 자체가 사회적 배제의 결과라고 인식하는 가운데, 열악한 주거상태를 초래한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사회적 배제에 따른 주거빈곤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주거빈곤화 과정에 개입하는 여러 요인들을 중심으로 각 사례들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1) 소득원 상실에 따른 주거빈곤화

가구의 소득원 상실은 현재의 주거생활을 위태하게 만든다. 특히 저소득가구일수록 소득원 상실에 따른 영향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는데, 이는 별도의 자산을 축적하고 있지 않아 생계유지를 위해 기존의 주거비 규모를 줄이거나 주거비를 전용하여 생계비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결국 '전세 → 월세 → 불량주거지'로의 불가피한 주거하향이동을 수반하게 된다. 실제로 2002년 비닐하우스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도시연구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닐하우스촌으로 이주한 배경으로

사업실패, 실직 및 일거리 감소,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재산탕진 등 소득원 감소 혹은 소득감소를 꼽은 주민들이 전체 응답자의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례 역시 이와 같은 소득원 상실과 주거수준 하락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표 V-17> 비닐하우스촌으로 이주한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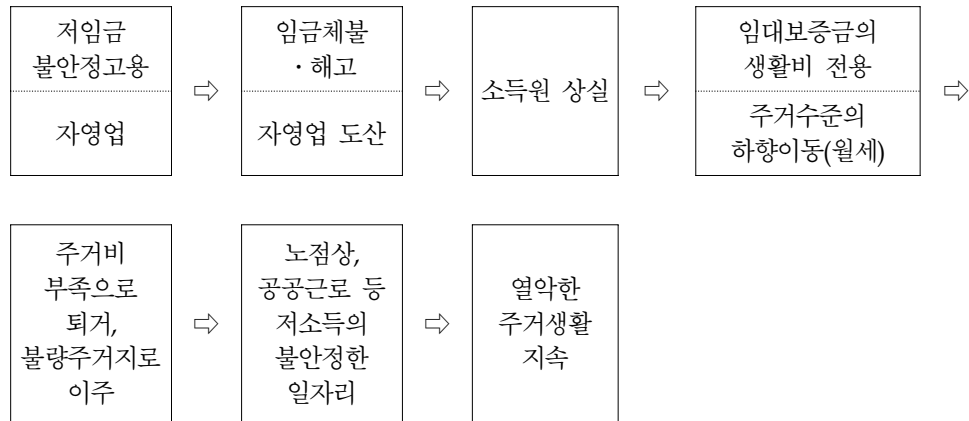
이주배경	응답자 수(명)	비율(%)
직전 주거지가 재개발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바람에	28	16.1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로 재산을 탕진해서	7	4.0
실직을 당하거나 일거리가 줄어서	9	5.2
사업실패로	37	21.3
집세가 오르거나 집주인이 방을 비워달라고 해서	25	14.4
집안 사정상 분가해야 했으므로	20	11.5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8	4.6
기타	40	23.0
계	174	100.0

자료: 한국도시연구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 79)

【사례 1】 이○숙씨(46세, 여)는 1999년 대치동에서 상계동 노원마을로 이주하였다. 노원마을은 의정부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서울의 최북단지역으로, 35년 이상 된 3~8평 규모의 무허가건물이 밀집하고 있는 불량주거지역이다. 이○숙씨가 노원마을로 이주하게 된 이유는 IMF 경제위기와 관련이 깊은데, 그 무렵에 빌딩청소일을 하던 이씨의 월급이 체불되고 식당배달일을 하던 남편도 직장을 잃게 되었다. 결국 2,600만원짜리 전세집을 담보로 집주인에게 조금씩 생활비를 빌리다가 전세보증금을 거의 다 날리고, 1999년 보증금 100만원에 10만원하는 월세집을 구해 노원마을로 이주하였다. 지금의 집은 전세 1,000만원짜리 집으로 네 식구가 살기에는 너무 좁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며 불량주거지라 화재위험이 상존한다.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온수도 나오지 않는다.

【사례 20】 김○숙씨(51세, 여)는 현재 남편(53세)과 20대 초반의 아들, 딸과 함께 송파구에 소재한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고 있다. 본래 김씨 가정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다. 남편과 1979년 결혼 후 집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1992년에는 남편이 직장을 퇴직하고 전자제품대리점을 개업했다. 하지만 1995년 전자제품대리점이 부도를 맞으면서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부산의 시댁근처로 이주했다. 부산에서는 보증금 200만원짜리 월세집에서 살면서 김씨가 파출부, 식당일 등을 했는데, 생활이 여의치 않아 보증금을 거의 다 날리고 2000년에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도저히 집을 구할 수 없어 친척소개로 지금의 비닐하우스촌으로 들어왔다. 처음에는 월세 10만원짜리 방 하나를 구해서 살다가 100만원을 마련해 비닐하우스 한 채를 구입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다. 현재 김씨 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지정이 되어 월 20만원을 받고 있으며 김씨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동사무소에서 청소일을 하며 받는 4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위의 두 사례 공히 임금체불, 해고, 자영업 도산 등으로 소득원의 상실을 경험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생활비로 전용하며 기존의 주거생활을 유지하다가 이마저 다 날리고 종국에는 불량주거지로 이주하거나(이씨 사례), 전셋집에서 월세방을 거쳐 또 다른 불량주거지인 비닐하우스촌으로 이주하는 일련의 주거하향과정을 경험하였다(김씨 사례). 그런데 이들 가구가 자력으로 불량주거지에서 벗어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씨 가족의 경우 가급적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얻으려는 시도를 해보기도 하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노점상을 계속 하고 있으며, 김씨 가족의 경우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와 공공근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량주거지로 이주한 이후 계속되는 고용의 불안정과 나아지지 않는 소득 수준으로 인해 불량주거지에서 벗어나 적절한 주택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 따라서 이들 가구는 소음, 먼지, 위생, 재해위험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열악한 주거생활을 장기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사례 가구의 주거빈곤화 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V-6] 소득원 상실에 따른 주거빈곤화(사례 1·20)

2) 신용불량으로 인한 주거빈곤의 지속

2002년 하반기 이후 급증한 신용불량자 수는 현재 380만명을 넘어섰다. 신용불량자 가족의 부모, 형제, 친지, 보증인 등 주변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신용불량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신용불량은 한 가구의 파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 아닐 수 없는데, 특히 주거빈곤과 신용불량이 연계될 경우 신용불량은 해당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적절한 주거생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들거나 주거상향을 위한 저소득가구의 시도를 무위로 돌려버리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래의 사례들을 통해 신용불량과 주거빈곤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사례 3】 우○순씨(33세, 여)는 남편, 3명의 자녀, 3명의 동생과 함께 10평도 채 되지 않는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친정집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영구임대주택을 제공받은 후 친정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영구임대주택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 좁은 집에서 8식구가 함께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돈을 모아서 영구임대주택에서 벗어나 좀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그 바램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얼마 전 둘째 동생이 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4,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동생들과 자신이 빚보증을 서고 빚을 대신 상환하느라 또다시 신용카드를 만들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건설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남편의 100만원 남짓한 월급만으로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졌다. 잠깐 동안이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전기를 끊어버려 놀라기도 했다. 결국 영구임대주택을 벗어나 더 넓은 집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우씨의 바램은 요원한 것이 되어 버렸다.

【사례 15】 이○선씨(69세, 여)는 택시운전하는 아들(48세), 손자(11세), 손녀(15세)와 함께 잔디마을이라 불리는 서초구의 비닐하우스촌에 살고 있다. 이씨가 아들네와 함께 살게 된 것은 8년전 아들이 며느리와 이혼하면서부터이다. 아들 내외는 이웃의 소개로 강남역에서 포장마차를 시작하게 되면서 1990년 잔디마을로 이주했다. 주거비를 아껴 포장마차에 돈을 투자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1년만에 포장마차 장사를 접어야 했다. 그 후 아들 내외의 불화가 심해져 중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은 헤어진 부인을 찾ند다고 2~3년 동안 집을 나와 있었다. 그동안 이씨가 손자, 손녀를 보살폈고, 집으로 돌아온 이씨의 아들은 택시운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씨의 아들이 집을 나와 있는 동안 3,000만 원 상당의 카드빚으로 월급이 가압류된 상태로 지금은 월 30만원 정도의 소득밖에 없다. 겨울에도 기름보일러를 가동시킬 돈이 없어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이다. 지금의 집은 방이 하나인 데다가 화재위험도 있어서 어떻게든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가고자 청약저축도 들어봤지만, 경제상황이 어려워 겨우 한 번 납입했을 뿐이다.

우씨 가족의 사례는 가구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일상적인 주거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경우이다. 특히 가구원들의 연쇄적인 신용불량은 우씨 가족의 경제사정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이라면 가족 혹은 친지에 의해 신용불량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겠지만, 가구원들의 소득이 낮은 우씨 가족은 그렇지 못했다. 가구원 한 명의 카드빚을 해결하기 위해 거의 대부분의 가구원들이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결국 임대료와 관리비가 100만원 넘게 연

체되면서 어린 자녀들이 살고 있는 우씨의 집에 단전조치가 취해지는 사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우씨 가족은 카드빚과 신용불량이 해결되기까지는 과밀 가구의 불편함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으로, 신용불량 때문에 주거빈곤이 지속되는 경우라 하겠다.

이씨 가족도 우씨 가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카드빚으로 인해 월급이 가압류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주거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례이다. 적어도 월급에 대한 가압류가 없었다면 어떻게든 주거상황에 대한 시도를 할 수 있었을 테지만, 지금으로서는 카드빚과 가압류 때문에 어떠한 주거상황 시도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이씨 가족의 경우 주거빈곤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단순히 카드빚에 따른 신용불량으로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자영업 실패, 이혼에 따른 가족해체와 가족부양자의 가출문제가 얹혀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3년 가출신고 된 20세 이상 남녀는 모두 47,254명으로 1998년 25,170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더구나 성인의 가출원인 중 24.7%가 가정불화와 가난인 것으로 드러났다(중앙일보, 2004년 3월 7일자; 경찰청 내부자료, 2004). 이처럼 가난, 가정불화 혹은 가족해체, 배우자의 가출 사이에는 일정정도의 상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씨의 아들 역시 여기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가출은 불안정한 경제활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가출당사자는 생활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씨의 아들이 가출한 동안 약 3,000만원의 은행빚을 지게 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씨 가족이 현재 경험하는 주거빈곤은 신용불량에 따른 은행빚이 직접적인 원인이겠지만, 여기에는 자영업 실패, 가족해체와 가족부양자의 가출이라는 요인이 작용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두 사례의 주거빈곤화 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V-7] 신용불량으로 인한 주거빈곤의 지속(사례 3·15)

3) 재개발로 인한 주거빈곤화

그동안 재개발사업의 일차적인 목표는 원거주민의 재정착과 주거수준의 향상보다는 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이익의 창출에 있었다. 1960년대 이후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든 저소득층의 저렴한 집단주거지가 재개발사업에 의해 해체되고 저소득가구들이 점차 지하셋방, 비닐하우스, 미인가숙박소(쪽방) 등의 열악한 주거로 이주하는 일련의 과정은, 재개발사업의 혜택이 원거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무엇보다 재개발사업은 원거주민 중 저소득가구의 주거비를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이는 재개발사업으로 주변의 임대료가 동반상승하게 되면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가구들은 소득에 비해 많은 주거비를 지출하거나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해 부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대개 저소득가구의 경제활동이 주로 일용노동과 같은 불안정한 저임금노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크게 변하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부채와 지출의 증가는 저소득가구의 가정경제를 크게 악화시킨다. 실례로 아래 표와 같이 재개발사업 이후 신림7동 재개발지역의 세입자가구들은 소득의 변화없이 부채와 지출, 주거비의 증

가를 경험하고 있다.

<표 V-18> 이주 전후 신림7동 거주가구의 소득변화

(단위: 가구 수, ()안은 비율)

구분	감소	변동없음	증가	계
월소득변동	22(21.0)	71(67.6)	12(11.4)	105(100.0)

자료: 신림종합사회복지관(2002: 30).

<표 V-19> 이주 전후 신림7동 거주가구의 총부채 비교

구분		평균(만원)	표준편차	t	p
전체	이주 전	597.69	1237.11	-3.530	0.001**
	이주 후	960.04	1261.24		

** p<0.01

자료: 신림종합사회복지관(2002: 26)에서 발췌

<표 V-20> 이주 전후 신림7동 거주가구의 월지출 비교

이주한 주택	구분	평균(만원)	표준편차	t	p
공공임대주택	이주 전	60.61	36.77	-6.347	0.000*
	이주 후	81.14	42.62		
민간임대주택	이주 전	57.36	53.12	-4.698	0.000*
	이주 후	71.91	60.92		

* p<0.001

자료: 신림종합사회복지관(2002: 32)에서 발췌.

<표 V-21> 이주 전후 신림7동 거주가구의 주거비 변화 (단위: %)

이주한 주택	감소했다	변함없다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	2.6	14.5	82.9
민간임대주택	6.7	1.7	91.7

자료: 신림종합사회복지관(2002: 33)에서 발췌

더불어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저렴임대주택의 부족은 저소득가구들의 주거하
향을 유도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가구원수 등 가구특성에 적합한 주택을 구하
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서 집을 구하다보니, 과밀가구의 특성을 보이
거나 지하셋방과 같은 열악한 주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신림7동 재개발지역에 살던 세입자가구들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방의 개수는 이주 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2002)의 조사에 따르면, 지하셋방으로 이주한 주민들은 민
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주민들의 4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
의 수급자 가구임이 확인되었다.

<표 V-22> 이주 전후 신림7동 거주가구의 주택 방 수 비교

구분		평균(개)	표준편차	t	p
전체	이주 전	2.12	0.58	3.067	0.003*
	이주 후	1.92	0.59		

* $p < 0.01$

자료: 신림종합사회복지관(2002: 22)에서 발췌.

그런데 이처럼 재개발지역의 저소득가구의 주거수준이 재개발사업 이후 더
욱 악화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주거보장대책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입
자가구들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주거대책비를 받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지만, 앞 장에서도 언급했듯이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소요의 충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주민들은 주거대책비를 선택한다. 하지만 다음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거대책비는 절대적으로 액수가 적기 때문에 500만원 남짓한 임대보증금을 합하더라도 적절한 민간임대주택을 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표 V-23> 신림7동 재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 주거대책비 지급 기준

가구원수	산출내역	금액(원)	비고
1	(1,462,000-281,400)×3개월	3,541,800	- 1인시 2인 평균가계지출비에서 1인당 평균비용 공제 - 9인 이상시 8인 평균가계지출비에서 8인 초과 가족수에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비용
2	1,462,000×3개월	4,386,000	
3	1,789,000×3개월	5,367,300	
4	2,207,000×3개월	6,621,300	
5	2,379,000×3개월	7,137,900	
6	2,578,000×3개월	7,762,500	
7	2,868,900×3개월	8,606,700	
8	3,150,300×3개월	9,450,900	
9	(3,150,300+281,400)×3개월	10,295,100	

주: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 3개월분으로 금액산정

자료: 신림종합사회복지관(2002: 45).

이상에서 재개발사업은 저소득가구의 주거비를 증대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더욱 열악한 주거생활을 강제하는 기제로 작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빈곤을 심화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는 이러한 재개발사업의 배제논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준다.

【사례 15】 이○자씨(69세, 여)는 지금 11살 손자와 함께 수색동 지하셋방에서 살고 있다. 예전에는 상암동 재개발지역에서 30년을 살았지만, 재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4년 전

에 이 곳 지하셋방으로 이주하였다. 상암동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았는데, 손자가 4살 때 이혼하고 아들마저 집을 나가게 되면서 7년 전부터 손수 빌딩청소일을 하면서 매월 받는 52만원으로 손자를 키우고 있다. 상암동에서는 처음에 보증금 100만원짜리 월세방으로 시작해서 이주 직전에는 전세 700만원짜리 집에서 살았다. 재개발사업이 시작되자 주거대책비로 나온 500만원과 전세보증금을 합쳐 집을 구하려 했다. 하지만 대개 2,000만원은 가지고 있어야 집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지상의 주택에서 살려면 4,000만원은 있어야 했다. 집을 못 구해 난감해하던 중 다행히 아는 사람의 소개로 전세 1,500만원짜리 지하셋방을 구해 이주하였다. 상암동에서 살 때도 가끔씩 비가 새곤 했지만 지금의 지하셋방은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고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많이 피는 등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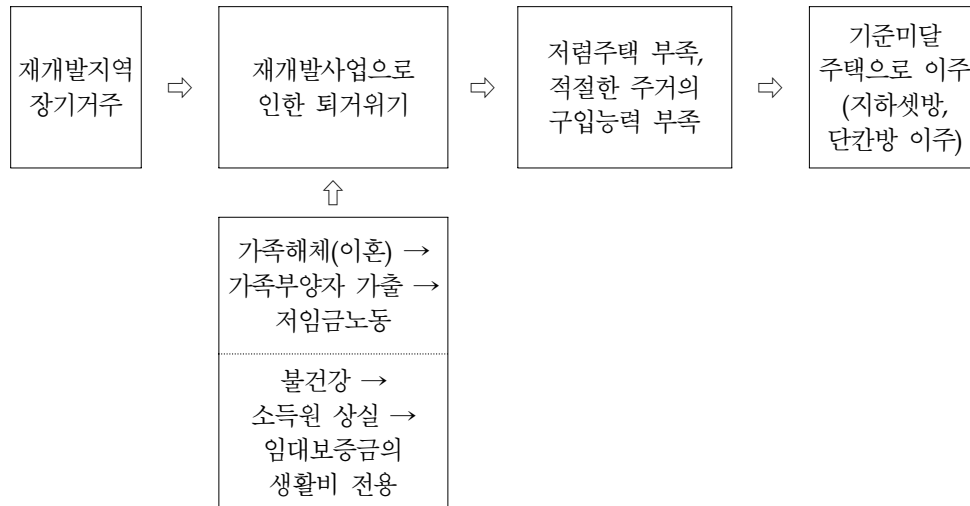
【사례 10】 권○진씨(52세, 남)는 젊은 시절 태백에서 광부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과 퇴직금을 노조위원장 선거에 쏟아부었다가 선거에서 떨어진 후 1986년 어머니와 상경했다. 상경한 후 구로구에서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14만원하는 방 두칸짜리 집을 구하고 일당 7만원을 받으며 건설일용노동에 종사해오다 1995년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그 이후 3년여 동안 매년 한 달에서 두세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료비와 생활비로 300만원의 보증금을 모두 날렸다. 남동생의 도움으로 그럭저럭 생활을 해오다 얼마 전 집이 철거되면서 이주비 500만원을 받고 인근 동네로 이사했다. 새로 이사한 집은 보증금 300만원에 월 18만원의 반지하 월세방인데, 가진 돈으로 인근에서 예전 집처럼 방 두칸짜리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 방 하나짜리 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중풍에 걸린 어머니와 함께 방을 쓰고 있으며, 게다가 공동화장실이라 거동이 쉽지 않은 권씨 가족으로서는 새로 이사한 집이 불편하기만 하다.

이씨 가족의 경우 30년 동안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다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지하셋방으로 이주한 사례이다. 이씨가 열악한 주거형태인 지하셋방으로 이주한 것은 주거대책비와 전세보증금을 합한 돈으로는 도저히 적절한 주택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재개발사업은 이씨 가족의 주거빈곤을 촉진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음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아들 내

외가 이혼한 후 아들이 가출함으로써 손수 가게를 책임져야 했던 상황도 주거빈곤화의 주요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들 내외의 가족해체가 없었다면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주거빈곤화의 충격을 어느 정도는 완화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곧 가족해체와 가족부양자인 아들의 가출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신씨 가족의 주거빈곤화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권씨 가족 역시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주거수준의 하향을 경험하고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이씨 가족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거빈곤화를 촉진하는 요인은 상이하다. 이씨의 경우 가족해체와 가출이 그것이었다면 권씨의 경우 불건강에 따른 소득감소가 재개발사업의 효과와 연계되어 주거빈곤을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소득원 자체가 상실되었고, 그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생활비로 전용하는 일련의 상황에서 권씨 가족은 재개발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수단도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이상의 사례들은 건강, 가족관계, 고용 등의 영역에서 재개발사업의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저소득가구일수록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거빈곤화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두 사례의 주거빈곤화 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V-8] 재개발로 인한 주거빈곤화(사례 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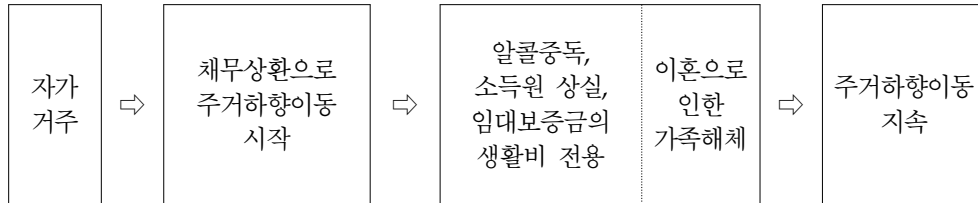
4) 불건강과 가족해체로 인한 주거빈곤화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는 재개발사업과 같은 가구 외적인 요인이 없더라도 불건강과 가족해체와 같은 가구 내적인 요인만으로 주거빈곤화 과정이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에서 수 차례 다룬 바 있지만, 불건강은 소득의 감소 혹은 소득원의 상실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가족해체 역시 가족부양자의 가출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지불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할 경우 저소득가구가 겪는 주거빈곤의 정도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사례 2】 강○희씨(20세, 여)는 현재 동생 둘과 함께 살고 있다.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자녀들과 따로 살고 있다. 강○희씨 가족은 10년 전 전남 신안에서 상경하여 외가집의 도움으로 한옥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예전에 농협에 채무가 있어 집을 팔고 방2개 짜리 월세집으로 이사했다. 당시 아버지가 알콜중독 증세를 보여 소란을 참지 못한 집주인으

로부터 쫓겨나야 했다. 그 후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8만원하는 집으로 이주하였지만, 간간이 건설일용노동을 하며 술로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의 수입으로는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계속 월세가 밀리면서 보증금을 까먹게 되자 집을 비워주어야 했다. 그 후 밖에 나가 사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강씨 형제들과 아버지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5만원짜리 단칸 옥탑방으로 이사했다. 그 사이에 아버지는 정신보건센터에 강제입원되어 몇 달 입원하기도 했지만 알콜중독과 가정폭력은 그칠 줄 몰랐다. 이에 집주인은 방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으며, 강씨는 동생들과 의논한 끝에 아버지와 따로 살기로 결정하고 강씨 형제들은 보증금 400만원에 월 18만원짜리 단칸방을 얻어 살게 되었다. 현재 여행사에서 근무하며 월 70만원을 버는 강씨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강씨의 사례는 불건강과 가족해체가 결합되어 주거빈곤화를 촉진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미 상경 후 채무상환 때문에 자가에서 월세로 주거하향이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주거하향은 강씨의 아버지가 알콜중독 증세를 보이면서부터이다. 알콜중독이 계기가 되어 부모의 별거가 시작되었고 강씨 아버지의 경제활동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득이 감소했고 결국은 임대보증금을 생활비로 전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 집주인들의 퇴거요구는 강씨 가족의 빈번한 주거이동을 강제했다. 때로는 별거 중인 어머니의 도움을 얻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상경 후 자가에서 지금의 단칸방으로 이주하기까지 강씨 가족이 경험한 일련의 주거하향이동은 결국 가구원의 불건강과 가족해체라는 요인에 의해 비롯된 것이었다. 두 요인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주거빈곤의 악화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두 요인이 결합함으로써 강씨 가족의 주거비지불능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셈이다. 강씨 사례의 주거빈곤화 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V-9] 불건강과 가족해체로 인한 주거빈곤화(사례 2)

5)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한 주거빈곤화

장애인가구와 주거빈곤의 관계는 적절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뤄볼 수 있다. 우선 장애인가구의 경우 적절한 주택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다. 아래의 사례에서도 드러나겠지만, 부동산중개업자나 임대인들이 장애인가구에게 세를 놓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장애인가구들은 보다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적절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한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한 것으로, 저소득 장애인가구일수록 도배, 장판, 보일러수리 등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주거환경개선이 자력으로는 쉽지 않으며, 주택 내에서의 독립된 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혹은 주택내부의 개조 역시 집주인의 동의와 양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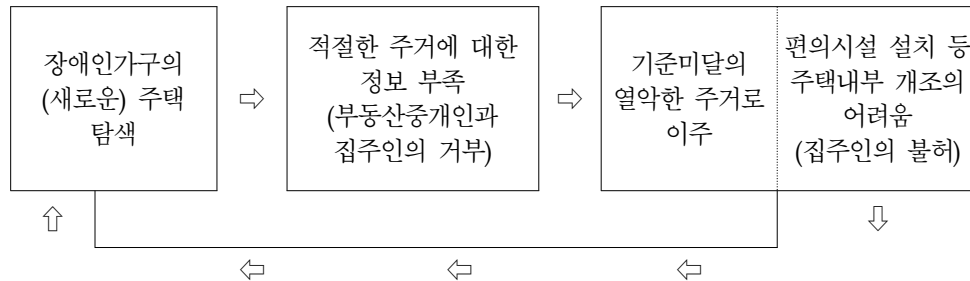
따라서 소득이 낮은 장애인가구는 유사한 경제수준을 가지고 있는 일반가구에 비해 적절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래의 사례와 같이 부부 모두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의 측면에 있어서 심각한 배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적절한 주거로부터 장애인가구의 배제는 주거빈곤화를 초래하는 핵심적인 원인이 된다.

【사례 23】 이○교씨(38세, 남)는 지체장애 1급인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1997년 뇌성마

비 장애를 가진 부인을 맞아 결혼하였다. 그런데 신혼집을 구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일단 부동산에서 이들을 반기지 않았으며 집주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계단이 있는 집이 많을 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쓰면 집이 손상된다고 거절하는 집주인들도 있었다. 어렵게 이씨 부부가 구한 집은 2,000만원 전셋집으로, 사방이 다른 집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햇빛이 잘 들지 않고 찬바람이 잘 들어왔다. 여름에는 방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와 곰팡이가 많이 생겼고 벽에서는 물이 흐르기도 했다. 이동에 필요한 손잡이 등을 설치하려 했지만 전셋집이라 마음대로 개조할 수도 없었다. 이씨 부부는 결국 2년만에 이주를 결정했고, 영세민주택용자를 받아 15평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다. 물론 이 아파트를 구하는 데에도 예전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씨 가족의 사례는 앞에서 언급한 장애인가구의 배제의 두 측면, 즉 적절한 주택에 대한 정보 부족, 주택내부 시설개조의 어려움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씨 부부가 혼자 힘으로 집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 심지어 부동산중개업자는 적선하듯이 돈을 주고 내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구한 집은 매우 열악한 형태의 주거였다. 또한 주택내부에 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전셋집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능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험을 거치면서 결국 이씨 가족은 용자를 얻어 좀더 넓고 시설이 좋은 아파트를 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수급자인 이씨 가족이 용자금 상황에 대해 느끼는 부담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주거로부터의 배제의 결과는 자칫 이씨 가족의 빈곤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용자를 얻을 수 있는 능력조차 되지 않는 장애인가구의 경우 적절한 주거로부터의 배제와 그에 따른 주거빈곤화는 악순환을 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씨 가족의 주거빈곤화 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V-10]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한 주거빈곤화(사례 23)

6) 가정폭력으로 인한 주거빈곤화

대개 가정폭력으로 가정을 떠나야 하는 여성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다. 이들 중 많은 여성들은 자녀를 동반하고 있으며 가족, 친척, 친구들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스스로 일상적인 주거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넓은 의미에서 홈리스(homeless)에 해당한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이처럼 홈리스가 될 위기에 놓여 있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나름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가정으로 다시 복귀하거나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에 입소하거나 거리노숙인이 되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집을 나와 쉼터를 거쳐 독립적인 생활을 시도하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경험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주거빈곤화를 잘 드러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을 피해 아이와 함께 집을 나온 여성들은 언제 남편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주소지 이전이나 이혼소송을 쉽게 하지 못하며, 그 결과 일정한 곳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다. 또한 직접 생계를 책임져야 하지만 직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임금의 불안정고용에 종사하게 된다. 이는 독립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주거빈곤의 요인으로 기능한다. 또한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쉼터 등에서 생활해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

이 함께 생활하다보니 사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퇴소를 결정하기도 한다. 아래의 사례들은 쉼터를 거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이와 같은 주거빈곤화 과정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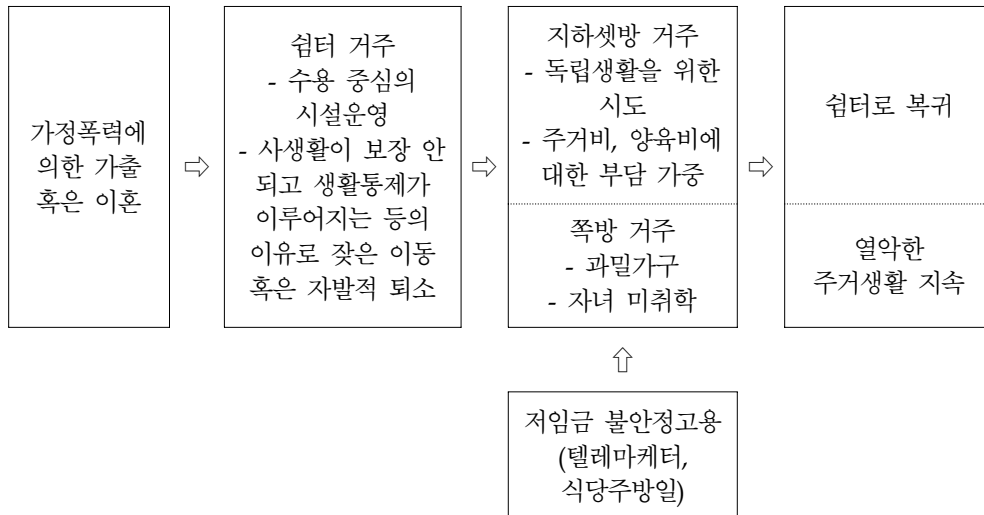
【사례 6】 임○희씨(32세, 여)는 6살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이다. 결혼 이후, 부모님이 사시던 수서동 영구임대주택에서 살다가 2002년 남편의 폭력으로 무작정 아이를 안고 집을 나왔다. 파출소에서 가정폭력쉼터를 소개해줬지만, 처음으로 간 쉼터에서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하루만에 나와야 했다. 다음으로 소개받은 곳에서는 비교적 시설이 좋았고 최대 4개월을 거주할 수 있었지만 남편이 찾아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또다시 새로운 쉼터를 찾아야 했다. 1366번 전화를 직접 걸어서 같은 해 4월 노숙인가족쉼터를 소개받고 입소하였다. 이 곳에서 8개월 정도 생활하였고 모자가정 지정을 받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남편이 이를 알고 찾아올까봐 실무자 몰래 살림터를 나왔다. 그리고 나서 예전부터 알았던 언니집에서 한 달,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숙인쉼터에서 한 달을 거주하였다. 그런데 이 노숙인쉼터의 경우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곤란했다. 결국 한 달 만에 퇴소하여, 그동안 텔레마케터를 하면서 모아둔 100만원으로 보증금 50만원에 20만원하는 지하월세방을 얻었다. 하지만 월소득 60~70만원으로 월세, 자녀양육비, 기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다시 살림터에 입소하였고, 그 후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모자가정으로 지정받았다. 모자가정의 경우 공립어린이집에 무료로 아이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임씨는 이제 살림터에서 독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장은 모자원 입주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300만원을 마련해서 월세방을 얻을 계획을 하고 있다.

【사례 25】 송○연씨(40세, 여)는 현재 아들(11살), 딸(14살)과 함께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송씨 가족은 본래 청주의 시댁에서 살았다. 하지만 8년 전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둘째 아들이 사망하면서 남편이 10년 징역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 이후 2003년에 이혼하여 곧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상경했다. 서울에 올라오기 직전에는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모자가정쉼터에 있었다. 15평에 방이 두 개인 집에서 생활했는데, 저녁 6시 이후에는 외출이 금지되고 예배와 어머니모임 등에 참석해야 하는 등의 내부규율이 엄격하여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석 달만에 퇴소하였다. 서울에 올라온 이

후에는 길음동에 사는 친정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재개발사업이 진행된 터라 친정집은 연락도 없이 다른 곳으로 이주한 상태였다. 할 수 없이 송씨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아이들과 함께 10,000원을 일세로 받는 쪽방에 들어왔다. 식당일을 하면서 65~70만원을 벌지만 절반이 일세로 지출되다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며, 그 때문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 방도 1평이 채 되지 않아 세 식구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임씨와 송씨 사례는 자녀를 동반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과 쉼터 및 민간임대주택에서의 생활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특히 임씨의 경우 어린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남편이 찾아올 것 같은 두려움에, 혹은 여러 사람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해서 여러 쉼터를 옮겨다녀야 했다. 송씨의 경우도 비교적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곳에서 생활하기는 했지만, 임주가구를 통제하는 내부 규율이 싫어 자발적으로 퇴소했다. 쉼터에서 나온 후 이들은 민간임대주택을 구하게 되는데, 텔레마케터, 식당일 등 저임금노동에 종사하다보니 주거비가 저렴한 월세 지하방이나 쪽방 등에서 열악한 주거생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임씨의 경우 갈수록 주거비와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심해져서 다시 쉼터로 복귀했으며, 송씨는 일세를 내면서 한 평도 안 되는 쪽방에서 자녀 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들 사례를 통해 적어도 임씨와 송씨가 경험한 쉼터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수용'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퇴소 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자활의 조건을 마련해줄 수 있는 쉼터는 이들 사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더불어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소득보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들이 기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에서 주거비를 부담하며 생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곧 임씨와 송씨의 주거빈곤화 과정은 긴급피난처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쉼터의 한계와 주거비를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저임금 불안정고용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사례의 주거빈곤화 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V-11] 가정폭력으로 인한 주거빈곤화(사례 6·25)

7) 복합적 요인에 의한 주거빈곤화

복합적 요인에 의한 주거빈곤화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노숙을 들 수 있다. 다음의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노숙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 요인들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나타난 결과라 하겠다. 특히 주거빈곤과 관련 될 때는 가족해체, 소득원 상실, 저임금 불안정고용, 쉽터생활, 신용불량, 재개발 등 앞에서 언급한 여러 요인들이 노숙인 당사자의 생애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당사자의 주거빈곤이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하다면 노숙은 사회적 배제로 인한 주거빈곤화 과정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 말하여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노숙에 이르는 과정은 복잡다단하며, 그러하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분석 및 대응책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른바 ‘탈’노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하의 사례는 노숙인의 주거빈곤화를 촉진하는 요인들을 비교적 다양하게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사례 8】 노○선씨(48세, 남)는 현재 회현역 부근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가 닥쳤던 시기에 직접 경영하던 중국음식점을 정리하고 가족을 대전에 남겨둔 채 일 자리를 찾아 서울로 올라왔다. 그러나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였고 여인숙에서 생활하다가 가족들이 눈에 밟혀 가족 전체가 서울에 올라오도록 하였다. 가진 돈이 다 떨어지자 서소문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였다. 그 후 노씨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노숙인가족쉼터에서 1년여 동안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 곳에 거주하면서 600만원을 모아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 방을 구해서 1년을 살았다. 그리고 나서 정부가 노숙인 주거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자활의 집’에 거주하다가 월 60만원이라는 저촉규정을 지키지 못해 다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5만원짜리 집을 구해 이주했다. 하지만 이마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지하셋방으로 이주해야 했다. 이상의 과정에서 노씨는 공공근로, 건설일용직, 봉어빵장사, 가스배달 등의 다양한 일을 하였는데, 당시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경매에 빠져 3,000만원의 카드빚을 지게 되었다. 그리고 가족이 카드빚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했고 2003년 부인과 법적으로 이혼하였다. 현재 부인은 두 아들과 함께 보증금 150만원에 월세 12만원짜리 월세집에서 살고 있으며, 노씨는 노숙을 계속 하고 있다.

【사례 19】 이○성씨(48세, 남)는 10대에 상경하여 양복점에서 시대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양복점에 딸린 방에서 기거하며 일을 배우다 양장업으로 전환하였고 1976년 평화시장에서 미싱과 재단 등의 일을 하면서 싼 방을 얻어 생활하기 시작했다. 결혼 후에는 답십리에 전세방을 얻어 신혼살림을 차렸지만, 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이 빈번한 가내공업의 특성상 이사를 자주 해야 했다. 26세에 이혼한 후, 이씨는 재산을 정리하여 아현동에서 20평 짜리 공장을 시작했다. 보증금 800만원, 설비투자비로 1,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투자했고 종업원을 11명 정도 거느리게 되었다. 일거리를 따라 다니다보니 공장도 자주 이사해야 했고, 그러다보니 공장에 취침용 침대를 놓고 잠을 자거나 재단판 위에서 잠을 청하는 게 보통이었다. 1990년대 들어 전반적으로 일거리가 감소하면서 급기야 공장문을 닫을 때까지 변변한 집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었다. 이씨는 사업실패 이후, 지방을 전전하며 농사일을 돕는 대가로 숙식을 제공받곤 했다. 서울의 한 노숙인쉼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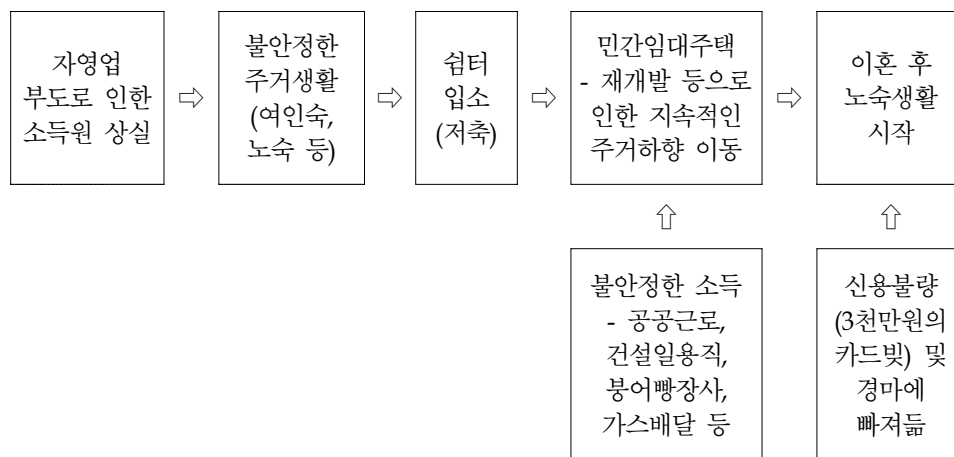
서 두 달 동안 생활해보기도 했지만 방 하나에 20명이 거주하고 공동의 규율에 따라 생활해야 했기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또 낮에는 쉼터에서 복지관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했으므로 그 시간 동안에는 다른 곳을 배회하며 시간을 보내야 했고, 기도회 참석을 강요받기도 했다. 게다가 쉼터에서는 상담을 통한 일거리 연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이씨는 쉼터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퇴소하였고, 시장에서 미싱일을 하면서 하루에 10,000원하는 제기동의 여인숙에서 거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거리를 지속적으로 구하지 못하면서 25만원이 체불되었고 이내 쫓겨났다. 그 후 이씨는 노숙생활을 시작했다.

두 사례 모두 노숙이라는 극단적인 주거빈곤상태로 전락하기까지 여인숙, 쉼터, 민간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경험하였다. 노씨의 경우 자영업의 도산으로 소득원을 상실하게 된 것이 노숙의 직접적인 계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 여인숙을 전전하다가 돈이 다 떨어지자 본격적인 노숙을 시작했고, 노숙인가족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후에는 네 차례나 이주하였는데 여기에는 재개발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정도 한 몫 했다. 이 과정에서 노씨는 경마에 빠져 3,000만원에 달하는 카드빚을 지게 되었고 이것이 가족해체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어 결국 노씨는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노씨의 생애를 돌아볼 때 현재의 주거빈곤을 야기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경마와 카드빚으로 인한 신용불량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씨가 경마에 빠지지만 않았더라도 가족해체는 물론이고 노숙의 나락으로 떨어지지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전에도 민간임대주택에서의 지속적인 주거하향이동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구 내적으로는 불안정한 소득구조와 가구 외적으로는 재개발사업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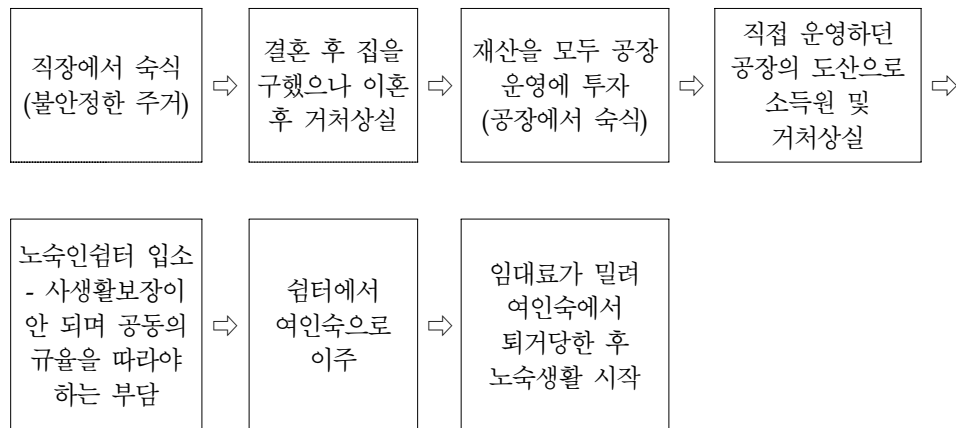
이씨의 경우도 대체적으로 노씨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차이가 있다면 불안정한 주거가 이씨의 생업이 갖는 특성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미싱

과 재단 등의 일을 했던 이씨는 별도의 특별한 거처없이 공장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하였다. 특히 이혼을 계기로 이러한 생활은 이씨가 운영하는 공장이 도산할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공장 도산과 함께 이씨는 한 순간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 후 쉼터에 입소하여 생활해보기도 했지만 20명이 한 방에 자야 하고 낮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등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느껴 퇴소한 후 여인숙 생활을 거쳐 노숙에 이르게 되었다. 이씨의 이와 같은 주거빈곤화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그가 운영하던 공장의 부도였다고 할 수 있지만, 젊은 시절 경험한 가족해체나 공장 도산 후 잠시 머물렀던 쉼터의 '수용' 중심의 제한된 기능 역시 그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결국 이 두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노숙은 어떤 사건에 의해 주거빈곤화가 가속될 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쉼터의 기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거나 소득보전을 위한 직업훈련,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등이 충분히 갖춰졌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 사례들의 주거빈곤화 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V-12] 복합적 요인에 의한 주거빈곤화(사례 8)



[그림 V-13] 복합적 요인에 의한 주거빈곤화(사례 19)

마.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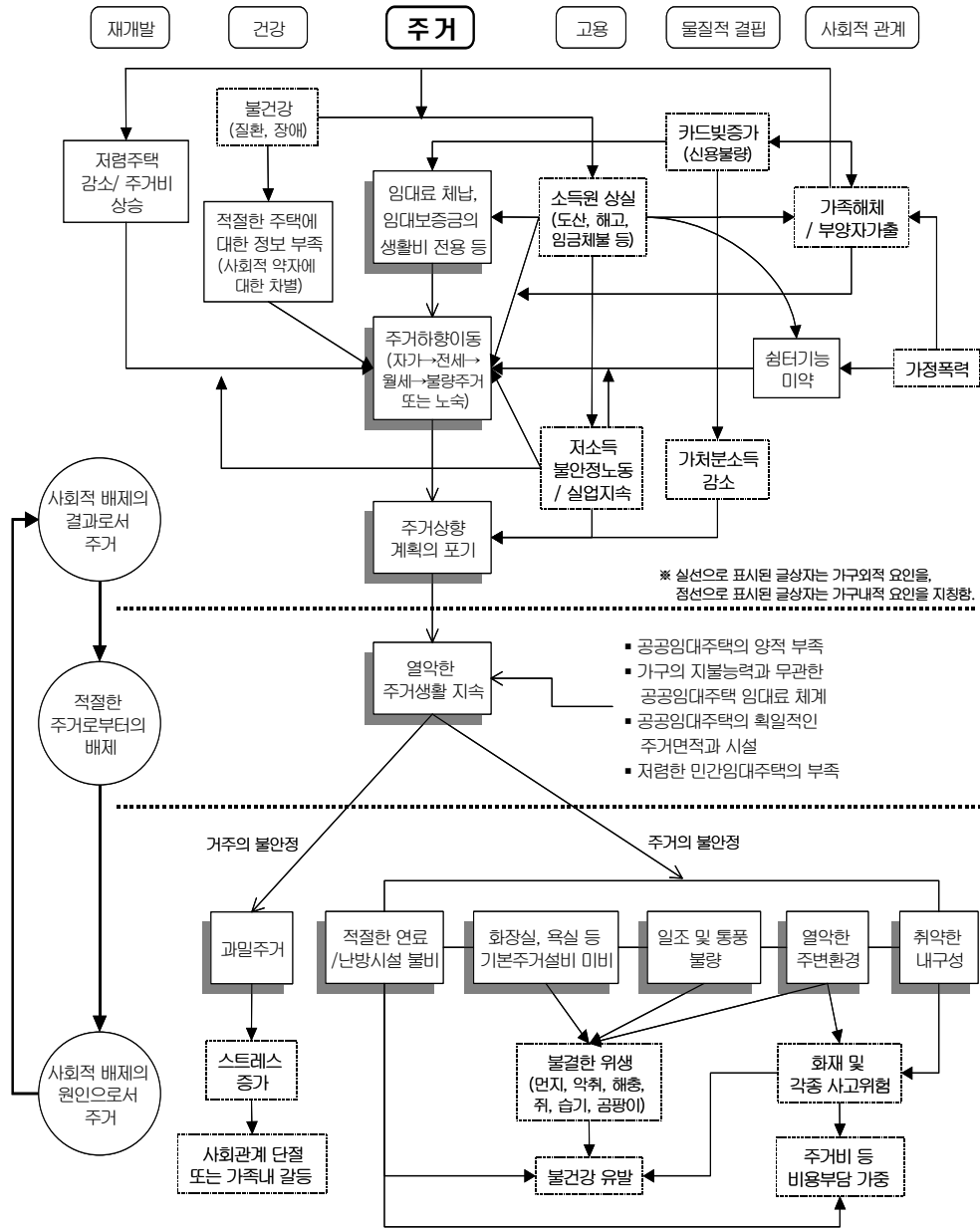
이상으로 주거와 사회적 배제와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주거빈곤이 사회적 배제의 원인 혹은 결과로서 어떻게 작동되고 심화되는지, 그리고 적절한 주거로부터의 배제는 주거빈곤을 어떠한 양태로 지속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배제의 원인으로서의 주거빈곤’은 주택의 질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주거의 빈곤’과 생활 거점으로서의 사회적 관계 구축을 위해 안정적인 ‘장(場)’이 형성되는 것을 저해하는 ‘거주의 빈곤’, 양자를 함의하고 있다. 첫째, ‘주거의 빈곤’은 주택의 취약한 물리적 조건에 따른 불건강성을 야기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연료 및 부적절한 난방 문제, 화장실, 욕실 등의 기본적인 주거설비 미비, 일조·통풍의 불량, 열악한 주변환경, 취약한 내구성 등으로 말미암은 거주문제와 주거비 가중, 불건강, 사고위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둘째, ‘거주의 빈곤’은 과밀주거문제가 원인이 되어 가족갈등 및 사회관계의 단절 등을 낳고 있다.

다음으로 ‘적절한 주거로부터의 배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 투입을 통해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부터의 배제와 주거빈곤층이 부담가능한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의 부족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전자와 관련해서는 먼저 공급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주거빈곤층의 소요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와 가구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주택 설비 및 평면·규모 등의 문제점을 짚을 수 있었으며, 또한 관리 차원에서는 가구소득과 무관한 임대료 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주거빈곤층이 주거비를 저렴하게 부담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 양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이를 통해 주거빈곤가구의 주거수준의 하향이동이 촉진되어 주거빈곤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서 주거빈곤’과 관련해서는 고용, 건강,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로 인해 야기되는 주거빈곤‘화’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소득원 상실, 신용불량, 건강과 가족해체, 가정폭력 등의 가구 내적인 요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재개발 등으로 인한 가구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주거빈곤화와 이들 요인들이 복합화된 주거빈곤화에 대해 각각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처럼 세 가지 범주를 통해 설명되는 사회적 배제와 주거의 관계는 순환고리를 형성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빈곤을 심화시킨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주: 화살표는 영향력이 미치는 방향을 의미함.

[그림 V-14] 주거와 사회적 배제의 관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는 하나의 단일한 요인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원인과 결과로서 착종(錯綜)되어 있는 상태를 살펴봄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주거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있어서도 단지 '벽과 지붕만의 대책'으로서는 이들 문제에 적절한 해답이 되어 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거빈곤층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으로서 구미(歐美)사회에서는 사회서비스 지원형 주택(Supported Housing), 혹은 민간비영리주택운동 등과 같은 다양한 주택유형의 공급과 주거서비스 지원이 병행된 접근이 공공과 민간 각각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Edgar, Doherty & Mina-Coull, 2000; Franck, K.A., 1991a; 1991b; 小玉徹 他, 1999; 平山洋介, 1993).

여기서 주거빈곤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환기시켜 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주거권(housing rights)'이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헌법 제34조),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들로서 비차별성의 원칙(차별성 배제의 원칙), 접근·이용 가능성의 원칙, 홈리스 우선의 원칙, 임차가구 보호원칙(security of tenure), 주거서비스 보장의 원칙 등을 들고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거처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고 있기에 국가 및 지역사회가 인간다운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하성규, 1998), 주거(빈곤)와 사회적 배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칙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이들 문제에 다가서기에 요원한 현실이라는 것이 본문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¹⁷⁾. 결론적으로 주거권 실현을 위한 위의 기본원

17) 부연하자면, 비록 본문에서 사례로 검토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주거권에 대한 인식이 어느 수준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 주거빈곤층의 최후의 주거라고도

칙들을 준수하는 가운데, 주거빈곤이 고용, 건강 등 여러 영역에서의 빈곤화 과정과 연관되는 과정을 포착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될 때만이 주거와 사회적 배제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 노동과 사회적 배제

가. 노동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

사회적 배제를 ‘개인의 사회권(social right), 예를 들어 기초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부정되거나

할 수 있는 미인가숙박소(쪽방)의 철거문제를 들 수 있다. 서울시 모구청은 작년 10월 27일부터 100여 세대가 넘는 미인가숙박소 지역을 철거하였다(아래 사진 참조). 구청은 이들을 철거한 8백평 전체에 나무를 심어 철도 소음을 막는 완충녹지대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철거 진행 방식도 10월 31일 이른 새벽 기습적으로 이루어진데다, 이를 알지 못했던 이들은 일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폐허더미 속에 뒤섞인 짐들을 챙겨야 하는 일을 겪기도 하였다. 계중에는 짐조차 제대로 못 챙기고 회현역 지하도로 나와 거리의 홈리스가 된 김○현씨(56세)와 같은 경우도 있었다(전홍규, 2003). 이들 미인가숙박소(쪽방)는 비록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들을 구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가장 극단적인 주거빈곤이라고 할 수 있는 노숙상태를 방지하는 마지막 거처로서 기능해왔다. 앞서 서두에서 써머빌(Somerville)은 주거를 통한 사회적 배제는 보다 확장된 시민권적 권리에 접근하는 것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주거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심화·확대는 다시 말하자면 사회구성원의 사회참여를 배제하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는 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거주자의 이해에 반하는 철거는 이와 같은 권리를 더욱더 박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진 14] 철거된 미인가숙박소(쪽방) 지역 전경



[사진 15] 철거된 미인가숙박소(쪽방)의 처참하게 드러난 골격

실현되지 않는 상황(Alvey, 2000)'으로 정의할 때, 노동의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배제의 형태는 크게 실업과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노동권¹⁸⁾의 측면에서 볼 때, 실업은 가장 기본적인 '일자리를 가질 권리'가 박탈되었다는 점에서,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은 '노동조건 및 환경개선을 요구할 권리'의 차원에서 고용안정성과 적정임금을 보장 받을 권리 등이 침해 받았다는 점에서 각각 사회적 배제의 상태로 간주할 수 있다.

실업은 우선 경제활동참여의 기회로부터의 배제를 뜻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소득의 상실과 경제적 곤란은 물질적 결핍의 상태로서의 빈곤(poverty)을 낳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나아가 실업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의 불이익을 넘어 '노동'이라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주류적인 사회활동으로부터의 배제에 따른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의 증가, 가정불화의 발생 및 전반적인 사회관계에서의 위축 등 비경제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이병희·정재호, 2002; 금재호·조준모, 2000; 이장원·김정우·문상석·민병삼·이원익, 1998). 따라서 실업은 빈곤과 관련한 전통적인 관점에서나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모두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낳는 핵심적인 요인이자 사회적 배제의 주요 양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반해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의 문제¹⁹⁾는 실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빈곤의 원인이나 사회적 배제의 한 형태로서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동빈곤층(Working Poor)의 문제는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 또한 심각한 사회적 배제의 한 형태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

18) 사회적 권리로서의 노동권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가장 보편적인 노동권은 '노동조건 및 환경개선을 요구할 권리'이다. ①적정임금을 보장받을 권리, ②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 ③사회보장혜택을 받을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가장 기본적이며 절박한 노동권은 '일자리를 가질 권리'이다. 실업자에게 있어 노동권이라 무엇보다 먼저 '일할 권리'를 뜻한다(사회권연구모임, 2002:41).

19) 이 글에서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은 비정규직 노동뿐만 아니라 열악한 고용조건 하에 있는 상용직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다.

거하고 있다. 즉, 이들은 ‘일할 권리’의 측면에서는 실업의 상태로부터 벗어났지만,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만한 수준의 임금과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고용의 질(質)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여전히 배제된 상태에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까닭에 이들은 근로의지와 근로능력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제한된 소득으로 표준화된 소비를 하지 못함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가족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도 힘든 것이다(노대명, 2003: 5)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실업뿐만 아니라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 역시 사회적 배제의 원인이자 주요한 형태라는 점에서 이들을 ‘노동빈곤’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배제의 주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²⁰⁾. 이를 위해 먼저 ‘노동빈곤’을 발생·심화시키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살펴보고 난 후 ‘노동빈곤’과 다른 영역의 사회적 배제 요인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곧 ‘노동빈곤’이 다른 차원의 사회적 배제를 낳는 과정과 역으로 사회적 배제의 다른 차원이 ‘노동빈곤’을 낳는 과정을 차례로 살펴봄으로써 복합적 결핍(multiple deprivation)의 상태로서의 사회적 배제의 양태를 드러내고자 한다.

나. 노동빈곤 발생의 사회구조적 요인

이하에서는 실업 및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과 같은 ‘노동빈곤’을 낳는 사회구

20) 여기서 ‘노동빈곤’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본 연구가 심층면접에 기초한 생애사적 접근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애사적 접근을 취할 경우 현재의 상태 보다는 개인의 취업력(歷)에서 드러나는 취업의 성격, 또는 취업과 실업의 패턴이 노동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의 상태를 가늠하는데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임시·일용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과 비정규직 취업을 오가는 반복실업자가 대부분인 빈민층의 경우 단순히 이들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실업과 취업을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였다. 그 보다는 본 논문의 목적상 빈곤층이 생애과정 동안 겪게 되는 노동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 즉 ‘노동빈곤’의 양상을 밝히고, 그러한 ‘노동빈곤’의 상태가 전통적인 의미의 빈곤 및 다른 차원의 사회적 배제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조적 요인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빈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노동유연화 전략에 기인한 노동빈곤

노동의 문제와 관련해서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 질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본주의 대 노동 유연화(flexibilization)전략의 강화이다. 자본주의가 취하는 노동 유연화전략은 기능적 유연화, 수량적 유연화, 임금의 유연화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수량적 유연화는 고용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다. 수량적 유연화는 수요의 유동에 따라 기업이 고용 노동자 수와 총 임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이는 핵심 노동력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력을 2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주변 노동자층으로 편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수량적 유연화는 다시 작업의 외부화와 외부 노동시장에서의 유연화로 분류된다. 작업의 외부화란 외부하청이나 사내하청 등을 통해 고용계약을 상업적 계약으로 대체하는 전략을 가리킨다. 외부노동시장에서의 유연화는 임시직 및 시간제 고용과 파견 노동력의 활용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황익주, 1998:122). 명예·조기퇴직으로 대표되는 기업의 수량적 유연화 전략에 의한 정리해고는 외환위기 이후 실업의 주요한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기업의 도산이나 휴·폐업에 의한 실업과 함께 비자발적 요인에 의한 실업의 비중을 높이는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김재호·조준모, 2000:40).

아래의 강○수씨의 사례는 하급의 기술직 사원으로 25년 이상을 ◇◇통신에 근무하다 2003년 ◇◇통신이 민영화되면서 취해진 대규모의 기업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정리해고된 경우이다.

【사례 24】 강○수씨(51세, 남)는 ◇◇통신에 25년 이상을 근무하다가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2003년 9월에 명예퇴직이라는 형태로 정리해고되었다. 강씨는 퇴직하려는 생각

이 전혀 없었으나 회사의 지속적인 해고 압력에 못 이겨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그는 20대 중반에 ◇◇통신에 입사하여 평생을 서울시내에 있는 전화국을 순환하며 선로매설 및 유지와 관련한 현장업무를 담당해 왔다. 회사는 강씨가 명예퇴직하기 몇 년 전부터 그의 근무부서였던 현장업무를 외주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인원을 점차 줄여가기 시작했다. 강씨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전화국에는 선로매설과 관련한 부서에 4개 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강씨의 퇴직 직전에는 4명밖에 남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을 뽑지 않으면서 기존 인원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거나 타 지역 전화국으로 전출을 보내는 식으로 인원을 줄여갔고, 일부는 정리해고를 시키기도 했다. 부서 및 업무의 축소에 따른 해고의 압력은 2002년에 ◇◇통신이 △△로 민영화되면서 훨씬 강해졌다. 당시까지 남아있던 인원 중에 나이가 가장 많았던 강씨에게 해고의 압력은 특히 강하게 다가왔다. 2003년 초에 회사에서는 강씨를 서울을 벗어난 타시도로 발령을 냈다. 그가 전출을 거부하자 회사에서는 같은 전국내의 타부서로 전과시켰다. 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표된 인사고과 점수에서 강씨는 C등급을 받았는데, 강씨에게는 그것이 실질적인 해고통보로 다가왔으며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더구나 사내에 곧 대대적인 인원감축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 인원감축에 앞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것이라는 소문,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영업부 등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거나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소문 등이 퍼지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정리해고에 대한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고 한다. 인사고과 등급이 발표되고 얼마 후 회사에서는 2주의 기간을 두고 명예퇴직신청을 받았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던 강씨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과 함께 해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명예퇴직 신청을 내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강씨로서는 끝까지 버텨보고 싶었지만, 현장직 위주로 인원이 줄면서 거대한 회사 내에서 자신의 부서와 직무가 더 이상 설자리가 없어지면서 느껴지던 무력감과 소외감, 그리고 20대 중반부터 평생을 바쳐 일한 회사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만 두어야 했다.

강씨는 퇴직 후 한 동안은 부인 외에 자녀들에게는 퇴직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차마 아빠의 퇴직 사실을 알릴 자신이 없었다고 한다. 한 동안 출근을 빙자한 등산을 하면서 아이들을 속였으나 아내가 아이들에게 아빠의 퇴직사실을 알리면서 가족 모두가 알게 되었다. 가족들에게 퇴직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정을 찾기 시작한 강씨는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작스럽

게 퇴직을 하게 된 강씨로서는 퇴직에 따른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했다. 재취업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본격적인 구직활동을 하면서 새삼 자신의 나이, 경력과 기술로 들어갈 만한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씨는 자신의 나이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퇴직 후에 택시면허, 버스면허를 취득했고, 혹시나 취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본인의 경력을 이용해서 선로매설과 관련한 감리사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강씨는 실업자로 남아 있다. 퇴직 전과 같은 임금수준이나 고용조건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일자리가 나는 곳은 임금수준과 고용사정이 너무 열악했다. 그가 희망하는 버스기사는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이 안 되었다. 강씨는 퇴직금과 고용보험을 받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곧 고용보험수급기간이 끝나면 “언제까지나 있는 돈을 까먹으면서 생활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고민이 많다.

위 사례의 강○수씨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명예퇴직 형태로 정리해고를 당한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된다. 강씨가 명예퇴직을 신청한 2003년 9월 말에 있었던 ◇◇통신의 정리해고는 일거에 5,000명이 넘는 국내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실업자를 양산했다. 강씨의 사례는 기업의 수량적 유연화 전략의 하나인 작업의 외부화로 인해 고용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을, 그리고 이러한 수량적 유연화 전략에 따른 주요 희생양이 비핵심 분야에 속하는 하급의 기능·기술직에 속하는 주변적 노동자층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업이 어떤 식으로 지속적인 해고의 압력을 행사하는지, 그러한 압력이 노동자 개인에게는 어떻게 수용되어 퇴직에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새롭게 기술을 배우거나 경력을 쌓기에는 늦은 나이인 50대의 실직자가 처한 심리적 부담과 고민을 확인할 수 있다.

강씨는 아직까지는 퇴직금과 고용보험수급을 통한 제도적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소득상실에 따른 물질적 결핍으로 인한 어려움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녀의 학자금 등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실직이 장기화될 경우 가계사정은 급속도로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강씨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재취업에 성공한다고 해도 종전의 직장에는 비할 수

없는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불안정한 고용층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업으로 인한 물질적 결핍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경기침체와 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노동빈곤

가) 자영업의 실패로 인한 실업

대기업에서 이루어진 구조조정이나 대형공장의 폐업 등에 기인한 대량실업 사태처럼 여론의 초점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1997년 말의 외환위기를 전후로 시작된 경제 불황은 수많은 사람들을 실업상태에 놓이도록 했다. 대기업과 관련되어 있던 하청업체나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지속되는 경제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도산하였으며, 이는 그들에게 고용되어 있던 직원들의 실직으로 이어졌다. 특히, 중소기업의 고용주로 있던 이들은 업체의 도산으로 하루아침에 큰 부채를 떠안거나 전 재산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업에 따른 충격과 후유증이 그 누구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성씨의 사례는 서울에서 10여명 정도의 종업원을 거느린 영세한 봉제업체를 운영하다가 경기악화로 97년 여름에 폐업하고 노숙자로까지 전락한 경우이다.

【사례 19】 서울 남대문시장 인근에서 시장상인을 상대로 봉제업체를 운영하던 이○성씨(48세, 남)는 경기침체로 경영사정이 악화되면서 97년에 폐업하였다. 어려서 서울의 한 고아원에 맡겨진 이씨는 초등학교를 채 졸업하지 못하고 고아원을 뛰쳐나와 이태원에 있는 양복점에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양복점과 양장점을 오가며 기술을 배운 이씨는 청계천 평화시장 일대에 있는 공장을 옮겨 다니며 양장 기술자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양장 기술자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이씨는 임금노동보다는 소규모 독립도급업자로 직원(시다)을 1, 2명두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20세에 자신이 시다로 데리고 있던 여

성과 결혼하여 자녀(1명)를 낳고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나 고아출신이라며 자신을 무시하는 처가에 대한 불만, 그로 인한 부인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26세 경에 이혼을 하게 된다. 이씨는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양장일을 하다가 30대에 이르러 저축한 돈과 전세보증금 등 4천만원 정도를 투자하여 아현동에 직접 봉제공장을 차렸다. 20평 정도의 공장에 재봉틀 5대를 놓고 사업을 시작해서 2년 후에는 남대문 시장에서 가까운 만리동으로 확장 이전할 수 있었다. 공장규모도 30평 정도로 커졌고, 자본금도 8천만원 정도로 늘었다. 하지만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되던 사업은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제품단가가 떨어지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점점 어려워져 갔다. 97년을 즈음해서는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힘들 정도가 되었다. 그는 직원들 중 일부를 해고하거나 상용직에서 도급직으로 바꾸는 등의 전략을 취해가며 경제불황을 버텨 보려고 했으나 폐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97년 하반기로 갈수록 “일거리 따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 정도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자본금을 축내며 근근이 버텨오던 이씨는 공장을 폐업하기에 이른다. 공장을 폐업한 이씨는 기계를 팔아 직원들의 밀린 월급을 청산하였다. 다행히 빚을 지지는 않았지만, 사업을 정리한 후 이씨의 수중에 남은 돈은 3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한다. 사업이 망한 후 이씨는 한 동안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일정한 주거 없이 막노동을 하며 전국을 떠돌았다. 그러다 2000년도부터 서울에 와서 미싱일을 하며 재기해 보려는 의지를 보였으나 미싱과 관련해서 일거리 구하기가 힘들었고, 공장일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면서 취업을 포기하게 된다. 2년 전부터는 지하철역을 옮겨 다니며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 이씨는 현재 어찌다가 막노동을 하기도 하지만 거의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생계는 교회를 돌아다니며 구걸을 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성씨의 사례는 국내의 경기불황으로 인해 사업에 실패한 영세자영업자가 겪는 실업의 폐해를 잘 드러내고 있다. 사업실패로 하루아침에 극한적인 경제적 결핍의 상태에 놓인 이들은 이씨처럼 심리적으로도 자포자기의 상황으로 빠지고 쉬우며, 급기야는 노숙이라는 극한적인 사회적 배제의 상태로 치닫기 쉽다. 특히, 이씨의 경우에는 경기불황으로 본인이 운영하던 공장도 폐업했지만, 사양산업에 속해 있던 동종업계의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로 공장을 옮기는 바람에 재취업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사양산업종사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은 다음에 살펴볼 공장의 해외 이전으로 실업에 처한 채○승씨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나)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실업

공장의 부분 폐쇄나 해외이전은 경기침체 및 산업의 사양화와 국내 임금상승 등에 따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합리화 전략의 일환이다. 공장의 해외이전은 세계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노동자들에게 다가온 종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실업의 위협이다. 그것은 취업해 있던 기업이 생산설비를 모두 해외로 이전시켜 버리는 데서 연원하는 갑작스런 실업으로, 이처럼 국내의 특정 공장에 취업해 있던 노동자들이 줄지에 실업을 당하게 되는 사태는 한국 경제의 세계화 추세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말 이후로 새로이 등장한 현상이다(황익주, 1998:132).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등 값싼 노동력을 찾아 떠나는 이러한 형태의 합리화 전략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기존 노동빈곤층은 훨씬 더 열악한 ‘노동빈곤’의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무엇보다 일자리는 줄면서 신규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재취업의 어려움과 실업의 장기화는 노동빈곤층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아래의 채○승씨의 사례는 봉제공장에서 미싱공으로 일하다가 다니던 회사가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실직한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이다.

【사례 18】 채○승씨(53세, 여)는 2003년 2월까지 3년 정도 서울에 있는 봉제공장에서 작업복을 만드는 미싱공으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장이 중국으로 이전해 가는 바람에 실직하였다.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채씨는 일찍부터 학생복을 만드는 양장점에 시다로 들어가 미싱기술을 배웠다. 그는 23세에 중매로 결혼하기 전까지 미싱사로 일했다. 채씨는 결혼 후 10년 가까이 아이들을 기르며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아이

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부터 다시 부업삼아 미싱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39세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전업으로 미싱일에 매달리게 되었다. 채씨는 주로 혼자서 완성품(점퍼나 바지)을 만들고, 완성품을 만든 수량만큼 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객공'으로 일해 왔다. 정규직은 일자리도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젊었고 이혼을 하면서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채씨로서는 '객공'으로 일하는 것이 훨씬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한다. 채씨가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동에 소재한 봉제공장에도 처음에는 '객공'으로 들어가 일하다가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봉제업이 사양산업이 되면서 일거리가 점점 줄고 있었고, 남아있던 공장들마저 해외로 급속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일자리 자체를 구하기 쉽지 않았던 터라 소득이 좀 적더라도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2000년경에 회사가 규모를 늘리며 신규직원을 모집할 때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설마하던 공장이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돌발적인 공장폐업조치가 내려졌고, 채씨를 포함해 10명에 이르던 미싱사들은 줄지에 실직을 당하게 되었다.

실직 후 채씨는 5개월 동안 월 40만원 정도 고용보험수급을 받으며 동료들과 함께 미싱과 관련한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좀처럼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미싱일을 구하기 힘들면서 실업이 장기화되자 채씨는 영등포에 있는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월 5만원의 소개료를 주고 파출부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다. 평생 미싱일만 해온 채씨로서는 파출부일을 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으나 본인의 나이에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 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시작했다. 하지만 파출부를 다니면서도 채씨는 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나 구인광고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미싱일을 찾아 다녔고, 9월경에는 신촌에 있는 소규모 봉제업체에 객공으로 취업할 수 있었다. 채씨를 포함해 총 5명의 미싱사를 고용한 영세업체였는데, 어렵게 구한 이 일도 일거리가 없어서 12월경부터는 나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 봉제업계는 옷값이 입을 철인 3, 4월과 9, 10월에만 일거리가 반짝하고, 또 천장, 만장하는 큰 덩치는 중국으로 다 가버리고 100벌, 10벌 정도의 소규모 주문 밖에는 받지 못하는 처지라 한다. 그래서 국내에 남은 봉제업체들은 생존전략으로 더 소형화되고, 일거리가 있을 때만 '객공'으로 잠깐씩 사람을 쓰는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더 이상 미싱일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인근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한식조리사 자격증 과정을 다니며 새로운 직종으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 채씨는 나이가 50이 넘는 여자가, 또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본인의 처지에서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자리는 파출부나 식당일 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조리사자격증을 따 놓으면 앞으로 파출부나 식당일을 구하는데 더 유리할 것이라 믿고 있다.

채○승씨의 사례는 산업의 사양화와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국내에서 새로운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으면서 기존의 일자리까지 크게 줄어드는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던 노동자가 실직했을 경우에 겪는 재취업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채씨의 사례를 통해 일자리의 감소로 인해 노동력 과잉 현상이 나타나면서 고용여건까지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채씨에 따르면 최근으로 올수록 고장난 미싱을 고쳐서 쓰게 한다든가, 중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과 같은 60-70년대에도 없던 노동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위 사례를 통해 산업의 사양화와 경기침체는 고용안정성과 고용여건 면에서 노동빈곤층의 '노동빈곤'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요한 계기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노동시장의 분절구조에 따른 노동빈곤

여기서 분절노동시장이란 노동빈민(working poor)이 속한 노동시장과 여타의 노동시장과의 사이에는 대단히 단단한 분절구조(structural segmentation)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노동시장이 빈민노동시장과 일반노동시장²¹⁾으로 구획되어 있다는 의미이다(송호근, 2002). 분절노동시장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노동빈곤'

21) '빈민노동시장'이란 '일자리는 있으나 빈곤을 면치 못하는' 노동자가 속한 시장을 뜻하며, '일반노동시장'이란 빈곤노동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좋은 근로조건을 누리는 노동자가 속한 시장을 뜻한다(송호근, 2002:28). 송호근(2002)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빈곤의 원인과 관련해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분절노동시장'의 존재를 주된 요인으로 꼽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은 다른 계층보다 여성, 고령자, 미숙련자, 저학력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여건을 전반적으로 크게 악화시켰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분절구조는 이들을 저임금을 강제하는 빈민노동시장에 구속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빈곤상태를 지속 또는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의 원인이 노동자의 개인적 특성에 있기 보다는 노동시장의 분절구조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빈민노동시장으로 전락한 노동자는 개별적인 결함을 보완하고 직업능력을 배양해도 일반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그 결과 빈곤상태에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특히, 빈곤노동계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차별적인 관행에 따른 불이익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²²⁾.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빈곤의 여성화 현상은 이러한 성차별적인 노동관행과 노동시장의 분절구조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 등에 따라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겪게 되는 경력단절은 여성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특징지어지는 빈민노동시장으로 밀어내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황수경, 2003; 금재호, 2000). 즉, 결혼을 전후로 여성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과 재진입은 그 자체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취업구조를 저임금·저숙련 구조로 재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²³⁾. 그리고 장기간의 노동시장 이탈에 따른 여성 자신의 숙련의

22) 노동빈민층에는 여성, 저학력자가 주류를 이룬다. 노동빈민 중에 여성은 74.4%, 고졸 이하의 학력이 85.4%를 차지한다. 이들 중 가구주는 80%이며 평균 2.8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송호근, 2002:31-32).

23) 첫째, 경력단절은 재진입 이후의 경제활동 영역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 이전의 직업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경력단절 이후의 재취업 가능성은 여성 자신의 직업(또는 숙련의 유형)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여성은 노동시장의 진입단계에서부터 경력단절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려 자신의 생애기대소득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남성과는 다른 여성만의 직업선택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성별 직종분리라는 노동시장의 특징을 규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경력단절은 여성이 보다 고용여건이 우수한 전통적인 남성지배직종(male-dominated occupations)보다는 여성지배직종(female-dominated occupations)을 선호하도록 하여 우량직업에 진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성별 직종분리를 고착화한다. 둘째, 경력단절은 여성의 고용기회를 저임금·저숙련 직종으로 제한한다. 여성이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장한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길 희망하더라도 이전의 일자리와 유사한 일자리로 취업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인적자본 활용도가 낮은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의중임금이 비교적 낮은 저학력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그래도 노동시장으로 다시 진입할 가능성이 높지만, 의중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소득효과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고학력 기혼여성의 경우는 일단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면 다시 진입하기 어려워 영구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 과정에

부식, 가사부담 및 자녀양육 등으로 인한 취업조건의 제약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려는 기혼여성의 '노동빈곤'을 심화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여성가장인 아래의 임○실씨의 사례는 자녀양육, 숙련의 부식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려는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이익과 '노동빈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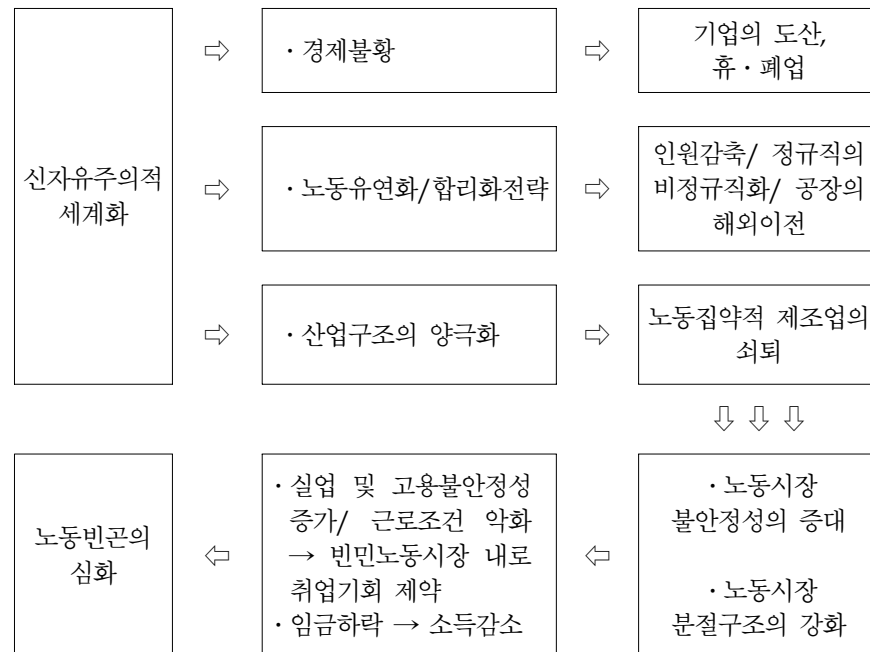
【사례 5】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에 재학중인 두 아이를 둔 임○실씨(33세, 고졸, 여)는 4년 전 남편이 행방불명되면서 모자가정의 여성가장이 되었다. 임씨는 현재 생활한복을 제작하는 자활공동체에서 미싱보조로 일하고 있다. 그는 미싱보조로 일하면서 결혼 이전에 익혔던 미싱기술을 다시 숙련하여 직업능력을 높이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임씨는 전라도 나주의 빈농가정의 4남매 중에 장녀로 태어나 그곳에서 중학교까지 졸업하였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는 서울에 있는 산업체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주간에는 신사복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으며, 야간에는 수업을 받았다. 1, 2학년 때는 미싱보조로 일했고, 3학년 때는 미싱공으로 일했다. 인문계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동안에 미싱기술을 제외하고는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지는 못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공장일에 대한 싫증과 공순이로 불리는 것이 싫어서 공장을 나와 호텔식당의 종업원으로 취업했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22세에 결혼했다. 임신과 함께 일을 중단하고는 연년생으로 아이들을 출산하는 바람에 결혼 후 6년 정도까지는 집에서 전업주부로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감으로써 임씨는 두 아이를 둔 여성가장으로서 생업에 내몰리게 되었다. 하지만 5살, 6살의 어린 아이를 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고, 양육비를 주면서 아이들을 맡기고 취업할 만한 일자리는 없었다. 한 동안은 집에서 하는 부업일로 생계를 이어가던 임씨는 막내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부터는 상용직으로의 취업을 시도하여 집 가까이 있는 소형 이불공장에 시다로 입사했다. 결혼 전에 미싱일을 했던 경험을 살리고자 미싱보조로 들어갔지만 사장과 미싱사들의 배타적인 태도로 인해 미싱기술을 배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미싱사와 미싱보조인 임씨의 급여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임씨는 70만원

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취업구조를 저숙련 구조로 재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황수경, 2003:49-50).

정도를 받았으나 미싱사들은 120만원 이상을 받았다. 임씨는 미싱을 다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고용주의 부당한 처우에 따른 고용주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불공장을 그만두었다. 실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던 중 미싱보조를 구한다는 자활후견기관의 구인광고를 보고는 현재의 자활공동체에 입사하게 되었다. 임씨는 미싱기술을 배울 기회가 주어지고, 작업장의 인간적인 분위기, 자녀양육 등과 관련해서 그의 사정을 배려해 주는 고용여건 등이 마음에 들어 지속적으로 자활공동체에서 일하고 싶어 하며, 전에 비하면 심리적으로나 생활면에서 많은 안정을 찾았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줄면서 자활공동체의 경영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임씨는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임○실씨의 사례는 빈곤층의 여성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경우로서 충분한 직업능력을 습득하거나 경력을 쌓지 못한 상태에서 혼인으로 일을 중단했다가 재취업을 시도하지만, 자녀양육이나 직업능력의 약화로 인해 부업수준의 가내노동에 머물거나 미숙련의 저임금 직종으로 재취업이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선 채○승씨의 사례 역시 미싱공이었고, 결혼으로 10년 정도 노동시장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는 점에서 임○실씨와 비슷한 경력단절의 과정을 보이고 있다. 다만 채○승씨는 학력이 낮은 대신에 혼인 전까지 미싱공으로 오랫동안 일을 했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장기간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쉽게 숙련공으로서의 기술수준을 회복할 수 있었다. 반면에 임○실씨는 미싱공으로 일을 했지만, 전업으로 했던 것도 아니었고 경력도 1년 정도로 짧았기 때문에 기술숙련의 정도가 낮았다. 따라서 임씨는 채씨에 비해서 장기간의 노동시장 이탈에 따른 재진입과 기술수준의 회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숙련된 미싱공에 비해 소득과 고용조건에 있어 커다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빈곤층의 고용여건을 악화시키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노동빈곤층의 고용여건이 악화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도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V-15] 노동빈곤 발생의 사회구조적 요인과 과정

다. 사회적 배제의 원인으로서는 노동빈곤

사회적 배제 개념을 통한 빈곤연구의 특징은 빈곤을 물질적 차원의 결핍이나 부족을 포함한 정치·사회·문화·심리·공간적으로 배제된 상태, 즉 복합적 결핍(multiple deprivation)의 상태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빈곤의 정태적인 측면보다는 빈곤의 동태적 측면을 강조하여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로 인한 빈곤화(Pauperization)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즉, 빈곤을 낳는 다양한 사회적 배제의 요인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에 기여하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노동빈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다른 차원의 사회적 배제를 낳는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노동빈곤으로 인한 물질적 결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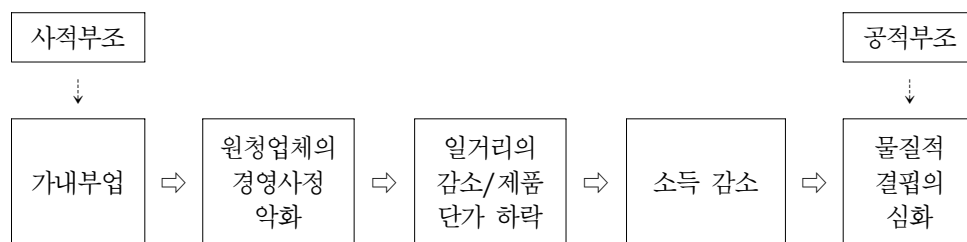
장기실업, 불안정 고용으로 인한 취업과 실업의 반복,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과 같은 ‘노동빈곤’은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제적 차원의 결핍이나 부족으로서의 빈곤을 낳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앞서 임○실씨의 경우 ‘노동빈곤’의 상황이 경제적 차원의 빈곤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특히,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 시장에서 불이익을 겪는 여성이 남성가장을 상실했을 경우 얼마나 쉽게 ‘노동빈곤’의 상황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는 지를 보여줌으로써 ‘빈곤의 여성화’현상을 입증해 주고 있다.

【사례 5】 임○실씨(33세, 고졸, 여)는 남편의 가출 후 본격적으로 생업에 내몰리게 되었다. 임씨는 남편이 집을 나간 후부터 시댁에서 약간의 현금과 현물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남편의 부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부업을 생업삼아하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주거도 그 동안의 저축과 시댁의 도움으로 아이들과 살기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곳으로 이전할 수 있었다. 부업일이 손에 익고, 물량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임○실씨는 부업을 통해 평균적으로 월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임씨가 취업 가능했던 주변의 영세한 공장에서 상용직으로 일하며 받는 금액(70-80만원 정도)과는 엇비슷한 정도였다. 다만 “집에서 하는 일이었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고 말할 만큼,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의 대부분을 오직 부업일에만 매달려야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한지 2년 정도가 지난 후부터 물량이 줄기 시작하면서 임씨의 소득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일이 없었어요. 일이 가끔 있는데 꾸준히 있었던 게 아니고, 며칠 쉬었다가 오고 그렇게 하니까 월급도 얼마 안 되고…….” 물량이 줄고 소득이 줄어들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해 오던 경제사정도 급격히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비상금으로 조금씩 모아 두었던 저축액도 생활

비로 다 써버리고 생계에 곤란을 겪던 임○실씨는 급기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청을 하게 되었고, 2001년에 수급권자가 되었다. 이씨는 수급권자로 지정되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으면서 다시 생활에 안정을 찾고 있는데, 특히 병원이용이 잦은 어린 자녀를 돌이나 두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혜택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임○실씨는 부업 일거리의 감소라는 ‘노동빈곤’의 심화로 인해 소득이 줄면서 경제적 위기를 겪었고, 그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되었다. 하지만 임씨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살펴 볼 다른 사례들처럼 경제적 결핍이 주거빈곤이나 다른 차원의 사회적 배제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것은 임○실씨가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곧 바로 국가의 사회적 안전망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적절한 시기에 소득의 상실분에 대해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과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에 더 이상 물질적 결핍이 심화되지 않았다. 이후 임씨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서 점차 경제적 결핍을 회복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임○실씨의 경우에는 시부모의 현물과 현금 지원이 남편의 부재라는 가정적, 경제적 위기의 상황에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버팀목이 되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실씨의 사례를 통해 노동빈곤이 물질적 결핍에 이르는 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V-16] 노동빈곤으로 인한 물질적 결핍의 심화

반면에 아래에서 살펴볼 이○숙씨는 ‘노동빈곤’에 따른 경제적 위기의 상황에서 국가나 사회적 관계에 의한 적절한 보호나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러한

까닭에 이씨 가족의 경제적 위기는 주거빈곤의 상황으로까지 심화되었다.

2) 노동빈곤으로 인한 물질적 결핍과 주거빈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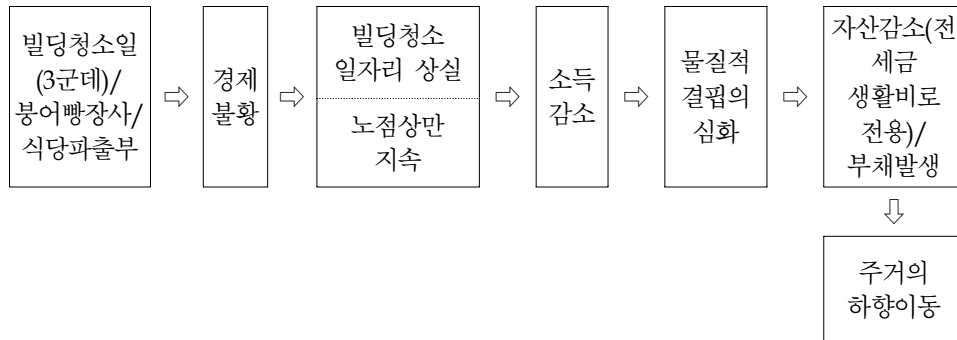
노동빈곤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과 그로 인한 물질적 결핍의 심화는 가장 비싼 소비재인 주거빈곤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아래의 이○숙씨의 사례는 ‘경제불황 → 일자리의 상실/감소 → 소득의 감소 → 부채의 증가/물질적 결핍의 심화 → 주거빈곤’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 1】 이○숙씨(46세, 고졸, 여)는 소형트럭에 국화빵 기계를 장착해서 몹이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트럭행상을 하고 있다. 겨울철(10-2월)에는 국화빵 장사를, 여름철(3-9월)에는 칼국수 장사를 하며, 간혹 일자리가 생기면 빌딩청소일을 겸하기도 한다. 이씨가 노점을 시작한 것은 10년 전부터이며, 하루 매출액은 10만원 정도 된다. 하지만 소득이 불규칙하고, 일을 못 나가는 날도 종종 있기 때문에 실제 수입은 단순히 매출액만으로 계산한 것보다는 훨씬 적다고 한다. 이씨는 일이 힘들고,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급여가 더 적더라도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빌딩청소와 같은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현재 이○숙씨가 살고 있는 곳은 노원마을로 전형적인 불량주택이 모여 있는 달동네이다. 이씨는 천만 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주거사정이 매우 열악한 편이다. 방이 좁아서 가재도구를 놓거나 몸을 편하게 눕기 힘들 정도며, 연탄보일러로 난방을 하지만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전기판넬을 겸해서 난방을 해야 한다. 화장실도 집 밖의 공동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며, 온수가 나오지 않아 겨울철에도 찬물에 세수와 주방일을 해야 한다. 이씨가 노원마을로 이주한 것은 3년 전이다. 그 전까지는 현재의 주거보다는 형편이 훨씬 좋은 대치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1층, 2,600만원 전세)에 살았다. 이씨가 노원마을로 이주하게 된 것은 빌딩청소일 자리가 끊기면서 소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대치동에 거주할 때 이씨는 고정적으로 빌딩 3곳의 청소(빌딩 하나에 월 40만원 정도)를 맡아 했으며, 남은 시간을 이용해 봉어빵이나 핫도그, 아이스크림 등을 파는 노점일을 겸했다. 또 틈틈이 식당이나 파출부일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씨는 한 달에 17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이○숙씨가 이처럼 생업에 매진하게 된 것은 93년경에 금은세공일을 하던

남편이 취업을 핑계로 일본으로 가서는 소식을 끊었기 때문이다. 남편과 헤어진 후 당시 초등학생이던 두 아들과 살기 위해 이씨는 자본과 특별한 기술이 없는 중년의 여성가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다. 떡볶이, 핫도그 노점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교회신도의 도움으로 빌딩청소일을 얻게 되면서 생활에 안정을 찾았다. 이후 빌딩청소를 주업으로 취업과 소득에서 안정을 찾은 이씨는 월 100만 원가량을 저축할 정도로 가게형편도 좋아졌다. 그 결과 천만 원짜리 지하셋방에서 시설이 더 좋은 다세대 주택 1층으로 옮길 수 있었다. 하지만 97년 IMF 경제위기로 이씨가 일하던 빌딩청소일이 하나 둘 끊기기 시작하면서 이씨의 경제적 어려움도 증가하기 시작한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새로운 청소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았다. 기존에 하던 노점일과 파출부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 갔으나 두 아들과 살기에는 소득이 지출을 감당하지 못했다. 부족한 생활비는 전세금을 담보로 집주인에게 빌려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전세금을 चु내며 대치동에서 2년 정도를 지내던 이씨는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적 궁핍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주거사정은 열악하지만 주거비가 저렴한 노원마울로 이주하였다.

남편과 헤어진 후 가게경제를 책임질만한 안정적인 소득의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던 이○숙씨는 대안전략으로 노점상, 파출부, 빌딩청소 등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동시에 여러 군데 취업함으로써 저소득과 고용 불안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러한 이○숙씨의 생계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고된 육체노동을 견디며 빈곤상황을 벗어나고자 했던 이씨의 노력은 국가 차원에서의 심각한 경제불황의 여파를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즉, IMF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불황은 이씨의 '노동빈곤'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고, 이것은 다시 이씨의 가족에게 물질적 결핍과 주거빈곤으로 결과되었다. 이○숙씨의 사례를 통해 '노동빈곤'의 심화가 물질적 결핍과 주거빈곤의 심화되어가는 과정을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V-17] 노동빈곤으로 인한 물질적 결핍과 주거빈곤의 심화

3) 노동빈곤으로 인한 복합적 결핍

노동빈곤은 대체로 물질적 결핍이나 주거빈곤의 형태로 나아가지만, 장기실업과 같은 극단적인 노동빈곤의 지속은 소득의 상실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사회활동인 노동으로부터의 배제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종 보다 중층적인 결핍의 상황을 야기한다. 장기실업이 가족, 친척, 친구 등의 사회관계와 실직자의 심리상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그 간의 연구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져 왔다. 아래의 심○부씨의 사례와 이○성씨의 사례는 ‘실업-비정규직취업-실업’ 또는 ‘실업-비경제활동-실업’을 오가는 반복실업²⁴⁾과 장기실업의 문제가 어

24) 남춘호(2002)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장기실업률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장기실업의 문제가 해소되어서 그렇다기 보다는 연속구직기간에 기초한 기존 장기실업지표가 가진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정착도가 낮아서 실직자들이 실업상태로 있기 보다는 비경제활동상태로 퇴장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상태에서 생계비 부담으로 구직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실질적으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다기 보다는 다시 실업상태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실업의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으며, ‘실업-비경제활동/또는 비정규직 취업-실업’을 오가며 누적실업으로 고통 받는 이들 반복실업자는 장기실업의 한국적 발현 양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복실업의 개념을 적용할 경우에 장기실업의 문제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저학력, 남성, 20대와 50대, 비정규직종사자, 과거의 실업회수가 많고 누적

떻게 개인을 경제적·사회적·심리적으로 중층적 결핍의 상황으로 밀어 넣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례 21】 심○부씨(51세, 남)는 3년 전까지는 부인 및 두 명의 자녀와 함께 30평 대 빌라에서 살던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으나 지금은 가족들과 헤어진 채 반지하셋방에서 혼자서 살아가고 있다. 심씨의 인생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10여 년 전에 14년간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면서였다. 심씨는 직장을 퇴직하기 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순조롭게 직장을 잡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왔다. 그는 공고 전자과를 졸업하고는 곧 바로 직업군인으로 입대하여 자신의 주특기를 살려 통신과에서 근무했다. 7년간의 군 생활을 통해 통신분야에서 경력을 쌓았고, 무선통신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경력을 인정받아 □□관리공단에 특채로 입사하여 레이더 정비와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다. 심씨는 직장을 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도 하였고, 아들과 딸을 낳으면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렸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승진을 못하면서 심씨의 직장생활에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자신보다 뒤 늦게 입사한 후배들이 승진하여 상급자가 되었지만 심씨는 14년의 직장생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사원에 머물러 있었다. 심씨의 승진 실패는 본인이나 직장 동료들에게도 스트레스로 작용하면서 동료들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등 직장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 40대의 나이에 안정된 직장을 나오고 싶지는 않았으나 직장 내에서 점점 증폭되어가는 심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94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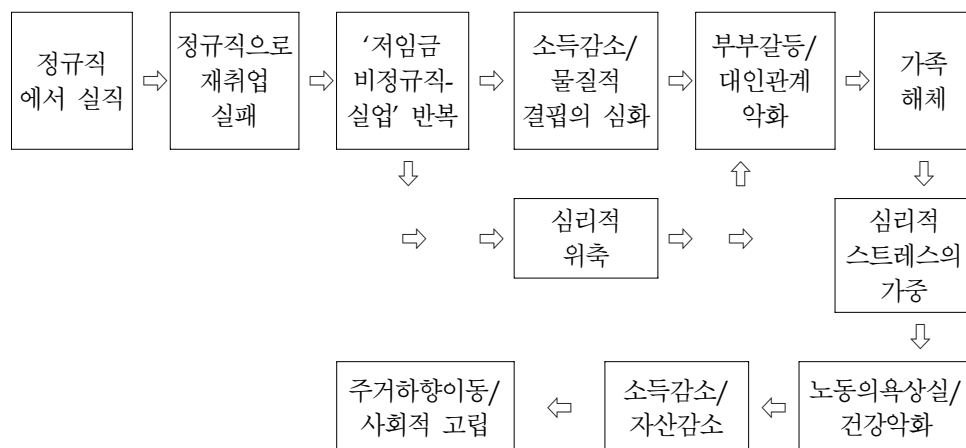
심○부씨는 직장을 퇴사한 후 자신의 경력과 기술을 살릴 수 있는 무선정비나 전자계통의 일을 하고 싶었으나 원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레이더 정비와 관련된 일은 일자리 자체가 없었으며, 전자기술과 관련한 업종은 분야가 잘 맞지 않거나 경력이 없다고 받아주지를 않았다. 종전의 경력을 살려 전기·전자계통의 기술교육을 배워보고 싶었지만 좀처럼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해 놓았지만, 본인에게 맞는 기술교육이나 재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 또 직종을 전환하여 일자리를 찾아보아도 연령제한으로 인해 적당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다. 현실적으로 심씨에게 취업가능한 일자리는 경비, 주차관리, 건설노동 등과 같은 저임금의 일용직, 임시

기간이 길수록 반복실업에 빠지기 쉬운 것으로 드러나 만성적인 장기실업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반복실업자들도 빈곤층으로 퇴적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직이었다. 경비일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는 있었지만, 월 60-70만원 정도의 저임금이었고 고용여건도 열악했다. 무엇보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려는 용역업체측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해 10개월이나 8개월 주기로 취업과 실업 사이를 오가야만 했다. □□관리공단에서 퇴직한 후 3년 가까이 여러 형태의 경비 업무를 전전하던 심씨는 97년경에 통신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직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맡은 업무분야와 소요되는 기술 등이 잘 맞지 않아 8개월 정도 다니다 그만 두었다.

이처럼 심씨가 안정된 직장에 재취업하는데 실패하고, 저임금의 불안정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자 가계경제는 점점 어려워져 갔고, 가정불화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부인은 심씨에게 “왜 이것도 저것도 못하냐”는 식으로 불만과 잔소리를 늘어놓았고, 부부사이의 갈등도 점점 깊어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자녀문제를 놓고 싸우다 심씨가 부인을 때린 것이 원인이 되어 부인과 헤어지게 되었다. 부부싸움이 있던 지 얼마 후에 부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으며 그 이후로 현재까지 연락을 끊고 있다. 심씨는 대학 1학년인 아들하고는 가끔 연락을 하지만 부인과 중학생인 딸과는 연락이 두절된 채 지내고 있다. 실직 후 재취업에 실패하면서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던 심씨에게 가족과의 별거는 심씨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크게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생활이 불안정해 지면서 육체적·심리적 건강상태도 나빠졌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점점 꺼려하게 되었다. 그는 2년 전부터는 그 동안 피우지 않던 담배도 피우기 시작하여 하루 2갑 정도를 태우고 있다. 또 혼자 살고부터는 하루일과도 불규칙해져서 거의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보면서 지낼 때가 많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식사도 빵이나 라면으로 대충 때우거나 거르는 일이 많아졌다. 심씨는 젊은 시절부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으나 본인의 삶이 불행해진 후에는 기도해봐야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교회도 잘 나가지 않게 되었고, 신도들과의 관계도 소원해 졌다. 현재 심씨는 공공근로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 외에는 만나는 사람이 거의 없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가족과 별거한 후부터는 공공근로 외에는 거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공공근로를 해서는 월 4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도 1년에 6개월 이상을 할 수 없다. 그 결과 주거사정도 더욱 악화되어 30평형 빌라에서 반지하셋방으로 이사했다. 심씨의 근로소득으로는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빌라를 처분하고 현재의 반지하주거로 옮겼으며, 주택을 팔고 남은 잔금으로 모자라는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다.

심○부씨의 사례는 비교적 안정된 정규직장을 다니던 가장이 실직하고, 재취업에 실패하면서 그 가족과 개인이 어떻게 빈곤화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심씨의 경우 대체로 ‘실업 → 재취업의 실패 → 저임금 불안정 노동 → 경제적 결핍의 증대 → 부부갈등의 심화/가정해체 → 심리적·육체적 건강악화 및 사회관계의 단절과 주거빈곤의 심화’라는 과정을 통해 복합적인 결핍의 상태로 빠져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나아가 이러한 복합적 결핍의 상황은 노동과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케 함으로써 종극엔 심○부씨를 노동불능자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다음에 살펴볼 이○성씨는 복합적 결핍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결국 노동불능자로 전락한 경우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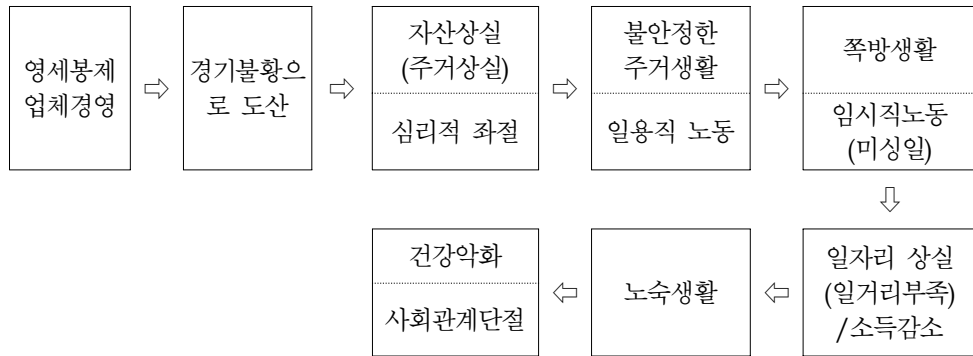


[그림 V-18] 노동빈곤으로 인한 복합적 결핍의 심화 (사례 21)

【사례 19】 앞서 등장했던 이○성씨(48세, 남)는 경제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경영하던 봉제공장을 폐업하면서 빚을 지지는 않았지만 전재산을 잃게 되었다. 사업실패로 실의에 빠진 이씨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막노동을 하며 전국을 떠돌다가 2000년경에 서울에 와서 재기를 준비했다. 그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기술인 미싱공으로 일하며

다시 일어서려고 했으나 봉제산업의 전반적인 사양화로 일자리 자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봄, 가을로 일시적으로 물량이 증가할 때만 잠깐씩 취업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나이가 많고 일을 빨리하지 못한다고 잘 받아 주려 하지 않았다. 계속되는 재취업의 실패와 경제적 빈곤으로 이씨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이 지쳐갔고, 2년 전부터는 노숙의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씨는 회현역을 기점으로 노숙생활을 하고 있으며, 생계는 노숙인 지원시설이나 교회를 돌아다니면 구걸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노숙생활을 하면서 이씨의 건강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감기는 매일 달고 살어. 이런데 있으면 못 먹어서 결핵 걸리는 사람이 참 많아. 술 먹어서 간 아픈 사람도 많고. 나 같은 경우는 간이 많이 나빠지고 체중이 많이 줄고 그런거지 뭐”. 또한 이씨는 노숙생활을 하고 부터는 스스로 가족이나 종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과 연락을 끊음으로써 사회관계에서의 단절과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이씨가 극한적인 배제의 형태인 노숙으로 내몰리게 된 과정을 보면 경제불황으로 인한 사업의 실패와 그에 따른 재산의 상실과 실업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씨의 전반적인 생애과정을 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배제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가족해체와 그로 인한 고아로의 성장, 초등학교 중퇴로 인한 학업중단과 아동기부터 시작된 노동생활, 이른 결혼과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의 경험 등 사업실패에 이르기 전에 이미 사회적·심리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배제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위기의 상황에서 이씨는 별다른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쉽게 노숙생활로 내몰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성씨의 사례를 통해 ‘노동빈곤’으로 인한 복합적 결핍의 상황이 초래되는 과정을 도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V-19] 노동빈곤으로 인한 복합적 결핍의 심화(사례 19)

라.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서의 노동빈곤

앞 장에서는 ‘노동빈곤’이 다른 차원의 사회적 배제의 원인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역으로 다른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의 요인들이 ‘노동빈곤’을 낳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사회적 배제의 요인들이 일방적인 인과관계로만 작용하기보다는 쌍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을 보다 심각한 사회적 배제의 상태인 중층적인 결핍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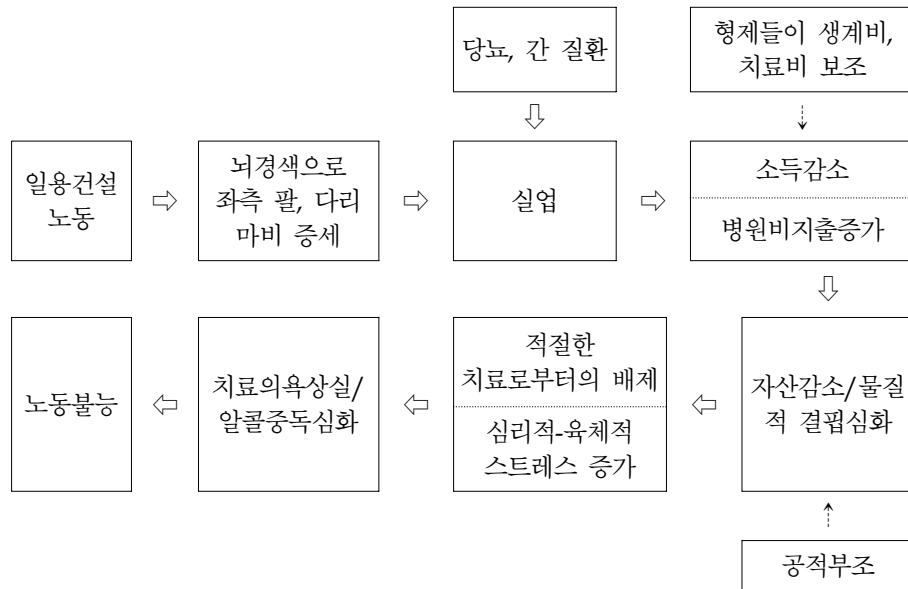
1) 장애 및 건강의 상실과 노동빈곤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상실과 심신의 장애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 ‘노동빈곤’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중증의 질환이나 장애는 취업기회로부터의 전면적인 배제를 낳기 때문에 당사자와 그 가족으로 하여금 쉽게 물질적 결핍을 포함한 복합적인 결핍의 상태에 처하게 만든다. 특히, 국가적으로 중증의 질환자나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현

실에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에서의 건강의 상실은 곧바로 극빈층으로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래의 권○진씨(뇌경색과 당뇨, 간 질환)와 이○교씨(뇌성마비 1급)의 사례는 건강의 상실과 장애로 인한 극단적인 ‘노동빈곤’과 그로 인한 경제적 빈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사례 10】 권○진씨(52세, 남)는 95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 증세가 오면서 일을 하기 힘들게 되었다. 권씨는 젊은 시절을 태백에서 광산노동자로 지내다가 30대 후반에 태백을 떠나 서울로 이주했다. 그가 광산을 그만 둔 것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정열을 기울여 도전한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실의에 빠져 서울로 이주한 후 특별한 기술도 자본도 인맥도 없었던 권씨는 용역회사를 통해 일용직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노모와 단 둘이 살았기 때문에 일용직 건설노동일을 통해서 먹고사는데 큰 지장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몸에 마비 증세가 찾아왔다. 몸의 마비는 육체노동에 종사하던 권씨에게는 생업의 전면적인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하면서 자신에게 당뇨와 간 질환이 있음을 추가로 알게 되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권씨는 3년간은 1년에 2-3개월 정도를 병원에서 지내야 했고, 치료비와 입원비, 생활비 등으로 그 동안 저축해 놓았던 돈과 기거하던 월세 방 보증금(300만원) 등을 모두 써 버렸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일을 할 수 없었던 권씨는 형제들의 도움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갔으나 생활비를 대주던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쓰러지고 나서는 도움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극도로 생활이 어려워진 권씨는 97년에 법정 영세민으로 지정되었으나 적절한 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면서 건강상태와 경제적 사정은 점점 악화되어갔다. 동사무소의 소개로 공원 등지에서 휴지를 줍는 일을 해 보기도 했으나 팔, 다리의 마비증세와 당뇨, 간 질환의 심화, 알콜중독에 따른 무절제한 음주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할 수 없었다. 현재는 권씨는 월 45만원 정도의 국가보조금으로 노모와 생활하고 있으며 일은 전혀 못하고 있다.

권○진씨의 사례를 통해 육체노동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빈곤층이 건강을 상실하고, 그로 인해 ‘노동빈곤’ 및 물질적 결핍이 심화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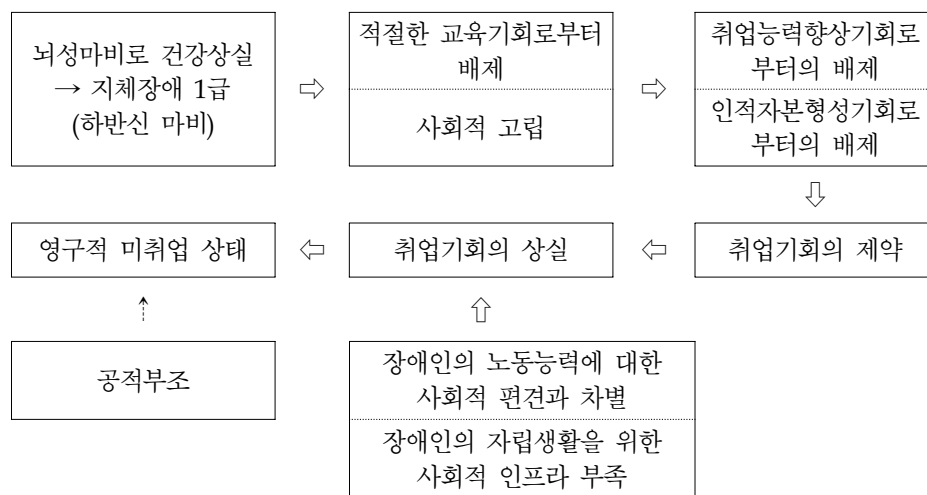


[그림 V-20] 건강의 상실에서 기인한 노동빈곤의 심화 (사례 10)

【사례 23】 이○교씨(38세, 남)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손의 놀림은 자유로우나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이동이 가능하다. 어려서부터 중증의 장애를 지닌 그의 삶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과정에서 누려야 하는 대부분의 기회로부터의 배제를 뜻했다. 우선 그는 성장과정에서 정규 학교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으며 집에서 독학으로 글을 배워야 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도 모두 검정고시를 통해 이수했다. 어려서부터 미술과 관련해서 재능을 보였으나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이씨로서는 자신의 재능을 살릴만한 과외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다. 20대 중반까지 집에서만 지내던 이씨는 독립하고 싶은 열망에 취업기술을 배우기로 마음먹고 천주교에서 운영하던 직원훈련원에 입소하였다. 미술적인 재능이 있고, 손재주가 좋았던 이씨는 목공예기술을 배웠고, 그 보다 장애정도가 덜한 다른 동료 훈련생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이며 두각을 나타냈다. 하지만 실력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휠체어 탄 장애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는 훈련원을 수료하고도 취업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장애인에게 취업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겠지만, 이따금 주어지는 취업기회도 실력보다는 장애가 덜한 사람에게 우

선권이 주어졌다. “국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2% 한다고 하지만, 뇌성마비 장애인은 꿈도 못 꾸는 일이다. 목발만 짚고도 거동이 가능한 소아마비 장애인 정도까지만 가능하지 우리 같이 휠체어 타야하는 중증장애인이나 보기 안 좋은 장애인은 안 된다.” 이씨는 장애인 고용박람회 등을 찾아다니며 취업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모두 면접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이씨는 직업훈련원에서 역시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아내를 만나 결혼하였지만, 아직까지 이들 부부에게 취업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현재 월 45만원 정도의 국가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의 장애를 가진 두 부부가 살기에 정부 지원금은 너무 작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고 있다.

중증의 신체장애자가 겪는 ‘노동빈곤’의 심화과정을 이○교씨의 사례를 가지고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V-21] 신체적 장애로 인한 노동빈곤의 심화(사례 23)

위의 두 사례는 장애와 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로 장기실직상태에 있거나 또는 평생을 미취업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경우들이다. 권○진씨는 육체노동자에게 신체적 건강의 상실은 바로 실업으로 이어지며,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물질적 결핍을 심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권씨의 사례는 이러한 물질적 결핍이 다시 신체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서비스의 배제를 낳으면서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교씨는 중증의 신체장애로 인해 평생에 걸쳐 취업기회가 단 한번도 주어지지 않은 채 미취업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로서, 우리사회에서 중증의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취업기회로부터 철저히 배제 당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자로 살아가거나 경제적 빈곤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요원한 일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2) 취약한 사회관계와 노동빈곤

가족, 친·인척, 친구, 이웃, 학교의 선·후배, 이전 직장의 상사나 동료 등 이른바 연줄이나 인맥을 통한 구직활동은 우리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취업에의 성공률 또한 매우 높다. 따라서 취업에의 성공 여부와 일자리의 종류 역시 그가 구축하고 있거나 활용 가능한 사회관계망에 깊게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취약한 사회적 관계가 ‘노동빈곤’에 끼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취약한 사회적 관계란 일반적인 유대관계에서의 빈곤을 뜻하기 보다는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을 지속시키거나 강제하는 관계를 뜻하는 것이다.

다음 사례에 등장하는 정○교씨는 농사를 짓다가 비교적 늦은 나이인 30대 중반에 상경한 후 그가 기존에, 혹은 새로이 맺는 사회관계에 의해 일용직 건설노동이라는 ‘노동빈곤’의 상황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 11】충북에서 중농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난 정○교씨(49세, 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부모의 대를 이어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다. 정씨는 농사를 짓던 중 한우사육을 시도한 것이 소값파동으로 실패하면서 아버지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부인과 세 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온 정씨는 여동생이 살고 있던 삼양

동 산동네에 350만 원짜리 전세방을 얻어 정착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계속해서 농사만 지어왔던 정씨로서는 서울에서 마땅한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고향을 떠나 왔기 때문에 전세금 외에는 재산도 없었다. 취업문제로 고민하던 정씨는 다행히 상경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동대문 평화시장에 다니고 있던 외사촌 누님의 소개로 평화시장의 경비로 취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장 경비는 상용직이었지만 급여가 작았기 때문에, 정씨의 급여만 갖고는 5식구의 생계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부인이 부업을 하고, 시골에서 쌀이나 부식거리 등의 현물지원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었다. 정씨의 부인은 삼양동에 정착하고 몇 달 후부터 이웃 부녀자들을 통해 부업을 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부터는 집 주변의 공장 등에 나가며 일을 했다. 삼양동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 집 주변에 영세한 공장들이 많았다고 한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가계소비가 늘어나자 정씨는 삼양동에 몇 년간 살면서 알게 된 이웃을 통해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았다. 취업자리를 알아보던 중 정씨는 이웃 남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던 건설일용직 노동이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경비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건설노동을 하기로 결심한 정씨는 경비일을 그만 두고 바로 앞집에 살던 석면공으로 일하던 이웃을 따라다니며 건설노동일을 하기 시작했다. 한 2년 정도 석면일을 하던 정씨는 추석에 고향에 내려갔다가 비계공 오야로 일하는 고향선배를 만나면서 일당이 더 높은 비계일로 일을 바꾸어 다녔다. 그러다 97년도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비계를 매다가 큰 사고를 당한 정씨는 2년 정도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야했다. 다행히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병원비는 나가지는 않았으며, 생활비도 보상 받을 수 있었다.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후 정씨는 다시 전에 일하던 동료들의 소개를 통해 아파트 건설현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고를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당은 적지만 덜 위험한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하거나 방화문을 등을 설치하는 안전관련 일을 하게 되었다. 이후 정씨는 다니던 아파트 현장의 공사가 종료되면 새로운 건설현장을 찾는 식으로 취업과 실업 상태를 오가고 있으며, 최근 2달간은 일거리가 없어서 쉬고 있다. 정씨는 전에 비계일을 함께 했던 동료나 안전일을 하면서 알게 된 동료, 사고를 당한 이후 가입한 건설일용노동조합을 통해 일거리를 찾고 있는데 최근에 경제상황이 나빠져서 그런지 일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정씨의 사례는 취업하는 과정에서 그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 일자의 성격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로 상경한 직후 별다른 사회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가 가장 먼저 접했던 정보는 친척의 소개를 통한 시장경비일이었다. 다음으로 그가 접한 정보는 건설일용노동이었으며, 건설일용직 노동시장에는 몇 년간의 서울 생활을 통해 구축한 인맥인 이웃주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정착하였기 때문에 야기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때 빈곤층에 있어 사회관계는 두 가지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 우선은 지역사회의 내의 사회관계를 통해 쉽게 일자리를 구함으로써 극한적인 경제적 빈곤의 상태를 모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빈곤지역에서의 사회관계망이 지닌 가장 큰 미덕이자 특징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씨 부부는 빈민지역에 정착함으로써 일자리에 대한 정보나 그들이 취업가능한 일자의 성격 또한 기존 도시빈민층의 직업형태 내로 제약 당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불완전 고용이라는 '노동빈곤'의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되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3) 학업중단과 노동빈곤

우리사회와 같은 학력중심의 사회에서 저학력은 그 자체로 고소득의 안정적인 직장을 확보하는데 있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학업중단은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로부터의, 그리고 취업에 도움을 줄 만한 인적 자본을 형성할 기회로부터의 배제를 뜻한다. 그러한 까닭에 청소년기에 저임금의 불완전 고용상태로의 조기 편입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러한 고용여건의 개선을 어렵게 만든다.

다음에 등장하는 노○선씨와 이○설씨는 둘 다 어린나이에의 학업중단이 '노동빈곤'으로 이어지고, '노동빈곤'이 다시 생활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키는 과

정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 8】 노○선씨(48세, 남)는 2003년부터 회현역 일대에서 노숙인으로 지내고 있다. 그는 지속적인 ‘노동빈곤’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노름으로 카드 빚을 크게 지고는 가족에게 부채를 넘겨주지 않기 위해 이혼하고 노숙생활로 접어들게 되었다. 노숙 생활을 하기 이전까지는 건설일용노동이나 가스배달일을 하기도 했으나 노숙생활을 하고 부터는 교회를 돌아다니며 구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충남에서 빈농가정의 육남매 중에 다섯째로 태어난 노씨의 삶이 저임금의 불안정한 취업과 그로 인한 지속적인 빈곤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은 초등학교를 중퇴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학교와 집에서 부적응하던 노씨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출하여 상경했고, 이때부터 노씨는 저학력·미숙련자가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불안정 노동을 전전하게 된다. 그는 상경한 직후 서울역에서 아동노동중개업자에게 잡혀서 중국집에 팔려갔다. 중국집에서는 1년 정도 일하다가 국자나 주걱 등을 이용한 주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다. 중국집을 나온 노씨는 다시 서울역에서 만난 사람을 따라서 충남과 경북 등지에서 농마주의 생활을 하였고, 충북 옥천에서 양계장일 등을 하며 10대를 보냈다. 이후에도 특정한 기술을 배우거나 직업경력을 쌓지 못하고 서울, 인천 등지를 떠돌며 매월로 생계를 잇거나 건설일용, 양복점, 납공장, 뱃일 등을 하며 2-30대를 보냈다. 노씨는 30대 후반에 중국집 배달일을 하다가 중국집 주인의 권유로 친구들에게 1,500만원을 빌려 중국집을 인수하여 잠시 경영하기도 했으나 장사가 안 되어 얼마 못가 빚만 지고 처분해야 했다. 그는 중국집을 경영하면서 35세에 13살 연하의 부인을 만나 결혼하였다. 중국집을 처분하고는 인력시장에 나가 건설노동을 하며 부채를 갚았다. 이후 부인과 함께 포장마차를 하기도 했으나 부부싸움을 한 후 3일 정도 장사를 안 나간 사이에 포장마차를 도난당하게 되면서 노씨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실의에 빠져 술로 세월을 보내기 시작했다. 노씨가 술로 세월을 보내면서 취업을 중단하는 동안 가정형편은 점점 나빠져 급기야는 가족전체가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살림터, 자활의 집, 공원노숙 등을 전전하게 된다. 그러다가 카드 빚을 내어 경매를 하게 되면서 3천만 원가량을 빚지고는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에 공공근로, 봉어빵 노점, 가스배달 등을 잠깐씩 하기도 했으나 늘어나는 이자를 갚기에도 모자랐다고 한다. 그렇게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카드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한 노씨는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부인과 자녀들과

헤어지고 노숙자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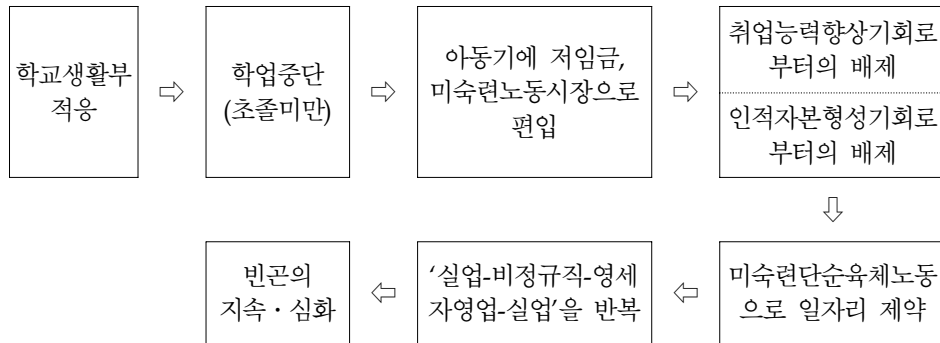
【사례 1】 이○설씨(46세, 남)는 5년 전부터 겨울철에는 국화빵 장사를, 여름철에는 주로 중국집 배달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국화빵 장사를 하면 일일 매출액이 6만원 정도 되지만, 장사를 못하는 날도 있고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실제 평균소득은 매출액보다 훨씬 더 적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예전만큼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국화빵 노점을 처분하려고 고려중이다. 젊어서부터 시작한 중국집 배달일도 나이가 마흔이 넘어서고 부터는 육체적으로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육체적으로 덜 힘들고,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생각보다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다. 2001년에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간 적이 있으나 배달일(월 150만원)에 비해 급여(월 80만원)가 너무 적고, 24시간 맞교대로 하는 일에 적응을 못해서 6개월 정도 근무하고는 그만두었다. 2003년 가을에는 구청에서 용역을 받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사람이 소개료로 500만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포기한 적도 있다. 또 2003년 말에는 구청에서 청소과 직원을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 응시했으나 탈락했다.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아서 18명 뽑는데 대졸자를 포함한 250명이 넘는 사람이 왔다고 한다.

이○설씨가 영세 자영업이나 배달일과 같은 ‘노동빈곤’의 상황에 접어들게 된 것은 초등 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진학을 중단하면서부터였다. 전라도 익산이 고향인 이씨는 학교생활에 부적응하여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는 면사무소 급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채 1년이 못되어 그만 둔 면사무소 급사로 시작된 이씨의 직업력은 2000년에 국화빵 장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의 직업 편력을 보여주고 있다. 20대 이전까지는 익산과 대전, 서울 등지를 오가며 떡집종업원, 과일행상, 구두닦이 등을 전전했으나 특별한 기술을 익히거나 직업경력을 쌓지는 못했다. 20대 이후에는 서울에서 술집웨이터, 리어카 과일행상, 건설일용노동, 중국집 배달원 생활을 하였다. 이 가운데 중국집 배달원은 30대 초반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는 일로서 이씨의 직업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씨는 1998년에 중국집 배달원을 하여 저축한 돈 3천만 원가량을 투자하여 IMF로 망하여 싸게 나온 중국집을 인수하였다. 하지만 어렵게 인수한 중국집은 장사수완이 부족하여 채 1년이 못되어 실패하고 만다. 빚을 지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 저축

한 돈을 모두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장사에 실패하고 실의에 빠져 있던 이씨는 슈퍼를 하던 친구의 권유로 국화빵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설씨는 아동기부터 일을 해 왔지만 오토바이 면허 외에 다른 자격이나 면허, 또는 숙련된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해 보려고 몇 번 시도하였으나 이론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포기했다. 중국집 배달원은 이씨의 직업력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별다른 기술이나 오랜 숙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이라 경력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는 처지며, 오히려 나이가 들고 체력이 약해지면서 배달원으로서의 취업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위의 두 사례는 모두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인 아동기에 학업을 중단하고, 어린 나이부터 저임금·미숙련의 비정규직종에 편입되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러한 직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들의 생애를 보면 학업중단으로 청소년기에 직업능력을 배양할 만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것이 지속적인 ‘노동빈곤’의 상황을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학업중단으로 인한 취약한 인적 자본의 형성 또한 이들의 ‘노동빈곤’상황을 설명해 주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들은 평생에 걸쳐 소폭의 부침을 거듭하면서 빈곤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이가 들고 ‘노동빈곤’이 심화되면서 빈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V-22] 학업중단으로 인한 노동빈곤의 심화(사례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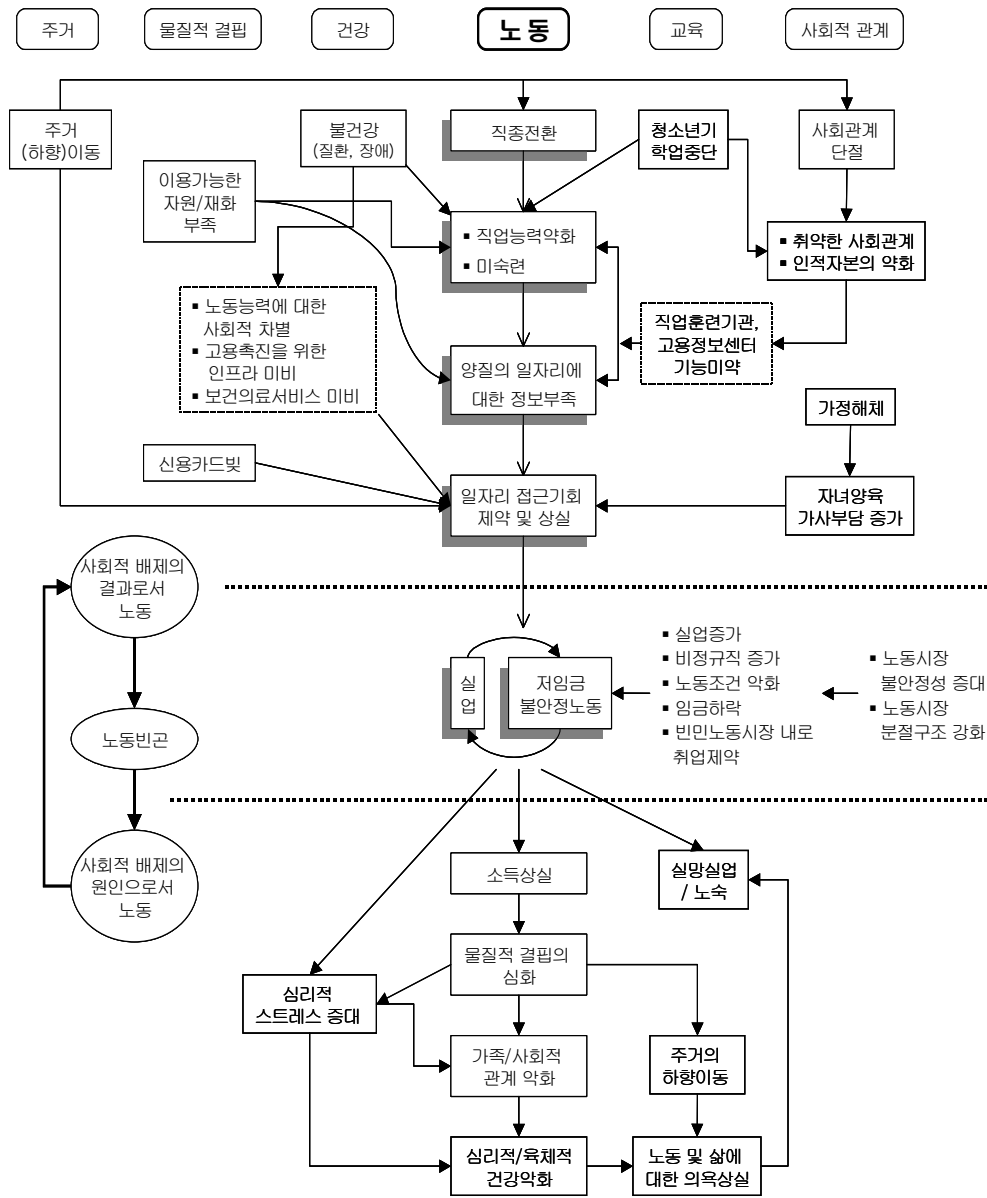
마. 소결

지금까지 ‘노동빈곤’이라는 개념을 통해 실업, 저임금 불안정노동과 같은 노동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가 전통적 의미의 빈곤을 포함한 다른 차원의 사회적 배제로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실업과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문제가 빈곤화(Pauperization), 또는 생활상태의 전반적인 악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발견은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빈곤층의 증대와 가정해체, 노숙인 증가, 자살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의 발생 및 심화는 실업이 경제적 차원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도록 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급증했던 실업률(1998년 3/4분기에 7.7%까지 증가)이 빠른 감소추세로 돌아서고부터는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외환위기 이후 IMF 체제하에서의 구조조정을 거치는 동안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가장 뚜렷한 현상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의 비정규화’였다(안주엽·노용진·박우성·박찬임·이주희·허재준, 2001). 그 결과 1999년 이후 전체 노동자에서 임시·일용직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가 부각되었다. 빈곤문제와 관련해서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가 시사하는 바는 종전

의 가장 유효한 빈곤대책이었던 고용의 창출만으로는 더 이상 빈곤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노대명, 2003; 장세훈 2003)은 이러한 사실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서도 실업 및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의 문제가 경제적 차원의 빈곤과 다양한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이나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충분히 잘 조명되어왔다. 이 글이 기존의 연구들과 구별되는 점은 노동과 빈곤의 문제에 관한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배제의 관점을 이용해서 노동과 빈곤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노동의 문제가 경제적 차원의 빈곤 및 사회생활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사회적 배제들과 얼마나 깊은 인과적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의 문제가 복합적인 결핍의 상태로서의 빈곤을 낳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도 성과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 화살표는 영향력이 미치는 방향을 의미함.

[그림 V-23] 노동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

끝으로 서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노동권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핵심적인 사회적 권리로 볼 때,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러한 권리를 누리지 못했을 때 인간다운 삶의 영위가 어렵다고 할 때, 노동권의 침해는 그 자체가 심각한 인권 침해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권의 차원에서도 모든 개인들이 노동권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그런데 본 연구와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듯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갈수록 그 기세를 더하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질서로의 재편은 많은 국민들을, 특히 여성, 고령자, 저학력자, 기존 빈곤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노동권으로부터 배제시키고 있으며, 그들의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노동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되며, 실업 및 저임금불안정 노동과 같은 '노동빈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저지하고, 노동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철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시장경제질서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빈곤층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안정적이고 적절한 임금이 보장되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3. 교육과 사회적 배제

가. 교육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

제도교육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피교육자의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흔히 개인은 학교에서의 학습 과정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소양과 장래의 직업 능력의 기초가 되는 지식과 경험을 습득한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어떤 수준의 학교 교육을 받았는가가 그 사람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요

컨대 교육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직업적 지위나 계급적 위치, 소득을 얻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어느 사회에서나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학력에 의한 차별의 정도가 유독 심하다.

‘사회적 배제’를 ‘어떤 사회의 주류적인 사회적·직업적 환경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불이익의 상태(G. Room 외, 1993)’라 할 때, 교육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배제의 한 형태는 첫째, 학교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학교를 못 다니는 것’이나 학업중단의 현상은 대부분의 또래 사회구성원이 누리고 있는 지적·정서적 성장의 기회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 배제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학업을 중단한 사람이 장차 성인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의 불이익—소득, 지위, 고용 및 정치 참여의 기회 등에 있어서의 차별과 소외를 낳는다는 점에서 또 다른 영역의 사회적 배제를 낳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교육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의 또 다른 형태는 교과성적에 의한 인격적 차별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는 가정의 경제형편에 따라 학생을 차별 대우하는 경향은 많이 사라진 반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 대한 차별은 극심한 편이다. 이것은 교사나 학생 모두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보편화되어 있다. 학업 능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제도권 학교의 주류문화 속에서, 자연히 학업 성적이 우수하지 못한 학생은 그들의 다른 능력, 인격, 장점 등을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며 때로는 부당한 차별을 받기까지 한다.

세 번째 형태의 사회적 배제는 사회활동을 하는 가운데 학력(學歷)에 의해서 차별과 불이익을 겪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졸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대졸자의 월급은 150 정도이다. 학력에 의한 차별은 비단 소득 수준뿐 아니라 근로조건, 승진의 기회, 대인 관계 등에서도 나타난다.

나. 학업중단

우리나라에 절대빈곤이 만연했던 1980년대 이전에는 경제적 궁핍 그 자체가

학교 교육의 기회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의 결과로 국민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교육체계가 점차 확대되면서 국민의 평균 수학연수(受學年數)도 10~11년에 이르게 되어, 오늘날의 청소년이라면 큰 이변이 없는 한, 최소한 고졸 정도의 학력을 갖는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약 10% 정도의 학생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각급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미졸업률과 다음 학교로 진학하지 못한 비진학률을 적용하여 고등학교 졸업에까지 이르지 못한 비율을 계산하면 10%에 이른다. 즉,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 10%의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거나 진학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이 가운데 조기유학이나 이민을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을 뿐 아니라, 본 연구의 주제인 사회적 배제와는 무관한 현상이라 하겠다.

13세 이상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 조사에 따르면 학업을 중단하게 된 이유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32.1%)', '집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가출을 하다보니까(29.6%)',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28.1%)', '집안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어서(10.1%)' 순으로 응답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응답자를 가정형편에 따라 빈곤층, 중간층, 부유층으로 나누었을 때, 빈곤층 청소년 사이에서는 집안 생계상의 이유 때문에 학업을 그만 두는 경우가 20.8%에 달한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논하는 작금에도 저소득층 가정에는 생계상의 이유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일정 비율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절대빈곤이 저학력의 직접적이고도 주된 원인이었던 60-70년대를 준거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우리 사회는 보통, 위와 같은 생계형 비자발적 학업중단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경우를 개인의 자의적 학업포기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즉, 경제적 결손이 명백한 형태의 직접 원인이 되지 않는 사례—가정불화나 학교에 대한 부적응 때문에 학교를 자퇴하는 경우는 학생이나 부모 개인의 의지나 노력이 부족한 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그 책임 역시 전적으로 본인

에게 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가설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현행 학교 교육의 방식—학생의 지도와 관리, 수업, 평가 등은 계급? 계층적 편향성을 갖지 않는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제도여야 한다. 둘째, 학교 교육은 학생 개개인이 갖고 있는 학습욕구, 학업성취도, 가정환경 상의 차이 혹은 문제를 넘어서서 모든 학생이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는 조건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학생이 학교 문을 들어서서는 순간, 학습에 대해 비슷한 정도의 동기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개별적인 지도와 안내를 받는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교는 공교육의 붕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기능장애에 빠져 있다.

고등학교에서 상위권에 속해 있으며 장차 명문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그 졸업장을 갖고서 좋은 취직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학교의 수업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가 아닌 학원, 혹은 과외수업을 더욱 매력적인 교육(기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성적이 하위에 있거나 현재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여 명문대학 입학은 물론 장차 좋은 취직자리를 획득할 가망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결국 오늘날 학교는 이 두 유형의 학생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자의 학생들에게 학교는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서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으나 ‘학원’에 비해서는 열등하거나 심지어는 부수적인 수단일 따름이며, 후자의 학생들에게는 학교는 수용소와 다를 바 없다. 이것이 오늘날 학교 해체, 혹은 학급 붕괴의 현실이다.

오늘날 학교는 학습의 욕구와 성취동기를 유발하고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학교 밖의 영역, 즉 가정과 사교육 시장에 일임하고 있다. 학교를 좋아하지 않거나 공부에 흥미를 못 느끼는 학생에 대해서 “왜 그러한지”, 그들의 관심과 자발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입시 공

부로 수렴되도록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수업은, 부모에 의해서 공부하도록 끊임없이 독려 받고 학원에서의 선행학습을 통해서 이미 실력이 앞서 있는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에 이미, 고학력 부모를 가진 중산층 가정 자녀들과 저학력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 사이에는 사전 지식이나 학습능력 면에서 차이가 있게 되고, 뒤쳐진 위치에 있는 아이들은 교사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가운데 학습부진의 간극은 더욱 커져서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지고 자연히 공부에 대한 흥미도 반감되는 것이다. 기존의 교육제도는 이미 학교 밖에서 형성된 학습능력과 학습태도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중상위권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이끌어간다. 학습능력의 지체와 결손을 보완하고 공부에 흥미를 갖도록 지도하는 책임은 철저히 가정의 부모와 학원에 맡겨져 있다.

이 같은 교육체계 속에서 가정과 사교육 영역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학업성취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고 점차 공부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현상을 전적으로 개인의 의지박약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교육이 기본적으로 '선발(selection)'에 목적을 두고 그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합당한 배려를 하지 않는 한, 선발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 경쟁 자체에 의욕을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따라서 중퇴생이나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의 문제를, 그들 개인에게 어떤 병리적 문제가 있는가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 및 학교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먼저 질문할 때 그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자퇴나 학업 포기과 같이 겉보기에 스스로가 내린 판단처럼 보이는 결정에 의해서 배제되는 현상을 '자발적 배제(self-exclusion)'라 한다면, 자발적 배제도 사회적 배제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 결정의 메카니즘 속에 사회구조와 제도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한 유형으로 자발적인 학업포기의 사례도 포함시키고자 한다.

1) 가정해체와 빈곤으로 학업이 중단된 경우

【사례 29】 함○민씨(21세, 남)는 현재 맥주집 웨이터로 생활비를 벌면서 체육지도자가 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에서 경험을 쌓고 있다. 21살인 그는 친구와 자취를 하고 있는데 가족이라고는 장애인보호시설에 있는 아버지뿐이다. 그나마도 나중에 수소문해서 찾은 것이고 원래 아버지는 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함씨를 혼자 놓아두고 집을 나가버렸다. 이미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별거를 했던 부모님은 1년 후에 이혼을 해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다. 강원도 홍천에서 경기도 안산으로 이사와 아버지와 단둘이 살 때도 아버지는 항상 술에 절어 있었고, 마침내 그런 아버지마저 그를 남겨 놓고 말없이 사라져버렸다. 12살 나이에 혼자가 된 그는 동네 형들 틈에 섞여서 초등학교는 간신히 졸업했지만 중학교 입학은 엄두를 낼 수 없었다. 이후 이 곳 저 곳을 전전하다 어떤 그룹홈에 들어가 2년 정도 살았다. 거기서 검정고시도 보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녔는데 그 곳을 나오면서 자연히 학업도 중단됐다.

【사례 16】 박○석씨(21세, 남)는 세 살 때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전라남도의 큰아버지댁에 맡겨졌다. 어렸을 때여서 이유는 모르겠으되, 제주도에 살던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지 아버지가 박씨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고 한다. 그에게는 열세 살 손위의 누나가 있었는데 예닐곱 살 때까지는 누나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누나는 열댓 살부터 혼자 살았다고 한다.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얻어 충북 음성에 살림을 차리자 박씨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처음 새엄마와의 생활은 일 년을 채우지 못했다. 아버지와 그분의 결혼생활이 깨지고 아버지가 두 번째 새어머니를 얻었기 때문이다. 새엄마 밑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지만, 거의 가출하다시피 집에는 잘 안 들어갔다. 집에 잘 안 들어오기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아마도 건축현장에서 막노동을 했던 것 같다. 열 살 때 누나를 만나 누나의 시댁에 들어가 살았다. 누나의 결혼생활이 파탄나면서 열여섯 살 때 다시 혼자가 되었다. 아는 분의 소개로 안산의 그룹홈에 들어가 2년 반 정도 지냈다. 그 곳에서 검정고시 공부를 해서 합격했다. 열아홉 살 때, 그룹홈에서 만난 친구 함○민씨와 자취 생활을 시작했다. 주유소, 할인매장, 공장 등을 거쳐 지금은 함○민씨와 마찬가지로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저녁 때 맥주집에서 일한다. 또 컴퓨터 기술자가 되고

자 컴퓨터가게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

함○민씨와 박○석씨는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불가피하게 학업을 중단했다. 가정이 해체된 배경에는 경제적 실패와 곤궁한 살림, 그에 따른 불화와 이혼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어린 나이에 보호자를 상실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지로 학업을 계속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들이 학업중단에 이르게 된 원인은 순전히 가정해체라는 객관적 조건이다. 다만,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이들이 중도에 가출청소년을 위한 그룹홈에 몸담게 되면서 고입 검정고시에도 합격하고 성실한 삶의 자세를 조금씩 익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구체적인 직업적 전망을 세우고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부분적이나마 문제 해결의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2) 학업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 자발적 배제

【사례 2】 강○수(16세, 남)의 초등학교 시절은 그런대로 평온했다. 적어도 어머니가 가출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아버지는 건축현장의 타일공이었는데 돈을 잘 벌어들이지는 못했어도 일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다. 아버지의 수입이 불안정해서 어머니는 식당에 나가 일을 했다. 어머니의 귀가 시간이 늦을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술에 취한 아버지와 늘 싸움이 일어났다. 결국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강씨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출했다. 지금은 을지로에서 친구분과 조그만 식당을 동업하고 있다.

강씨는 학교 가기가 싫어서 학교를 두 번 옮긴 끝에 중학교 1학년을 중퇴했다. 처음에는 축구를 하고 싶어,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축구부가 있는 남대문중학교에 입학했는데, 한 참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긴 통학길을 친구 하나 없이 다니려니 재미가 없었다. 한 학기를 채우지 못하고 집에서 놀았다. 학교에 안 가는 친구들이 있었으므로 심심하지는 않았다. 다음해에 고명중학교 1학년으로 복학해서 한 달쯤 다녔다. 늦잠을 자고 나면 학교 가기가 싫어지고, 하루를 결석하고 나면 선생님한테 야단맞을 일이 걱정돼 또 다음날도 안 가버리는 식이었다. 그리고 다시 16살 때 삼선중학교 1학년이 되었다가 일주일만에 그만

두었다.

아버지의 술주정이 짜증스러워서 어머니한테 가서 살기도 했는데, 아침에 혼자 일어나 학교에 가는 일이 힘들었다(어머니는 새벽에 장을 봐서 식당으로 출근하고 난 뒤였다). 어떻게든 학교를 다니게 하고 싶었던 어머니는 윤수가 학교를 그만두자, 그러려면 아버지하고 살라고 쫓아보냈다. 윤수한테는 학교를 안 다니고도 그럭저럭 사는 동네 형들의 모습이 더 가깝게 들어온다. 22살 먹은 어떤 동네형은 학교 안 다니면서 말썽을 피우다가 웨이터를 해서 돈을 좀 모으더니 지금은 포장마차를 하고 있고 전셋집도 마련했다. 윤수는 그런 걸 보면서 ‘저렇게 벌면 되는데 뭐하러 학교를 다니느냐’고 생각한다. 지금 윤수는 어머니 식당 옆 집 아저씨 소개로, 사장 빼고 직원이 두 명 있는 공장에서 10일째 일하고 있다. 쇠붙이 모형을 찍어내는 금형공장인데, 이 기술을 한 3년쯤 배워놓으면 취직도 잘 되고 자기 공장을 차려도 벌이가 좋다고 해서 시작한 일이다. 자신이 3년을 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사례는 앞서 가정이 완전 해체된 경우에 비해서, 적어도 부모 중 한 쪽으로부터, 그리고 누나들로부터 기본생활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는 점에서 상황이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강씨는 중학교 입학 전, 이미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와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그의 이러한 상태에 주목하고 그와 깊이 대화를 나누었던 상대는 전혀 없었다. 교사 중 누군가가 그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공부가 아닌 다른 방면에서의 능력 개발을 지지하고 격려해주었다면, 그가 학교에 머물렀던 기간은 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공부만을 강조하고 성적이 저조한 학생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학교가 그는 재미없었던 반면, 중퇴의 경력을 가진 또래들과 친하게 지내면서는 ‘공부가 전부가 아니다’는 가치관—학교가 그토록 강조하고 주입하려 했던 것과는 정반대된 가치관으로 경도된다. 공부에 매진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뒤떨어진 학업능력과 낮은 성취동기로 인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그로 인해 학습의욕을 상실함으로써 스스로 학업 기회를 포기하는 형태의 배제, 즉 자발적 배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자퇴나 학업 포기과 같이 겉보기에 스스로가 내린 판단처럼 보이는 결정에 의해서 배제되는 현상을 ‘자발적 배제’ (self-exclusion)라 한다면, 자발적 배제도 사회적 배제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 결정의 메커니즘 속에 사회 구조와 제도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성적에 의한 인격적 차별²⁵⁾

“공부 잘하는 애들, 엄마가 자주 학교에 찾아오고 학교에 후원을 많이 하는 집 애들은 선생님들이 잘 안 건드려요.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 한 분 있었는데, 1등 하는 애가 준비물을 안 가져오면 ‘짜아식’ 하고는 그냥 들여보내요. 어떤 애(성적이 썩 좋지 않은 평범한 아이)는 수업 중에 다리를 떴다고 그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맞았지요. 개는 나중에 자기가 왜 맞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선생님들은 성적에 따라서 애들을 차별하죠. 그 반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을 (‘애를 본 받아라’ 하는 식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대놓고 칭찬을 한다든지, 반에서 1등인 애를 교무실로 불러서 문제집을 준다든지 해요. 또 다른 반의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자신이 담임인 반의 공부 잘하는 학생 얘기를 늘어놓기도 하고요. 한 마디로 편애하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칭찬과 특별대우를 받고, 그렇지 못한 학생은 (본인이 이유를 모를 만큼) 사소한 잘못에도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정신적 고통이나 소외감, 위축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성적제일주의는 다음의 사례에서와 같이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불공정한 왜곡 현상을 낳기까지 한다.

“언젠가 중학교 때 음악시험이 단소(피리) 실기 테스트였어요. 한 명씩 나와서 연주를 하

25) 이하의 인용문은 「한국사회 빈곤의 새로운 양상에 관한 연구」 (학술진흥재단 협동연구과제, 2002) 중 신명호·이인제, “교육과 빈곤 탈출: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력저하 현상을 중심으로”(2004년 5월 발간예정)에서 인용한 것이다.

면 선생님이 점수를 불렀어요. 저는 피나게 연습을 했던 터라 제가 생각해도 참 잘했어요. 떠는 음까지 완벽하게 처리했던 만족스런 연주였죠. 94점을 받았어요. 최고 점수였고 아이들은 탄성을 질렀지요. 얼마 후에 우리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 차례가 됐는데 별 볼일 없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95점!",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상하다는 듯 술렁거렸죠.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쉬는 시간에 음악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군요. 평소에 음악선생님하고는 친한 편이었거든요. 선생님은 "○○야, □□(95점 받은 애)는 다른 과목 평균 점수가 높잖니? 음악 점수 때문에 평균 점수가 깎이면 안 되니까 그랬던거야. 네가 이해해라." 하시는거예요. 불공평하다고 느꼈지만 별수 없었죠. 또 미술시간에는 각자가 만든 공작품을 가지고 점수를 매긴 적도 있어요. 5명씩 자기 작품을 들고 나와서 교탁에 진열하고 들어가면 선생님이 출석부와 작품을 보시면서 하나씩 점수를 불렀지요. 공부를 제일 잘 하는 아이의 작품은 B+였어요. 개의 안색이 별로 안 좋더군요. 그런데 사실은, 한 아이가 결석을 했기 때문에 번호가 하나씩 앞당겨져서 진열된 거고 선생님은 그걸 모르고 점수를 매기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어떤 애가 아무개가 결석했노라고 선생님께 알렸고, 선생님은 다시 점수를 불렀어요. 처음에 B+를 받았던 아이의 작품은 A+로 바뀌었지요. 아이들은 킁킁대며 웃었어요. 모든 게 그런 식이에요. 체육시간에도 공부 잘하는 애의 실기 점수는 언제나 만점에 가까워요. 실력이 안 돼도 점수는 그렇게 주어지지요. 체육 점수 때문에 그 아이의 전체 평균 점수가 깎이면 안 된다고 선생님들은 생각하니까요."

라. 학력에 의한 차별

어떤 근로자가 저학력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승진에서의 차별, 부당한 인격적 대우, 열등감 등에 시달린다면 그는 학력자본의 결핍으로 인해 적절한 삶으로부터 배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례 12】 이○환씨(51세, 남)는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한 특급호텔의 고객지원실장이다. 그러나 실제 역할은 고객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의 난방, 전기, 통신시설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일이다. 그의 최종학력은 공식적으로는 초등학교 졸업, 실제로는 중학교

졸업이라 할 수 있다. 중학교를 다녔지만 비인가 학교였기 때문이다.

전남 해남이 고향인 그는 궁핍한 가정에서 7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이모집에서 1년 정도 머슴살이를 했던 적도 있다. 19살 때 서울로 올라와 사우나 목욕탕의 때밀이 보조원 생활을 시작했다. 몇 군데 목욕탕을 옮기면서 때밀이를 하는 틈틈이 보일러실에서 기술을 배웠다. 해군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외항선을 타려고 준비하던 중에 예전의 목욕탕 동료한테서 자기네 목욕탕 보일러실로 오라는 전갈을 받았다. 그 곳에서 일하던 중, 역시 보일러실에서 알게 된 옛 선배 한 분이 강릉에 관광호텔을 신축하는데, 가서 일해보라고 주선해주었다.

당시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가 ○○개발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강릉에 특급호텔을 짓기 위해 터를 닦고 있었다. 그는 보일러 등 기계설비 담당으로 채용되어 건물의 기초를 놓는 단계부터 관여했다. 지금은 그만두었지만, 처음 그를 그 호텔에 취직시켜준 선배의 친동생이 그의 상사로 있었고, 이씨의 동생 역시 전기설비 담당으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 이씨 자신은 다른 호텔에서 '월 20만원 정도 더 줄테니 오라'는 제안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돈 몇 푼 때문에 청춘을 묻은 직장을 떠나는 게 싫어 거절했다. 그는 지금까지 꼬박 26년 동안 그 호텔에서만 근무해왔다.

그동안 호텔의 소유주도 여러 번 바뀌었다. 공기업 이후에도 3대 재벌에 들었던 D그룹, N그룹 등이 운영을 했었고 잠시 한 사채업자가 가지고 있다가 95년부터 중견재벌인 E그룹으로 넘어왔다. 소유권이 바뀔 때마다 직원들의 물갈이가 있었지만, 다행히 그 호텔의 기계설비라면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고 있는 그의 기술경험 덕분에 그는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주임, 대리, 과장을 거쳐 현재는 실장의 자리에 있다. 그의 윗직급으로는 총지배인, 본부장, 사장 등이 있고 그와 같은 서열에 다른 부장과 실장들이 있다.

승진도 하고 월급도 조금씩 인상됐지만, 학력이 낮은 육체노동자인지라 그 속도는 매우 완만했다. 이씨 생각에는, '그래도 예전에는 기술을 가진 경력자를 조금은 인정해주었던 것 같은데 갈수록 학력을 중시하는 것 같다.' 현재 그가 속한 고객지원실의 직원 초봉은 공대 출신인 경우 월 110만원 정도로 같은 경력의 고졸 출신보다 20만원 가량이 많아서, 고졸 출신들의 불만이 높다. 그는 현재 연봉 3,1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그는 정년퇴직하더라도 별도의 퇴직금이 없다. 고객지원실에는 그의 밑으로 6명의 직원이 있다.

가장 힘든 것은 회사측이 지식경영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서 그것을 업무에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경영진이 제시하는 목록의 책을 읽어야 하고 컴퓨터를 익혀야 한다. 회사측은 이씨가 경험으로 체득한 기술들을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이용해 표준화하라고 요구한다. 그는 영어와 컴퓨터를 잘하고 자신보다 발표력도 뛰어난 대졸자들이 부럽고, 그런 능력이 비교될 때 위축감을 느낀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을 때는 모멸감이 들기도 한다. 그만둘까 생각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어떻게든 55세 정년을 채우고 싶어 버티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일하는 호텔의 산증인이나 다름없다. 초창기부터 26년 동안을 한 곳에서 일해 왔다. 만약 그가 대졸의 학력을 가졌다면 지금쯤 이사급 정도의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3,100만원이라는 연봉도, 퇴직금을 감안하고 같은 경력의 대졸자의 경우로 환산하면 낮은 편이다(그에게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음).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승진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연하인 고학력 상급자의 질책도 감내해야 한다. 원래 기능직 출신인 그가 기능직의 관리자로 올라가면서 화이트칼라 임원들과 접촉면이 넓어지고 그만큼 학력에 따른 차별과 능력의 격차를 실감하는 경우가 잦아진 셈이다.

그가 직장 이외에, 학력 때문에 열등감을 심하게 느낀 때는 자녀들의 가정환경 조사서에 부모 학력을 적어야 하는 경우였다.

마. 사회적 배제의 발생 요인들의 관계

1) 학업중단과 관련된 요인들의 관계

사회적 배제를 낳는 요인들은 차원이 다양하다. 한 개인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배제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그것이 각각 개인의 문제일수도, 가정 혹은 국가나 세계 차원의 문제일수도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지역사회, 국가, 세계라는 상이한 차원(층위)들이 양과 단면과 같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그림 V-24] 참조). 따라서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은 다중적인 구조 속에서 어떤 한 층위에 속하게 되고 그것이 다른 요인 혹은 현상을 낳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 영역에서의 ‘배제’의 가장 뚜렷한 양상은 ‘학업중단’인 바, 개인이 학업중단에 이르게 되는 과정과 다양한 원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가정의 해체(F)

가정의 해체를 낳는 요인은 빈곤과 배우자간의 갈등인데, 빈곤(F)의 요인 중의 하나는 ‘가구주의 실업(F)’일 수 있고, 실업은 국가(N)나 세계(G)차원의 경제적 요인에 의해 비롯되는 결과이다. 배우자간의 갈등은 국가(N)차원의 사회적 관습, 혹은 가족제도나 가치관의 변화 등에서 유래하는 것일 수 있다.

나) 학업에 대한 의욕 및 관심의 상실(I)

학생이 학업에 흥미를 잃고 공부를 게을리 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개인(I) 차원의 문제이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개인이 학업에 대한 자신감과 목표의식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배경과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단순히 개인의 나태함이나 병리적 태도의 문제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가정의 해체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가족원간의 관계, 특히 부부 관계에 불화가 심하거나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지지관계가 극도로 약화된 경우, 학생은 공부에 전념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① 가족의 지지관계 약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F) : 부모 한 쪽이 가출했거나 사망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상실되고 자녀가 방치되다시피 하는 경우, 더군다나 자녀가 육체적 혹은 정신적 학대를 받거나 가사노동의 부담을 직접 떠맡아야 하는 경우 등에는 학생이 학업에 대한 의욕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 또한 오늘날의 학교는 저소득층 자녀의 불리한 처지(불우한 가

정환경, 사교육으로부터의 소외)를 배려하지 않으며 학업성취도만으로 평가하므로, 그들의 다른 가능성을 개발하고 지지해주는 풍토가 전무한 실정이다.

② 자신감과 목표의 상실(I) : 환경적 요인에 의해 대체로 학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취약계층의 자녀들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칭찬받을 일이 없다. 학교 제도는 공부라는 단일한 가치만을 제시하고 경쟁과 선발(selection)을 기본 원리로 삼고 있으며, 능력과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자녀들이 학업에 대한 자신감과 목표의식을 쉽사리 상실하는 것은 현재의 공교육제도(N)에 원인이 있으며, 한편 교육제도가 학력(學歷)지상주의라는 가치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엘리트들에 의해서 주도돼온 국가주도의 근대화 과정의 역사와 계층구조(N)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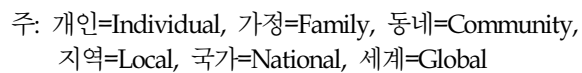
다) 유해한 교육환경(C)

평소 어울리는 동네의 친구나 선배들 가운데 학업을 중단하고 비행에 빠진 청소년이 많거나 지역에 반교육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경우, 공부에 흥미를 잃은 학생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 일탈할 가능성은 배가된다. 이처럼 유해한 교육환경이 형성되는 이유는 계층에 따라서 주거공간이 분화되고, 학력을 중시하는 주류의 문화와는 다른, 반학교적인 계층문화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① 계층에 따른 도시공간의 분화(L): 도시는 보다 동질적인 계층/계급끼리의 주거공간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분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정치 참여의 기회나 발언권이 적은 저소득층의 집단주거지 주변에는 교육에 유해한 시설이나 요소가 방치되는 경향이 높다.

② 상이한 계층/계급 문화의 형성(N): 학력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력성취를 위한 각종 정보와 전략을 일상적으로 교환하는 중산층 문화와 달리, 취약계층 청소년이 노출돼 있는 계층문화는 결석이나 일탈 행위의 빈도가 높

개인이 사회적 배제 상태에 이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이상의 요인들을, 그것이 속한 차원과 인과론적 관계에 입각해서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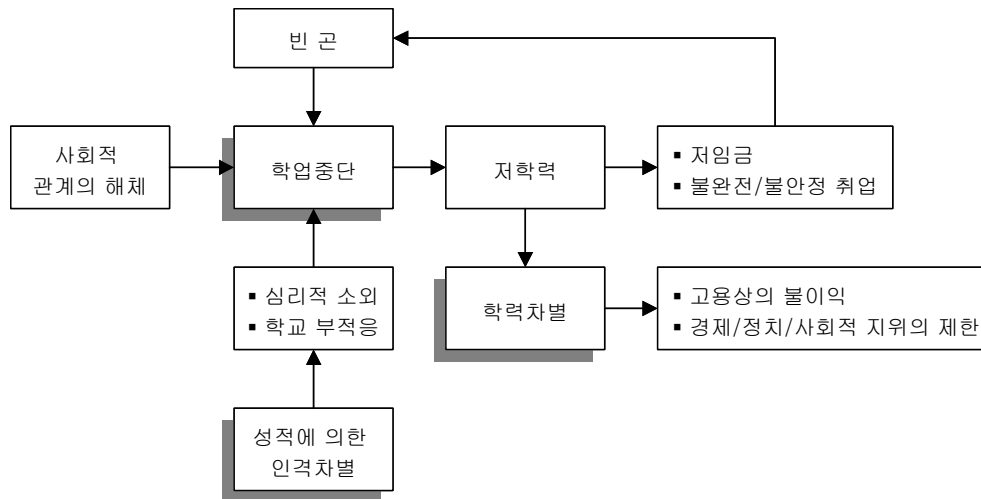
2) 교육을 중심으로 본 사회적 배제의 요인들

교육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배제의 형태는 ① 학업 중단, ② 성적에 의한 인격차별, ③ 학력(學歷) 차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현상들이 다른 영역의 사회적 배제, 즉 소비라는 측면의 배제 현상인 빈곤(물질적 결핍), 고용 영역에서의 불완전·불안정한 취업 및 실업, 사회적 관계의 해체, 심리적·정서적 소외감 등과 어떤 인과적 관계에 있는가를 정리해보면 이러하다.

우선 빈곤은 직접적으로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족원간 지지 관계의 약화(혹은 상실)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해체 역시 '학업중단'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학업중단'은 저학력을 낳음으로써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의 불완전·불안정 취업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이것은 다시 빈곤을 낳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 '학업중단'은 저학력에 따른 학력 차별의 폐해로 이어진다.

'성적에 의한 인격차별'은 차별받는 학생에게 심리적·정서적 소외감을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 학교생활과 학업에 대한 흥미나 의욕을 저하시킴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학업중단'을 가져오는 부분적 원인이 될 수 있다.

한편 '학력에 의한 차별'은 소득, 근로환경, 계급적 지위, 정치참여의 기회 등이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억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타격은 고용상의 지위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림 V-25] 교육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

4. 건강과 사회적 배제

가. 건강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

건강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건강을 상실한 개인은 불건강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경험할 뿐 아니라 교육, 고용 등 기본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다. 또한 건강의 상실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구의 경제적 지위, 관계의 역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개인이 건강의 상실이라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위기가 그와 혹은 그가 속한 가족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장벽이 높고 의료서비스 접근에의 불평등이 심한 경우 질병이나 장애의 발생은 그 자체로 개인과 가구 경제를 크게 위협한다. 또한 이미 의료서비스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의료서비스 접근의 제약으로 인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

는 빈곤층에게 질병의 위험이 집중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러한 빈곤과 건강의 악순환 관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빈곤과 건강이 맺는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빈곤과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를 포함한 이들 세 요소는 각각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건강의 상실이 빈곤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강, 빈곤 그리고 사회적 배제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면접 사례 분석을 통하여 불건강 자체가 개인이 경제활동이나, 교육 혹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거나 강화하는 경로를 살펴본다. 또한 교육, 고용, 소득, 주거 등의 영역에서 일어난 배제가 불건강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정의로, “개인의 사회권, 예를 들어 기초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부정되고 실현되지 않는 상황”(Alvey, 2000), 이나 “빈곤의 근본적 책임이 개인에게 있지 않으며, 주거와 취업, 그리고 적절한 생활여건 등과 같은 기회와 주요 결정과정에 대해 개인과 집단의 참여가 차단되는 다차원적인 불이익의 형태”(European Foundation, 1995;4)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의 정의에 따르면 건강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는, 건강의 상실로 인해 개인의 기초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부정되고 실현되지 않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주거, 취업, 보건·의료 서비스 등에서의 기회에 대해 개인의 참여가 차단되어 불건강 및 다차원적인 불이익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빈곤’과 ‘건강’의 악순환적 관계, 즉 빈곤한 사람들이 건강상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또 이들이 건강을 상실했을 경우, 빈곤이 악화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현상은 이미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998년 및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를 토대로 건강조

사부문과 영양조사부문 연계분석결과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질병 유병자율은 저학력·저소득·육체노동군 등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사회인구계층간 건강수준 격차는 1998년에 비해 2001년에 더욱 심화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흡연, 음주, 운동 등의 건강행태는 사회 전반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또한 질병과 관련이 깊은 영양 섭취와의 관계를 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모든 영양소 섭취수준이 증가되었으나,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간의 영양소 섭취량 차이는 1998년에 비해 2001년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5세 이하의 학령 전 아동 중 최저소득수준 가구의 아동의 경우에는 에너지와 주요 미량 영양소의 평균 섭취수준이 권장량의 60-80%에 불과해 그 외의 소득수준 가구의 아동에 비해 지극히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즉, 열악한 주거 및 이웃환경, 저소득으로 인한 영양부족, 생계유지를 위한 과도한 육체노동,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운동부족, 흡연과 음주 등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질병에 처할 위험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한편 빈곤에 의해 건강의 상실을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보장이 취약할 경우,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경제적으로 더욱 빈곤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매우 높고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보건의료 급여나 서비스가 많다. 빈곤층을 위한 의료급여제도의 경우에도, 그 대상자가 협소하고, 1종, 2종 구분이 있어 2종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여전히 상당한 정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소득수준이 취약한 빈곤층은 충분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기도 한다. 생활보호사업·공공근로·직업훈련·실업자 대부사업에 참여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질병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30.6%였고, 이들

가구의 83.2%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주 외, 1999; 강영호, 2003 에서 재인용) 질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할 경우, 노동 및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고, 위급한 경우 가계의 부채를 감수하고도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상황이 종합되어 결국 빈곤층으로 진입하거나 빈곤이 심화된다.

특히 건강의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와 같은 다차원적인 불이익을 야기하는 경우는 만성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를 갖고 있는 개인에게 주로 나타난다. 이들은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경험하기 쉽다.

1) 만성질환

만성질환은 뇌성마비,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만성신부전증, 신경계질환, 대뇌혈관질환, 간질환 등 10개의 질병을 포함하는 질병군이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지난해 국민건강영양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만성병 유병율이 1995년 전 국민의 30%에서 2001년에는 46%로 크게 증가했고, 60세 이상의 경우는 8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염 3개 주요 질환은 95년 대비 2001년의 유병율이 2배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만성질환의 특징은 Strauss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있다. (Strauss et al., 1984 ; 윤현숙 외, 2001 에서 재인용) 첫째, 만성질환은 장기적이다. 둘째, 예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확실하다. 셋째, 증상으로 인한 통증의 완화에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넷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다중성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쳐 가족 전체의 일상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보조적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여섯째, 경제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초래한다.

위의 특징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만성질환자 및 그 가족은 의료 및 기타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고, 계속적으로 투약 및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높다.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특히 저소득층 가정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생계비 부담으로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마저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성질환자나 그 가족에게 필요한 다양한 보조적 서비스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2) 희귀·난치성 질환

현재 우리 사회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은 혈우병, 파킨슨병, 백혈병 등 74개 질병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평생에 걸쳐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소아환자의 경우 성장발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심각한 장애를 가져온다. 경제적인 부담 역시 다른 질병들에 비하여 상당히 과중하여 가정경제가 극히 힘든 경우가 많으며, 더욱이 희귀한 질병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손명세, 2003)

희귀 질환의 경우에는 치료법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아 치료가 어렵고, 치료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값이 너무 비싸 일반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재 복지부는 인구 2만 명 당 1명의 환자가 있는 질환과 치료가 곤란한 질병을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정부가 약값을 지원하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는 고셔병, 베체트병, 근육병, 터너증후군 등 10여 종에 불과하다. 그 외 120종에 이르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중 희귀·난치성 질환이 발병하면, 발병과 동시에 가정의 모든 가용한 자원을 치료에 투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가구가 빈곤층으로 진입하기도 한다. 치료에 대한 희망이 다른 질병보다 막연한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죽음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도 높은 편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질병으로 인해 다차원적인 기회의 단절이

야기되며 사회적인 고립을 경험하게 된다.

3) 장애

WHO의 장애분류모델에 의하면 장애는 개인적 특성인 신체손상(impairment),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제한인 기능장애(disability), 그리고 장애의 사회적 결과인 불리(handicap)로 분류된다.(송실대학교 장애인복지연구회, 2004) 손상이란 유전,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하여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이 일부 상실되었거나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한다. 기능장애란 손상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정상적이라고 고려되는 방법이나 범위에 속하는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회적 불리는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역할을 고려하여 그 자신의 의학적 장애, 기능적 제약 또는 개인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돌아오는 불이익, 기회의 배제와 같은 것으로, 사회적 장애라고 할 수 있다.(윤현숙 외, 2001)

우리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동정과 시혜에 머무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장애를 '비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장애는 하나의 '차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부족은 장애인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여타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으며, 이것은 교육, 고용 등에서의 차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결국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포괄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장애인은 배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 건강의 상실로 인한 빈곤화 과정

건강과 빈곤의 관계 가운데 먼저 불건강으로 인한 빈곤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접근했을 때 건강의 상실이 이후 경제적 빈곤으로 연결되는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어린 시절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신체나 정신적인 장애를 입게 된 경우인데, 이 경우 적절한 교육기회로부터 단절되고 이로 인해 이후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차별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장애인에게 교육권이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이들이 빈곤을 벗어나 살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둘째는 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시기에 사고나 발병으로 인해 건강을 상실하게 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건강의 상실로 인해 경제활동 및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것이 가장 큰 빈곤의 원인이며, 당사자가 가구주인 경우 가구의 경제적 상황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소득의 중단과 더불어 막중한 치료비 부담이 가중되므로 가용자원을 모두 탕진한 후 빈곤층에 진입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 적절한 교육 기회로부터의 단절

【사례 9】 황○진씨(42세, 남)는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 척추에 장애를 갖고 있다. 황○진씨의 장애는 후천적인 것으로 8살 때 아버지의 심한 폭력으로 허리를 크게 다친 것이 원인이 되었다. 지금은 걸어 다닐 수 있지만, 당시에는 집에 누워있어야만 했다. 8살 때부터 걸을 수 있게 된 17살 때까지 황○진씨는 집에 누워서 생활했다. 그래서 결국 황○진씨가 학교에 가 본 경험은 초등학교 2개월이 전부이다. 누워있는 동안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형제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부탁하여 교과서를 얻어 혼자 공부하기도 했다.

황○진씨는 지금도 글자를 읽을 수는 있지만 제대로 쓰지 못한다. 행정관청 같은 곳에 가서 글자 못쓰는 것 때문에 주변의 시선을 느끼면서 글자만이라도 제대로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혼자 공부하고 있다. 야학에도 몇 개월 다녀보았으나,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그만두게 되었다.

학력이 없어 이력서 같은 것을 쓸 때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사실 일하는데 학력보다 기술이나 책임감 같은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학력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 같았다.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무튼 공부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많다.

【사례 23】 이○교씨(38세, 남)는 뇌성마비 장애인²⁶⁾이다. 집에서 출산을 하다가 산파의 실수로 태어날 당시 뇌신경에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교씨는 어린 시절 학교생활을 함께 한 친구에 대한 추억이 없다. 초등학교에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작은 가게를 하시는 아버지에게 생계를 책임져야 할 아홉 명의 대식구가 있었고, 살림을 맡은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한 이○교씨를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는 일을 매일 하기란 역부족이었다. 그나마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룹으로 초등학교 범위를 과외지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만큼 집중하거나 공부를 따라가기도 힘들었고, 또 여전히 이○교씨를 업고 다닐 사람이 없어서 오래 다니지는 못했다. 그 후 이○교씨는 중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쳤다. 그러나 검정고시로 학력은 얻더라도 함께 공부하는 학교생활의 추억은 얻을 수 없는 것이었다.

공부에 대한 미련을 계속 가지고 있던 이○교씨는 결혼 후 약간의 안정을 찾으면서 다시 공부하기로 했다. 그리고 방송통신고에 입학했다. 당시 이○교씨는 안산에 살고 있었고, 학교는 수원이었다. 매일 라디오 방송으로 집에서 각자 공부하고, 격주로 일요일마다 학교에 갔다. 학교에 가면 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휠체어에 앉은 이○교씨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방송고이다보니 동료들의 나이도 천차만별이었고, 설령 같은 나이또래를 만난다하더라도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기란 쉽지 않았다. 그 나이또래의 남자들이 하는 사회생활, 직업, 안정, 자녀교육, 자동차, 세금 같은 얘기는 이○교씨의 삶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었다. 생활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자연히 할 얘기가 없어졌다.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근처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는데, 이○교씨는 혼자 교실에 남아 도시락을 먹었다. 몇몇 친구들이 같이 나가자고 했지만, 근처 식당에 휠체어가 올라갈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을 이○교씨는 알고 있었다. 장애인이 사회생활 하기란 힘든 것이구나 절실히 느껴졌다.

26) 뇌성마비 장애의 주 증상은 근육의 마비이며, 대부분의 경우 감각장애, 언어장애 등의 다른 장애를 동반한다. 마비의 경우 경직형과 무정위 운동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무정위 운동형은 얼굴과 목 부위 그리고 손목과 손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뒤틀리는 것이 특징이다. 무정위 운동형은 대부분 지능이 정상이므로 창작활동 등이 가능하지만 취업은 다른 장애에 비해 잘 되지 않고 있다(송실대학교 장애인복지연구회, 현대장애인복지론, 2004, 학지사).

어렵게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이○교씨는 방송대에 진학했다. 평소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많았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보내주어 일본에 몇 차례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이○교씨는 일본어를 배워, 관심분야를 계속 공부하고자 했다. 혜화전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편리하다는 이유로 혜화동 캠퍼스를 이용했다. 그런데, 학교에 올라가면 또 수많은 계단의 장벽이 그를 막아섰다. 방송대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이○교씨가 계단을 오르려면 적어도 4명의 사람들이 그를 들어주어야 한다. 그렇게 4년을 학교 다닐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한 학기 정도 다니다가 괴리감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생활을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다.

뇌성마비 장애인은 보기가 흉하다는 이유로 집에 가둬놓고 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회성 발달도 느리고, 학교도 못가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 가더라도 겉으로 지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 무시당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사례 23】 김○정씨(39세, 여)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14살 때부터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시설에서의 생활은 매우 단순한 것이었다.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나오는 밥 먹고 자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대규모 시설이었기 때문에 시설 내에 특수학교가 있었는데, 학급 친구의 대부분이 정신지체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상의 수준을 소화해 내지 못했고 김씨는 그것이 답답했다. 특수학교로 중학교까지 졸업했지만, 배운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시설 내 장애인들이 나이가 들수록 외부에 나가 사고를 칠 위험이 커진다 하여 밖에도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게 했다. 김씨는 계속해서 시설을 나가 진정한 자기 생활을 찾고자 하였으나 가족, 시설의 선생님들, 사회 어느 누구도 그녀의 의지를 알아주지 못했다. 어머니는 여기서 나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시설에 계속 있기를 바라셨다.

김씨도 결혼 후 방송고에 진학하였지만 현재 휴학 중이다. 집중해서 공부하고 공부량을 따라가기가 힘들었다.

매스컴에서는 성공한 장애인들의 삶을 비추어주지만, 그것이 다른 장애인들을 오히려 평가절하하며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장애인들이 마음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몇몇 특수한 기회를 얻어 성공한 장애인들처럼 되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짐 하나를 더 올려놓고 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2) 안정적인 고용 기회로부터의 단절 및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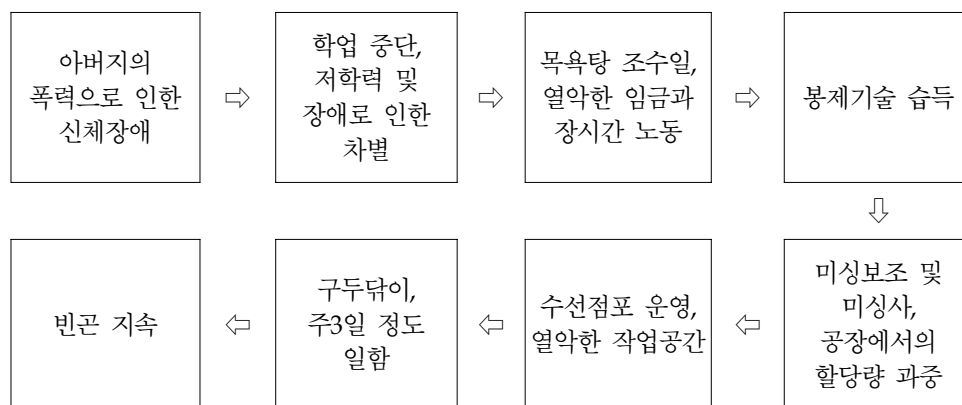
【사례 9】 황○진씨(42세, 남)는 몸을 움직이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자 자립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을 떠났다. 처음에는 누나와 매형이 있는 부산으로 갔다. 서면 근처에 기계부품 파는 가게 같은 곳에 취업하려고 여러 군데 찾아갔지만, 나중에 오라고, 나중에 다시 연락한다고만 했다. 결국 황○진씨의 학력이나 장애를 별로 개의치 않았던, 목욕탕 조수일을 시작하게 된다. 이 일은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구하게 되었는데, 당시 큰 목욕탕에서 심부름 해주고, 목욕탕 카운터 지키고, 정리해주고 그런 일을 했다. 당시(84-5년 정도) 월급은 3만원 정도였고, 심부름을 하거나 목욕탕 물건을 팔면 조금의 돈을 더 벌 수 있었다. 목욕탕 물을 받기 위해 새벽 4시나 4시 반에 일어나서 목욕탕 청소하는 것으로 일과가 시작되었다. 뭔가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한 달에 2번 밖에 쉬지 못했다.

그래도 황○진씨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치료시기를 놓쳐버리긴 했지만, 척추 수술을 잘 한다는 곳에서 수술을 받아보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수에 있는 재활병원이었는데, 황씨의 희망이었던 그 곳에서도 결국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신 병원부속 직업재활원 같은 곳에서 봉제기술을 배워보라는 제의를 받았다. 그 곳에서 1년 정도 봉제기술을 배워 서울로 올라왔다.

1988년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구한 일자리는 왕십리 중앙시장 근처 미싱보조였다. 잠시 종곡동에서 라디오 조립 일도 하고, 주로는 미싱보조를 계속 했다. 미싱 공장을 따라 일 자리도 옮겨지고, 미싱보조에서 미싱사로 일하면서 2001년까지 거의 10여년을 미싱 일을 했다. 미싱사 일은 계속 구할 수 있었지만 미싱공장의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했고, 수면시간도 매우 부족했다. 일도 힘들었지만, 미싱 월급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황씨는 500만원 대출을 받아 구두방보다 더 작은 수선점포를 차렸다. 처음에는 벌이가 괜찮았는데, 근처에 비슷한 점포들이 계속 생겨서 수입이 줄었다. 또 점포가 너무 작아서 움직이기도 힘들었고, 여름에는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 계속 앉아만 있다보니 엉덩이가 짓무르기도 했다. 엉덩이에 생긴 염증이 심해져서 매일 앉아서 일해야 하는 수선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구두 닦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황씨의 사례는 장애로 인한 학업의 중단이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데 실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로 인해 빈곤한 생활이 지속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황씨는 처음 장애를 얻은 후 10여 년을 집에서 누워서 생활했다.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 황씨는 가정을 떠나 사회로 나왔지만, 초등학교 2개월의 학력과 글씨를 제대로 읽고 쓸 수 없었던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목욕탕 조수일 정도였다. 그나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원에서 배운 양제기술로 이후 미싱보조일을 시작했고, 미싱사로 일했다. 열악한 임금과 과중한 노동시간을 버텨내지 못한 그는 공장을 나와 대출을 받아 작은 수선점포를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역시 열악한 환경에서의 고된 노동을 감당할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지금은 주 3일 정도의 구두닦는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보조금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



[그림 V-26] 장애로 인한 교육 및 고용기회의 단절과 빈곤화 (사례 9)

【사례 23】 이○교씨(38세, 남)는 뇌성마비 장애로 인해 태어나서부터 24세까지 집에서 지냈다. 나이가 들면서 자립생활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뇌성마비 장애인이 사회로 나와서 갈 곳은 별로 없었는데, 일단 일을 하려면 기술을 배워야한다고 생각하고, 직업훈련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직업훈련원에서는 목공예, 전자, 편물, 봉제 기술 등을 가르쳐주었고, 직업훈련생은 60명 정도였으나, 특수학교, 자립장 등을 이용하는 인원은 총 200명 정도 되는 기관이었다. 같은 기관에 입소한 이○교씨는 목공예를 배웠고, 김○정씨는 편

물을 배웠다. 그러나 둘 다 장애가 심해서 수료증을 받았으나 외부로의 취업은 불가능했다. 둘 다 휠체어에 의지해서 생활하는데, 휠체어 장애인은 외부로 나갈 수가 없어 내부 자립장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들은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편견 때문에 취업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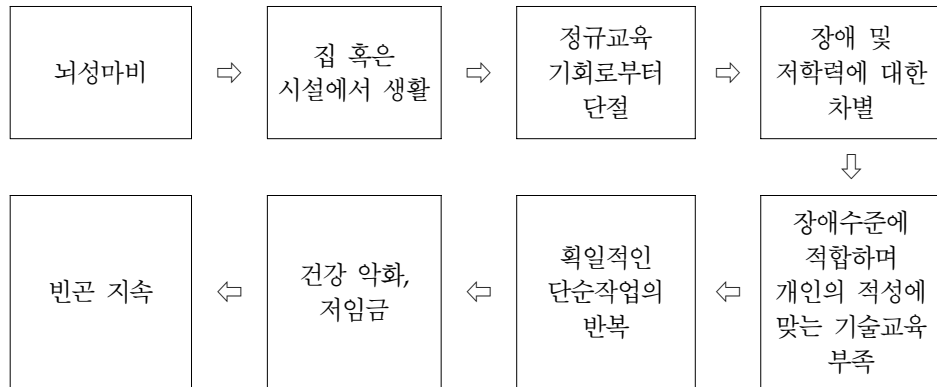
당시 이○교씨는 목공예를 배웠는데, 미술 감각이 있다고 인정받았었다. 실제 장애인 만화페스티벌에서 2등을 하기도 했다. 재능은 있었으나 이후 취업으로 연계되지 못했다. 겉으로 보기에 장애가 심하다는 선입관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훈련원에서 나왔을 때 장애인들이 모여 만화 그리는 곳이 있었는데, 감각은 있는데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퇴자를 맞았다. 또 교회에서 장애인을 모아놓고 그림을 가르치는 곳에도 가서 배웠는데, 작품전시회에 자신의 그림이 빠진 것을 보고 실망해서 나왔다. 뇌성마비 장애인은 취업 면접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장애인 고용박람회 같은 곳에 가 보았으나 선입견과 차별로 실망하고 돌아왔다.

결혼 후 국가에서 나오는 생활보조금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려웠고, 또 어른들에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장애인 단순작업장에 나가 일하기도 했다. 작업장에서 일했을 때 월 급여는 5,000원이었다. 다리가 불편해서 그렇지 손의 기능은 일반인 못지않은데,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만으로 월급을 많이 쳐주지 않았다. 오히려 정신지체 장애인은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실제 기동력도 있으니까 일을 잘 못해도 더 잘 봐주는 것 같았다. 결국 단순작업장은 생활에 도움이 되어서라기보다 몸이 굳는 것을 막기 위해 나가는 정도였다.

【사례 23】 김○정씨(39세, 여)는 이○교씨와 같은 직업훈련원에서 편물을 배웠으나 그 기술을 써 먹을 곳이 별로 없었다. 컴퓨터 같은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사실 컴퓨터도 어느 정도 학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았다. 도스 체제를 익히려면 영어를 알아야 하는데, 학력도 없고, 배울 기회가 없었던 김○정씨에게는 산 넘어 산이었다. 91년도에는 워드시험을 치려고 준비했었는데, 문제가 거의 영어로 나오니까 어려워서 결국 포기했다. 국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2%한다고 하지만, 뇌성마비 장애인은 꿈도 못 꾸는 일이다. 목발만 짚고도 거동이 가능한 소아마비 장애인이나 가능하지 휠체어 타야하는 중증장애인이나 보기 안 좋은 장애인은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도 있지만, 일을 주는 쪽에서 요구하는 할당량을 채우려고 들면, 몸이 망가지기

십상이다. 또 원하는 만큼 일을 해 주지 못하니까 결국 일도 못하게 된다. 실제 결혼 직후 김○정씨는 워드작업으로 월 6만원씩을 벌었다. 정부에서 알선해 준 일인데, 물량을 못 맞추니까 말을 돌려가면서 결국은 일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일했는데, 김○정씨는 그 때 무리하게 일해서 목디스크가 심해졌다고 한다.

위의 중증장애 부부의 사례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삶을 사회로부터 배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자녀를 교육하거나 재활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이들 부부는 한 명은 집에 틀어박혀서, 다른 한 명은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형제들의 도움으로 검정고시는 마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은 이들에게 너무 어려운 것이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취약한 학교 시설과 이미 그들의 삶과는 너무 다른 것들로 구성된 친구들의 삶과의 괴리감은 학교에서의 공부를 포기하게 만든다. 재능이 있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나 교육도 제공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이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 작업장에서의 단순 노동뿐이었고, 이런 일은 임금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보람이나 성취감도 주지 않는 일이었다. 이들 부부의 삶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장애를 가지고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국가의 보조만 받으며 살아가도록 방치하는 제도의 모순이 드러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V-27] 장애로 인한 교육 및 고용기회의 단절과 빈곤화 (사례 23)

3) 소득 중단 및 의료비 부담 가중으로 인한 빈곤화

【사례 28】 김○연씨(63세, 남)는 3개월 전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는 17일 동안만 입원을 하고, 이 후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모두 포기하고 집에서 투병중이다. 치료에 들어가지도 않고 검사하는 동안만 입원했는데도 입원비 및 검사비가 200만원이 넘었다. 폐암 말기라는 거의 사망선고에 가까운 인생의 위기 앞에서 김○연씨가 동원할 자원은 아무 것도 없었다.

김○연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중학교를 자퇴하고, 세탁소, 양품점 등에서 조수 일을 시작했다. 군대에 다녀오고, 결혼한 후 양품점에 취직하여 모은 돈으로 옷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첫 번째 사업이 크게 실패하여 신용을 잃게 되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의류계통에서 점원으로 일하여 다시 돈을 모아 사업을 시작해 보아도, 계속 실패만 했다. 거의 젊은 시절 20여 년을 장사를 시작했다 실패하고 다시 시작했다 실패하는 생활로 이어오다가 50세 경 옷 장사를 그만 두었다.

90년경에 장사를 접고 처음에는 아는 친구의 소개로 주유소 종업원 일을 했다. 그러다가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건설회사 경비 생활을 시작했고, 98년부터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모델하우스 경비 일을 하고 있었다. 월 급여는 68만원에서 70만원 정도였고 현장채용 직원이라고 하여 고용계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졌고,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대학도 못 보내준 딸 넷을 모두 시집보내고 나니 모아둔 돈도 없었고, 그렇다고 자녀들

이 부모님을 부양할 형편도 못 되었다. 그래도 두 부부 살아갈 정도는 되었고, 부인도 주방일 등을 나가며 생계를 도왔다. 시집 간 자녀들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무리해서 2년 전 살고 있던 반지하방에서 월세가 다소 높은 지금의 집으로 옮겼다.

그러던 중 2003년 3월 부인이 고혈압과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경희의료원에서 한방치료를 받았는데, 1,000만원 정도를 병원비로 소진했다. 당시에는 어렵지만 딸들이 조금씩 도와주고, 직장 동료들도 힘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계속 치료를 받아야하고 약값도 만만치 않은데, 부인이 벌어들인 주방일 수입도 없어지고, 김○연씨 수입만으로는 생계가 너무 빠듯했다. 그래서 월세도 조금씩 밀려서 지금은 보증금에서 많이 깎였다.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어 보이던 김씨는 몇 달 전 기침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보고 보건소를 찾아갔다. 보건소에서는 결핵인 것 같다고 처방하고 2개월 후에 재검을 했다. 그런데 환부가 커져 큰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아보라고 했다. 폐암 말기였다.

평생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적도 없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내 몸 하나 돌볼 형편도 안 되는 자신의 삶이 너무 후회스러웠다.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매 번 8만원 정도 들고, 입원하면 입원비에 검사비로 한 달에 2-300만원은 들 것 같았다. 이제 수입도 없고, 그렇다고 모아 둔 재산도 없고, 김씨 부부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나마 치료라도 조금 받아볼 수 있게 의료보호 1종 대상이 되는 것뿐이었고 현재 수급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례 14】 권○기씨(34세, 남)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4년째 투병중이다. 백혈병 확진을 받기 전 권씨는 연봉 3,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 IMF 외환위기로 부도에 이르기 전에는 개인사업으로 수익도 많이 올렸다. 부도가 나면서 사업으로 모은 돈을 거의 잃고, 확진 받을 당시는 8,000만원 상당의 집과 자가용 정도가 남아 있었다. 그래도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서 생계에는 지장이 없었다.

2001년 1월에 권○기씨가 백혈병 확진을 받았고, 입원 치료를 하던 중 같은 해 4월 선천성 심장 기형이 있는 아기가 태어났다. 권○기씨 역시 환자였지만, 아기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나와 아기의 치료에 매달렸다. 그렇게 고비를 넘기고 다시 병원에 갔을 때는 증세가 악화되었고 병원에서는 골수 이식과 글리벡 복용 중 선택할 것을 권유했다. 이미 몇 개월의 본인 입원 치료비와 딸의 입원, 치료, 수술비 등으로 이미 많은 빚을 진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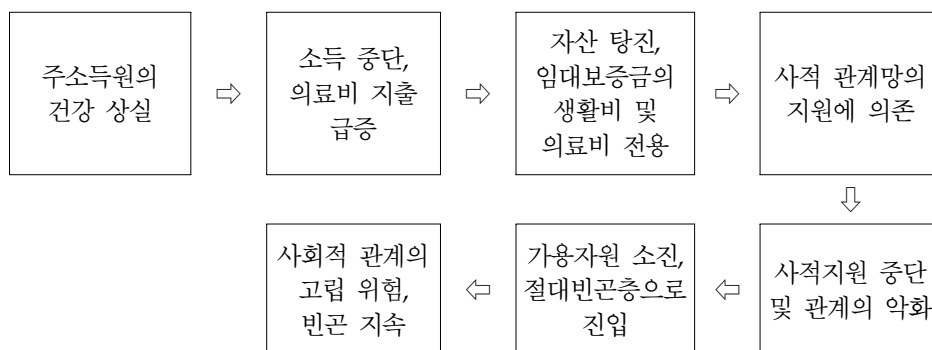
였고, 골수이식을 해도 성공률이 낮다는 정보를 얻은 터라 무료로 약을 복용할 수 있는 글리벡 임상 실험군에 속해 글리벡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주로 처가와 처가쪽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이 5,000 만원이 넘어서게 되었다. 처음에는 병을 함께 고민하던 가족 간에 서서히 갈등들이 드러 났고 권씨는 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부인과 자주 다투게 되었다. 결국 2년 전 권씨는 8,000만원 집은 빚을 탕감하고, 남은 돈은 부인이 갖는 것으로 하여 부인과 이혼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권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딸과 함께 살고 있다. 당분간은 누나 집에 신세를 지고 있지만, 오래 같이 지낼 수는 없는 형편이다.

【사례 10】 권○진씨(52세, 남)는 중학교를 마치고 군대에 다녀온 후 10여 년간 태백에서 광산 감독일을 했다. 당시 모은 돈과 퇴직금까지 모두 노조위원장 선거에 쏟아 부었으나, 선거에서 패배하자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그 무렵 고향(경북 점촌)에 계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거의 빈손으로 어머니와 서울로 상경하게 된 권씨는 무작정 막노동판에서 생계를 꾸려나가게 된다. 막노동판에서는 주로 미장일이나 벽돌 쌓는 일을 하였고, 잘 나가면 한 달에 20일 정도, 일당 7만원 정도를 받으며 생활했다. 주로 일당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모을 여유는 없었다. 건강진단을 받아 볼 삶의 여유도 없었던 권씨는 1995년 뇌경색 증세로 쓰러진 후 입원하여 자신에게 당뇨와 간질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후 3년 동안 매년 한 번씩 한 달에서 두세 달 병원에 입원했고, 그 사이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원 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300만원의 집세 보증금을 다 소진하게 되었다. 당시 잠실에서 보일러공을 하던 남동생이 3-4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보조했으나, 그나마도 98년 동생이 교통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원이 중단되었다. 입원 당시 권씨는 일반 보험가입자였는데, 그래서 병원비로 600만원 정도를 지출했다. 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MRI를 다섯 번이나 찍었으나 나아진 것이 없다고 했다. 병원비의 일부는 형제들이 지원했다. 97년 마지막 입원 후 권씨는 동사무소에서 의료보호 1종 자격을 얻었으나 이후 입원하지는 않고 있다. 동사무소에서 소개하는 공공근로나 취로사업 등에 참여해보았으나 그것도 체력의 한계로 오래하지는 못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수급권자로 판정되어 그 때부터 매달 45만원의 생활비 보조를 받고 있으며, 그것이 노모와 함께 살아가는 권씨 가구 생계비의 전부이다.

위의 세 사례에 나타나는 공통점은 가구주의 건강 상실로 인한 가구 소득의 중단과 이후 치료비 지출로 인한 급격한 빈곤화이다. 이들 사례는 모두 의료비 지출로 인해 빈곤층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가구 내의 주 소득원이었던 이들의 건강 상실로 소득이 중단되고, 저축이나 임대보증금 등으로 치료비 및 생활비를 감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적인 관계망을 통해 물질적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곧 지원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로 관계마저 악화되기도 한다. 결국 자산,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못 미치게 되어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의료보호 1종 급여도 받게 된다. 그러나 의료급여 1종이 되어도 병원에 가기가 두려운 것은 보험으로 포괄되지 않는 각종 검사비 등의 의료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림 V-28] 주소득원의 건강상실로 인한 빈곤화

다. 빈곤으로 인한 건강의 상실 및 악화

앞서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저소득·저학력·육체노동군에 속한 개인의 주요 질병유병률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건강이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빈곤한

사람들은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기 어렵다. 우선 건강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에서 취약할 경우가 많고, 그런 지식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실행할 사회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 또한 빈곤층은 높은 흡연율, 음주, 약물남용 등과 같은 가장 건강에 나쁜 건강행태를 보이기 쉬운데, 이는 낮은 소득, 낮은 교육수준, 실직이나 직업의 불안정성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빈곤한 개인이나 가구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로부터도 배제된다.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정도는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비빈곤층의 의료비 부담보다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을 수 있다.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높고, 의료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서비스가 많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빈곤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에 대한 경제적 장벽은 여전히 높다. 이 경우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1) 생계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 제한

【사례 10】 권○진씨(52세, 남) 가구는 본인이 뇌경색, 당뇨 등으로 활동이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 또한 고혈압과 당뇨 등의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현재 전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건강상태이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매달 지급되는 생계급여 45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권씨는 뇌경색으로 입원했을 당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동사무소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사정하여 의료보호 1종으로 지정되었지만, 아직 입원치료는 망설이고 있다. 병원에만 가면 사진 찍어라, 뭐해라 하면서 각종 검사비가 나갈 것이 염려되고, 그렇게 사진을 찍어봐도 매번 똑같은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 병원에 가더라도 간병해 줄 사람도 없다.

어머니의 경우는 고혈압에 당뇨가 있으셔서 돈이 좀 더 있으면 다른 약도 써보고 싶은데 지금 나오는 생계비로는 월세 18만원, 겨울에는 가스난방비 8만원 정도가 기본으로 들어

가니 남는 돈으로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사례 28】 김○연씨(63세, 남) 가구는 딸 넷이 모두 출가하고, 김○연씨와 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인의 경우도 2003년 3월 경 고혈압과 뇌경색으로 쓰러져 마비가 왔고, 지금은 반신마비까지는 아니지만 마비가 남아있어 걷기가 불편하다. 몇 달 전 중풍장애4급 판정을 받았다.

부부가 모두 아프기 전에는 김씨는 모델하우스 경비로 일하면서 월 6-70만원, 부인은 식당 주방일로 월 50만원 정도를 벌었기 때문에 넉넉하지는 않아도 생활에 지장은 없었다. 그러나 부인이 먼저 마비가 와서 소득활동을 중단하고, 이어 김씨도 3개월 전 폐암 판정을 받으면서 부부의 생계가 갑자기 막막해졌다.

항암 치료를 포기한 것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정이었고, 계속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던 부인마저도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편하게 약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또 물리치료를 한방치료로 받고 있었는데, 남편의 수입이 끊어지면서 한방치료도 중단한 상태이다. 현재 6-7개월 정도 치료를 더 해야한다고 하는데 혈관 엑스레이 찍는 것이나 실핏줄 막히지 않게 하는 처치 등을 하려면 십여만 원의 돈이 더 필요해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생계비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이들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놓고 이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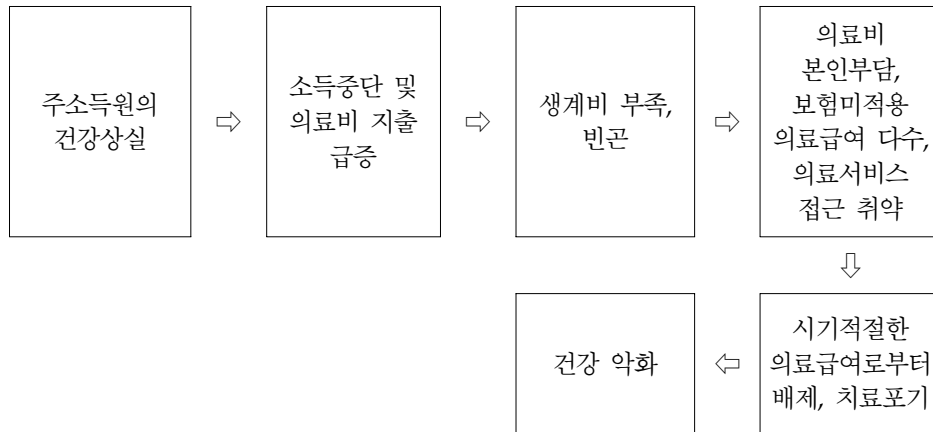
【사례 14】 권○기씨(34세, 남)는 백혈병 확진을 받은 2001년 1월 이후로 전혀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활동이 중단된 것뿐만 아니라 처음 입원했을 때 10여일 입원했는데 입원비, 검사비로 500만원이 나왔다. 항암치료는 시작하지도 않고 입원만 했는데 병실비가 하루 30만원 정도였다고 한다. 여기에다 딸이 태어나면서 심장질환을 갖고 있어서, 수술비가 들었는데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들었다.

백혈병 발병 전에 자동차, 자가 주택 등이 있었고, 연봉 3,000만원 정도의 중산층 가구였는데 발병 후 1년이 되지 않아 거의 모두 탕진하고, 수급자가 되었다. 현재는 글리벡이 보험 적용이 되어 의료보호 1종이 권씨는 무료로 글리벡을 먹고 있다. 다만 딸 아이가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한 번 가면 병원비가 몇 백만 원이 나온다. 의보 1종인데도 각종 검사비, MRI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최하 60만원, 100만원 정도가 나온다.

현재 기초생활 생계급여로 월 4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10만원은 신세지고 있는 누님 집에 생활비로 드리고, 나머지 아이 놀이방 보내는 데 필요한 것들 사고, 권씨 용돈으로 5-10만원 정도 쓰고 그래도 남는 것은 모아두었다가 급할 때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권씨는 자신과 맞는 골수를 찾는다 하더라도 골수 이식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골수 검사하는 데에도 몇 백만 원이 들어가고, 코디네이션 되는 비용만 1,000만원이 넘는다. 이식을 하는데 총 5,000만원에서 1억 정도가 들 것인데 성공률도 낮은 상황에서 어린 딸에게 빚만 남겨두고 가게 되는 것이 싫어서 골수 이식은 포기하려고 한다. 사랑의 리퀘스트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면 1억 지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것저것 떼고 나면 많아야 1,000만원 정도 받는다. 항암치로나 이식을 하려면 실제 거기에만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기타 각종 검사비나 무엇보다 생계비가 문제인데, 그 돈 받으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안타깝다.

위의 세 사례는 주소득원의 건강 상실로 인한 소득 중단 및 생계비 부족 상태에 놓여있다. 권○진씨의 경우는 발병 후 세 차례의 걸친 입원치료로 가구의 모든 자산을 소진했고, 소득 활동도 중단됨에 따라 이후 의료급여 1종 적용으로 지급되는 뇌경색 및 당뇨 약을 먹는 것 외에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았다. 정부의 생계비 보조금으로 생활을 유지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지 모르는 병원비가 두려워 병원에 갈 의지도 없고, 병에 좋은 다른 치료방법을 찾아볼 여력도 없다. 권○기씨는 월 40만원 정도의 정부 생계비 보조금으로 신장질환이 있는 아이와 백혈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보험이 적용되어 무상으로 제공되는 글리벡을 복용하는 것 외에 다른 치료방법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 딸의 치료를 위해 가끔씩 뭇돈으로 나가는 병원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다. 김○연씨는 부인의 중풍증세로 인한 소득 중단 및 병원비 지출로 이미 가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폐암판정을 받았다. 항암치료는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당장 생계도 막막한 상황에서 검사만 해도 몇 백만 원의 의료비가 나오는 병원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림 V-29] 빈곤으로 인한 건강 악화 경로

2)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점검, 건강에 대한 정보에서 배제

【사례 10】 권○진씨(52세, 남)는 막노동판에서 일당을 받으며 일해 왔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한 번도 병원에 가 본 적도 본인의 건강을 진단해본 적도 없었다. 병원에 입원해서 본인에게 당뇨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현재는 매일 아침 당뇨약을 먹고 있고, 혈관이 수축되지 않도록 하는 약도 먹고 있다. 계속 약만 먹으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것만 막고 있을 뿐 적극적인 치료나 식이요법 등은 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에서 하라고 하는 것 다하는 것은 돈 있는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얘기이다. 돈 없는 사람은 아무 것도 못한다.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했지만, 과일 사먹을 돈이 없어 과일 구경해 본지 오래이다.

【사례 9】 황○진씨(43세, 남)는 척추장애로 여전히 반신이 차가운 증상이 있다. 또 좁은 수선점포에서 오래 앉아 일하다가 생긴 치루가 있고, 치과진료를 제 때 받지 못해 이를 해 놓아야 하는 형편이다.

척추장애의 경우 사고 당시 빨리 응급처치나 필요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었다. 당시 부모님은 황씨가 너무 아파 고름이 나오고 뼈가 으스러진 조각이 나오는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3개월 정도 집에서 그냥 경과를 지켜보았다. 황씨가 너무

아파하니까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의원급 병원이었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한다. 1년 정도 입원해 있다가 별 진전이 없자 퇴원해 계속 집에서 치료하였다. 당시 어머니는 민간요법으로 갖가지 약을 갖다 주시고 무당을 데려다가 굿을 하기도 했다.

황씨는 수선점포를 할 무렵 좁은 공간에서 계속 앉아 일하다가 엉덩이가 짓물리고 결국 썩는 지경에 이르렀다. 치질 수술을 하면 괄약근을 다칠 수 있는데 괄약근 수술을 한 사람들이 조금씩 새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서 수술은 아직 못하고 있다. 괄약근을 다치지 않게 하는 수술은 비용이 많이 들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들었다. 그래서 수술은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일하는 것을 포기하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구두닦이를 하고 있다. 치과치료의 경우도 한 2년 전 심하게 아팠을 때 치료했으면 지금처럼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 같다. 이 하나를 씹우는 데 16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당시 수입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먹고 참았다.

척추장애 때문인지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오래 걸으면 다리와 척추가 아프다. 반신은 계속 차가운 상태이다.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 병원에 가면 생활이 중단되는데, 만약 입원을 하더라도 혼자 사는 황씨에게는 수발도 맘에 걸렸다.

3개월 전 폐암 판정을 받은 김○연씨의 경우도, 가래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보건소를 찾아갔고, 처음에는 당뇨나 결핵인 줄 알았으나 폐암으로 판명되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 점검할 금전적, 정신적 여유가 없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육체노동자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기회를 얻기 힘들다. 또한 생계유지에 급급한 생활을 하다보면 건강에 대한 정보에 소홀해 지기 쉽고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문제에 대해 올바른 정보로 대처하기 어렵다.

3) 빈곤한 사람들이 처한 기타 환경요인의 영향

이○교씨, 김○정씨 부부의 경우, 집에서 부업으로 워드 작업을 한 것과 단 순작업장에서 소일거리를 한 것이 현재 건강을 악화시켰다. 시간 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일거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무리해서 일 한 탓으로 김○정씨는 목디스크가 심해졌고 이○교씨는 허리나 어깨 쪽으로 통증이 계속 오고 있다. 현재는 이런 통증 때문에 물리치료를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받고 있다.

황○진씨의 경우도 계속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미싱일을 해왔고, 좁은 수선 점포에서 계속 앉아서 일하다가 엉덩이가 짓물러 썩기까지 했다. 권○진씨와 김○연씨의 경우, 권씨는 알코올 중독 증세, 김씨는 과도한 흡연으로 인한 폐암을 얻었다. 이 같은 질환은 나아질 것이 없는 생활형편에 대한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해소하는 저소득층에게서 나타나기 쉬운 질환으로 볼 수 있다.

라.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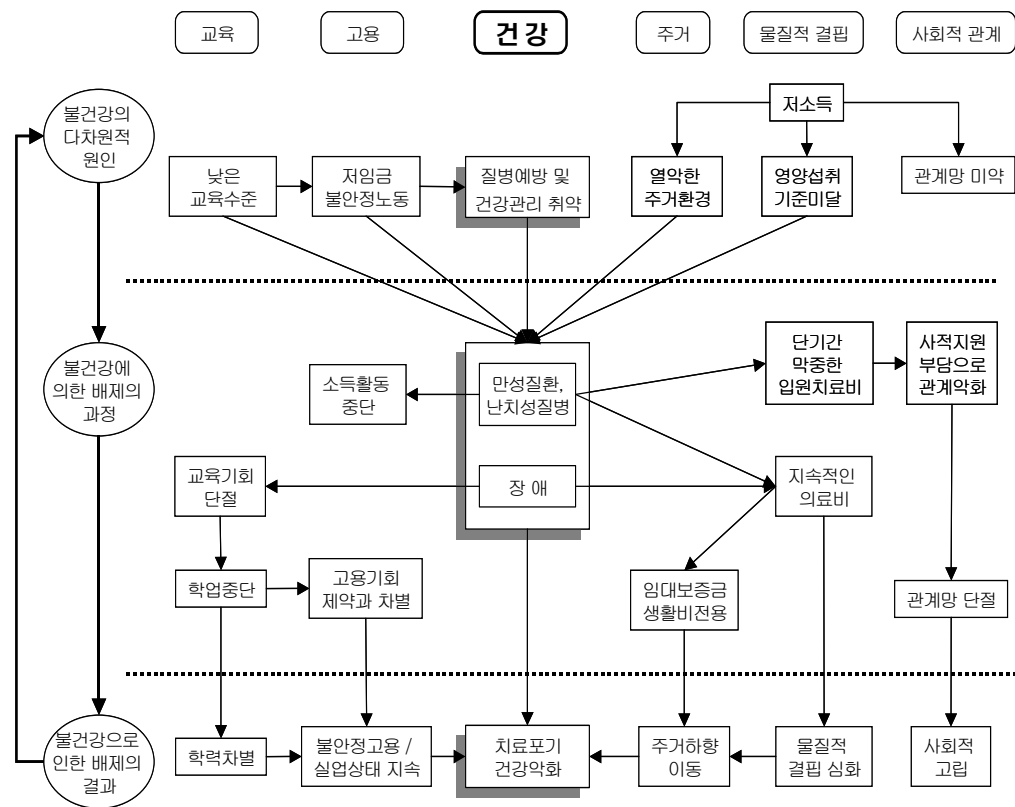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빈곤 및 사회적 배제 상태는 불건강과 서로 악순환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고용, 사회적 관계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또 다른 배제를 야기하고 강화한다. 이러한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아래 그림과 같이 건강과 빈곤의 관계를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의 유의함은 건강을 상실한 개인이 처한 삶의 문제의 인과관계를 다각도로 드러냄으로써 향후 정책의 방향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이 건강을 상실한다는 것은 다양한 측면의 삶의 기회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한다. 사회의 안전망은 이러한 각각의 삶의 기회상의 위기에 대해 개인이 배제의 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의료급여 및 서비스가 많고, 또 보험적용이 되더라도 본인부담률이 높은 상황에서,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보호 종별 구분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의료보장 체계는 빈곤한 사람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막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건강을 악화시키게 된다. 한편 건강의 상실과 이로 인한 생계비 감소, 심리적 위축 등의 상황은 더욱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개인으로 하여금 사

회로부터 고립되게 만든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견고한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개인은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태의 복합적인 배제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을 잃고, 빈곤에 처하게 되어서야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서비스 체계에서 건강을 미리 점검, 관리하여 질병이나 장애를 예방하는 체계로, 질병이나 장애를 얻게 된다하더라도 이후 사회적 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의료보장 체계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주: 화살표는 영향력이 미치는 방향을 의미함.

[그림 V-30] 건강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

5.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배제

가.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

1) 빈곤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위상

빈곤층은 물질적 자원이 결핍되거나 부족한 빈곤 상황에 적응하거나 또는 탈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가구원이 일자리를 얻거나 취업한 가구원이 노동시간을 가능한 한 늘리는 소득 극대화 전략이나 생계비 지출을 가능한 한 줄이는 지출 극소화 전략 등과 같은 경제적 방안이 구사되고 있다(김익기·장세훈, 1987). 그러나 이들 전략이 개인이나 개별 가구 단위의 대응 방안이기 때문에,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거나 생계비가 이미 극한치로 낮아진 빈곤 가구의 경우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빈곤 상황에 대한 집단적 대응 전략이 모색되는데, 그 대표적인 방안이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을 활용한 전략이다(Lomnitz, 1977; 허석렬, 1983; 박영숙, 1984). 실제로 이웃, 친인척, 동료, 친구 등과의 긴밀한 사회적 관계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든든한 버팀목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관계망은 단기간에 형성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그 대신 쉽사리 해체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또 물질적 자원의 보유 유무와 무관하게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빈곤층에게는 특히 유용한 빈곤 적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은 이처럼 빈곤 상황에 적응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희망의 빈곤(Poverty of Hope)'의 징표이기도 하다. 취업 및 주거에 관한 적절한 정보와 지식을 얻기 어려운 빈곤층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연고와 연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거나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찾으려 한다. 이러한 일련의 행

위는 빈곤 상황에서 생존의 활로를 찾아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상황을 탈출하려는 의지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빈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유지 및 확장은 빈곤 상황에 점차 젖어드는 '절망의 빈곤(Poverty of Despair)'과 달리 미래의 전망을 갖고 살아가는 희망의 빈곤의 싹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관계망이 빈곤층의 빈곤 적응 및 탈출에 긍정적인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에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빈곤층들이 상부상조하는 시스템의 하나이기 때문에, 부족한 자원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오히려 빈곤화를 촉진시키거나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 과정에서 '양날의 칼'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빈곤 상황이 빚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본래적 속성 탓으로 볼 수는 없다.

2) 빈곤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

빈곤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망은 빈곤층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기능한다. 즉 사회적 관계망은 물질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빈민들에게 개인이 지닌 건강한 심신과 기술·지식 등과 같은 인적 자본(human capital)과 함께 빈곤 상황을 헤쳐 나갈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빈곤층의 생활과 관련해서 사회적 관계망은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경제적 위기로 인해 겪게 되는 불안, 우울, 좌절감 등과 같은 정서적·심리적 장애 상황에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정서적 교류 및 유대를 가능케 한다. 이는 절망감을 희망으로 바꾸어주고, 생의 의욕을 북돋아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빈곤 적응 및 탈출의 '보이지 않는' 밑거름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전적 도움 등과 같은 물질적 지원을 통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부족한 물질적 자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일자리, 주거, 복지 등과 같은 생존에 필수적인 사항에 관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빈곤 상황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손’ 역할도 담당한다.

3)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과 빈곤화 과정

사회적 관계망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시적인 생존수단인 물질적 자원과 달리 빈곤층의 비가시적인 생존수단이자 자조적 안전망(自助的 安全網; self-reliant safety-net)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의 위축, 단절, 해체 및 부재는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빈곤화를 촉발시키고, 이미 빈곤 상황에 처한 빈민들의 빈곤 재생산을 더욱 가속시킬 뿐 아니라 이들의 빈곤 탈출 가능성을 봉쇄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물론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 및 해체의 문제가 빈곤화 과정의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빈곤화 과정의 촉발 요인 또는 가속 요인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처럼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 과정과 연관지워 볼 때, 사회적 관계망과 빈곤 상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사회적 관계망의 해체, 단절, 부재 등으로 인해 빈곤 상황이 촉발되거나 촉진되는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다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기존 관계망의 해체로 인해 빈곤화가 진행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빈곤 상황에 처하는 유형이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부재로 인한 빈곤화 유형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망의 부작용 때문에 빈곤의 확대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유형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의 해체·단절·부재 상황이 사회적 배제의 다른 요인들과 결합해서 빈곤을 가속시키는 유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현실의 빈곤화 과정에서는 사회적 관계망만이 독자적으로 작동하기보다는 다른 사회적 배제 요

인들과 상호 중첩적으로 작용하면서 빈곤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취업, 교육, 건강, 주거 등에서 이루어지는 배제가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과 어떻게 결합해서 물질적 결핍을 유발하고 조장하는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일방적으로 빈곤화를 촉진하는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는 양자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쌍방향적 관계를 맺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빈곤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위축되거나 단절되고, 그로 인해 빈곤이 더욱 심화되는 빈곤과 사회적 관계망간의 악순환 유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과 빈곤화 과정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로 인한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

1) 기초적 관계망의 해체로 인한 빈곤화

가족은 기본적인 사회화 과정이 일어나는 사회의 기초 단위로, 개인과 사회를 이어주는 핵심적인 매개고리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빈곤층에게 가족은 빈곤의 위협을 걸러주고 막아주는 여과장치이자 보호막으로써, 또 사회적 관계의 폭을 넓히고 그 깊이를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빈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탈출구이자 분출구로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관계의 단절과 가정의 해체는 개인이 사회와 맺게 되는 관계망의 범위를 크게 위축시키고 계층 상승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과 같은 기초적 관계망의 해체는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을 가속시키게 된다.

【사례 6】 막노동을 하며 노름에 빠진 아버지와 갈등하던 어머니가 가출했다가 고등학교 재학 중 사망하자, 임○희씨(31세, 여)는 그 뒤로 집을 나와 구로공단 내 공장 기숙사에

취업했다. 임○희씨는 공장에 다니면서 교회 활동을 활발히 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혀갔다. 그러나 4년간의 공장 생활 끝에 결혼을 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모두 끊었다. 공장을 그만 두게 된 데다가, 자녀의 출산으로 외출도 어렵게 되었고, 특히 남편이 이웃이나 친인척들과 교제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해서 종교 활동이나 근린관계까지 모두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입주해 있던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 대다수가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었고, 같은 나이 또래의 주부도 없어 이웃관계를 맺으려 해도 사귀만한 이웃도 없었다. 결국 가족관계를 제외하고는 대외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생활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의 잦은 구타로 두 번 정도 가출했던 경험이 있던 임○희씨는 2002년 1월 남편의 심한 구타에 못이겨 아이를 데리고 가출해서 노숙인 쉼터인 살림터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0여년 이상 이웃은 물론이고 친인척과의 접촉마저 끊고 지냈던 상태에서 가출했기 때문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따라서 1년 가까이 살림터를 전전하다가 월세방을 구해 나왔지만 집세, 보육비, 생활비 등을 도저히 충당할 수 없어 3개월만에 다시 살림터에 재입주한 상태이다.

현재에는 살림터의 도움으로 모자가정으로 인정받아 아이를 어린이집에 무료로 맡기고, 이혼 소송도 준비 중이며, 통신판매원(Tele-Marketer)으로 근무하면서 월평균 60-70만원의 수입을 벌고 있다. 또 최근에는 과거 교회활동을 같이 하던 사람들과 교류를 시작하는 등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하면서 자립 생활을 모색하고 있다.

임○희씨 사례는 결혼과 함께 가족 외부와의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데다가 가정 폭력과 뒤이은 가출을 거치면서 가족관계마저 해체되어,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이 없었다면 생존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렸을 수도 있는 극단적인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경우이다. 즉 1차적 관계망인 가족관계가 와해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해 줄 2차적 관계망인 친인척 및 이웃과의 관계마저 부재했기 때문에, 사적 부조가 이루어질 통로가 전면 차단되었고, 그 결과 공적 부조에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례 1】 이○숙씨(44세, 여)도 가족 해체로 인한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경험한 바 있다. 이○숙씨는 아버지가 석공 일을 해서 풍족하지는 않아도 중학교 때까지 과외를 받을 정도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했다. 그러나 여고 졸업 무렵에 어머니가 의료사고로 사망하고 아버지도 1년 뒤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급속히 가계가 기울었다. 특히 이○숙씨

의 은행 입사를 주선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공식부문으로의 진출마저 좌절되었다.

그 뒤 취업을 위해 타자학원, 텔렉스 학원 등을 전전했지만, 혼자 힘으로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결혼을 했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남편의 잦은 이직으로 생활이 넉넉하지 않자, 구슬 꿰기, 방석 만들기, 파출부, 간병인, 우유 배달 등의 부업으로 생계를 보태야만 했다. 그러다가 결국 남편과 헤어지면서, 취업 전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리어카 노점, 빌딩 청소, 폐지 수집, 붕어빵 장사, 주유소 식당 일 등 닥치는 대로 일하며, 소득을 가능한 한 늘리려 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그나마 일자리도 모두 잃게 되어, 현재에는 붕어빵 장사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숙씨 사례는 사회 진출을 시작할 무렵 이를 후원해 줄 가족 관계망이 갑작스럽게 와해되면서, 취업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공식부문으로의 진입이 좌절되어 저임금의 불안정한 비공식부문 일자리를 전전한 경우이다. 특히 결혼 후 남편과 헤어지는 2차적인 가족 해체를 경험하게 되면서, 비공식부문 취업이 가게 보조적 부업에서 주업으로 바뀌었다. 특별한 인적 자원도 없는 상태에서 이를 보조해 줄 사회적 관계망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안정된 고소득 취업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취업의 불안정으로 인한 생계의 위협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나마 주변 이웃의 간헐적인 도움으로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일자리를 소개받아 생계를 꾸려올 수 있었다.

【사례 5】 임○실씨(32세, 여)의 경우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빈농의 장녀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영세민 수혜를 받으며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서울로 단신 이농해서 공장에 근무하며 산업체 고등학교에 다녔다. 학교 졸업 후 공장을 그만두고 호텔 식당에서 홀 써빙 일을 담당하다가 식당 주방 보조로 있던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았다. 남편의 월급만으로 생활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까닭에, 원단에 구슬 붙이기, 보험설계사, 미싱사 등의 부업으로 소득을 보전하며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유지했다.

그런데 1998년 남편의 이유 없는 가출로 생계가 막연해지자, 부업을 주업 삼아 생계를 꾸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취업 및 사회생활에서 퇴장한 전업 주부라는 사회적 위치에 사회적 관계망에서 사실상 고립된 상태였다. 그 결과 은행 카드를 발급받아 본 적도

없고 복지 수혜 관련 정보도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등, 사회경제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정보마저 알지 못해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근린관계를 형성하면서 복지 관련 정보를 입수해서 모자가정으로 지정받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며 이웃 및 직장 동료들과의 교류를 넓혀 나가면서, 점차 빈곤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 특히 이웃과의 소원한 관계로 초기에는 어려움이 컸지만, 남편의 가출 이후에도 시댁으로부터 식량 등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극빈 상태로 추락하지는 않을 수 있었다.

임○실씨는 중하층 가구의 주부가 갑작스런 가족 해체 상황에서 가까운 친인척의 도움 외에는 주변의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처해지면서, 급속히 빈곤의 늪에 빠졌다가, 사회적 관계를 복원하면서 점차 빈곤 상황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공적 부조 체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친족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관계망이 빈곤에 대항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해서 빈곤 추락을 중도에서 저지시켰지만, 가족 관계의 해체가 빈곤을 낳는 결정적 계기가 된 사례였다.

2) 지리적 이동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빈곤화 과정

갑작스런 원거리 이주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맺어지는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과의 단절을 가져온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여타의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이 풍부한 중상층의 경우에는 기존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단절을 다른 보유 자원으로 메울 수 있고, 또 일자리에서의 동료 관계, 여유로운 이웃과의 자유로운 교류 등으로 끊어진 관계망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복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인적, 물적 자원이 빈약해서 사회적 관계망이 거의 유일한 보유 자원이나 다름없는 빈곤층의 경우에 이러한 관계의 단절은 치명적이다. 또 취업 등의 경제 활동도 거의 없거나 대단히 빈약하고, 주거의 특성상 생계유지에 급급한 이웃과 관계 맺기도 어려운 탓에, 새로운 관계망을 복원하는 것도 대단히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이농과 같은 지리적 이동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통해 빈곤화 추세를 더욱 가속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이주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 등을 정착의 근거지(base camp)로 삼기도 하지만,

사회적 관계의 복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빈곤 상황에 적응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 십상이다.

【사례 10】 권○진씨(52세, 남)는 태백에서 10년 가량 광부 생활을 하면서 광업소 노조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유복하지는 않아도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나 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빚을 떠안게 된 데다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소원해지자, 서울로 이주해 버렸다.

서울에 이미 정착한 남동생을 통해 서울 정착에 필요한 주거 및 취업 관련 정보를 입수했지만, 광부 경험이 취업 과정에서 경력으로 인정되지 못한 탓에, 건설 잡부로 근무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알코올 중독과 중풍으로 완전 실업 상태에 빠진 채 어머니와 함께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권○진씨에게 태백에서 서울로의 이주는 경제적 어려움과 인간적 배신감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주거 이동이었지만, 기존에 노조 활동까지 하면서 공고하게 다져놓은 동료·이웃 관계로부터 완전히 두절되는 분기점이었다. 따라서 서울 이주 후에는 그동안 쌓아온 기술이나 연줄망 등이 무용지물이 되어 건설 분야의 일용잡부로 떠돌 수밖에 없었고, 10년 넘는 서울 생활에서 친구나 이웃을 전혀 사귀지 못했다. 불우한 처지를 비관해서 과음이 잦았고 결국 알코올 중독과 중풍을 얻게 되면서, 공공부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극빈층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물론 이 경우에 원격지 이주가 빈곤으로의 추락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지만, 빈곤화가 더욱 가파르게 진전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적 관계의 부재로 인한 빈곤

생활기반이 빈약한 빈곤층들은 사회적 관계망이 필수적인 생존 자원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에 아예 나서지 않은 채 대외적인 관계망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빈곤의 늪에 침잠하는, 이른바 ‘자발적 배제(self-exclusion)’의 사례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외견상 이들은 과소사회화된(under-socialized) 특이 사례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 배제의 이면을 살펴보면, 사회가 이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을 가로막은 사

회구조적 차원의 배제 메카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9】 황○진씨(42세, 남)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행으로 허리를 다친 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척추 이상으로 인한 중증 장애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신체장애로 인해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했고, 학교에서도 신체장애의 불편함과 주위의 따돌림으로 국민학교도 마치지 못하는 등, 공교육 혜택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 결과 학교교육을 통한 또래집단과의 교제나 이웃과의 접촉을 통한 근린관계의 형성 등은 꿈꿀 수조차 없었다.

이처럼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함께 협력할 기회나 여건이 전혀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을 일찍부터 꿈꿔서 17세 때 목욕탕 보조로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에는 상경해서 왕십리의 봉제공장에 근무하다가 1990년대 초반 구로동에서 의류 수선업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구두닦기를 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 학교, 주변 이웃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에, 황○진씨는 사람들과의 교제 범위를 최대한으로 좁히며 생활했다.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고 살고, 절친한 친구도 한 두 사람만이 있을 뿐이고 그나마도 멀리 안성에 살고 있어 자주 만나지도 못한다고 한다. 이웃과도 눈인사 정도만 나눌 뿐이지, 그 이상의 친근한 근린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친해볼 요량으로 장애인 단체에도 일시 가입했지만, 갖가지 비리가 눈에 띄자 그마저도 그만 두었다. 설상가상으로 친한 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준 뒤에 800만원의 카드빚을 떠안아 현재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이다.

이처럼 협소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인해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장애인 신청을 통한 정부 지원 사실도 최근 1년 전에 알아 뒤늦게 등록을 했을 정도이고, 의류 수선업, 구두닦기 등의 업종 선택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었다. 또 공교육 혜택도 받지 못해 최근에야 한글을 혼자 깨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 문제도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는 안중에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각종 생활상의 어려움, 예컨대 직종 선택 과정에서의 조언이나 이사 과정에서의 도움 등이 부족한 문제 등을 호소하고 있다.

황○진씨는 장애인에 대해 사회가 쌓아놓은 벽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는 자신이 사회에 대한 벽을 덧쌓은 ‘자발적 배제’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

다. 문제는 ‘자발적 배제’가 극단적으로 전개되어 1차적 관계망인 가족과도 등 돌린 채 생활하는 등, 사회적 관계를 아예 맺지 않은 탓에, 취업을 비롯한 모든 일상생활에서 각종 불이익을 촉발시킴으로써, 더욱더 빈곤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례 21】 심○부씨(51세, 남)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장기간 별거 상태에 있는 등 가족 관계가 화목하지 못했던 데다가 사팔뜨기라는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 또래집단과의 교제나 기타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군 입대 후 신체적 결함은 교정할 수 있었지만, 대인관계에 소극적인 품성은 성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항관리공단에 13년 가량 근무했지만 깊이 사귀어 사람이 전혀 없을 정도로 ‘자발적 배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로 인해 승진 과정에서도 누락되는 등 직장 생활에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았지만, 끝내 사회적 관계 맺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말았다. 퇴사 뒤에는 경비 용역, 일용건설노동, 공공근로 등의 경제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빈곤 상황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버티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를 무시한다는 모멸감을 못 견디고 직장을 그만 두는 등, 이직이 잦았다.

이러한 ‘자발적 배제’의 태도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교회에만 열심히 다닐 뿐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는 무관심했다.²⁷⁾ 이처럼 관계가 소원했던 탓에 몇 차례 사소한 다툼 끝에 부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버려 현재는 별거 상태로 독신 생활을 하고 있다. 본인은 재결합을 원하지만 이미 단절된 가족 관계가 복원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심○부씨 역시 청소년기에 사회적 관계 맺기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는 ‘자발적 배제’가 몸에 배어 사회적 관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경우이다. 따라서 성인

27) 심지어 교회에서도 단순히 신앙생활만 할 뿐, 교회 내에서의 사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일종의 ‘고치(cocoon)족’이 되어 사회·경제적으로 빈곤 상태에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사회적 관계망의 부작용

사회적 관계망은 통상적으로 빈곤 상황에서의 적응과 탈출의 도구로써 기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빈곤 탈출의 걸림돌이자 빈곤 심화의 디딤돌로 기능하기도 한다. 즉 빈곤층 내부의 상호 부조 기제로 작동하는 사회적 관계망에 연결된 빈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더 깊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자원이 빈약하던 다른 구성원들이 이를 구제하려다가 줄지어 동반 추락하는 ‘빈곤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빈곤층의 신용불량이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에서 쉽사리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적 관계망이 빈곤 추락을 저지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절대적 빈곤으로의 동반 추락을 강제하는 빈곤화의 족쇄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례 4】 정○씨(32세, 여)는 두 딸의 학원비 등 교육비로 남편 월급의 절반에 가까운 5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등, 생계비의 수지 균형이 맞지 않아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납부마저 몇 달째 밀려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2002년 겨울부터는 신용카드를 무상 발급받아 부족한 생계비를 카드 현금서비스로 메우는 적자 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미장원을 개업하는 어머니의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자신의 면의로 800만원 신용대출까지 받아 신용대출 및 현금 서비스가 한도에 이른 실정이다. 이에 동생이 보유한 신용카드까지 동원해서 7-8개 카드로 본격적인 카드 돌려막기를 시작했다. 현재 카드빚 이자만 매월 100만 원 가량 되는데, 현재 수입으로는 갚을 길이 막막해서 아예 원리금 상환을 포기한 상태에 있다.

정씨의 경우 부족한 생계비를 현금서비스로 메우는 과정에서 카드 빚이 점차 쌓이기 시작했지만, 신용불량자로 추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머니의

사업자금 마련이었다. 이는 빈민 가구가 사회적 연줄로 연결된 다른 가구나 가구원에게 경제적 역량 이상의 과도한 지원에 나섬으로써 스스로도 빈곤의 늪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게 되는 빈곤의 도미노 현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례 3】 우○순씨(30대 초반 여성)의 사례도 이와 유사한데, 현재 18평형 영구임대주택에 친동생 3명을 포함해서 8명의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동생들의 경우 모두 취업 전선에 나서고 있지만 카드빚에 몰려 경제적으로 독립하거나 생계비를 보태줄 형편에 있지 못한 형편이다.

전체 가구원이 카드빚에 시달리게 된 것은 둘째 동생 때문이었다. 동생은 친구를 위해 카드빚을 얻은 뒤 사기를 당했는데, 쌓여가는 이자를 갚을 수 없게 되자 형제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보증을 서주었다. 그 과정에서 전체 가구원의 카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 결과 형제자매 모두가 원리금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어, 동생들이 생활비를 전혀 지원하지 못한 채 얹혀사는 형국이 되었고,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동생 친구의 카드빚 사기로 인해 동생이 신용불량의 위기에 처했고, 이를 구제하려는 가구원들의 노력이 연쇄적인 신용불량을 불러온 대표적인 사례이다. 물론 애초에는 신용불량이라는 절대빈곤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망이 작동했지만, 경제적 자원이 빈약한 가구원들의 참여가 빈곤 구제가 아니라 연줄망에 얹인 모든 구성원의 동반 추락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우씨의 사례는 사회적 관계망의 결속 정도가 빈곤 구제 여부를 규정짓는 결정적인 변인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빈곤 구제 여부는 그보다는 사회적 관계망에 묶인 구성원들의 경제적 역량과 이들이 놓인 경제적 여건간의 함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사회적 배제 요인들과의 결합을 통한 빈곤의 가속화

빈곤 취약계층은 생활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자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한 빈곤 유발 요인이 작동하기만 해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십상이지만, 몇 가지 빈곤 유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빈곤화 추세를 더욱 가파르게 진행시키거나 빈곤 상황을 영구히 지속시키는 경우가 대단히 빈번하다. 특히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나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는 독자적으로 빈곤을 촉발시키기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 이미 촉발된 빈곤을 더욱 촉진시키는 가속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여타의 빈곤 유발 요인과 결합해서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공간적 고립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

일터와 달리 쉽터인 주거공간은 지역공동체적인 관계를 맺어 각종 정보를 얻고, 금전적 채무나 물질적 지원 등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된 빈곤층에게는 주거지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상호부조를 통한 빈곤 적응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농민들이 농촌의 촌락공동체적 관계를 이식시켜 놓았던 과거의 판자촌이나 달동네와 달리, 영구임대아파트나 지하셋방 등과 같은 최근의 빈민 주거 양식은 주민간의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켜 빈곤으로의 추락에 개별적으로 대처하도록 함으로써 빈곤화를 방임하거나 조장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사례 17】 주거로 인한 공간적 고립은 지하셋방 가구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60대 후반으로 손자와 함께 사는 이○자씨(69세, 여)의 사례에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고 실업자인 외아들 또한 자신들의 자식을 방치하고 있어, 수십년간 빌딩 청소로 생활해 온 이○자씨가 몇 푼 안되는 수입으로 손자를 거둬야만 했다. 그런데 30년간 살던 상암동의 무허가 주택이 월드컵 경기장 건설로 철거되자, 지하셋

방으로 주거를 옮겼다. 과거의 무허가 주거지에서는 일이 힘들고 바빠도 이웃간에 왕래가 있고 도움도 주고받았는데, 지하셋방에서는 이웃집에 누가 사는 지도 모르고, 도움을 주고받는 일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생계비가 부족할 때에도 이웃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매점에서 조금씩 빌려 쓰고 갚을 정도이다. 이는 중산층의 아파트 문화 못지 않게 빈곤층의 주거양식이 개별화되고 고립화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례 6】 임○희씨(31세, 여)의 경우 예전에 영구임대주택에 살았을 때, 고령자와 장애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해서 이웃과의 근린관계를 맺지 못했다. 그런데 특히 그 과정에서 영구임대주택이라는 주거양식이 이러한 사회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주거빈곤 상황에 놓인 빈곤층을 구제해주는 주거복지 기제로서 그 역할이 지대하지만, 개인주의적 생활을 강요하는 아파트 주거의 특성에 극빈 가구, 장애인, 노인단독가구 등으로 단지 내 가구 구성이 편향되어 있는 주민 특성이 결합되면서, 친밀한 근린관계 형성 및 원만한 지역공동체 결성을 철저히 가로막고 있다. 이 때문에 임○희씨도 이웃을 거의 사귀지 못했고, 또 그 탓에 현재 살림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향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방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근린 부재 현실을 심각하게 문제삼고 있다.

이와 달리 비닐하우스촌의 경우에는, 주민들간의 긴밀한 연대감이 형성되어, 이웃의 대소사에 도움을 주고 받고, 또 지역사회가 곧 일자리 연줄망 구실도 하는 등, 지역공동체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지니고 있다.

【사례 20】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는 김○숙씨(51세, 여)의 경우, 비닐하우스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나 철거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건축자재만 구하면 주택 건설 과정에 동네 사람들이 거의 무상으로 도와줘서 쉽사리 다시 집을 지을 수 있었다. 또 이웃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 인지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서로 가족같이 지낸다. 더 나아가 동네에 보도블록을 까는 공사 업무를 맡은 십장(오야지)들이 서너 명이 거주하고 있어서, 일자리 없이 빈둥거리는 동네 주민들이 취업 기회를 얻어 어렵지만 생활을 꾸려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도 대내적 동질감과 연대감은 형성되지만, 대외적 단절감과 고립감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비닐하우스 밖의 경관이나 외부인을 아예 의식하지 않으려 하고, 외부지역 친인척이나 친구와의 관계도 의도적으로 끊고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대외적 관계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대내적 결속력이 더욱 강화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나마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망이 유지·존속되는 비닐하우스 주민의 경우에도 외부와는 고립되어 있다는 ‘반쪽짜리 관계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 건강의 상실과 사회적 관계의 제약

심신장애나 불치병과 같은 만성질환은 의료비 부담과 같은 직접적인 경제적 압박을 가할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과 주변 가족들의 활동반경을 극도로 제한해서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또한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처럼 심신장애나 만성질환 등은 가족들의 관심과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 가족에게 ‘만성적 피로감’을 심어줘서 환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한다. 이는 환자를 사회적·심리적·경제적으로 고립시켜 건강을 더욱 해치게 하거나 경제적 결핍을 더욱 가중시킨다. 건강의 상실은 각종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직접 빈곤을 촉발시킬 뿐 아니라, 이처럼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이나 왜곡이라는 형태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빈곤의 재생산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 23】 뇌성마비 장애인 부부인 이○교씨(38세, 남)와 김○정씨(39세, 여)의 경우가 그러한 사례이다. 이들은 어린 시절에는 가정에서 지낼 수 있었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양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장애인 수용시설에 입소했다가 자립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직업훈련원에 들어가는 등, 시설에서 주로 생활해야 했

다. 기술을 습득하더라도 마땅한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았고, 특히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중증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이동에 어려움이 커서, 사회에 진출하더라도 사회 적응이 대단히 어려웠다.

이에 혼자 힘으로는 자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들은 시설과 가족의 보호에서 온전히 벗어나기 위해 결혼을 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냉대와 차별의식으로 인해 부동산중개업소와 집주인에게 문전박대를 당하는 우여곡절을 거쳐 전세 주택을 마련하는데 6개월을 허비해야 했고, 경제활동 과정에서도 기술이나 업무 능력과 무관하게 중증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순작업을 반복하면서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감내해야만 했다.

이처럼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물리적 이동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가 도로와 일반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해서 외부 출입에 크게 제약을 받았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해 사람 사귀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그 결과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와 지식으로부터의 소외, 적절한 일자리로부터의 배제를 당했고, 이는 공공부조에 의존하지 않고는 독자적인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절대적 빈곤 상황으로 이들을 내몰았다.

【사례 14】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권○기씨(34세, 남) 사례도 불치의 만성질환으로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모두 단절되고 빈곤의 골도 더욱 깊어진 대표적인 경우이다. 2001년 백혈병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혈기 왕성해서 모든 일을 의욕적으로 처리하고, 수억 원대의 재산을 모을 정도로 사업에도 수완을 발휘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과정에서 기업이 부도로 도산했고, 그 후 기업체에 취직했다가 백혈병 발병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발병 초기에는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으로 집을 팔아서라도 의료비를 조달했지만, 1년 내에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되면서 만성적인 불치병이라는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이에 처가와의 갈등이 심해져서 부인과 이혼하게 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형제자매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이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등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건강을 부분적으로 되찾아도 취업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고립과 격리가 지속되어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빈곤 상황에서의 적응조차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그 결과 권○기씨와 같은 만성질환자들은 생명이 연장되더라도 죽음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정신적 내상을 심하게 입을 뿐 아니라 만성적인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차원의 외상까지 입게 되어, 생존을 계속 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3) 저학력과 사회적 관계의 제약

빈곤층의 자녀는 저학력의 빈약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게 되어, 빈곤의 대물림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우리 사회와 같은 심각한 ‘연줄 사회’, ‘학벌 사회’에서 낮은 학력은 학연이라는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학력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분절과 층화 현상을 낳게 된다. 따라서 저학력자는 교육 수준이 유사한 빈민층 내부에서만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의 제약을 받게 되고, 이들과 고학력자 사이에는 서로 넘나들기 힘든 높은 벽이 쌓이게 된다. 또 사회적 관계의 해체와 단절은 빈곤층 자녀가 교육기회에 접근할 기회를 제약해서 이들이 저학력의 빈약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강요한다.

【사례 24】 강○수씨(51세, 남)는 벽촌의 빈농 자제로 태어나 시골에서 고등공민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도 못한 채 상경했고, 서울에서도 야간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역시 중도에 포기해야만 했다. 이처럼 정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탓에 번듯한 직장에 취직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막노동을 하면서 떠돌아 다녀야 했다. 그러다가 이웃의 소개로 체신부의 전화국 관련 임시직으로 일하다가 학력 제한이 없었던 당시의 체신부 9급 기능직에 정식 채용되어 저학력으로 인한 정규직 취업 제약을 가까스로 뛰어 넘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 졸업자로 구성된 사무행정직 사원들은 별다른 제약 없이 승진이 보장되는데, 체신부 공무원에서 한국통신 직원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직이라는 직위 탓에 환직(직위 전환)을 하기 전에는 과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내부적 차별을 경험해야만 했다. 따라서 기능직간에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도 행정직들과는 늘상 은근한 갈등과 대립 관계를 형성해 왔다. 여기에 더해 행정사무직은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보편적 기술이고 대규모 인력으로 구성되어 외부 환경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에, 기

업 특수적인 전문기술을 가진 기능직의 경우에는 기술혁신으로 자신들의 기술이 기업에서 불필요하게 될 경우, 즉각적으로 갖가지 퇴사 압력을 받게 된다. 유선 연결 업무를 담당하던 강○수씨와 같은 경우에도 통신기술이 유선통신에서 무선통신으로 전환하면서 직·간접적인 퇴사 압력에 시달렸고, 결국 자진 퇴직했다.

안정된 직장에서의 장기 근무 뒤에 퇴직했고 적지 않은 퇴직금 수령과 고용보험 적용 등으로 강○수씨의 경우에는 실업이 곧바로 빈곤으로의 추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취업 경력이나 기술적 노하우가 쓸모없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자격증을 습득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해야 하는 데다가, 소비 지출의 규모가 크게 줄지 않아 빈곤화의 문턱에 놓여 있는 상태이다.

라. 빈곤과 사회적 관계 단절의 악순환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빈곤의 진전을 더욱 부추기기도 하지만, 역으로 빈곤 상황이 빈곤층의 사회적 관계가 공고해지는 것을 가로막고, 기존의 관계망마저 끊어놓음으로써 궁극적으로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는 ‘자기 파멸적인’ 악순환 또한 빈곤층 사이에서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사례 3】 우○순씨(33세, 여)의 둘째 동생의 경우, 친구가 아버지 수술비를 핑계로 대출을 요구해서 1천만원 가량을 카드로 신용대출 받아 빌려준 뒤, 그 친구가 잠적하는 바람에 돈도 잃고 친구도 잃었다. 어려서부터 집안에서도 잘 아는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빈곤이 친밀한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가져왔고, 장기화된 신용 불화가 우씨 동생과 집안 형제 전체의 신용 불량으로 이어져 우○순씨 가정에 빈곤 상황을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사례 19】 노숙자인 이○성씨(48세, 남) 사례는 가족 해체와 빈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빈곤의 재생산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더욱 심화시킨 경우이다. 이씨는 어린 시

절 아버지의 사망으로 가족이 해체되어 본인은 큰아버지의 손을 거쳐 고아원에 보내지면서, 그 뒤 자력으로 삶을 개척해 왔다. 양복, 양장 기술을 익혀 청계천에서 생활하면서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렸지만, 고아라는 이유로 처가의 강력한 결혼 반대가 부딪쳐 결국 이혼하고 말았다. 다시 독신 생활로 돌아가 영세의류공장을 운영했는데, 그나마도 외환위기를 계기로 일감이 끊어진 탓에, 공장이 부도를 맞아 사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그 뒤로는 쪽방에 기숙하면서 봉제 일감을 얻어 생활하다가 그나마도 끊기자, 거리로 나와 지금은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유년기의 1차적 가족 해체는 친인척 및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을 기회를 박탈해 버렸다. 따라서 모든 것을 자력으로 해결해야만 했고, 이는 인적 자본 및 물적 자본의 철저한 결핍 상태에서 경제활동에 진입하도록 강제했다. 즉 가족 해체로 인해 절대적 빈곤 상황에 내몰렸던 것이다. 개인적 노력으로 빈곤 상황을 어느 정도 벗어났지만, 청년기의 제2차적 가족 해체는 사회적 관계망을 재건하려는 시도를 다시금 밑으로부터 허물어뜨렸다. 따라서 이혼 이후 외환위기의 영향도 적지 않았지만, 정신적, 물리적으로 의존하던 아내의 부재로 인해 공장도, 건강도 모두 상실한 채 거리로 내몰려 노숙자가 된 것이다. 이러한 극빈 상황은 취업 활동이나 일반 사회생활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정서적 위로와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줄 사회적 관계망을 더욱 단절시켜 노숙자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마. 소결

이상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 및 해체가 사회적 배제의 한 영역으로서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을 촉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가족이라는 1차적 관계망의 해체가 그 무엇보다도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족 해체는 여타 사회적 관계의 파괴로 이어지는 강력한 파급효과를 발휘하면서 빈곤화

추세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물론 사회권 또는 복지권은 1차적·2차적 관계망이 모두 해체되고 빈곤화의 위기 상황에 적나라하게 노출된 개인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를 공공부문이 책임져야 하는 기본 인권을 가리킨다. 따라서 외견상 가족의 해체 그 자체는 사회권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권 및 사회적 배제의 논의는 그러한 빈곤의 위험과 그로 인한 인권의 심각한 침해 상황이 발생하기에 앞서 그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한다면, 사회권 차원에서도 가족 해체를 예방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만약 가족 해체가 일어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망의 복원을 통해 사회로부터의 이탈과 배제를 방지하는 방안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해체는 빈곤 촉발 요인이 아니라 빈곤 가속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빈곤화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의 복원이 곧바로 빈곤 탈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더라도 사회적 관계망의 복원은 빈곤층, 빈곤 취약 계층의 빈곤 적응 기제로서, 또 빈곤 탈출의 디딤돌 및 첫 단추로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은 별다른 자원이 없거나 가진 자원이 극히 빈약한 빈곤층이 비교적 온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빈곤화 추세를 누그러뜨리고 빈곤 상황에 적응하면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자원으로서 사회적 관계망의 위상과 역할에 주목하면서, 그 유지 및 복원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물질적 결핍과 사회적 배제

가. 물질적 결핍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

빈곤은 정상적인 생활조건의 결핍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²⁸⁾ 그러나 사회에 따라서 '정상적인 생활조건'에 대한 기준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어떠한 항목이, 어느 정도 결핍되어 있는가에 따라서도 다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²⁹⁾

맥스-니프(Manfred Max-Neef)는 빈곤을 기초적인 인간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못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대체로 낮은 생활수준, 의료서비스 결핍과 불량한 위생으로부터의 보호결핍, 교육 접근권의 무시 등을 결핍조건의 예로 들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박탈'의 개념을 가지고 빈곤문제에 접근하고자 했던 타운샌드(Townsend)는 상대적 박탈에 대한 견해를 보여주었는데 그가 제기한 박탈은 '사람들이 그가 속한 사회에서 관습적이거나 혹은 널리 권장되고 인정되는 음식, 의복, 주택, 주거시설, 그리고 연료 환경조건, 교육조건, 노동조건과 사회적 조건, 그리고 활동과 시설이 결여되어 있을 때 박탈되었다'고 보았다.(신명호, 2001) 정상적인 생활조건은 학자마다 견해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음식, 의복, 주택, 주거시설, 교육조건, 노동조건 등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조건들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활조건은 국제적으로 발효된 사회권규약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 항목으로도 제시되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권, 식량에 대한 권리, 주거권, 건강권(환경권 포함), 교육권, 사회보장권 등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에서 채택되고 명시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하여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절대빈곤층으로 규정한다.³⁰⁾ 이러한 형태의 빈곤층에 대한

28) 1990년 World bank에서는 절대빈곤을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규정하였고 Hagnaars는 생활상의 필요가 충분하게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고 규정하였다.

29) 결국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포함하여 빈곤과 관련된 모든 개념은 다소간 상대적이다. (권순원, 1993) 생리적, 문화적 조건 혹은 환경조건이 다름에 따라서 물질적인 요구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접근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빈곤층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만큼 빈곤은 경제적 지불능력의 결핍, 또는 물질적 결핍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한국정부도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비용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빈곤층을 설정하고 있다. 빈곤을 경제결정론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물질의 결핍은 빈곤을 정의하는데 가장 쉽게 사용되는 잣대이다. 이는 또한 경제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도 대비해 볼 수 있다.

사회적 배제는 “개인의 사회권(social right), 예를 들어 기초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부정되거나 실현되지 않는 상황”(Alvey)이라고 정의되거나 “개인, 가족, 집단 또는 이웃들로부터 이들이 사회·경제·정치적 활동 전반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빼앗는 일련의 과정”(Pierson) 등으로 정의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인 결핍을 의미하는 빈곤상황을 포함하여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결핍 상황이면서 동시에 결핍을 초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행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위한 정보와 관계망, 이외의 다양한 자원과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모든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약요건과 과정은 사회적 배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는 단순히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이 실제 한 사회내에서 어떤 방식의 관계맺기로 나타나는지의 모든 과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용어이며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해석방식을 강조하고 있는 용어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배제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다차원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의 요소를 강조하기 위한 개념이라

30) 이 빈곤선은 각 국가와 사회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회적 배제의 개념에서 물질적 결핍 상황인 빈곤은 배제의 한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장에서 굳이 사회적 배제의 개념으로 결핍이란 빈곤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빈곤은 단지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생성이 되면서 다시 다른 자원과 활동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배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경제적 영역, 즉 물질적 결핍이란 사회적 배제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나타나는지를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적 영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에 기인한 경제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진행된 심층면접의 전체 사례 가운데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의 물질적 결핍의 심각성을 나타내주는 사례는 2사례였다. 이 장에서는 이 두 사례를 중심으로 물질적 결핍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두 사례 중 한 사례는 조모와 손자가 함께 지하셋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례였고 다른 한 사례는 쪽방에서 편모와 2명의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례였다.

나. 물질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

1) 불안정한 근로소득

물질적 결핍을 낳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당연히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입에 기인한다. 결핍의 예로서 해당 사례인 두 가구는 모두 조모와 편모의 근로수입에 의지하여 가구경제를 이끌고 있었다.

【사례 17】 이○자씨(69세, 여)는 건물 청소를 하면서 한 달에 52만원의 월급을 받아 손자와 생활한다. 이○자씨는 69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해야한다.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과 손자의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보조금은 노인 교통수당으로 한 달에 18,000원이 나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

려고 서류도 준비했었지만 소득기준에 해당되지 못해 거부당했다. 이○자씨의 월급이 보너스를 합칠 경우 월 63만원이 되는 바람에 이 액수가 최저생계비를 초과되기 때문이었다. 비록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는 수준이라고 해도 보너스를 제외한 월급52만원으로는 도저히 한달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사례 25】 송○연씨(41세, 여)는 41세의 여성가장으로 딸(14살), 아들(11살)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무일푼으로 자식들을 데리고 청주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지역신문을 통해 찾아간 식당에서 매달 80만원의 돈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식당장사가 어려워지면서 그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일급으로 받고 있는데 그 액수도 일정치 않아, 상황에 따라 3만원, 2만원, 1만원씩을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일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생활이 더 어려워져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까 고민하고 있다. 송○연씨는 정부로부터의 보조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2) 최소한의 소비를 중심으로 한 지출

<사례 17>의 이○자씨 가구는 적은 수입이지만 정해진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소비에 대한 대략적인 지출을 가늠해 볼 수 있지만, <사례 25>의 송○연씨 가구는 일급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가 불가능하다.

가) 식비

【사례 17】 이○자씨(69세, 여)는 밥과 김치, 달걀 후라이 정도만을 놓고 먹거나 복지관에서 준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자씨의 식사는 아침과 점심을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저녁은 복지관에서 준 도시락을 먹거나 간단히 밥과 김치로 손자와 함께 먹는다. 손자는 아침은 대개 굶고 점심은 학교 급식으로, 저녁은 할머니와 함께 먹는다. 이○자씨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방에서 손자 혼자 간식이나 배고픔을 해결해야 한다. 더군다나 손자는 발달장애아로 컵라면 외에는 혼자서 아무

것도 해먹을 수 없는 상황이다. 외식은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외식이라고 해봐야 한 달에 한번 찾아오는 자원봉사자들이 점심을 사줄 때에만 외식이 가능하다.

이○자씨 가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출되는 항목 가운데 하나가 식비이다. 일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 먹을 것을 사고 난 뒤에 다른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식비는 대개 쌀과 기본적인 반찬거리, 찌개거리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이○자씨 가구는 매일매일 필요한 쌀과 반찬거리를 사먹는다. 집 근처의 가게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가게에서는 봉지쌀과 기본적인 반찬거리를 팔고 있다. 봉지쌀은 대개 4천원 정도를 주고 산다. 이○자씨는 하루에 5~6천원 정도의 지출을 하고 있다. 외식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사례 25】 송○연씨(41세, 여) 가구의 식사는 아침은 세 식구가 함께 방에서 간단한 찌개와 밥을 해먹고 어머니가 일을 하러 나가시면 점심은 딸이 챙겨서 밥과 아침에 먹던 찌개를 먹고 저녁은 다시 어머니와 함께 세 식구가 쌀을 사오면 밥을 해서 찌개와 김치를 해먹었다. 대부분 먹게 되는 것은 두부를 넣은 김치찌개 정도라고 하였다. 두 가구의 아이들은 아무런 보호없이 집에 방치되어 있어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끼니를 거르는 때가 잦아 영양결핍이 우려된다.

나) 주거비

【사례 17】 이○자씨(69세, 여)는 1,000만원 지하 전세방에 살고 있다. 방이 두 칸이지만, 방 한 칸은 곰팡이로 인해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결국 방 한 칸으로 이○자씨와 손자가 함께 살고 있다. 상암동 판자촌에 살 때는 처음에 사글세 보증금 100만원부터 있다가 집주인이 200만원을 더 올려달라는 바람에 사글세에서 전세 700만원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이 돈은 할머니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타서 충당한 것이라고 한다. 상암동 판자촌 철거로 이주보상비는 당시 함께 살던 식구가 아들, 며느리, 손자를 포함해서 4명이었기 때문에 1인당 130만원씩, 4명이 520만원을 받았다. 가지고 있던 전세금과 이주보상비를 합쳐서 방을 구하고자 했으나 쉽게 구할 수 없었고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원래 전세 1,500만원 하던 집을 1,000만원으로 깎아서 들어오게 되었다. 전세금 1,000만원은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이었으나 이주보상비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금

액이었다. 번번이 목돈이 주거비로 들 경우, 주위에서 빌리거나 국민연금을 깨서 마련한 돈이었다. 이사를 온 후에 한번은 주인집에서 전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주인집의 배려로 이○자씨의 집은 더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별도의 주거비는 지출되지 않으나 기타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사례 25】 송○연씨(41세, 여)는 현재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의 상당량을 방세로 지출하고 있다. 매일 1만원씩 방세를 내는데 최근 10일 동안은 방세가 밀렸다. 일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1만원에 그칠 경우가 많아서, 끼니를 겨우 해결한 후에는 방세를 낼 돈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 내구재비 (냉 · 난방비)

【사례 17】 이○자씨(69세, 여)가 상암동 판자촌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지하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을 때, 대부분의 가구와 살림살이들은 버리고 왔다. 이사하기도 번거롭고 이사할 때만 해도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고 그때 생각에는 이사가면 “새로 사지”라는 생각으로 버렸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사를 하면서 가지고 온 가전제품은 냉장고와 TV 뿐이다. 현재 이○자씨 집에 갖추고 있는 세탁기, 장롱은 모두 이사와서 얻은 것들이다. 길에다 버려 둔 가구나 가전제품, 다른 층에 살던 사람들이 버려 두고 간 물건들은 죄다 가지고 왔다. 주인집 아줌마 역시 매번 버릴 물건이 있으면 지하에 사는 이○자씨 집으로 가지고 온다고 했다. 이○자씨의 집에는 특이하게 김치냉장고가 있었는데, 주위에 아는 분이 어렵게 사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사준 것이라고 하였다. 김치나 야채를 넣어두는 칸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난방은 가스보일러가 있지만 4만원이 넘는 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가스보일러는 끄고 대신에 전기요를 깔고 지낸다. 전화는 있지만 손자가 직장 일하러간 할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떼를 쓸 때 사용하는 것 외에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다고 하였다. 핸드폰은 없었다.

【사례 25】 쪽방에 살고 있는 송○자씨(41세, 여)는 TV와 전기밥솥을 제외하고는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전혀 없다. 한 평정도의 공간에 가구는 들여놓을 수도 없거니와 들여올 경제적 능력이 안되기 때문이다. 좁은 방에 있는 가전제품은 쪽방에 원래 놓여있던 TV뿐

이고 다른 방 아저씨에게서 얻은 전기밥솥, 숟가락과 젓가락, 그릇, 휴대용 가스레인지도 아는 사람들로부터 얻어온 것이다. 송○자씨가 구입한 것은 단지 냄비 2개뿐이었다. 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을 나간 어머니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송○자씨의 핸드폰이 있었으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서 최근에 끊어졌다. 핸드폰은 식당에 자주 오시는 할아버지가 사준 중고핸드폰이라고 하였다. 냉장고도 공용으로 쓰는 냉장고를 이용할 뿐이었다.

라) 교통비와 의복비

【사례 17】 이○자씨(69세, 여)는 노인들을 위한 교통비 지급을 18,000원 받고 있는데, 실제 교통비는 이보다 더 많이 든다.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타고 가며, 퇴근할 때는 지하철을 타고 걸어오거나 다리가 아프면 마을버스를 탄다. 하루에 2,000원 가량의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는 셈이다. 손자의 초등학교는 바로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손자의 교통비는 따로 들지 않지만 이○자씨의 교통비는 보조받는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의복비 역시 최대한 아끼고자 하는 지출항목 중에 하나이다. 면접자가 방문했을 때에도 손자는 집 나간 어머니의 헌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한번은 학교에 며칠을 같은 옷을 입고 갔다고 주위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자씨 자신도 옷을 사 입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였다. 만약 옷이 필요해서 살 경우에는 자신보다는 손자의 옷을 사 입히는 경우가 가끔 있을 뿐이지 자신을 위해서는 잘 쓰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대개 옷이 필요한 경우는 복지관에서 얻어 입고 그렇지 않으면 집을 방문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손자의 겨울옷 정도는 사주기도 하였다. 의복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정기적이지도 않았고 지출되는 비용 또한 많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1년에 10cm씩 자란 손자의 의복비가 전혀 들지는 않았을 것이고 지금은 많이 성장하여 성인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이전에는 아동복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였다.

【사례 25】 송○자씨(41세, 여) 가구의 경우는 교통비는 들지 않는다. 송○자씨의 직장인 식당은 걸어다닐 수 있는 집 근방에 있고 딸과 아들은 모두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교통비로 드는 비용은 없다. 송○자씨 가구의 경우도 의복비 지출은 거의 없었다. 필요한 옷은 복지관에서 얻어오거나 주위 친구들에게 얻어 입는다. 아이들 옷은 집을 나올 때

몇 가지 챙겨 나오긴 했지만 집을 나온 지 이미 2년의 시간이 지나서 예전의 옷은 입을 수 없을 것이고 자라나는 성장기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구입해야할 의복이 많으리라 예상 된다. 면접자가 방문했을 때 두 자녀는 계절에 맞지 않는 여름옷을 입고 있었다.

마) 교육비

【사례 17】 이○자씨(69세, 여)의 손자는 발달장애아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나, 보호와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손자는 일반초등학교의 특수반에 5학년에 재학중이며 손자의 공교육비와 급식비는 학교에서 면제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학용품과 준비 물품은 이○자씨가 지출하고 있었으며 이는 정기적인 지출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지출 하였고 가끔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손자에게 필요한 책은 모두 이○자씨가 일하는 곳에서 버려지는 책들을 모아 집에 가져다 놓았고 손자에게 책을 보라고 얘기도 해보지만 손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뿐이었다.

【사례 25】 송○자씨(41세, 여)의 두 자녀의 교육문제는 심각했다. 일체의 학교교육은 받지 못하고 있었고 좁은 방에서 하루종일 두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 TV를 보는 것이 전부였고 가끔 복지관에서 읽고 싶은 책을 빌려다 보는 정도이다. 큰딸은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머니는 책은 전혀 구매하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송○연씨 가구의 경우, 교육비로 지출되는 일체의 비용이 전무하였다.

바) 보건의료비

<사례 17>의 이○자씨와 <사례 25>의 송○연씨는 현재 특별한 질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 아니며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료비는 지출되지 않았다. 감기가 걸리는 정도는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사먹는 정도의 지출이 있었다. 이○자씨는 가끔씩 허리가 아픈데, 파스를 붙이는 것 외에 병원에 갈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단지 손자가 아플 경우에만 병원에 찾아간다고 하였다. 이○자씨는 의료보험비는 내지 않는데 반해 민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다. 손자를 위한 건강보험과 자신을 위한 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매달 6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민간보험을 든 이유는 친구가 암으로 사망한 것을 보고 듣게 되었고, 자신이 죽고 나면 남겨질 손자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험료도 감당할 능력이 안되어 한번은 보험을 해지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기도 했다고 한다. 되도록 보험료는 낼 생각이지만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송○연씨의 경우도 감기가 걸리면 약을 사먹는 정도 외에는 의료비에 대한 지출은 거의 없었다. 다행히 두 자녀도 잘 아프지 않고 자신도 잘 아프지 않았다. 두 가구 모두 특별한 의료비의 지출은 없었으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건강상의 위험을 받고 있으나 이를 의식하지 못하였고 불규칙하고 간단한 식사로 영양결핍이 우려되었다.

사) 기타세금

【사례 17】 이○자씨(69세, 여)가 지출하고 있는 세금은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전화비 정도이다. 다달이 드는 세금에 대한 지출은 10만원 정도가 든다. 가장 많이 나오는 비용은 수도세와 가스비인데, 겨울철인 경우는 가스비가 4만원이 나오기도 하였다고 한다. 겨울철에는 세금으로 지출되는 돈은 10만원이 넘는다. 반면 <사례 25>의 송○연씨는 세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없었다.

아) 빛

【사례 17】 이○자씨(69세, 여)의 경우 부족한 생활비는 대부분 빛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목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직장 동료들에게 1~2만원, 많게는 3~4만원 정도를 빌려쓰고 다음달 월급으로 갚았다. 그러나 적은 액수라도 빌려 쓴 돈이라도 합치면 10만원 가까이 돼, 한꺼번에 갚기 위해서는 또다시 돈을 빌리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생활비

를 빌려 쓰는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빚은 없었다. 이○자씨 자신도 본인이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생각을 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목돈을 빌리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사례 25】 송○자씨(41세, 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본인이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출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송○연씨의 경우 심각한 빚은 카드빚이 있었다. 200만원 정도의 빚이 있으나 아직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일급으로 그날 그날 근근히 생활하는 송○연씨가 카드빚을 해결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자) 부담되는 지출항목

<사례 17>의 이○자씨와 <사례 25>의 송○연씨는 적은 수입의 전부를 생활비로 다 사용하고 있었다. 이○자씨의 경우, 매달 지출하는 세금의 가장 많은 지출되는 비용은 손자의 용돈이다. 손자는 할머니인 이○자씨가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번 할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떼를 썼다.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이 새로 산 장난감이나 새로 나온 간식거리를 보면 사달라고 떼를 쓰기 일쑤였다. 할머니인 입장에서 이○자씨는 부모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손자를 생각하면 안쓰러워서 매번 돈을 내어준다고 하였다. 이○자씨는 세금 10여 만원, 보험료 6만원, 교통비 4만원, 기본적인 식비를 제외하면 남은 월급의 가장 많은 부분이 손자의 용돈으로 지출된다. 손자의 용돈으로 출근할 때 매일 3천원씩 남겨두지만 퇴근 후에도 손자는 PC방을 가거나 간식을 사먹는 돈으로 천원씩 더 받는다. 매일 4천원씩 손자의 용돈으로 12만원이 들어가고, 그 외의 돈으로 목욕비, 이발비 등의 소소한 지출이 있다. 이렇게 이○자씨는 한 달에 52만원으로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다.

<사례 25>의 송○연씨 가구는 일 수입 2~3만원에서 매일 방 값 만원, 봉지 쌀 4천원과 김치와 기본적인 반찬값이 지출된다. 대략 하루 식비 6~7천원에

최소생활비용이 큰 16,000~17,000원이 들지만 수입은 매번 일정치가 않아 일당 3만원을 받지 못할 때는 거의 기본적인 생활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는 목욕을 가거나 자녀의 이발비용 정도가 추가로 들고 있다. 옷을 사 입거나 외식을 하는 등의 일은 전혀 생각을 할 수 없다. 노는 날은 한 달에 두 번, 첫째주와 셋째주 일요일에 노는 데, 일당을 받지 못하는 날의 생활비까지 고려하면 넉넉지 않은 생활비이다.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은 식비라고 하였다.

차) 저축

수입의 전부를 생활비로 쓰고 있어서 저축은 생각해볼 여유가 없다. <사례 25>의 송○연씨는 빨리 쪽방에서 나와 월세방이라도 방을 마련하고 싶지만 하루 벌어 하루 쓰는 마당에 돈을 모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고려중인 대안은 고정적으로 더 많은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새롭게 알아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상황은 <사례 17>의 이○자씨도 마찬가지였다. 현재로서는 미래에 대한 유일한 대비책이 보험뿐이지만 이 역시 꼬박꼬박 부담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다른 저축은 전혀 생각해볼 틈이 없다. 따라서 두 가구 모두 긴급한 생계위험의 상황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었다.

다. 물질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가 발생한 이유

<사례 17>의 이○자씨와 <사례 25>의 송○연씨의 사례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최소한의 지출만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최소한의 주거환경조차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식비와 주거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비는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된 교육은 어려웠고, 계절별로 옷도 챙겨 입을 수도 없었으며, 보호자들이 생계에 시달리고 있는 사이에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었다. 기본적인 생활요건도 갖추

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두 가구의 결핍 상태가 바로 사회적 배제이지만 이러한 배제를 가장하게 한 요인들은 무엇인가. 문제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를 설명해주는 주요한 배경변수를 여성가구의 빈곤화, 장애와 질병,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보고자 한다.

1) 여성가구의 빈곤화: 무능한 남성가장을 대신한 여성가장

피어스(Pearce)는 그의 빈곤연구에서 16세 이상의 빈민 중 2/3, 그리고 성인 빈민의 70%이상이 여성이며 빈곤가구의 반 이상이 여성가구주 가계임을 증명하였다. 피터슨(Peterson)도 미국의 빈곤가족 중 남성가구의 수가 격감하고 어린 자녀를 가진 여성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빈곤한 여성의 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빈곤문제에 가족구조의 변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드러내준다.

국내 연구에서도 빈곤층 내의 여성가구의 비율은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대개 빈곤의 여성화의 문제는 실제 남성생계부양자-여성가사노동자의 가족 모델의 지지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남편의 실직, 질병, 사망과 이혼, 별거, 유기 등의 이유였다. 더구나 최근에는 노동시장 유연화 체제에 따라 상당수의 남성노동자들이 실직 후 여성들이 주변부 노동시장에 대거 유입되어 실질적인 생계유지자로서의 여성가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해도 몇 가지 명백한 사실들에서 여성가구의 빈곤화 경향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남성이 생계책임자라는 일반적인 믿음은 성별분업아래에서 여성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노동시장구조를 형성한다. 되도록 많은 여성들이 비정규직으로 지위하락을 경험하였으며 기업의 다운사이징에서도 여성은 일차적인 희생양이 되었다. 그러므로 여성은 노동시장구조에 2차적인 산업예비군의 성격을 가지고 활용되었고 더불어 여성의 노동시장진입 장벽은 더욱 두꺼워진 결과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가족구조의 변화와 해체를

통해 양산된 상당수의 여성가구주들이 정규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 일이다. 도시의 비공식부분의 저임금, 임시직의 자리만이 여성가구주들에게 할당될 뿐이다. 하향 평준화된 여성의 고용기회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수입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여성가구주의 빈곤화 경향은 자연스러운 문제가 된다. 더구나 전업주부로서 생활을 하던 여성의 경우, 혹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결혼과 출산으로 강요받은 전업주부의 생활을 했던 여성의 경우, 이혼과 사별과 같은 갑작스런 가족의 해체로 인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을 시도하고자 해도 기술과 경력이 없는 여성에게 내어줄 자리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를 겪고 있는 두 사례는 모두 여성가구주로 별거와 이혼으로 여성가구주로 내몰려진 상황에서 빈곤을 마주하게 된 사례이다. 단지 별거와 이혼이 아니더라도 무능한 가장이나 노동능력이 없는 남성가구주를 대신하여 여성들의 소득에만 의존하는 가구 역시 쉽게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

<사례 17>의 이○자씨와 <사례 25>의 송○연씨의 사례는 모두 여성가장가구로 이○자씨는 조모-손가정의 가구주이고 송○연씨는 편모가정의 여성가구주이다.

【사례 17】 이○자씨(69세, 여)는 현재 69세로 결혼 후 출장과 전근이 잦은 남편과 떨어져서 혼자 생계를 꾸려나왔다. 이○자씨는 외도를 일삼는 남편과는 지속적인 별거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계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한번도 생활비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자씨는 홀로 발일을 다니거나 농약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나 아들이 성장하여 노동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시기에도 이○자씨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았다. 아들이 폐결핵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미 아들에게는 아내와 아들이 있었고 함께 살면서 이○자씨가 주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고 며느리가 때때로 부 수입원의 역할을 하였고 살림을 챙겼다. 어린 손자와 아들의 병간호 때문에 며느리는 고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자씨는 평생을

가장역할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사례 25】 송○자씨(41세, 여)는 결혼을 하여 청주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결혼한 지 1년만에 그 폭력성을 드러냈다. 시댁식구들과 함께 살았는데, 남편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정도가 심했으나 시댁식구들 중 누구도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송○연씨는 한번도 생활비를 받아보지 못했다. 시댁식구들이 11칸의 방에 세를 놓아 생활하고 있었고 시부모님들로부터 송○연씨는 생활비를 받아 살림을 하였다. 그러나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아이와 함께 도망을 나왔고 청주의 모자보호시설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살림만 하던 송○연씨는 집을 나오면서 생계를 이어야 하는 막막함을 경험했다. 어렵게 동사무소의 소개로 취로사업을 시작하였고 다시 또 소개를 통해 수입이 더 나은 학교 화장실 청소를 하였다. 그리고 이혼을 하였다. 정식 이혼 후 청주를 벗어나 친정집이 있는 서울로 아이들을 데리고 상경하였지만 친정집은 자신도 모르게 이사를 가버렸고 갈 곳 없던 송○연씨는 쪽방지역으로 오게 되었다. 지역신문을 보고 식당일을 구했고 일당을 받아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송○연씨의 경우 급격한 최저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된 후 갈 곳 없는 상황에서 무일푼으로 서울생활을 하며 심각한 결핍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2) 장애와 질병: 동원 가능한 노동력의 상실

빈곤가구는 온 가족의 노동력이 최대한 동원되어서 가구의 경제상황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지출은 최소화하고자 하는 가족단위의 전략을 꾸리게 된다. 그러나 <사례 17>의 이○자씨의 경우, 아들의 질병으로 인해서 가구단위의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오히려 이○자씨는 아들의 병원비과 약값으로 더 많은 지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생활은 더욱 곤궁해졌다. 그나마 가끔씩 일을 하며 생계에 도움이 되던 며느리도 6년 전 어느 날 집을 나갔다. 그 뒤 얼마 후 아들도 집을 나가 소식이 없었다. 아들의 질병으로 가구경제가 어렵게 되고 가난을 벗어날 수 없게 되자 며느리와 아들의 연이은 가출로 가족은 해체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손자에 대한 보호와 책임, 그

리고 가구경제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이○자씨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이○자씨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자씨의 가구는 아들의 질병이 가구의 경제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듯하다.

또한 이○자씨의 사회적 관계에서 이○자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은 현재 아들과 며느리, 혹은 딸의 보호를 받고 있었으며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자씨는 재정적 도움은커녕 어떠한 보조도 다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받을 수 없었다. 빈곤가구에서 질병과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은 단지 노동능력의 상실만을 의미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지출이 확대되기 때문에 빈곤화의 경향이 높을 수밖에 없다.

3) 불안정한 고용상태, 강제할 수 없는 노동조건

<사례 17>의 이○자씨와 <사례 25>의 송○연씨는 청소와 식당 설거지 등 도시 비공식부문의 저임금 육체노동자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청소의 경우는 대부분 50~6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며, 식당의 허드렛일의 경우 80만원을 받는다. 특히 이○자씨는 8년 가까운 시간을 한 직장에 계속해서 청소 일을 했지만 월급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퇴직금도 매우 적었다.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상태에서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사례 17】 이○자씨(69세, 여)가 현재의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것은 벌써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 외환위기 때에는 이 직장이 아닌 다른 직장에서 청소일을 했었다고 한다. 외환위기 때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청소업무를 대규모 해고하는 과정에서 이○자씨는 회사를 나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2년 정도 뒤에 다시 입사하게 되었다. 이○자씨는 청소용역업체가 고용된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 고용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기업체의 상황에 따라 중·장년층의 여성들이 고용되어 있는 청소업무는 가장 쉽게 영향을 받아 축소되거나 고용된다. 이○자씨 역시 기업체의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해

고를 당했다가 재취업되었다.

이○자씨는 새벽 4시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데 아침 6시에 회사로 출발하여 7시부터 빌딩청소를 하고 저녁 5시에 퇴근을 하며, 한 달에 이들을 빼고 매일 출근하고 있다. 점심식사도 제공되지 않고 있고 4대 보험 역시 적용되지 않는데, 월급은 고작 월 52만원이며 일년에 두 번의 보너스를 받는다. 이○자씨의 보너스를 포함한 월급은 63만원으로 이 금액이 2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었다. 그나마 현재의 직장을 구하기 전에는 헌법재판소의 청소 일을 하였는데, 그때는 월43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사례 25】 송○자씨(41세, 여)는 지역신문을 통해 식당의 설거지 일을 구했는데 최근의 불경기 탓에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자, 일급을 받는 송○연씨는 정해진 일급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처음부터 노동계약을 쓰고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구두로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라. 물질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의 결과

<사례 17>의 이○자씨와 <사례 25>의 송○연씨는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권조차도 박탈당했다. 두 사례에서 ‘결핍’은 물질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이는 다시 다른 사회적 배제와 연관을 맺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심층면접에서 피면접자들은 단지 물질적 결핍으로 인한 곤궁한 삶에 대한 박탈감이 나타났고 근본적인 재화의 의지, 빈곤탈출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는 심리적인 배제의 특징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심리적인 배제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위축시키는 또 다른 배제를 가져다 주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

1) 심리적 배제: 상대적 박탈감

“난 남 도움 안 받고 살았어요. 나이 70이 다 되도록 남 도움 안 받고 살았는데, 지금 이

렇게 애를 키우고 시는데 어떤 때는 창피하기도 하고...복지관에서 나보고 뭐가 그렇게 창피하세요. 남들은 더 못 줘서 그런데, 할머니는 왜 뭐가 창피하냐고 해요. 이 양반이 도움을 많이 줬어요...(중략)..남 돈 벌 때 못 벌고 이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눈물)“ - 이 ○자(69세, 여/ 사례 17)

일부 자유주의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빈곤은 개인의 게으름으로 인한 것으로,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이며 개인의 책임이라고 본다. 그러나 사례에서 보듯이 물질적 결핍을 겪고 있는 이○자씨는 평생을 지속적인 노동을 통해 생활해 왔다. 평생을 매일같이 일을 하면서 40만원, 5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생활하였다. 게으름이란 이○자씨의 삶의 모습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새벽부터 일어나 출근을 하고, 퇴근 후에 집안일과 손자를 챙기는 일상은 자유주의자들의 빈곤에 대한 시각이 수정되어야함을 반증한다. 그러나 문제는 평생을 열심히 노동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은 벗어날 수 없는 덫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 열심히 일을 하며 생활을 하는데 가난을 탈피할 수가 없을까?

이○자씨의 생애에서 빈곤은 늘 벗어날 수 없는 짐이었는데, 이○자씨의 생애과정 전반에서 빈곤탈피의 기회는 매번 좌절로 연이어졌기 때문이다. 결혼 전에 평범하게 살던 이○자씨는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남편 대신에 생계를 이어야 했고 아들이 성장한 뒤에 아들의 질병으로 더 나은 수입을 얻을 기회가 좌절되어 버렸고 아들과 며느리의 가출로 손자의 생계까지 떠맡은 이○자씨는 생애사 속에서 빈곤을 벗어날 만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좌절해왔기 때문이었다.

개인의 생애사 전반에 나타나는 빈곤과 좌절의 경험은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심리적인 패배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이○자씨는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도 평생 자신의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고 남의 집살이를 하며 자신이 도움을 받고 생활을 해야만 현재의 삶을 그나마 지속할 수 있다는 데에 좌절하고 있었다. “남들 돈벌 때 못 벌고 왜 현재의 위치까지 오게 되었나”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팔자 탓만을 하는 것 이상의 어떠한 다른 대안

적 적응기제를 찾기 어려운 것이었다.

벗어날 수 없는 빈곤에 대한 한계인식은 다른 사례인 <사례 25>의 송○연씨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다.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상태로 이혼을 해버린 송○연씨는 가진 것 없이 쪽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식당에서 일당을 받는다. 방부터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을 옮기려해도 돈을 모을 수가 없어서 현재의 쪽방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

“(면접자: 저축을 해야할 거 같은데요?) 저축할 돈이 있어야지. 나도 그런 생각을 안해본 게 아니지. 하는데 저축할 돈이 있어야지. 방세 내고 밥 먹고 반찬 사먹기 바쁜데... 여기에서(쪽방) 방은 옮기고 싶은데 돈을 모을 수가 있어야지. (면접자: 어렵게 사는 분들 전세금 월세금 융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어도 감당하기가 무서워서. 대출은 안 할라고. 신용불량자 되기 전에도 그런 거 있다는 건 알았는데. 안 할라고. 내가 할만한 거 같으면 벌써 했죠. (면접자: 그럼 월급을 더 많이 주는 데로 옮겨야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좀 있다가 나오려구요. 꼬박꼬박 주는 데로 옮기려구요.“ - 송○연(41세, 여/ 사례 25)

벗어날 수 없는 빈곤은 결과적으로 개인의 심리적인 재활의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정상적인 생활의 조건은 너무나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오히려 노력해도 누릴 수 없는 삶의 조건들은 절대빈곤상태를 겪고 있는 빈곤층에게 좌절스러운 패배감만을 맛보게 한다. 물론 전업주부로 생활하던 송○연씨의 경우는 이혼후 일을 시작하면서 이혼을 하고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일을 통해서 갖기도 하지만 일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빈곤상황은 박탈감만을 안겨줄 뿐이다.

두 사례에서 찾아본 물질적 결핍의 상황은 단지 결핍 그 자체로서도 기본적인 삶의 안전망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여주지만, 심리적인 좌절감과 패배감을 안겨주면서 오히려 주변으로부터 스스로 위축되는 현상을 낳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결핍의 심리적인 영향력은 충분히 고려해야만 하는 사회적 배제의 또 다른 요소가 된다.

2) 관계망에 있어서의 사회적 배제: 사회적 관계망의 위축

“창피하기도 하고 남 벌 때 나는 뭐하고 내가 지금 집 한 칸도 없이 사나. (돈벌이가 나은) 식당이라도 다녔으면...맨날 청소밖에 주변머리가 없어서 청소 밖에 한 게 없어요. 평생을...그것도 세상에 돈이라고 받아서 허덕대고.....월급타면 쓰기도 바쁜데 (다른 아줌마들) 너희는 돈도 많다. 매달 20만원씩 저축도 하고. (저는) 끈 게 많으니까 (월급을 받아도 다시 나가고) 그럼 다시 꺾이되니까 한 숨만 나와요. 소설을 써도 몇 권을 써...팔자도 기구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맨날 이려고 살아요. ○○이가 니중에서 커서 할머니가 이렇게 돌봐줘서 자기가 이렇게 컸다는 걸 알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기 엄마를 찾아서 죽기 전에 줘야하는데 하는 생각했는데...앞으로 내가 10년만 먹여 살리려면 자기 앞가림을 하며 살겠지요.” - 이○자(69세, 여/ 사례 17)

이○자씨는 빈곤을 탈피할 기회가 매번 좌절되기도 했지만 자신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었다. 적은 월급의 청소보다 다른 일을 찾았더라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낫지 않았을까를 후회하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좌절감과 패배감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전이되었다. 이○자씨는 함께 빌딩의 청소일을 하는 동료들과 같은 월급을 받아도 동료들은 매달 아들, 며느리 도움도 받아가며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더 박탈감은 느끼고 있었다. 자신은 가족의 도움은커녕, 매달 돈을 빌려서 생활을 유지해야 하고 더구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손자를 계속해서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불투명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이○자씨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은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었다.³¹⁾ 자신의 빈곤

31) 이○자씨는 자신의 주변 친구나 직장동료에 대한 얘기를 꺼낼 때 늘 친구의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 같이 언급을 하였다.

한 삶을 친구들에게 보이기가 싫어서 아는 사람들과 연락도 잘 안 하게 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관계는 유일한 의지처가 될 수 있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개입이 될 경우는 사회적 관계를 위축시키기도 하였다.

마. 소결

<사례 17>의 이○자씨와 <사례 25>의 송○연씨의 가구를 중심으로 물질적 결핍이라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점검을 해보았다. 두 사례는 모두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입에 의지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부터도 상당부분 배제되어 있었다. 이것은 절대적인 빈곤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핍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기본권적 생활이 불가능한 계층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명확한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는 물질적 결핍, 즉 빈곤이라는 사회적 배제의 형태를 반영한다. 그러나 빈곤의 사회적 배제는 개인의 생애사적, 심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개인과 사회에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는 심리적인 배제와 관계망에 있어서의 배제, 정보로부터의 배제와 같은 다른 영역의 배제와도 연관이 된다.

VI. 결론: 정책적 함의

1. 연구결과의 종합

듣기에 따라서는 불편하기까지 한 용어 자체의 생경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의 복합적인 빈곤 현상에 굳이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 혹은 새로운 분석틀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도시민의 대다수가 가난했던 1960-70년대의 빈곤을 '보편적 빈곤', '일과성 빈곤'이라 한다면, 오늘날은 특정한 소수에게 빈곤이 집중되고 고착화되는 '특수적 빈곤', '구조적 빈곤'이 나타나고 있다(장세훈, 2003).

둘째, 노동 유연화의 결과로 취업과 실업의 경계선에 놓인 불완전 고용층이 늘어나면서 빈곤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적체되고 있다(노대명, 2003).

셋째, 소득의 양극화로 상대적 빈곤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적 따돌림, 문화적·심리적 소외가 깊어가고 있다.

넷째, 계층간 사회이동(social mobility)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빈곤 탈출의 의지가 강했던 '희망의 빈곤'에서 그 의식이 점차 약화되는 '절망의 빈곤'으로의 이행 조짐이 보인다.

이 같은 변화의 경향은 특정 시점의 빈곤계층을 구성하는 사람들(개인 혹은 집단)에 관한 설명이라기보다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와 관련된 특징들이다. 즉, 사회변동의 시간 폭을 어떻게 잡든 - 30년으로 하든, IMF 외환위기 이후 5년으로 하든 - 우리 사회는 뭔가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고, 그 결과로서 빈곤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띠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단 오늘날 빈곤의 양상이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기하다는 점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듯하다.

유럽 사회가 ‘빈곤’이라는 용어를 ‘사회적 배제’라는 다른 단어로 대체한 데는 빈곤 현상을 사회의 변동이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다시 말해서 빈곤 발생의 동태적 성격에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에 폭넓게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서로 다른 역사와 제도를 가진 유럽 각국이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공통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은 (구체적 모습과 시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평등의 양상이 대체로 유사한 경향성을 띠면서 전개돼온 과정과 관련이 있다. 이는 국제자본의 유동성 강화, 탈산업화, 고용의 불안정과 실업의 고착화, 일부 중간노동자층의 하강 이동, 사회복지제도의 축소 등의 단어 속에 압축돼 있다. 또한 이처럼 가난한 노동자층의 평균적 삶의 질이 후퇴하는 현상 속에는 단순히 물질적 자원의 결핍 뿐 아니라, 사회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는 등의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불평등이 결합돼 있었다.

사회적 배제는 한 사회 안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류하는(categorize) 방식이 아니라, 전체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과정(social process)을 가리킨다. 이 용어의 다양한 용례와 정의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요소는 ‘관계성’(relationality, relativity)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우선, 일련의 과정으로서의 사회적 배제는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구조의 변화는 전지구적 시스템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또한 구조의 변화는 그 구조 안에 있는 집단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집단들간의 관계에 변화를 일으킨다.

둘째, 어떤 사회구조의 변화가 외부의 보다 큰 시스템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고 그 제약이 사회적 관계를 좌우하게 되면, 구성집단들간의 사회적 경계(social boundaries)가 사회공간적 장벽(socio-spatial barrier)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회적 장애가 공간적 장애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Madanipour 외, 1998).

따라서 이 용어를 둘러싸고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시비—‘누가 누구를 배제하는가’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누군가를 배제시키는 힘의 실체는 인격적 존

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즉 중산층이 빈곤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회적 과정에 의해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온전한 참여의 기회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차별을 겪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의 다차원성과 중첩성을 확인했다. 기존의 빈곤 연구가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의 빈곤 요인들을 경제적 요인으로 수렴해서 설명해왔다면, 이번 연구는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들의 상호관련성을 밝히고자 노력했고, 그런 점에서 빈곤의 발생 메커니즘에 관하여 물질적 결핍이라는 요인 뿐 아니라, 그 이외 영역의 요인들 - 공간적, 사회적, 심리·문화적 요인들의 성격과 상호작용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그러나 현상의 원인을 추적하는 사회과학의 분석은 궁극적으로 문제의 책임, 해결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이슈로 귀결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한에서 사회과학의 분석은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과 개인의 그릇된 행동이 고착화된 문화의 탓으로 돌리는 데 익숙한 미국 빈곤 연구의 주류가, 항상 ‘복지수혜자들의 의존성’의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고, 결국 복지국가론을 공격하는 논객들에게 이용되는 것(O'Connor, 2001)을 보면 분명해진다.

1980년대 이후, 사회적 배제에 관한 논의가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사회민주주의적 의제로 떠오르게 된 것은, 사회적 배제 현상은 곧,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이 훼손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배제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권리로 보장함으로써 사회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각성이 점증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회적 배제라는 분석틀을 가지고 현재 한국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현상을 살펴본 바로는, 제도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구성원들이 여전히 생계, 고용, 의료, 주거환경, 교육의 영역 등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자신들의 힘만으로 그러한 상태를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더구나 현재 그들 삶이 안고 있는 문제들

이 전적으로 본인의 잘못이나 나태함에서 비롯된 것이기보다는, 개인을 넘어서 사회 또는 국가 차원의 문제와 연관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결의 실마리 역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적 배제는 시민으로서의 권리,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부정하는 것’(Walker&Walker, 1997: 8)이라는 지적을 상기하면서, 인권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I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소한의 경제적 복리나 보호의 권리로부터 사회적 자산을 동등하게 향유하고 사회의 통상적 기준에 따라 문화적 생활을 하는 데 요청되는 권리’라고 정의되는 ‘사회권’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 영역에서 중첩적인 결핍과 박탈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은 이러한 사회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경쟁력과 효율이라는 가치 아래, 삶의 질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개인과 가족이 점점 더 많이 책임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풍조이다. 그리고 이러한 풍조는 사회보장체계가 부실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더욱 심각한 부조화와 갈등을 낳을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의 양상들이 여러 차원과 영역에 걸쳐 서로 얽혀있고 그 성격이 복잡해서, 성공적인 대안 찾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탄생한 배경에는 이처럼 ‘문제가 복잡하고 심각한 만큼 사회적 연대를 회복하고 사회가 통합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회권 보장의 차원에서, 계층간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 교육, 노동 부문의 정책을 확충함으로써 시장경쟁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개입이 절실하다 하겠다.

2. 정책 제언

가. 아동과 취약 빈곤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

경제적 결핍이 빈곤가정의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육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정서의 발달, 그리고 사회적응 능력을 갖추어나가는데 있어서도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고용의 불안정으로 가구 소득이 급감하거나 가족해체가 일어나는 경향이 높아져서 빈곤가정의 아동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저소득층이면서 중증환자나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저소득층이면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가구 내에 빈곤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가구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편부모-자녀, 조부모-자녀로 구성된 빈곤가정과 장애아동이 있는 빈곤가정, 중증(만성)질환자나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과 의료서비스 등 우선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복지 서비스와 종합지원체계 수립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은 사교육비의 부족, 부모들의 경험 및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학교 밖에서의 학습 강도가 낮고,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문제 등으로 공부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학교에서는 학업능력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열등감에 싸이거나 일부는 중도탈락하기도 한다. 이들에게는 부족한 기초학습 능력을 보충해주고 정서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높여주는 교육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발성과 개성을 살리면서 건강한 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대안교육적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민간의 공부방 활동이 보다 확산되고 전문화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지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또한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은 학업문제와 관련한 장애와 차별을 겪을 뿐 아니라 부모의 불화·이혼·가정해체와 같은 가정문제, 건강상의 문제, 직업 등 장래의 진로문제들을 안고 있다. 정부의 18개 부처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청소년 관련 정책들은 수요자 중심의 체계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 당사자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에 필요한 여러 자원과 정보를 연결해주며 정신적 후원자가 되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활동체계가 필요하다.

다.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정책적 고려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는 결국 여성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여성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그 영향은 자녀인 아동과 청소년에게 여러 가지 영역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러므로 저소득층 여성, 특히 여성 가구주의 취업 기회 및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제공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보육비 제공, 야간 보육 및 방과후 보육제도의 활성화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이혼 및 별거, 여성가구주의 실직 등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단기 쉼터와 생활지원을 제공하여 모자를 보호하는 안정적 인 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관리 및 질병 예방 서비스 강화

저소득층은 건강을 점검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 보호·예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대부분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은 빈곤층은 이러한 서비스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민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서비스를 실시하더라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속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이나 관리, 특히 취약계층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건강관리, 노인, 장애인에 대한 방문보건 서비스 등이 국가의 재정부담 책임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단 빈곤층의 경우는 건강에 이상을 느끼거나

관심이 있어도 경제적 부담, 지리적 접근성 취약 등으로 미리 관리하지 않거나 건강문제를 방치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이들이 쉽게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마. 건강보험 포괄 범위 확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급여의 수준이 낮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건강검진, 예방접종, 초음파 검사, 자기공명진단(MRI)검사, 식대, 상급병실료, 치과 보철, 예방목적의 치석 제거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서비스들은 대부분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의료보장의 의미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예방 서비스, 질병과 상병에 대한 처치, 재활 서비스, 분만 등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실시되어야 한다.

과도한 의료비 본인 부담은 빈곤층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례에서 ‘검사비’가 무서워서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일정액 이상 고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2004년 5월부터 실시하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조치로서, 계속적으로 의료보장 수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바. 의료급여 확대

고액 진료비 발생으로 생계가 바닥에 이르러서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부(all) 아니면 전무(nothing)’의 구조가 문제이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심각한 의료비 부담으로 다른 대안 없이 빈곤층으로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빈곤층에 진입한 이후에도 탈출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의 모든 급여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는 비효율적인 제도 운영이며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의 여러 급여 중 특정 욕구가 있

는 집단에게는 의료급여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융통성이 요구된다.

사. 주거복지 정책의 정비

저소득층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장 힘겨운 문제 중의 하나가 주거문제이다. 사회적 배제 현상이 공간적으로 실현된 결과이다. 주거빈곤 가구에게는 그들의 능력에 맞는 임대주택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재고를 늘리고 주거빈곤 가구의 주거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다양한 평형, 노인 및 장애인가구를 위한 적절한 편의시설 설치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배분·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 소득수준이 낮아 민간임대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거빈곤 가구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주거급여를 현실화하고, 임대료 보조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주거빈곤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상향노력을 지원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관할 지역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부금 지급 또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 주거빈곤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

지방정부는 쪽방, 비닐하우스촌, 열악한 지하주거 등 관할지역 내 주거빈곤 가구 밀집지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현황을 파악·관리하고, 담당실무자를 배치하여 해당 가구의 주거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할지역내 공공/민간임대주택의 재고를 상시적으로 파악하여 주거빈곤가구에 대해 이들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주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자.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와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오늘날 빈곤을 낳고 심화시키는 가장 중대한 요인 중의 하나는 일자리의 불안정과 실업이다. 이것은 다시 생계비 부족에 따른 부채의 증가와 삶의 질 저하를 불러와서 여러 가지 영역의 사회적 배제로 이어진다. 저소득층 가구원들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에 종사하면서 낮은 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을 감수하고 고용상의 불안한 신분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안정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빈곤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실질적 방안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노력은 날로 심각해지는 빈부 격차의 확대를 막고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없는 중·고령 노동자와, 여성가구주는 '적절한 일자리'(decent job)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노동능력과 처지에 맞는 취업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보호된 시장에서,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갖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소위 사회적 일자리는 그런 대안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제도가 보다 확대되고, 사회적 일자리의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려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차. 가정해체의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가족원간의 관계가 해체되는 원인은 다양하다. 경제적 빈곤이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부부간의 갈등과 불화, 혹은 알콜 중독과 같은 질병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갈등과 불화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이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바뀐 반면, 부부의 성역할(性役割)이나 자녀의 교육관은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해서 전통적 가치와의 사이에 부조화 내지 불일치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과 불화는 어떻게든 가족원들이 올바른 관계 맺기의 방법을 통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같은 갈등 극복과 화해의 과정에는 전문가들의 개입과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하여 가정해체의 문제를, 더 이상 타자가 개입할 수

없는 사적인 영역의 문제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빈곤을 심화시키는 원인이자 아동과 청소년의 미래를 좌우하는 사회적 이슈라는 차원에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단위로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나눔으로써) 상호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것은 한 가정의 위기가 고립된 상태에서 진행되지 않고, 지역사회 복지 체계 안에서 완화되고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강영호, 「한국에서의 빈곤·불평등·건강」, 김창엽 외 『빈곤과 건강』, 한울 아카데미, 2003.
- 강철희·홍현미, 「복지권(Welfare Rights)에 관한 비교연구: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19권 제1호, 2003.
- 건설교통부, 『2004년도 주택종합계획(안)』, 2004
- 건설교통부, 『주택업무편람』, 2003
- 건설교통부, 『주택업무편람』, 2001
-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공공임대주택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2
- 건설교통부·대한주택공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백서』, 2003
- 국토연구원, 『2002 전월세 주택시장 조사연구』, 2002
- 권이구·최협, 「서울 판자촌의 인류학적 조사(상·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형성』 제3권 4호/제4권 1호, 1969-1970.
- 금재호, 『여성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 금재호·조준모, 『실업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
- 김경혜 외, 『서울시 저소득시민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8.
- 김영란, 「사회권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배제에서 포용으로」, 『사회복지정책』 제13집, 2001.
- 김영란, 「여성빈곤과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한국사회학』 제33집, 가을호, 1999.
- 김익기·장세훈, 「도시빈민의 내부분화와 빈곤의 재생산 과정: 난지도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21집 겨울호, 1987.
- 김창엽 외, 『빈곤과 건강』, 한울 아카데미, 2003.
- 남원석,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체계의 종합적 개편의 필요성과 기본

- 방향」, 『도시와 빈곤』 제65호, 2003.
- 남재량·김태기, 「비정규직, 가교(bridge)인가 함정(trap)인가?」, 『노동경제논집』 23(2), 2000.
- 남춘호,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개편과 장기실업 및 반복실업」, 『산업노동연구』 8(2), 2002.
- 남희용 외, 『도시 저소득층 연구』, 현대사회연구소, 1990.
- 노대명, 「외환 위기 이후 신빈곤 문제의 현황과 과제」, 『도시와 빈곤』 58호, 2002.
- 노대명, 「한국사회 근로빈곤층 취업실태에 대한 연구」,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편), 『한국사회의 신빈곤 어떻게 볼 것인가: 심포지엄 자료집』, 2003.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공공임대주택의 소요계층에 따른 공급전략과 관리운영방안』, 2001.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공공임대주택의 장기공급전략연구』, 2002.
- 대한주택공사, 『주거복지백서: 주택정책의 계층성 평가를 중심으로』, 2002.
- 류정순, 「신용불량자의 신빈곤 실태와 정책과제」,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편), 『한국사회의 신빈곤, 어떻게 볼 것인가: 심포지엄 자료집』, 2003.
- 박병현·최선미, 「사회적 배제와 하층계급의 개념 고찰과 이들 개념들의 한국 빈곤 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45권, 2001.
- 박순일, 「빈부격차의 실태, 요인분석 및 정책제언」, 『사회정책논총』 13권 1호, 2001.
- 박순일, 『선진경제의 문턱에서 본 한국의 빈곤 현실과 사회보장』, 일신사, 1994.
- 박신영, 「주거빈곤가구의 특성」, 『한국의 인구 및 주택 심포지엄』, 통계청·한국주택학회, 2002.
- 박영숙, 「도심지 빈민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국사회연구(2)』, 한길사,

198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1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연계심층분석결과』 발표,

2004. 3. 31

사회권연구모임, 『사회권 보장을 위한 기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2.

삼성경제연구소, 『주택보급률 100%시대의 과제: 한·일 비교와 시사점』, 2000

서상목 외, 『빈곤의 실태와 영세민 대책』, 한국개발연구원, 198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홈리스 여성실태와 대책』, 200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200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생활』, 200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빈곤과 도시사회정책-뉴욕, 워싱턴, 토론토, 런던, 파리, 동경사례』, 2003.

손명세, 「회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대한사회복지회, 『마당넓은집』, 2003년 가을호.

송호근, 「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구조와 정책」, 『한국사회학』 36(1), 2002.

숭실대학교 장애인복지연구원, 『현대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04.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난곡 저소득밀집지역의 재개발에 따른 주민이주에 관한 조사』, 2002.

신명호, 「한국 사회 빈곤의 새로운 인식」, 『당대비평』 제6권 3호, 2002.

신명호, 「빈곤문제의 이해」, 『도시와 빈곤』 통권51호, 2001.

심창학,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비교 관점에서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44권, 2001.

안주엽·노용진·박우성·박찬임·이주희·허재준,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 한국노동연구원, 2001.

안해균 외, 『저소득 시민의 생활실태에 관한 기초 조사와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한국사회복지연구소, 1979.

유훈 외, 『영세민 실태조사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조사연구소, 1982.

- 윤여덕 외, 『농촌 인구 이동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3.
- 윤종주, 「근세 한국의 민족이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 인구변동과 사회발전』, 서울여자대학교, 1991.
- 윤주현 편, 『한국의 주택』, 통계청, 2002.
- 윤현숙 외, 『의료사회사업론』, 나남, 2001.
- 이기우 외, 『한국사회 변화와 빈곤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연구소, 1995.
- 이병희·정재호,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구조 분석: 반복빈곤 및 고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52호, 2002.
- 이장원·김정우·문상석·민병삼·이원익, 『실업과 빈곤화: IMF체제 이후 성남지역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8.
- 이형덕·김종덕, 「농촌의 가족이주에 관한 연구: 경남 함안·진양·고성군의 가족이주를 중심으로」, 『농촌경제』 제5권 1호, 1982.
- 장상환, 「80년대 한국 자본주의와 농업문제」, 『한국의 사회구성(1)』, 도서출판 화다, 1985.
- 장세훈, 「외환위기 이전 도시빈곤의 추이와 특성」, 김동춘 외, 『IMF 이후 한국의 빈곤』, 도서출판 나남, 2000.
- 장세훈, 「현단계 도시빈곤의 지속과 변모: 신빈곤 현상에 대한 탐색」,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편), 『한국사회의 신빈곤, 어떻게 볼 것인가: 심포지엄 자료집』, 2003.
- 전홍규, 「단신생활자용 숙소를 활용한 홈리스 거주지원에 대한 모색」, 『도시와 빈곤』 제65호, 2003.
- 정건화, 「한국 도시빈민의 형성과 존재 형태」, 박현채 외, 『한국사회연구』 제5집, 한길사, 1987.
- 조명래, 「신자유주의적 산업구조 재편과 신빈곤」,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편), 『한국사회의 신빈곤, 어떻게 볼 것인가: 심포지엄 자료집』, 2003.

- 중앙일보, “작년 가출 성인 외환위기 때 2배”, 2004년 3월 7일자.
- 채창균·김범구, 『일반 가계의 중산층 의식 관련 설문조사』, 현대경제연구원, 1999.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월보』, 1997-1998.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60.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3
- 하성규 외, 『IMF 이후 도시저소득층의 생활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도시연구소, 1998.
- 하성규, 「주거권의 보장」, 『불량주택 재개발론』, 1998.
- 한국도시연구소, 『지하주거공간과 거주민의 실태에 관한 연구』, 2003.
- 한국도시연구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재개발지역 주민연구』, 2003.
- 한국도시연구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삶과 사회정책』, 200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강서구, 『저소득층 집중거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200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노숙자 자활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200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노숙자·부랑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2003
- 한상진 외, 『도시 비공식부문 연구』, 현대사회연구소, 1985.
- 허석렬, 「도시 무허가정착지의 고용구조」, 『한국사회연구(1)』, 한길사, 1983.
- 황덕순, 「빈곤과 실업극복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의미」, 『빈곤과 실업극복을 위한 국제포럼(2000.12)자료집』, 2000.
- 황수경, 『여성의 직업선택과 고용구조』, 한국노동연구원, 2003.
- 황익주, 「세계화와 노동부문의 변화:경기도 성남지방 공장노동자들의 사례연구」, 『한국문화인류학』 31(1), 1998.

- Alvey, S., "Social Exclusion and Public Sector Housing Policy in Scot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Vol.20 No.5-6, 2000.
- Anderson, I. and Sim D.(ed), *Social Exclusion and Housing: Context and Challenges*, Coventry: Chartered Institute of Housing, 2000.
- Apospori, Eleni & Jane Millar (eds.), *The Dynamics of Social Exclusion in Europe : Comparing Austria, Germany, Greece, Portugal and the UK*, Edward Elgar, 2003.
- Arthurson, Kathy and Jacobs K., "A Critique of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and its Utility for Australian Social Housing Policy", Australian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Paper presented at the UK Housing Studies Association Conference, Bristol, September 2003)
- Bae, Moo-Ki, *Industrial Development and Structural Change in Labour Market : The Case of Korea*, Tokyo: The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cs, 1985.
- Cameron, S., & Field, A., "Community, Ethnicity and Neighbourhood", *Housing Studies*, Vol.15, No.6, pp.827-844, 2000.
- Edgar, B., Doherty J. and Mina-Coull A., *Support and Housing in Europe: Tackling social exclusion in the European Union*, Bristol: The Policy Press, 2000.
-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Public Welfare Services and Social Exclusion*, Dublin: The European Foundation, 1995.
- Franck, K.A., "Overview of Single Room Occupancy Housing", in *New Households New Housing*, edited by K.A. Franck, and S. Ahrentzen, 242-262,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91a.
- Franck, K.A., "The Single Room Occupancy Hotel: A Rediscovered Housing

- Type for Single People”, in *New Households New Housing*, edited by K.A. Franck, and S. Ahrentzen, 308-330,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91b.
- Giddens, A.,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1998(佐和隆光譯、『第三の道：効率と公正の新たな同盟』、日本経済新聞社、1999).
- Gordon, David et. al.,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Britain*, Joseph Rowntree Foundation, 2000.
- Jordan, Bill, *A Theory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Polity Press, 1996.
- Kreuger, Liz & John Seley, “The Return of Slavery: Lessons from Workfare in New York City”, *Dollars and Sense*, Nov/Dec 1996.
- Lee, P., & Murie, A., *Poverty, housing tenure and social exclusion*, Bristol: The Policy Press, 1997.
- Levitas, R., *The Inclusive Society?: Social Exclusion and New Labour*, London:Macmillan Press Ltd, 1998.
- Lomnitz, Larissa, *Networks and Marginality : Life in a Mexican Shanty Town*, translated by Cinna Lomnitz, New York: Academic Press, 1977.
- Marshall, T.,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 Doubleday & Company Inc., 1964.
- Mayes, David, Jos Berghman, Robert Salais (eds.), *Social Exclusion and European Policy*, Edward Elgar, 2001.
- Middleton, Sue, Matt Barnes & Jane Millar, “The Dynamic Analysis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Apospori, Eleni & Jane Millar (eds.), *The Dynamics of Social Exclusion in Europe: Comparing Australia, Germany, Greece, Portugal and the UK*, Cheltenham: Edward Elgar, 2003.
- Muffels. Ruud, Panos Tsakloglou & David G. Mayes (eds.), *Social Exclusion*

- in European Welfare States*, Edward Elgar, 2002.
- Murphy, Raymond, *Social Closure: The Theory of Monopolization and Exclusion*, Clarendon Press, 1988.
- OECD, *The Battle against Exclusion*, vol.3, OECD, 1999.
- Percy-Smith, Janie (ed.), *Policy Responses to Social Exclusion: towards Inclusion?*, Open University Press, 2000.
- Pierson, John, *Tackling Social Exclusion*, Routledge, 2001.
- Rahman, Mohibur et. al., *Monitoring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Joseph Rowntree Foundation, 2000.
- Roche, M., *Rethinking Citizenship: Welfare, Ideology and Change in Modern Society*, Cambridge : Polity Press, 1992.
- Roche, Maurice, Rik Van Berkel (eds.), *European Citizenship and Social Exclusion*, Ashgate, 1997.
- Room, Graham, *'New Poverty' in the European Community*, St. Martin's Press, 1990.
- Somerville, P., "Explanations of Social Exclusion: Where Does Housing Fit in?", *Housing Studies*, Vol.13, No.6, pp.761-780, 1998.
- Spear, Roger, et. al., *Tackling Social Exclusion in Europe: the Contribution of the Social Economy*, Ashgate, 2001.
- Spicker, P., *Housing and social exclusion*, Edinburgh: Shelter Scotland, 1998.
- Thompson, Tommy, "The Good News about Welfare Reform: Wisconsin's Success Story", *The Heritage Lectures* No.593, 1997.
- Turner, B. (서용석·박철휘 옮김), 『시민권과 자본주의』, 일신사, 1986.
- Watt. P. and Jacobs K., "Discourses of Social Exclusion: An Analysis of Bringing Britain Together: a 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 *Housing, Theory and Society*, Vol.17, No. 1, pp.14-26

岩田正美,「現代の貧困とホームレス」、大本圭野・戒能通厚、『講座現代居住
1：歴史と思想』、東京大學出版會, 1996.

小玉徹・大場茂明・檜谷恵美子・平山洋介、『歐米の住宅政策-イギリス・ドイツ・フランス・アメリカ』、京都：ミネルヴァ書房、1999.

早川和夫・岡本祥浩,『居住福祉の論理』, 東京大學出版會, 1993.

平山洋介、『コミュニティ・ベースト・ハウジング-現代アメリカの近隣再生』
、ドメス出版、1993.

< 부록 >

조사대상자별 심층면접 내용 요약